상표판결에서 유사여부 판단사례에 관한 세부분류 연구

2011.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상표판결에서 유사여부 판단사례에 관한 세부분류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기간 : 2011. 8. 26. - 12. 26.

○ 연구책임자 : 배 상 철 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하 홍 준 연구위원

심 현 주 위촉연구원

정 신 웅 위촉연구원

○ 연구 자문 : 박 종 태 변리사

최 성 우 변리사

최 효 선 변리사

목 차

제1장 상표유사여부 판단관련 일반론 ····· 1

제1절 상표의 동일·유사의 개념 ····· 1
Ⅰ. 상표의 동일유사의 의의 및 연혁 ····· 1
Ⅱ. 상표의 근사성과 「상품출처의 혼동」의 염려 ····· 4

제2절 유사여부 판단요소 ····· 7
Ⅰ. 유사 판단요소인 외관, 칭호, 관념과 출처혼동 연관성 ····· 7
Ⅱ. 외관유사 ····· 10
Ⅲ. 칭호유사 ····· 11
Ⅳ. 관념의 유사 ····· 13

제3절 판단방법 및 기준 ····· 15
Ⅰ. 관찰방법의 원칙 ····· 15
Ⅱ. 요부관찰 ····· 17
Ⅲ. 분리관찰 ····· 20
Ⅳ. 판단주체 등 ····· 22

제2장 상표유사여부 관련 세부분류체계 ····· 24

제3장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례 유형 ····· 32

제1절 단일상표 ····· 32
Ⅰ. [문자] ····· 32
Ⅱ. [도형 등] ····· 33

제2절 결합상표 ····· 35
Ⅰ. [문자간 결합] ····· 35
Ⅱ. [전체 구성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 42
Ⅲ. [표장 일부분(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 42

Ⅳ.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내지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 42
Ⅴ. [기타] ····· 43

제3절 전체관찰 ····· 40
Ⅰ.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 40
Ⅱ. [전체 구성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 42
Ⅲ. [표장 일부분(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 42
Ⅳ.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내지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 42
Ⅴ. [기타] ····· 43

제4절 요부관찰 ····· 43
Ⅰ. [표장 일부(외관, 칭호, 관념)가 특히 현저하게 수요자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우] ····· 43
Ⅱ. [기타] ····· 44

제5절 분리관찰 ····· 45
Ⅰ. [전체 구성 부분이 단순병렬조합인 경우] ····· 45
Ⅱ. [기타] ····· 46

제6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유사성 판단사례 ····· 46
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관련 ····· 46
Ⅱ.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관련 ····· 46

제4장 상표의 동일성 판단사례 ····· 377

제1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동일성 판단사례 ····· 377
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377
Ⅱ.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393

제1장 상표유사여부 판단관련 일반론

제1절 상표의 동일·유사의 개념

Ⅰ. 상표의 동일유사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가. 개설

상표법은 상표권의 취득에 관하여 登錄主義를 취하는 한편 동일한 상표의 경합사용에 관해서는 先出願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同種·類似商品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7호).

>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등록출원된 상표가 식별력(특별현저성) 등 등록에 필요한 적극적 요건(§6)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7은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7조의 상표등록거절사유는 입법정책상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보호할 수 없는 상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열거된 부등록사유는 모두 그 부존재(不存在)가 상표등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등록의 소극적(消極的)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除外하고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부등록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절대적 부등록사유로 삼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1호~17호).

그 중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른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도 포함되어 있다.

나. 상표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外觀, 稱

號(또는 呼稱), 觀念(또는 意味)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商品出處의 混同을 일으킬 念慮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1][2]

상표심사기준(개정 2011. 6. 30. 특허청 예규 제60호) 에 의하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7호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란 등록상표를 擴大 또는 縮小한 상표와 社會通念上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認識되는 정도의 상표를 포함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3)라고 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으나 거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 실제에 비추어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4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으나 거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 실제에 비추어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4 참조).

2. 현행 상표법상 상표의 동일·유사와 관련된 규정

가. 상표의 동일을 전제로 한 규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에 의한 상표등록출원(§6②), 1상표1출원(§10), 요지변경

---

1) 상표는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시각적 요소가 강하여 모방이 용이하고, 보호범위가 상표견본에 특정되어 지나치게 협소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은 상표권의 금지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사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최성우).

2) '외관·칭호·관념의 유사'와 '상표유사'의 구분

前者의 유사는 商標屬性의 近似性을 의미하나, 後者의 유사는 그 屬性뿐 아니라 거래의 실정이나 상표사용에 수반하는 제사정을 고려한 결과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의미가 다르다.

한편, 대법원도 상표의 유사여부판단기준에 대해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直觀的 認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全體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대판 2000.4.25, 99후1096) 상표유사와 외관·칭호·관념의 유사를 區分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출원분할과 변경(§18, §1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및 출원시 특례규정(§20, §21), 지정상품추가등록(§48①iii), 상표의 적극적 효력(§50본문), 사용권자의 등록상표사용(§55③, §57②),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73①iii) 등

나.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한 규정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까지 미치므로 §7①vii～ix,xi,xii 및 §8, 상표권침해(§66) 등

다. 상표의 유사를 전제로 한 규정

법§73①ii의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등록상표를 유사범위에서 사용함으로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경우에 적용된다.

라. 상표의 동일·유사를 불문하는 경우

법§7①x의 경우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2. 유사개념의 변천

상표법이 '상표의 저촉여부에 관한 기준'으로서 설정한 類似槪念은 프랑스법의 僞造·模造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원래 '商標 자체의 構成上 近似性'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① 상표 자체의 구성만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상표의 3가지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또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 판정결과의 객관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응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3)]

② 사회경제생활의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거래자, 수요자가 상표의 구성상 차이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것을 동종상품에 사용하였을 때에 출처혼동을 일으키

3) 대판 1988.1.12, 86후77 참조

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비된 상표의 대조효과에 의하여 또는 연속상표 중 하나인 것과 같은 구성이 심리적 계기가 되어 출처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표자체의 동일성 여부에는 혼동이 없지만, 널리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혼동적 유사상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표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유사개념이「混同의 憂慮」라는 실질개념에 의하여 내실화되고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의 類似與否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商品出處의 混同與否를 基準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학설이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Ⅱ. 상표의 근사성과 「상품출처의 혼동」의 염려

1. 개설

거래 통념상 두 개의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근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原則的으로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하지 아니하다(동 기준§21③)

2. 일반적 출처의 혼동

가. 의의

일반적 출처혼동이라 함은 대비된 2개의상표가 붙은 상품이 시장에 유통된다고 가정할 대 거래계의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동일한 생산자, 판매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판단기준

이 혼동유무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 상품의 동종성의 정도, 당해 상표품의 경험칙화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한다.

등록주의 법제하에서는 등록상표가 현실로 사용될 필요가 없고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도 사용을 예측함으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등록상표와 저촉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상품출처의 혼동이란 통상 일반적 출처의 혼동을 의미한다.[4)]

즉, 상표의 近似性을 제쳐두고 混同의 憂慮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보호범위를 정하면 판단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만, 권리범위가 浮動化하고 상표의 간이·신속한 정형적 보호를 꾀할 수 없게 되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은 비록 구체적인 경우에 혼동의 염려가 있더라도 상품이 유사하지 않거나 상표 그 자체가 유사하지 않으면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商標의 類似性을, 상표의 보호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추상화된 기술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5)]

3. 구체적 출처의 혼동

가. 의의

구체적 출처혼동이라 함은 대비된 상표품이 현실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들 상표품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실정에 비추어 동일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기준

이 혼동의 유무는 상표의 표지력의 크기, 저명주지성의 정도 등 구체적인 거래실정까지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판례

(1) 2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 그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하여「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

4) 송영식, 전게서, 230면; 강야성, 전게서, 419면
5) 이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혼동초래행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 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具體的·個別的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6]라고 판시하였다.

(2) 상표 "POLO" 와 "POLA"의 유사 여부와 관련하여「…본원상표 "POLO"는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오면서 그 지정상품들을 판매해 왔으며, 특허청 발행의 외국유명상표집에 등재되어 있고, 특허청에서 주로 많이 도용되는 외국 상표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라 할 것이고, 반면 인용상표 "POLA"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대판 1996.9.24, 96후153)

「…상표 "폴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인 점 등 위 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상표 "POLA"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7.10.10, 97후594)

(3) 유사한 두 상표 "Rolens" 와 "ROLEX"가 오인·혼동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등록상표 "Rolens"와 선출원된 인용상표를 비교하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는 시계류의 국내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다른 한편 등록상표의 상품들은 중저가의 상품이어서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람들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상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고품질의 시계로서 그 주요 거래자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수요자에 불과하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외형과 품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기록상 국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있다는 자료도 없거니와 이들 상품들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등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국내에서는 공항 등의 보세구역 면세점에서 극히 소량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 외국 여행객을 통하여 극소수 반입되는

6) 대판 1996.7.30, 95후1821. 同旨 동 1996.9.24, 96후153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고, 이와 같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7]

4. 상표유사문제에 있어서 이른바 廣義의 混同 내지 後援關係의 誤認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혼동개념의 확장에 의한 상표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대」문제)

이와 관련하여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어진다. 먼저 부정설에 의하면 광의의 혼동은 원래 기업표지 등의 규제 내지는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형성된 개념이며, 상표법에 기원을 가지는 개념은 아니다. 이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라기 보다는 상품과 영업사이의 관련관계 또는 결합관계에 관한 오인이므로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적 요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긍정설에 의하면 상표등록요건으로서의 혼동개념(§7①ⅹ)에는 광의의 혼동 내지 후원관계의 오인이 당연히 포함된다. 저명상표의 표지력 내지 이미지를 희석화하는 경우는 법§7①xi에 해당한다.[8]

제2절 유사여부 판단요소

Ⅰ. 유사 판단요소인 외관, 칭호, 관념과 출처혼동 연관성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基本的인 자료는「外觀, 稱號, 觀念」의 近似性여부이다.[9] 상표는 기호, 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외관, 칭호, 관념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학설

---

7) 대판 1996.7.30, 95후1821

8) 송영식, 전게서, 225면.

9)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항상 상표 자체의 문자, 도형, 기호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가 부착되는 위치나 크기, 형상 등도 고려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5.6.16, 94도1793)

가. 지배적인 학설

대비되는 상표들의 위 3가지 속성 중 어느 하나만 유사하여도 상품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사상표라고 보는 견해

나. 소수설

(1) 상표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은 상표의 유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그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2가지 점에서 현저하게 다른 결과 또는 기타 거래실정에 의하여 아무런 혼동·오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아도 피차 오인·혼동될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

(2) 2개의 상표를 비교하여 기억상 착각을 일으킨다던가 인상상 틀림이 없을 경우와 같이 외관, 칭호, 관념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표유사의 태양을 위 3가지 경우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

2. 판례

가. 실무적 태도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상표로 보되, 어느 요소가 현저하게 달라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상표라고 보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상표의 속성의 근사성은 혼동의 염려가 존재한다는 자료적 사실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10)]

---

10) 대판 2000.4.25, 98후1877 : "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져야 한다"

서비스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정도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그 서비스 출처에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 그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서비스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서비스업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

나. 주요 판례

(1)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1]

(2)「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12]

(3)「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13]

Ⅱ. 외관유사

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서비스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서비스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0.1.21, 99후2532).

11) 대판 1989.1.31, 88후257. 同旨 동 1990.7.10, 90후328; 동 2000.4.11, 99후2013(호칭동일)

12) 대판 1982.6.8, 81후29. 同旨 동 1999.7.23, 98후2382; 동 2001.2.23, 98다63674; 동 2000.4.21, 99후1621

13) 대판 2000.3.23, 97후2323. 同旨 동 1995.5.26, 95후64; 동 1996.4.9, 95후1692; 동 1998.5.22, 97후2026; 동 1998.10.23, 97후2019; 동 1999.7.23, 98후2382; 동 2000.2.22, 99후1850; 동 2000.2.25, 97후3050; 동 2000.4.25, 99후1096.

1. 의의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문자, 기호, 도형 등의 외관상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한 결과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연혁적으로 도형, 기호등 외관에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발달하여 한 때 외관이 중시된 적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TV, Radio 등 청각에 호소하는 광고선전 매체의 발달로 칭호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2.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

도형만으로 구성되거나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중에서 도형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 외관의 유사여부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14)]

3. 문자로 구성된 상표

주로 칭호, 관념에 의하여 유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외관이 전혀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15)]

4. 색채가 가미된 상표

가. 구(舊) 상표법

색채 그 자체로는 상표로 될 수 없지만, 문자, 도형, 기호 등에 着色되면 특별현저성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색채도 상표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14) 대판 1990.3.9, 89후1776; 동 2000.12.26, 98도2743 :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15) 대판 2000.4.25, 99후1096 : 「출원상표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크로노도-스"는 모두 한글로 일련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중간에 '도-'가 삽입되어 있는 외에는 앞 부분의 3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같으며, 출원상표 "KRONOS"는 출원상표 "크로노스"에 대한 영문표기에 불과하여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는 外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앞 부분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며 단지 인용상표들에 '도-'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이들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있었다.

판례는 정면으로 색채를 상표의 구성요건으로 보아 판단한 사례는 없지만 유사성판단에 있어서 색채를 고려한 사례도 있다.[16]

나. 현행 상표법

상표법상 색채도 상표의 구성요소임이 명백하므로 외관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연히 색채도 고려되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색채만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상표로 인정되나(§91의2①), 색채를 달리하면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Ⅲ. 칭호유사

1. 의의

칭호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 상표의 호칭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들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각적 요인에 의한 상표의 혼동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자상표, 특히 조어상표의 유사여부는 호칭의 유사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17]

2. 칭호유사를 결정하는 기준

상호의 칭호는 거래 실제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상표구성유형을 기준으로 한 칭호유사 판단사례를 살펴보면

(1) 도형상표

1) 동물, 식물 도형 등

그 자체가 보통 불리어지는 自然的 稱號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18]

16) 대판 1983.5.10, 81후36; 동 1985.6.11, 84후100
17) 대판 1997.2.28, 96후931
18) 대판 1990.12.11, 90후1000; 대판 1988.3.8, 87후24

특별한 일반적 칭호가 없는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칭호는 대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外觀에 의하여 類否를 판단한다.[19]

(2) 문자상표(要部가 문자인 결합상표도 포함)

1) 한글로 표기된 상표

발음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나는 데에 따라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현상도 고려해야 한다.[20]

2)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

①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英語式으로 발음된다.[21]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된 상표에 있어서 영어 이외의 발음이 관용되는가의 여부의 결정은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권자의 국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님[22]

영문자의 발음은 반드시 辭典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되는 경우만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 상표 "ALCOS-ANAL"의 ANAL이 사전에 적힌 발음 '에이널'로만 호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날'로도 호칭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표 "아날"과 칭호가 유사하고[23], 상표 "CLOSED"의 발음은 '크로우즈드'이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상표"CROSS(크로스)"의 칭호와 유사하다.[24]

② 예외적으로 商品에 따라 영어 이외의 발음이 관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藥品類의 獨逸語式발음, 化粧品類의 佛語式발음이 관용된다.

(3) 결합상표

결합상표의 경우 그 전체로부터 칭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중 수요자의 시선을 끌도록 현저하게 구성된 要部로부터 발생함이 원칙이다. 1개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칭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개의 칭호를 타상표의 그것과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의 경우 그 자체로부터 칭호가 우러나올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경우에 도형과 문자 각각으로부터 칭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

19) 대판 1987.9.8, 87후71

20) 대판 1984.9.11, 82후62.

21) 대판 1986.2.11, 85후76

22) 대판 1986.2.11, 85후76 : 본원상표 "베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의 유부와 관련해서 "권리자의 국적이 스위스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이를 식별하여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인 임을 판별할 자료도 없고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독일어의 발음 "베타디네"로 호칭됨을 대비 관찰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But 상표 "CARON"은 불란서계의 회사가 사용하는 것인만큼 그 발음을 불란서어로 '까롱'이라고 해야 할 것이어서 상표 "Cannon(캐논)"의 칭호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한 판결도 있다(대판 1989.3.14, 88후19 참조).

23) 대판 1987.3.24, 86후56

24) 대판 1990.1.25, 89후650

중 어느 하나가 타상표의 칭호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25][26][27]

그리고 형용사 등 수식어나 附記문자가 결합된 문자간 결합상표의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 상표와 원칙적으로 유사하다.[28][29][30]

3. 기타

판례는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31]라고 판시하였다.

Ⅳ. 관념의 유사

1. 의의

관념의 유사라 함은 상표가 가지는 의미 내지는 이미지(IMAGE)[32]가 비슷하여 대비된 상표를 용이하게 직감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상표의 知覺的 요인에 의한 혼동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GREENPEACE'와 'PEACE'[33] 등이 그러하다.

---

25) 대판 1990.7.27, 89후919. 도형에 의해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으로 호칭, 관념됨.
26) 대판 1990.9.25, 90후76. 도형에 의해 "수레바퀴"로 호칭될 개연성이 있음
27) 대판 1990.10.10, 90후458. 도형부분에 의해 "종표"로 호칭되고 관념됨.
28) 대판 1990.1.23, 89후1233
29) 대판 1990.5.25, 89후2212
30) 대판 1990.5.22, 89후2137
31) 대판 1992.12.24, 92후1462
32) 구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풍기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33) 대판 1989.11.24, 89후964. 칭호도 유사. 일반적으로 GREEN은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GREENPEACE"의 주된 관념은 PEACE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관념유사의 판단 기준

가.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直觀的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深思熟考하거나 辭典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4)]

(1) 영어로 표기된 상표 중 국내 일반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경우 그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한글로 된 상표와는 관념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WING : 날개[35)]

(2) 상표권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도 고려되지 않는다.

예컨대 상표권자가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해 두고 "명신왕 오징어"라는 상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특정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명신"이라는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왕오징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36)]

"TO-A"라는 영문표기를 보고 "동아"의 일본표기라고 알아차려 "동아"를 연상함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양자의 관념이 상이하다.[37)]

나. 관념은 칭호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要部로부터 나오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로 된 상표에 있어서는 칭호가 유사하면 관념도 유사한 경우가 보통이다.

3. 개별 사례

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이 유사하나[38)], 수식어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34) 대판 2000.3.23, 97후2323

35) 대판 1993.7.13, 92후2120.

36) 대판 1990.9.28, 89후1325 :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37) 대판 1990.8.28, 90후595

38) "주식회사 화인" : "뉴화인"(대판 1992.10.9, 92후1103), "FOREX" : "HIPOREX"(대판 1990.5.25, 89후2212) 등

렇지 아니하다.

나.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된 상표 즉 造語商標의 경우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요소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함.

다. 동물의 이름이나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인 경우

같은 종류의 동물이면 칭호와 외관이 약간 상이하더라도 관념이 같은 경우가 보통이지만[39], 동물의 종류가 다르거나 도형의 외관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관념이 다르다.[40]

제3절 판단방법 및 기준[41]

Ⅰ. 관찰방법의 원칙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객관적·이격적 관찰을 原則으로 하되, 상표구성 중 印象的인 部分(要部)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동 심사기준§21②).

1. 대비적 관찰과 이격적 관찰

가. 대비적 관찰이라 함은 2개의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방법이며, 이격적 관찰이라 함은 별도의 기회에 별개의 장소에서 상표를 대비하였을 때 다른 상표에 대한 유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42].

나. 이격적 관찰

39) 불곰 : 곰표(대판 1989.6.27, 88후332), Asictiger : 범표, 호랑이 등 (대판 1990.1.25, 89후1448)
40) 뿔[도형](hama) : 하마[도형](Hippo 하마표) (대판 1997.8.28, 90후397)
41)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종래 학설·판례상 인정되어온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42) 대판 1989.12.12, 88후1335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는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離隔的으로 상표의 異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43]

2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혼동이 일어나는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해야한다.

이격적 관찰은 특히 外觀類似를 판단할 때 적절한 방법이지만 칭호, 관념의 대비에도 쓰이는 방법이다.

이격적 관찰은 대비적 관찰(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5)

2.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가. 전체관찰의 의의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4]

상표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부분과 부기적 부분을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전체에 대해서 비교관찰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6). 다만,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식별력이 없는 윤곽이나 부기적 사항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만을 비교대조하는 要部觀察을 竝行함으로써 식별기능면에서 보아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45]

---

43) 대판 1990.7.27, 89후919

44) 대판 1987.2.24. 선고 86후121. 同旨 대판 1990.7.27, 89후919

45)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

나. 요부관찰의 의의

상표 중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일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2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필요하다.

判例도 요부관찰과 전체관찰이 相互補完關係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부관찰

1. 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관찰의 手段이므로 요부의 선정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경우에 식별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原則的으로 상표법§6① 各号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동법§51 各号가 규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표장은 요부가 아니며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다른 상표와 대비해서는 안되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에 있어서도 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은 요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동조 해석참고자료7 본문).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附隨的 考慮事項으로서도 排除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7 단서).[46] 상표 요부 즉 인상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쉬운 부분,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분

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 1966.11.22, 65후18). 「출원상표 "HYPER HAD"와 인용상표 "HYPER-1"은 모두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관념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HYPER"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대판 1997.7.25, 96후1521)

46) 同旨 대판 1995.3.17, 94후2070; 대판 2001.4.27, 2000후2453 「출원상표 "AceLink"는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5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원상표와 “Ace+에이스” 또는 “Link”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비교하면 양 상표는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상표법§6①vi(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참조.

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주는 식별력 또는 인상의 강약에 따라 요부의 강약이 인정되며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2. 요부의 범위

종래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識別力 있는 부분'만이 要部라는 견해가 通說이며, 요부관찰은 이러한 통설적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47][48][49]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要部가 서로 다른 경우 유사상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判例는 이에 대해 消極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50]

3. 요부결정의 기준

상표의 요부는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분, 일반적으로 친하기 쉬운 부분에 존재한다.

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요부

---

47)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상표의 구성요소 중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 관찰함이 타당한지 여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대판 1995.3.3, 94후1886).

48)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대판 1994.5.27, 93후2103)

49) 대판 1994.2.8, 93후1094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50) 대판 1990.6.8, 90후274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原則的으로 도형과 문자간에 비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요부가 될 수 있다.[51] 도형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된 경우에는 '圖形'이 요부,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文字'가 요부가 된다.[52]

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요부

(1) 문자간에 輕重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요부가 될 수 있다.

(2) 수식어나 부기문자는 요부가 되지 아니한다.[53]

1) 특히 현저하게 구성된 부분이 요부가 되나, 이른바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54]

2) 判例의 主流的 傾向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명칭, 업종표시' 등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55] 다만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지만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부가 될 수 있으며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에 포함된다.[56]

3) 최근 판례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구성된 상표가 같은 상품류에 많이 등록된 경우 그 용어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57]

(3)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금지되나(§6①), 사용에 의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만 등록이 인정된다

---

51) 대판 1998.5.22, 97다36262 : 'POLO'라는 문자 및 말을 탄 사람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

52) 대판 1984.9.11, 82후62

53) 대판 1990.1.23, 89후1233 「이 사건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요부는 "FUJIKA(후지카)"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는 인용상표 "FUJIKA(후지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본원상표가 소론과 같은 지구 도형과 "WORLD(월드)"란 문구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여 위의 지구 도형과 "WORLD(월드)"의 복합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본원상표에 있어서 "FUJIKA(후지카)" 앞에 있는 "WORLD(월드)"는 "세계의, 세계적인"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적인 용어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FUJIKA(후지카)"라고 할 것…」

54) 대판 1991.3.27, 90후1222

55)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0.1.28, 97후3272)

56) 대판 1995.3.17, 94후2070

57) 대판 1996.3.22, 95후1500; 대판 1996.7.30, 95후2084; 대판 1996.10.25, 96후511; 대판 1997.3.14, 96후1057

(§6②). 이러한 使用에 의한 特別顯著性을 취득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그 유사범위는 原則的으로 그와 동일한 외관, 칭호를 가진 상표에 국한되고, 동일·유사한 觀念의 상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성질표시적 상표는 문자 본래의 意味를 상실하고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의 제2차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문자가 가진 본래 의미의 觀念 유사여부는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Ⅲ. 분리관찰

1. 의의

분리관찰은 ⅰ)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사회통념상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ⅱ) 문자와 도형상표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특히 필요한 관찰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일련적으로 구성된 조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등에는 분리관찰이 부적당하므로 그 전체의 구성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58]

姓名상표 특히 외국인의 성명상표의 경우에도 '姓과 이름(名)이 결합하여 一切的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분리관찰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59][60]

---

58) 매직스타+[도형] : MAGICHEFF(대판 1990.6.26, 89후896)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를 타 상표와 대비한 결과 비유사로 판단된 사례이다.
상표 "BANANA REPUBLIC"이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출원상표인 "BANANA REPUBLIC"이 사전상으로는 "과일 등의 무역이나 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남미 등 열대의 작은 나라"라는 경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출원상표가 관념상 분리관찰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판 1997.12.26, 97후1269)

59) 분리관찰 불가로 비유사로 판단된 예)
"HANSGROHE" : "GROHE"(대판 1990.12.11, 90후1147)
"LAURA ASHLEY" : "LAURA(이름)" 혹은 "ASHLEY(성)"(대판 1995.1.12, 94후647)
분리관찰 가능 유사로 판단된 예
"VALENTINO RUDY" : "valentino garavani"(대판 1995.5.12, 94후1824)
"[도형]+PAOLO GUCCI" : "GUCCI"(대판 1997.3.25, 96후313)

60)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分離觀察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거나, 외국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거나, 외국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시에 성과 이름을 포함하는 전체 표장으로만 사용되고 외국의 신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도 상품이나 그 브랜드를 지칭할 때에 성과 이름이 포함된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며 성이나 이름을 분리하여 사용된 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국내에 출원된 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2. 판례

「상표는 그 구성성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이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1]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62]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관념, 칭호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성 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것이다」[63]

Ⅳ. 판단주체 등

1. 상표심사기준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0.4.11, 98후2627)

61) 대판 1984.11.13, 83후67. "PERSONAL SYSTEM/2 : PERSONAL(대판 1990.5.8, 89후1349) 등

62) 대판 1999.4.23, 98후829

63) 대판 1992.9.14, 92후346.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은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상표심사기준§21④).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함은 그 상표를 접촉하는 범위내 통상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양상표에 대하여 심리적 감각적으로 경험칙상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10). 따라서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관찰력, 특수한 취미,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도매상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거래자가 이격적 관찰에 따를 경우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은 각 상품의 종류, 성격, 형상, 구조, 크기 등 사용되는 상품의 속성이나 그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이 거래되는 업계의 상관습, 기타 거래실정도 배려한 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말한다(동조 해석참고자료11). 예컨대 약제에 대해서는 독일어식 발음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적인 발음이 많으므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유럽어식의 칭호도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64]

2. 판례

가. 일반 수요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65]

나. 상표사용태양, 거래실정 등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主觀的 希望이나 意思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客觀的으로 어떻게 인식

64)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등산 마크와 태극 마크가 혼합된 표장과 "가"항의 등록 업무표장은 각 그 일 요부를 이루는 태극 마크에 있어서 비록 색상은 다르나 도형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또한 위 업무표장은 실제 사용시 문자는 생략된 채 태극 마크만을 각인 사용하고 있어 태극 마크를 금반지 등에 각인 사용할 때에는 색상의 차이는 없어지는 점 등 사용의 실태를 고려하면 양 표장은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5.6.16, 94도1793)

65) 대판 1995.12.26, 95후1098. 同旨 동 1994.7.29, 94후111; 동 1995.9.26, 95후439 등

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66]

「스페인에서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인용상표권자의 同意與否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67]

66) 대판 1990.9.28, 89후1325;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67) 대판 2000.4.11, 99후581

제2장 상표유사여부 관련 세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Ⅰ. 단일상표	01. 문자	001. 음절구성수	0001. 극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앞부분이 같으나 뒷부분이 상이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앞부분이 상이하나 뒷부분이 같은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4. 중간부분만 상이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5. 중간부분만 동일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6. 비연속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같거나 상이한 음이 이어진 경우(12.12)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기타	0001. 한자 또는 한글 1글자로 구성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외관은 상이하나 연상되는 칭호 또는 관념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12.13)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숫자(12.7)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2. 도형 등	001. 도형상표(캐릭터 포함)	0001.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기하학적 도형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호칭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기하학적	00001. 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도형(12.9)	00002. 비유사
			0003. 호칭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일반 도형(12.9)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4.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일반 도형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5.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된 문자 또는 숫자(알파벳문자 포함)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6. 외관이 상이하나 연상되는 칭호 또는 관념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12.13)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기호상표	0001. 도안화된 기호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3. 입체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Ⅱ. 결합상표	01. 문자간 결합	001. 칭호가 동일한(동종의) 문자간 결합	0001. 연결형 기호(하이픈(-), 앰퍼샌드(&), 콜론(:) 등)로 구성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띄어쓰기, 크기, 서체, 대·소문자, 색채, 층계(Layer)형, 텍스트 방향, 중간점(·), 마침점(.) (문자자 위)방점, 슬러쉬(/), 아포스트로피(') 등이 있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0002. 비유사
		002. 칭호가 상이한 문자간 결합	0001. 연결형 기호(하이픈(-), 앰퍼샌드(&), 콜론(:) 등)로 구성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띄어쓰기, 크기, 서체, 대·소문자, 색채, 층계(Layer)형, 텍스트 방향, 중간점(·), 마침점(.) (문자자 위)방점, 슬러쉬(/), 아포스트로피(') 등이 있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외관상 일체적이나 의미상 문자간 결합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1. 성명 또는 상호 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주지/저명성 있는 표장이 일부 포함된 결합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숫자가 포함된 결합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4. 접두사, 접미사 어구가 결합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5. 중첩 또는 반복형 단어로 구성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6. 약어(=頭文字語) 상표 (12.13)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0002. 비유사
	02. 문자와 도형(캐릭터 포함) 등 결합	001. 문자와 도형이 동종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0001. 문자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현저한 도형부분에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문자와 도형 모두에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12.21)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문자와 도형이 각각 별개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0001. 문자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현저한 도형에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문자와 도형 모두에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12.21)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4. 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현저한 도형(12.5)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3. 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특별한 내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4. 문자와 도형에 기호 등 결합된 경우	0001. 문자 또는 도형으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기호 등으로 호	00001. 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2. 비유사
			0003. 전체 구성 부분들이 지배적 인상을 주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5. 문자에 기호 등 (도형 제외) 결합된 경우	0001. 문자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기호 등으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전체 구성 부분들이 지배적 인상을 주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3. 문자 제외한 표장 구성부분의 결합	001. 도형간 결합	0001. 동종의 칭호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도형간 결합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별개의 칭호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도형간 결합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칭호 또는 관념이 현저한 도형에서만 연상되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4. 결합된 도형이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을 연상시키는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5. 칭호 또는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 도형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도형에 기호 등 결합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Ⅲ. 전체관찰	01.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001. 조어(造語)	0001. 사전적 의미가 없는 단어	00001. 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00002. 비유사
			0002. 사전을 보고서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결합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로 인식되어 통용되는 경우	0001. 짧은 음절 등 막힘없이 일련적으로 호칭되는 문자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자연인의 성명 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1.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포함된 문자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2. 전체 구성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001.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부분간 결합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다수등록 표장부분간 결합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3. 각각 별개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간 결합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3. 표장 일부분(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001.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외관, 호칭, 관념 중 둘 이상이 유사한 경우		00001. 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0002. 비유사
	04.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내지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001.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형성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외관, 호칭, 관념 중 둘 이상이 형성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Ⅳ. 요부 관찰	01. 표장 일부(외관, 칭호, 관념)가 특히 현저하게 수요자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우	001.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결합된 경우	0001. 요부 문자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요부 도형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기타 (12.7)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다수 등록 표장 부분이 결합된 경우	0001. 요부 문자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요부 도형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기타 (12.7)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3. 각각 별개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들이 결합된 경우	0001. 요부 문자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요부 도형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기타 (12.7)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9. 기타	001. 문자상표 중 전체 음절수가 많거나 발음이 까다로운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Ⅴ. 분리 관찰	01. 전체 구성 부분이 단순병렬조합인 경우	001. 외관상 가분적인 경우	0001. 문자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도형 등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기타 (12.13)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외관상 일체적인 경우	0001. 문자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2. 도형 등 대비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03. 기타 (12.13)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9. 기타	001. 문자의 호칭이 상당히 길어서 전체로서 호칭되기가 곤란한 경우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2. 자연인의 성명상표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009. 기타		00001. 유사 00002. 비유사

제3장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사례 유형

제1절 단일상표

Ⅰ. [문자]

1. [음절구성수] -[극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12)

2. [음절구성수] -[앞부분이 같으나 뒷부분이 상이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22)

3. [음절구성수] -[앞부분이 상이하나 뒷부분이 같은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32)

4. [음절구성수] -[중간부분만 상이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4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42)

5. [음절구성수] -[중간부분만 동일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5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52)

6. [음절구성수] -[비연속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같거나 상이한 음이 이어진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6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162)

7. [기타]-[한자 또는 한글 1글자로 구성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12)

8. [기타]-[외관은 상이하나 연상되는 칭호 또는 관념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22)

9. [기타]-[숫자]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32)

10. [기타]-[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1292)

Ⅱ. [도형 등]

1. [도형상표(캐릭터포함)]-[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기하학적 도형]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12)

2. [도형상표(캐릭터포함)]-[호칭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기하학적 도형]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22)

3. [도형상표(캐릭터포함)]-[호칭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일반 도형]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32)

4. [도형상표(캐릭터포함)]-[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일반 도형]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4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42)

5. [도형상표(캐릭터포함)]-[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도안화된 문자 또는 숫자(알파벳문자 포함)]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5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52)

6. [도형상표(캐릭터포함)]-[외관이 상이하나 연상되는 칭호 또는 관념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12.13)]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6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62)

7. [도형상표(캐릭터포함)]-[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192)

8. [기호상표]-[도안화된 기호]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212)

9. [기호상표]-[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2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292)

10. [입체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I 023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Ⅰ02302)

제2절 결합상표

Ⅰ. [문자간 결합]

1. [칭호가 동일한(동종의) 문자간 결합] - [연결형 기호(하이픈(-), 앰퍼샌드(&), 콜론(:) 등)로 구성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112)

2. [칭호가 동일한(동종의) 문자간 결합] - [띄어쓰기, 크기, 서체, 대·소문자, 색채, 층계(Layer)형, 텍스트방향, 중간점(·), 마침점(.) (문자자 위)방점, 슬러쉬(/), 아포스트로피(') 등이 있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122)

3. [칭호가 동일한(동종의) 문자간 결합] - [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1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192)

4. [칭호가 상이한 문자간 결합] - [연결형 기호(하이픈(-), 앰퍼샌드(&), 콜론(:) 등)로 구성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12)

5. [칭호가 상이한 문자간 결합] - [띄어쓰기, 크기, 서체, 대·소문자, 색채, 층계(Layer)형, 텍스트방향, 중간점(·), 마침점(.) (문자자 위)방점, 슬러쉬(/), 아포스트로피(') 등이 있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22)

6. [칭호가 상이한 문자간 결합] - [외관상 일체적이나 의미상 문자간 결합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32)

7. [칭호가 상이한 문자간 결합] - [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292)

8. [기타] - [성명 또는 상호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12)

9. [기타] - [주지/저명성 있는 표장이 일부 포함된 결합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22)

10. [기타] - [숫자가 포함된 결합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32)

11. [기타] - [접두사, 접미사 어구가 결합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4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42)

12. [기타] - [중첩 또는 반복형 단어로 구성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5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52)

13. [기타] - [약어(=頭文字語) 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6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62)

14. [기타] - [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1992)

Ⅱ. [문자와 도형(캐릭터 포함) 등 결합]

1. [문자와 도형이 동종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문자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112)

2. [문자와 도형이 동종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현저한 도형부분에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122)

3. [문자와 도형이 동종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1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132)

4. [문자와 도형이 각각 별개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문자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12)

5. [문자와 도형이 각각 별개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현저한 도형에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22)

6. [문자와 도형이 각각 별개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전체 구성 부분들이 지배적 인상을 주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32)

7. [문자와 도형이 각각 별개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호칭 또는 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현저한 도형]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4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42)

8. [문자와 도형이 각각 별개의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5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252)

9. [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특별한 내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3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302)

10. [문자와 도형에 기호 등 결합된 경우]-[문자 또는 도형으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4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412)

11. [문자와 도형에 기호 등 결합된 경우]-[기호 등으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4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422)

12. [문자와 도형에 기호 등 결합된 경우]-[전체 구성 부분들이 지배적 인상을 주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4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432)

13. [문자에 기호 등(도형 제외) 결합된 경우]-[문자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5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512)

14. [문자에 기호 등(도형 제외) 결합된 경우]-[기호 등으로 호칭 또는 관념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5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522)

15. [문자에 기호 등(도형 제외) 결합된 경우]-[전체 구성 부분들이 지배적 인상을 주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5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2532)

Ⅲ. [문자 제외한 표장 구성부분의 결합]
1. [도형간 결합]-[동종의 칭호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도형간 결합]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12)

2. [도형간 결합]-[별개의 칭호 또는 관념이 연상되는 도형간 결합]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22)

3. [도형간 결합]-[칭호 또는 관념이 현저한 도형에서만 연상되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32)

4. [도형간 결합]-[결합된 도형이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을 연상시키는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4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42)

5. [도형간 결합]-[칭호 또는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 도형]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5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152)

6. [도형에 기호 등 결합]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2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Ⅱ03202)

제3절 전체관찰

Ⅰ.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1. [조어] - [사전적 의미가 없는 단어]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112)

2. [조어] - [사전을 보고서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결합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122)

3.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로 인식되어 통용되는 경우]-[짧은 음절 등 막힘없이 일련적으로 호칭되는 문자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212)

4.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로 인식되어 통용되는 경우]-[자연인의 성명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2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222)

5.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로 인식되어 통용되는 경우]-[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29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292)

6. [기타]-[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포함된 문자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9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912)
7. [기타]-[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9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1922)

Ⅱ. [전체 구성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1.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부분간 결합]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21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2102)

2. [다수등록 표장부분간 결합]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22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2202)

3. [각각 별개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간 결합]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23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2302)

Ⅲ. [표장 일부분(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1.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31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3102)

2. [외관, 호칭, 관념 중 둘 이상이 유사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32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3202)

Ⅳ. [전체 구성에서 특별한 내지 새로운 외관, 호칭,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1.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형성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41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4102)

2. [외관, 호칭, 관념 중 둘 이상이 형성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42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4202)

Ⅴ. [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90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Ⅲ09002)

제4절 요부관찰

Ⅰ. [표장 일부(외관, 칭호, 관념)가 특히 현저하게 수요자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우]

1.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결합된 경우] - [요부문자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112)

2.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결합된 경우] - [요부 도형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122)

3. [원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결합된 경우] - [기타 (12.7)]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1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132)

4. [다수 등록 표장 부분이 결합된 경우]-[요부 문자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212)

5. [다수 등록 표장 부분이 결합된 경우]-[요부 도형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2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222)

6. [다수 등록 표장 부분이 결합된 경우]-[기타 (12.7)]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2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232)

7. [각각 별개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들이 결합된 경우]-[요부 문자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3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312)

8. [각각 별개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들이 결합된 경우]-[요부 도형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3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322)

9. [각각 별개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들이 결합된 경우]-[기타 (12.7)]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3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1332)

Ⅱ. [기타]

1. [문자상표 중 전체 음절수가 많거나 발음이 까다로운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91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9102)

2. [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99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Ⅳ09902)

제5절 분리관찰

Ⅰ. [전체 구성 부분이 단순병렬조합인 경우]

1. [외관상 가분적인 경우] - [문자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1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112)

2. [외관상 가분적인 경우] - [도형 등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1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122)

3. [외관상 가분적인 경우] - [기타 (12.13)]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1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132)

4. [외관상 일체적인 경우] - [문자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21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212)

5. [외관상 일체적인 경우] - [도형 등 대비]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22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Ⅴ01222)

6. [외관상 일체적인 경우] - [기타 (12.13)]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123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1232)

Ⅱ. [기타]

1. [문자의 호칭이 상당히 길어서 전체로서 호칭되기가 곤란한 경우]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91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9102)

2. [자연인의 성명상표]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92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9202)

3. [기타]

가.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9301)
나.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된 사례(V09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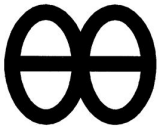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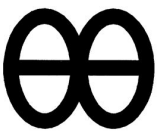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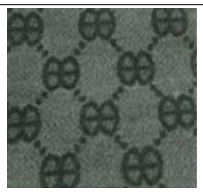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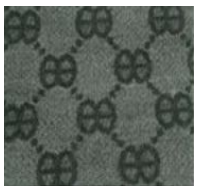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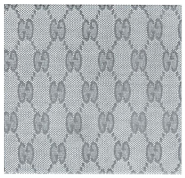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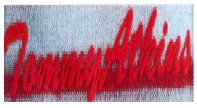
제6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유사성 판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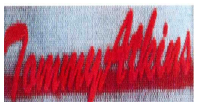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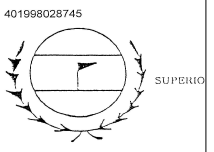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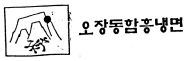
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관련

Ⅱ.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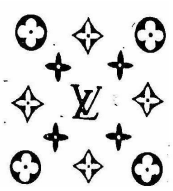
1. 등록상표와 상표권자의 사용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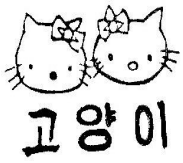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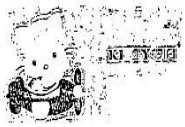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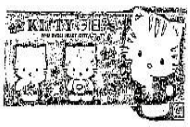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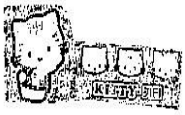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0당1248 2011허4387 2011후2138(심불)	단화, 샌달 등	트래킹화, 캐쥬얼화 등	실사용상표들이 'MISO POLO' 전체로 인식되어 '미소폴로'로 호칭·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MISOPOLO SPORTS	 (실사용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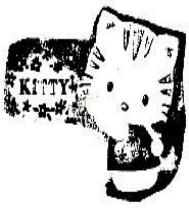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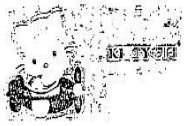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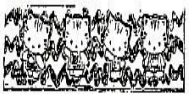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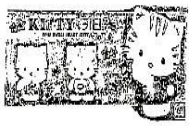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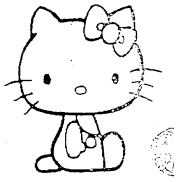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2)		
2010당1248 2011허4387 2011후2138(심불)	트래킹화, 캐쥬얼화 등	의류, 신발류 등	실사용상표들 중 'POLO'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도록 구성되어 있고 식별력도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POL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요부인 'POLO'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 실사용상표들은 대상상표인 POLO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2)	 (대상상표)		
2009당1905 2010허8719	기저귀가방, 등산백 등	핸드백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동일한  를 그물매듭 부분에 배치하고 이들을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물실로 연결하여 구성한 그물망 패턴의 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실사용상표)		
2009당1905 2010허8719	핸드백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가방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물망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물실 부분은 두 개의 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물매듭 부분에 기본도형을 배치하고 있는 점에서 같다. 대상상표는 2는 '지지'나 '구찌(Gucci)'로 호칭되나 실사용상표에 대하여는 별다른 호칭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대비할 수 없다. 실사용상표는 별다른 관념이 없고, 대상상표 2는 영어 'G'나 '구찌(Gucci)'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의 관념도 대비할 수 없다.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2)		
2006당3159 2007허6645	파카, 신사복 등	모자, 스포츠셔츠 등	실사용상표 ①, ②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tommyatkins를 그 문자 중 t와 a를 대문자로 바꾸고 글자체를 독특한 필기체로 구성한 다음 검은 색 또는 붉은 색으로 표기한 상표이고, 실사용상표 ③은 소문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문자로 처리한 다음 'TOMMY' 부분과 'ATKINS' 부분을 약간 띄우고 고동색으로 처리한 상표로서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이라 할 것이므로, 전용사용권자이자 통상사용권자인 추원철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tommyatkins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2006당3159 2007허6645	모자, 스포츠셔츠 등	오우버코우트, 반코우트 등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Tommy'와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Tommy'만으로 분리되어 인식 및 호칭되는 경우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며, 위 상표들은 모두 의류, 모자 등의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므로, 실사용상표들이 그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피고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으	
	 (실사용상표1)	TOMMY HILFIGER (대상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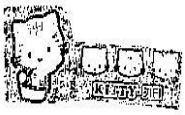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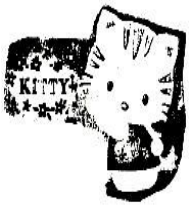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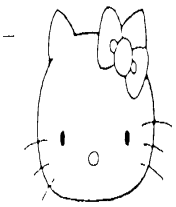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로 그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6당2065 2007허7099 2008후408(파기) 2008허7003(환송) 2008후2985(심불)	단화, 비닐화 등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비해 도형부분이 작아지면서 삼등분된 원 내의 셋째 단이 검은색이 되고, 영문자부분이 커지면서 글자체가 달라지며, 일곱 번째 문자 "O"의 폭이 다른 영문자보다 넓어지고, 검은 배경색에 한글과 영문자를 흰색으로 배치하고, 영문자 위쪽에 '골프화의 명가'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 등의 변형으로 인하여,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1)		
2006당2065 2007허7099 2008후408(파기) 2008허7003(환송) 2008후2985(심불)	골프의류, 골프화 등		도형부분이 작은 원을 가로로 삼등분하여 그 중 가운데 부분에는 오른쪽으로 펄럭이는 깃발이 그려져 있고, 밑부분은 검은색으로 배치하고(대상상표 3은 흰색), 원 아래쪽 밑에는 가운데 부분부터 원의 좌우측 위쪽으로 나뭇가지와 잎이 서로 얽혀져 원의 주위를 감싸 올라가듯이 그려져 있으며, 도형의 우측부분에 영문자 'SUPERIOR'가 가로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쓰여져 있고, 영문자 중 일곱 번째 문자 "O"의 폭이 다른 영문자보다 넓어져 있고, 영문자 위쪽에 한글(실사용상표 1은 '골프화의 명가'라고, 대상상표 1, 3은 '레저패션의 명품'라고 되어 있어서 그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이 부기되어 있는 등 도형과 문자의 상대적 크기, 글자체, 글자크기 등 그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실사용상표 1의 사용상품과 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골프화 등으로 동일·유사하다.	
	 (실사용상표1)	 (대상상표1)  (대상상표3)		
2007당390 2007허4427	냉면전문식당업, 냉면전문식당체인업 등	냉면전문식당업, 냉면전문식당체인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과 유사한 것은 포함하고 있지만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표라고 볼 수는	
		(주)오장동함흥냉면, (주)오장동함흥냉면 체인사업부 (실사용서비스표1) **오장동 함흥냉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수원왕갈비 (실사용서비스표2)	없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당2161 2007허5901 2007후5048(심불)	오토바이, 승용차 등	오토바이	이 사건 실사용상표가 영문자 'EVOlution'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이 다소 다르더라도 위 영문자는 표장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눈에 잘 띄지 않고, 상대적으로 큰 글씨로 쓰여 있어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Judd'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이 '쥬드'로 서로 동일하므로, 두 상표는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JUDD	Judd EVOlution (실사용상표)		
2006당2161 2007허5901 2007후5048(심불)	오토바이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Judd'와 'Judd'부분이 글자꼴 모양, 크기 및 배열 방법 등에서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는 전체적으로 외관 및 호칭이 유사다.	
	Judd EVOlution (실사용상표)	Judd KMTA 125 (대상상표)		
2006당2162 2007허5895 2007후5031(심불)	오토바이, 승용차 등	오토바이	두 상표는 'KMTA'로 읽히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들이 가로로 순차적으로 쓰여있는 점에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므로 두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KMTA	KMTA (실사용상표)		
2006당2162 2007허5895 2007후5031(심불)	오토바이		양자는 모두 'KMTA'로 읽히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의 글자꼴이 변형된 것으로서 그 변형된 모양, 글자의 크기 및 배열 방법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KMTA (실사용상표)	KMTA (대상상표)		
2006당511 2007허5253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등		'L'과 'J'를 겹쳐 놓은 모양의 도형을 중심으로 거의 유사한 도형들을 상하좌우 및 대각선 방향으로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시킨 점에서 상호 유사하여 시각상 느끼는 인상이 유사하고, 'L'과 'J'를 겹쳐 놓은 모양의 도형에 의하여 동일하게 "엘제이"로 호칭된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유사하게 변형시킨 상표라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		
2006당511 2007허5253	귀금속제보석상자, 종이제및판지제상자 등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등	대상상표의 도형들과 유사한 도형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대상상표가 'L'과 'V'를 겹쳐 놓은 모양의 도형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비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된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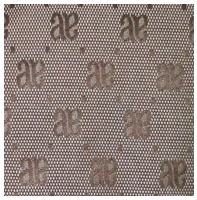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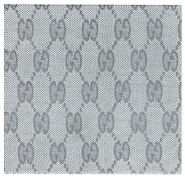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대상상표)	 (실사용상표)	마찬가지로, 실사용상표 역시 'L'과 'J'를 겹쳐 놓은 모양의 도형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도형들이 일정한 간격과 크기의 비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2005당1034 2006허3113 2006후2370(소취하)	신사복, 티셔츠 등	운동화	"A6" 부분의 크기와 굵기의 대소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A6 CITY SPIRIT	 (실사용상표1) **A6** (실사용상표2)		
2005당1034 2006허3113 2006후2370(소취하)	신사복, 티셔츠 등	운동화	실사용상표 2는 대상상표와 그 구성이 동일하고, 역시 밀레니엄21월드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것이지만 "A6"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눈에 확 띄고 "CITY SPIRIT" 부분은 부가적인 것처럼 보여서 대상상표와 그 구성이 매우 유사하며, 실사용상표 1, 2의 사용상품과 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이 모두 운동화로 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1, 2가 위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실사용상표 1, 2가 사용된 운동화가 대상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1) **A6** (실사용상표2)	A6		
2002당3330 2003허7190	자동차용 시트커버, 자동차용 핸들커버 등		양 상표의 부기적 부분에 해당하는 "AUTO DECORATION"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점, 실사용 상표에 등록상표에 없는 상표등록번호가 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2당3330 2003허7190	자동차용 시트커버, 자동차용 핸들커버 등		양 상표는 문자 부분에 있어 요부인 "AQuam" 부분이 서로 동일하고, 도형부분에 있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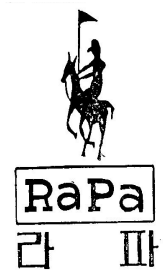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서로 동일하며, 다만 양 상표의 하단에 실사용상표는 “등록 제0450148호”(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이다)가, 대상상표는 “AQUAM WORLDWIDE”가 각 표기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부기적 부분에 따른 차이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	
2000당2105 2002허1164 2002후2297(상고취하)	그림물감, 파스텔 등	향수, 비눗갑 등	을25 내지 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1. 3. 경까지 위 동아교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고양이의 머리 도형을 하나만 표시하거나 또는 변형하여 표시하고 ‘고양이’라는 한글 문자 부분은 이를 생략하고 대신 영문자 ‘Kitty' 또는 한글 ’키티‘를 고양이 머리 도형의 주위에 배치한 형태로 변형된 ’별지 3. 동아교재 실사용상표‘와 같은 모양의 상표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싸인펜, 크레용, 물감 등에 사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는 바, 위 실사용상표들은 ’고양이‘라는 한글문자 부분을 삭제하고 'KITTY'라는 영문자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1) (상표확인안됨)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실사용상표4)  (실사용상표5)  (재실사용상표6)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7)  (실사용상표8)		
2000당2105 2002허1164 2002후2297(상고취하)	그림물감, 파스텔 등  (실사용상표1) (상표확인안됨)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실사용상표4)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향수, 비눗갑 등  (대상상표1,2,5,7,10,12,13,16,17)  (대상상표3,15)  (대상상표4) KITTY (대상상표6,8)	대상상표들이 동아교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할 당시인 2001. 3. 현재 국내 수요자들에게 문구류 및 장식용 캐릭터 상품들에 관한 피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동아교재가 사용한 실사용상표 또한 앞서 원고의 실사용상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상표들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7)  (실사용상표8)	HELLO KITTY (대상상표9)  HELLO KITTY (대상상표11,14)		

2. 등록상표와 상표권자의 사용상표의 유사성을 부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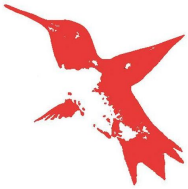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당1906 2010허8726	크로스백	귀금속제 지갑,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등	양 상표는 그 요부인 그물매듭 부분의 문자가 와 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양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더라도 대상상표 2는 그물매듭 부분의 ''가 꽃잎 두 개 혹은 두 개의 나비 날개를 펼쳐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물실 부분에 2개의 사각점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그물망 패턴이 짜임새가 있어 보임에 비하여, 실사용상표는 그물매듭 부분의 ''가 영어 소문자 'a'임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물실 부분의 점도 한 개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그물망 패턴이 성글어 보이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에서 서로 다르다. 실사용상표는 '에이', '에이에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상표 2는 요부인 그물매듭 부분의 에 의하여 '지지'로 호칭되거나 또는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구찌'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실사용상표는 영어 'a'로 관념됨에 비하여, 대상상표 2는 영어 'G'나 '구찌'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도 서로 다르다. 대상상표	
		 (대상상표1)  (대상상표 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는  와 같이 대상상표 1  을 사방으로 반복 배열하여 구성한 상표이므로 대상상표 2에는 대상상표 1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앞서 대상상표 2와의 대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상상표 1과 외관, 호칭, 관념에서 모두 다르다.	
2003당2707 2004허6309	서류가방, 핸드백 등		대상상표는 앞부분인 에 의해 "Nicole"로 인식되어 "니콜" 또는 "니꼴"로 호칭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실사용상표 1, 2와 대상상표는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NICOLE ARBENNI (실사용상표1) NICOLE ARBENNI (실사용상표2)		
98당368, 371(병합), 372(병합) 98허10925 99후1317 2002허536	스카프, 스포츠 셔츠 등	양복바지, 신사복 등	각 실사용 상표들을 '폴로'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변형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말을 탄 채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의 모습을 검은 색으로 표현한 도형'과 'POLO'라는 문자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외 상표를 변형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위 1.의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출원된 것은 1984. 6.부터 1990. 12. 까지이고, 소외상표가 출원된 것은 1993. 2. 24.이며, 소외상표의 출원 이전이나 위 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소멸된 1998. 이후에 지우일이나 피고가 실사용 상표들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변형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8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RapaPOLO		

<유사 판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0당1989 2011허3711	혼합유기질비료, 가스제거제 등	식물 재배용 LED 조명 도소매업, 병해충 방제용 LED 조명 도소매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대할 때 위 문자들을 전체로서만 인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글 또는 알파벳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알파벳 부분인 'PARU'는 확인대상서비스표인 'PARUS-'와 알파벳 대문자 4글자가 거의 동일하여 마지막 글자인 'S-'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유사하게 인식된다. 확인대상서비스표의 호칭인 '파루스' 중 '파루'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며, 마지막 음절일 뿐 아니라 영어 명사의 복수형에 자주 쓰여 별다른 주목을 끌지 않는 '-스'부분에서만 차이가 나므로, 양 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될 것으로 보인다. 양 서비스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다.	
	파 루 PARU	PARUS		
2010당751 2011허1647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유지관리업,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유지관리업 등	유무선 정보통신사업 전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t' 부분은 영문 소문자 't'를 도형화한 것으로 그 도형화 정도가 문자의 식별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영문 소문자 't'로 인식되고, "Ktdom"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쇼핑몰 시스템구축업, 웹사이트호스트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Kt'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에서 저명한 피고의 비교대상서비스표인 "KT"에서 'T'를 소문자로 변경한 것 외에는 비교대상서비스표와 동일하고, 'dom'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domain(도메인)'의 줄임말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에게 'Kt'와 'dom'으로 구분되어 '케이티 돔'으로 인식되거나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의 "KT" 부분을 포함하게 되어 비교대상서 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거나, 그 서비스표로부터 피고의 저명서비스표인 비교대상서비스표를 용이하게 연상할 수 있다.	
	Ktdom	KT		
2010원1928 2011허3674	눈썹용 화장품, 라벤더향수 등	리퀴드루즈, 린넨방향용 향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 문자부분과 분리관찰할 수 있는 도형부분 ''이 비교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상표지 ''와 보브컷 단발머리,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와 드레스의 형상, 시선 방향 및 양손의 위치, 몸의 전체적인 자세 등 특징적인 부분에서 극히 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2010당2824 2011허4288	간이식당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등	축산업, 한우판매업	양 서비스표의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투플러스'라는 부분이 공통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우(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음식업에 있어서는 '투플러스'를 포함한 확인대상서비스표의 내용이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볼 수 없고, 그 부분이 다른 구성 부분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투플러스'로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양 서비스표는 표장이 유사하다.	
	투플러스	투플러스 1++ 한우		
2010원4715 2011허3704 2011후2114(심불)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가죽신 등	소시지제조용 창자, 고무신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문자에 의하여 '슈가펀'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작은 글씨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한글문자에 의하여 '슈가핀'으로 호칭될 것인데, 두 표장은 모두 전체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3음절 중 첫째 및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초성 및 종성까지 모두 같고 중성만 'ㅟ'와 'ㅣ'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두 표장은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문자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슈 가 펀 sugarfun	SUGARPINE 슈가핀 (선등록상표1~3)		
2010원366 2011허3407 2011후2091(심불)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등	신발류, 의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날고 있는 비둘기 형상으로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표장이 서로 동일하다.	
				
2010원367 2011허3414 2011후2107(심불)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등	신발류, 의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는 색채만 다를 뿐, 모두 날고 있는 벌새 형상으로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표장이 극히 유사하다.	
2010당1578 2011허1524	가죽신, 고무신 등	잠바, 스웨터 등	두 상표는 도형화의 정도, 문자의 구성 중 4번째 로마자 알파벳(U, A)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 및 관념은 서로 다르지만, 호칭에서는 '자루'와 '자라'로 전체 음절수가 2음절로 서로 같고, 2음절 중 비교적 강하게 청음되는 첫음절 '자'와 둘째 음절의 초성 'ㄹ'이 서로 같아 일반인이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ZARU	ZARA		
2010당1130 2011허2923	눈썹용 화장품, 라벤더향수 등	정용 정전기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과 한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한글과 한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상호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상표를 약칭하여 간이 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하고,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일반 거래계의 습성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첫눈'으로도 약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일부 상이한 점이 있지만 관념 및 호칭이 유사하여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첫눈 愛	첫눈		
2009당1176 2011허354	핸드볼화, 편상화 등	스포츠의류(특히 골프복, 골프화), 스포츠용구(특히 골프용품)	이 사건 등록상표 'EUROPEANTOUR'와 비교대상상표 3 ''은 도형의 유무 등의 차이로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유러피언투어'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EUROPEANTOUR			
2009원4300 2011허1968 2011후1685(심불)	카페업, 다방업 등	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 등	양 표장은 비록 영문자 부분의 'Bridge'와 'BRIDGE'의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도형의 유무, 전체적인 영문자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브릿지'로, 선등록서비스표가 '브릿지' 또는 '브릿지스'로 호칭될 경우 양 표장은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양 표장은 모두 '다리'로 인식될 수 있으니 관념이 동일하다. 양 표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으나,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	
	The Bridge	NINE BRIDGES		
2009원1010 2010허9576	향료, 에션셜 오일 등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등	양 표장은 째 영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가 모두 동일하므로, 비록 글자체가 약간 다르나, 양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유사하다. 이	
	OYSHO	ohsho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1후1661(심불)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오이쇼'로, 선출원상표는 '오-쇼'로 각 호칭될 것인데, ① 첫음절과 끝음절이 각각 '오'와 '쇼'로서 동일하고, ②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이중모음인 '오이'로, 선출원상표는 장모음인 '오-'로 발음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둘째음절의 '이'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들려 전제적인 청감에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양 표장은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양 표장은 모두 조어표장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관념에 있어 대비하기 어렵거나 적절치 아니하다.	
2010원3193 2011허3742	골프바지, 골프복 등	재킷, 잠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외관은 동일하지 않지만, 문자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이 모두 '줌'으로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관념까지도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이 유사하다.	
				
2009당2515 2010허8146 2011후1517(심불)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등	반바지, 반코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HOMME'는 상품의 용도를 가리키는 말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ZIO' 부분에 의해 '지오'로 호칭될 수 있다. 비교대상상표도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ZIO'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이므로 식별력이 있고, 'S-ONG ZIO'도 사람의 이름이므로 식별력이 있는데, 'ZIO'와 'S-ONG ZIO'는 1열과 2열에 나뉘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중 'ZIO' 부분은 'S-ONG ZIO' 부분에 비하여 큰 글씨로 씌여 있고 1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특히 거래자나 수요자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상표도 'ZIO' 부분에 의해 '지오'로서 호칭될 수 있다. 양 표장은 비록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 대비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10당1732 2011허1500	핸드백, 지갑 등	가방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중 'MADAM BUTTERFLY'로부터 '나비'의 관념이 동일하게 도출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버터플라이'로 호칭될 수 있다. 양 상표는 외관이 현저히 다르긴 하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버터플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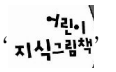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로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고 그 관념도 '나비'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9원2275 2011허1692	광고문이외의 문안작성업, 광고문 제외한 문안출판업 등	포스터, 사진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2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표장으로서 한글 '후토스'가 영문자 'HUTOS-'의 발음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한글 부분에 의해 '후토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라 '후터스'로 호칭될 것인데, 양 표장은 ① 모두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고, ② 첫 음절과 끝음절이 각각 '후'와 '스'로서 동일하며, ③ 둘째음절은 자음이 'ㅌ'으로 동일하고 다만 모음이 'ㅗ'와 'ㅜ'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후터스'의 강세는 첫 음절에 있는 관계로 둘째 음절의 모음 '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들려 전체적인 청감에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양 표장은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양 표장은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대비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하나,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서로 유사하다.	
	후토스 HUTOS	HOOTERS		
2010당1851 2011허1876	아이섀도, 약용크림 등	화장크림, 스킨리프레니싱젤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도형 부분만이 약간 다른 REBIRCELL이라는 표장과 함께 '리버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확인대상표장과 함께 '리버셀', '당신의 새틴피부 리버셀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대상표장을 부착한 상품의 포장박스에는 '리버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리버셀'로 호칭되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다.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그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REBIRCELL	revercel		
2010원2798 2011허897	남성정장, 코트 등	케이프, 사파리 자켓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AQUATITAN'('아쿠아타이탄' 또는 '아쿠아티탄')으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TITAN'('타이탄' 또는 '티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은 다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가 'TITAN'('타이탄' 또는 '티탄')'으로만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그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AQUA TITAN	TITAN		
2009원6940 2011허1937	온라인 컴퓨터게임 서비스업, 도박장 경영업 등	도박장 경영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대국 게임 소프	양 표장은 글자체, 글자의 수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오락집단유한공사(娛樂集團有限公司)'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구성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트웨어(개별 단말용, 통신용 모두 포함)의 제공 등	중 앞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강하게 끌면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부분인 '은하(銀河)'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등록서비스표 등도 모두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부분인 '은하(銀河)'만으로도 간략하게 약칭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은하'로 간략하게 약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호칭이 동일하고, 그로부터 연상되는 관념 역시 '온 하늘을 두른 띠 모양의 엷은 빛의 성군(星群)'(을 제3호증)으로서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외관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	
	銀河娛樂集團有限公司	銀河光速 (선등록서비스표) 銀河光網 (선등록상표/선등록서비스표)		
2010원944 2011허1616	골프공, 골프채	스포츠용구 소매업 등	이 사건 출원상표(KIRA)는 로마자 알파벳 4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로마자 알파벳 'RA'가 추가된 6자로 구성되어 글자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키라라'로 호칭되는 선출원서비스표의 세 번째 음절인 '라'는 두 번째 음절인 '라'를 단순히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언어 관습상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므로, 선출원서비스표는 비록 세 번째 음절인 '라'가 추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키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두 표장 모두 로마자 알파벳으로 구성된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다.	
	KIRA	KIRARA		
2010당877 2010허8603	립스틱, 리퀴드루즈 등	속눈썹 유연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핑크 매직'으로 호칭되는데 비하여, 확인대상상표는 '핑크스 매직 래쉬' 또는 '핑스 매직 래쉬'로 호칭될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상표는 그 글자를 모두 호칭할 경우 6음절 이상으로 너무 길어져 불편하므로, '핑크스 매직' 또는 '핑스 매직'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분홍 마법'으로 관념되고, 확인대상상표는 '분홍의 마법 속눈썹' 또는 'laS-h'가 '속눈썹'이란 의미로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어 나머지 부분인 'Pink'S- magic'에 의하여 '분홍의 마법'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확인대상상표가 후자로 관념될 경우 양 상표의 관념은 유사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호칭이나 관념에서 유사한 점이 있어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핑크 매직	Pink's magic lash		
2009원3182 2010허8634	우산꽂이통, 미가공 산호 등	장롱, 침대 등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농방'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이조'라 할 것이고, 비교대상상표 중 '원목가구' 부분는 '원목(베어 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이조농방	이조원목가구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아니한 나무, 네이버 사전 참조)으로 만든 가구'를 의미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비교대상상표 역시 '이조'가 요부라 할 수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대상상표가 각 요부인 '이조'만으로 약칭될 경우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 유사하다.	
2009원6788 2011허804 2011후1173(심불)	기술조사업, 기술라이선싱업 등	기술조사업, 기술라이선싱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PATECH 에서, 앞부분의 은 비교적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누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뒷부분의 문자로 된 PATECH 부분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분리관찰되는 요부의 외관을 놓고 보면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패텍' 이나 '패테크' 또는 '페이테크'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팬텍'이나 '팬테크'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패텍'이나 '패테크'로 호칭되는 경우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대비해서 자음 'ㄴ'이 탈락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음이 매우 유사하고, 설령 '패이테크'로 호칭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청음상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모두 조어표장으로서 관념은 서로 대비하기가 어렵다.	
	PATECH	PANTECH (선등록서비스표 1~2)		
2009당1622 2011허9651 2011후1012(심불)	사진촬영업, 미인선발대회개최업 등	텔레비전오락업, 연예단체조직업 등	선등록서비스표 1 중 1열의 'elite'는 2열의 'John CaS-ablancaS-'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2열에 비하여 매우 두껍고 큰 글씨체로 쓰여 있어 특히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 1은 1열의 'elite'만으로 요부관찰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1을 elite 만으로 요부관찰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글씨체만 다를 뿐 똑같은 영어단어이므로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은 동일하다.	
	elite	elite John Casablancas		
2010원4449 2011허1302	라켓거트, 라켓줄 등	캠프용 텐트, 금속완구 등	양 상표는 영문자의 유무로 인하여 외관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PACIFIC"은 "태평양"을 뜻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문자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PACIFIC 태평양	태평양	한글이 결합되어 있는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한글부분의 발음에 따라 호칭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부분의 발음에 따라 "태평양"으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9원11196 2010허8924	리큐어, 위스키 등	샤또 삐브랑 라 불리우는 포도주 만드는 사유지에서 마고)의 원산지 라벨이 명시되고 보증된 포도주	양 상표는 단어의 수, 문자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상표의 외관은 비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LIVE WITH' 부분과 'CHIVALRY' 부분으로 분리 관찰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CHEVALIER' 부분과 'LICHINE'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쉬발리'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쉬발리어'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쉬발리' 뒤에 '어'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으나 불과 한 음절 차이에 불과하고, 그 구성음절 중 중요하게 인식되는 첫 3음절이 모두 동일하고, 추가된 '어' 음절도 약하게 발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나 호칭이 유사하다.	
	LIVE WITH CHIVALRY	CHEVALIER LICHINE		
2009원11197 2010허8931	위스키, 위스키로 제조된 음료 등	샤또 삐브랑 라 불리우는 포도주 만드는 사유지에서 마고)의 원산지 라벨이 명시되고 보증된 포도주	양 상표는 단어의 수, 문자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상표의 외관은 비유사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CHEVALIER' 부분과 'LICHINE'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관념에 있어, 선등록상표가 'CHEVALIER' 부분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영어 내지 프랑스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므로, 결국 두 상표의 관념은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칭에 있어, 양 상표가 '치발리'와 '체발리어' 또는 '치발리어'로, '키발리'와 '케발리어' 또는 '키발리어'로 각 호칭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나 호칭이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CHIVALRY	CHEVALIER LICHINE		
2010당115 2010허8702 2011후798(진행중)	신발, 가죽신 등	반부츠, 테니스화 등	호칭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3은 그 도형만으로 별도의 호칭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 2, 4는 문자 부분에 의해 각각 "16 리프 디바이스", "30 리프 디바이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자는 호칭을 대비할 수 없거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관념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거나 "식물의 줄기와 잎으로 된 둥근 관(冠)" 정도로 인식될 수	
		 (선등록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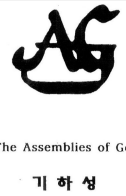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6-leaf Device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30-leaf Device (선등록상표4)	있고, 선등록상표들은 "나무줄기와 잎으로 된 둥근 관(冠)" 또는 "월계수 관(冠)" 등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관념이 동일·유사하지는 않지만 "식물의 줄기와 잎으로 된 둥근 관(冠)"이라는 점에서는 관념상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나, 이를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외관에 있어서 도형 전체의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일부 공통점이 있어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2009당1515 2010허8177 2011후996(심불)	교과서출판업, 교재출판업 등	교수업, 교육시험업 등	'국립'이 별도의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아니므로, 양 표장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 표장은 외관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국립'은 학교의 운영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접하는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 수요자들은 '국립'을 생략하고 단순히 나머지 부분만으로 '경남대학교' 또는 '경남대'라고 약칭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교'라는 관념이 도출되고, 선사용서비스표에서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대학교'라는 관념이 도출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경남대학교' 또는 '경남대'라고 약칭되는 경우에는 선사용서비스표와 관념이 동일하다.	
	경남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		
2010원6000 2010허9569 2011후859(심불)	피자전문점 체인업, 피자전문 간이식당업 등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등	양 표장의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모두 '피자쿡'으로 호칭되므로, 양 표장의 호칭은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모두 '피자 요리사' 내지 '피자를 요리하다'의 관념을 형성하여 양 표장의 관념은 동일 내지 유사하다.	
	Pizza Qook 피자 쿡	COOK 피자·쿡		
2009원6388 2010허6935	정형외과용 조인트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수술기구	의료용 주사기, 자궁주입기 등	영문자의 수, 구성, 및 글자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조용한, 말이 없는'이란 관념을 가지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1은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서 대비할 수 없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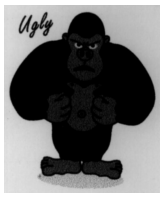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ILENT	XILENTO	사건 출원상표가 '사일런트'로, 선등록상표 1이 '사일런토'로 호칭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일렌트'로, 선등록상표 1이 '사일렌토'로 호칭될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마지막 음절의 모음인 'ㅡ'와 'ㅗ'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가 모두 같아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두 표장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비록 외관은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할 수 없으나, 그 호칭이 유사하여 결국 두 표장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9당1142 2010허2278 2010후2940(파기) 2011허95(환송) 2011후682(심불)	셔츠, 셔츠요크 등	샌달, 반부츠 등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는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두 표장은 첫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도 서로 대비할 수 없지만, 호칭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BANC	BONC		
2009당1845 2010허5925 2011후590(심불)	리조트업, 예식업 등	레스토랑업, 연회서비스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가 차이가 있지만 'FOUR SEASONS'로서 서로 일치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FOUR SEASONS banquet & wedding	FOUR SEASONS Hotels and Resorts		
2009원5248 2010허7204 2011후484(심불)	정기간행물, 정기간행잡지 등	정기간행물	그 문자의 종류와 수, 도형 및 색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다소 다르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 부분은 세로로 크게 배치되어 있고, '' 부분과 '' 부분은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에 있어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어린이 지식그림책' 부분은 아주 작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종류나 성질을 나타내는 문구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다소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도안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 부분에 의하여 ‘통’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통’이라는 한글로 인하여 ‘통’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하고, ‘통’이라고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도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9원8129 2010허8481	두유(우유대용품)	광고대행업, 판촉대행업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1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두유’, ‘PACIFIC', 'S-OYMILK' 등이 더 포함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에는 다른 구성이 없는 점에서 달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볼 때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두유‘나 ’S-OYMILK'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두유(우유대용품), 두유’를 지칭하는 한글과 영어에서의 보통명칭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태평양’이나 ‘PACIFIC'으로 호칭될 수 있다(전체로서 ‘태평양 두유’나 ‘PACIFIC S-OYMILK'로 호칭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한글 발음에 따라 ‘태평양’으로 호칭된다. 따라서 양 표장은, ‘태평양’으로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다. 결국, 양 표장은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르나,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태평양 두유 PACIFIC SOYMILK	태평양		
2008원10260 2010허1213 2010후1763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등	백열전구, 비누 등	‘WILLIAMS’가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WILLIAMS’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본 다음, 그 호칭 및 관념이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WILLIAMS”로 구성된 선등록상표1(등록번호 제205410호)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WILLIAMS”로 구성된 선등록상표2(등록번호 제132305호)와 ‘윌리암즈’로 동일하다.	
	WILLIAMS-SONOMA	WILLIAMS (선등록상표1) WILLIAMS (선등록상표2)		
2009원6511 2010허7068 2011후316(심불)	단체급식업, 음식조리대행업 등	동그릇세척기임대업, 상품배달업 등	도형의 유무, 문자 부분의 구성의 차이, 글자체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문자 부분 중 ‘FOOD’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먹거리의 일반적인 명칭이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나머지 ‘S-QUARE’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식별	
	FOOD SQUARE	THE SQUAR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요부인 '스퀘어(S-QUARE)'로 호칭되고 '정사각형, 광장' 등(을 제4호증)으로 관념될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2010당336 2010허8443 2011후538(상고기각)	강장제, 구강청량제 등	원료의약품	확인대상표장인 '미래메디팜주식회사' 중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인 '미래메디팜'은 수요자에게 흔히 쓰이는 단어인 '미래' 부분과 조어인 '메디팜'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될 것인바, 이 부분들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 분리 관찰 가능하고 식별력 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을 것인바, 그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메디팜	미래메디팜 주식회사		
2009당1144 2010허2285 2010후2933(파기) 2011허71(환송)	의류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 가방류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중개업 등	운동화, 샌달 등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는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양 서비스표와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BANC	BONC		
2009원11920 2010허7006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등	가죽신, 고무신 등	양 상표는 그 외관에서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eminine Line'은 상표의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고, 'S-he'와 '作' 사이에 위치한 도안화된 선 또한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S-he'와 '作'에 의하여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쉬작'으로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녀가 만든 것'으로 관념됨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사전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단어로서 아무런 관념이 없으므로, 양 상표는 관념이 다르다. 양 상표는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나 그 호칭이 동일하다 할 것인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She 作 Feminine Line	Shezac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9원9092 2010허7587	방석판매대행업, 쿠션판매대행업 등	전기침대, 전기보온발싸개 등	양 표장은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장수'만으로 분리약칭되는 경우에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다.	
	JS장수돌침대	장수돌		
2010원3707 2010허7198 2010후3578	종교교육사업, 의료복지사업 등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 등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 '월드비전'은 표장 전체에 의하여 '월드비전'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World Vision 월드비전'는 ''와 같은 도형 부분과 영문자 'World ViS-ion' 부분 및 한글문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또는 한글문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을 간략하게 호칭하고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월드비전'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은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월드비전	World Vision 월드비전		
2009당2320 2010허3509 2010후2773(파기) 2010허9224(환송)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등	돌침대	그 문자 부분 중 'e-뜨거운 침대'는 지정상품인 '돌침대'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고, 나머지 문자 부분인 '장수돌침대'는 일응 그 색상에 따라 '장수돌'과 '침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지정상품이 '돌침대'인 점을 감안하면 '장수'와 '돌침대'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가운데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비교대상상표에서의 요부도 '장수'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각각 '장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들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JS장수구들	장수돌침대 e-뜨거운 침대		
2010당7 2010허5970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등	요양소업, 물리치료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대비하면, 서로 그 외관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양 표장 모두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통되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부모사랑'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선등록	
	부모사랑	부모사랑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서비스표의 표장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된다.	
2009당800 2009허8553 2010후1275(파기) 2010허6850(환송)	종교선교업,구호사업 등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그 요부라 할 수 있는 '기하성'이 확인대상표장과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그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기하성		
2009당2016 2010허3561 2010후3479	유당(乳糖), 축산물 이유식 등	감각기관용 약제, 구강소독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역도' 내지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관념되고 '역도표' 정도로 호칭될 것이며, 비교대상상표는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의 도형과 "WONKIS-O"라는 영문자 및 "원기소"라는 한글문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도형 부분과 각 문자 부분에 별다른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도형과 문자 부분이 각각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상표는 도형 부분만에 의하여 '역도' 내지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관념될 수 있고 '역도표' 정도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상표가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의 도형 부분에 의하여 '역도' 내지 '역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관념되고 '역도표'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009원4371 2010허6133 2010후3295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등	때밀이타월, 직물제 손수건 등	양 상표의 외관을 비교해 보면, 색체의 유무, 각 글자의 구체적 형상 및 글자 사이의 연결부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의 지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부분이 모두 필기체의 영어대문자 2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글자 역시 필기체로 흘려 쓸 경우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JB' 또는 'TB'를 형상화한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유사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제이비'로, 선등록상표는 '제이비' 또는 '티비'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가 '제이비'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의 문자부분인 'JB' 또는 'TB'의 영문자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당1289 2010허3783 2010후3527(심불)	베갯잇, 요 등	매트리스커버, 침대 모포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S-OLAR'로 각 요부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관상 굵은 글씨체가 서로 유사하고, 모두 '쏠라' 또는 '솔라'로 호칭될 뿐 아니라 동일하게 '태양'과 관련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S-OLAR'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고, 그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SOLARTEX	SOLARON (선등록상표1) SOLARON (선등록상표2)		
2009원2078 2010허3103	케어 및 관리용 화장품, 샴푸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등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별다른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나, 선등록상표는 '용량, 용적, 양(量), 권, 책, 음량(볼륨)'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단어이므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지 아니한다.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영문자인 'VOLUME' 뒤에 'A'만이 추가되어 있을 뿐 두 상표는 모두 별달리 변형을 가하지 않은 영어의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그 외관은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볼루미아' 또는 '볼루메(미)'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등록상표는 '볼륨'으로 호칭될 것이나, 어두(語頭)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고 인식하는 우리나라 언어습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볼루ㅁ' 부분이 나머지 부분보다 강하게 발음되어 일반 수요자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상표의 호칭을 들으면 두 상표를 구분하기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VOLUMEA	VOLUME		
2010당230 2010허4045	의약용 양모제, 의약용 발모제 등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	SCAL TONIC'은 두피를 의미하는 'scalp'와 강장제(强壯劑)를 의미하는 'tonic'을 결합하되 'scalp'의 'p'를 생략하여 만든 조어(造語)로서 '두피에 사용되는 강장제'를 의미하므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헤어토닉' 등을 직접적으로 연상시켜 식별력이 없고, '스칼토닉'은 위 'SCAL TONIC'을 한글로 음역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역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동일하게 '댕기머리'로 인식될 것인바,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은 거래통념상 선등록상표의 표장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댕기 한방 댕기 Scalp Tonic	댕·기·머·리 (확인대상상표) 댕기머리 스칼토닉 SCAL TONIC (선등록상표)		
2009원3911 2010허3677	문방구, 의류 등	풍선, 포제(布製)완구 등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영문자의 수, 글자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UGLYDOLL'로 인식되어 표장 전체에 의하여 '어글리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영문자 'DOLL' 부분은 지정상품인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의 보통명칭(을 제1호증)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영문자 'UGLY' 부분이 요부가 되어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 선등록상표는 고릴	
	UGLYDOLL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라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ugly'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고릴라' 또는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어글리'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약칭인 '어글리'와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도 '못생긴'으로 동일하다.	
2008당3831 2009허5738 2009후4667	소파, 식탁 등	의류,신발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갤러리' 또는 'Gallery'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공통되는 'DAKS-'의 한글 음역이기도 한 '닥스'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	
	닥스 갤러리 DAKS Gallery	DAKS		
2009당1162 2010허3004	편상화, 농구화 등	골프가방, 골프모자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인 ''와 선사용상표의 도형부분인 ''는 월계관 위에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원(圓)이 있고 그 중간 부분에 깃발이 형상화되어 있는 모양이 같아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문자부분은 'S-UPERIOR'로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 상표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9당820 2010허1602	데이터베이스접속제공업, 교육방송업 등	웹사이트호스트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업 등	체적인 문자의 모양과 명암, 문자 외에 부기된 부분의 형상과 위치 등에서 외관상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영문 대문자 'CLUBBOX'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문자 표장에 대한 변형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정도의 변형으로 인하여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CLUBBOX'를 통해 일반 수요자에게 '클럽박스'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양 표장은 외관에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호칭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CLUBBOX	CLUBBOX		
2009당350 2010허1671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등	백팩, 배낭 등	외관에 있어서는 양표장의 문자의 구성 및 글자체 등의 차이로 비유사하나, 호칭,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S-PORTS-" 부분은 지정상품인 "스노우 고글, 스키용 고글, 스포츠용 고글"등 스포츠용품과 관련하여 별다른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AIRWALK"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IRWALK SPORTS	AIRWALK (선등록상표1,2,4) AIRWALK (선등록상표3)		
2009당311 2009허8652	골프화	골프채, 골프용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관념에 있어서는 특별히 비교할 대상이 없고, 외관에 있어서는 선사용상표 1, 2는 유사하고 선사용상표 3은 도형의 유무, 구성문자의 글자 수 등으로 인하여 비유사하며,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	
	KATANA	KATANA (선사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KATANA (선사용상표2) KATANA GOLF (선사용상표3)	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모두 “카타나”로 호칭되어 호칭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호칭이 서로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8당2525 2009허7246 2010후2421(심불)	원피, 원혁 등	목걸이, 귀걸이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사용상표의 양 표장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전자는 한글로 된 표장인 반면에 후자는 영문자와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의 도형이 결합된 표장이므로 언뜻 보더라도 그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결합상표에 문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부분으로 호칭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클리오 블루’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다.	
	클리오 블루	Clio blue PARIS		
2008당2528 2009허7239 2010후2438(심불)	회중시계, 탁상시계 등	목걸이, 귀걸이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사용상표 의 양 표장을 서로 대비하면, 전자는 영문자와 한글이 결합된 표장인 반면에 후자는 영문자와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의 도형이 결합된 결합표장이므로 언뜻 보더라도 그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결합상표에 문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자부분으로 호칭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클리오 블루’로 동일하게 호칭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다.	
	Clio blue 클리오 블루	Clio blue PARIS		
2008당3964 2010허1732 2010후2568(심불)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등	아이스크림, 냉동요구르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3은 모두 영어 알파벳 열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의 여섯 자가 글자체만 약간 다를 뿐 ‘Häagen'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네 자도 ’deS-S-'와 ‘DazS-'로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유사하다.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하겐데스’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3은 ‘하겐다즈’나 ‘하겐다스’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셋째 음절의 모음이 ‘ㅔ’와 ‘ㅏ’인 차이가 있으나, 그 음절수가 네 음절로 같고, 첫 두 음절의 ‘하겐’, 마지막 음절의 ‘스’, 세 번째 음 초성의 ‘ㄷ'이 서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서로 대비할 수 없다.	
	Häagendess 1881	Häagen·Dazs (선사용상표 3)		
2008당3965 2010허1718 2010후2544(심불)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등	아이스크림, 냉동요구르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선사용상표 3은 영어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이어서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그러나 그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하겐데스’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3은 ‘하겐다즈’나 ‘하겐다스’로 호칭될 것인데 선사용상표 3이	
	하겐데스	Häagen·Daz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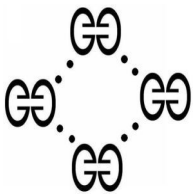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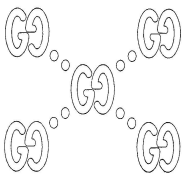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하겐다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셋째 음절의 모음이 'ㅔ'와 'ㅏ'인 차이가 있으나, 그 음절수가 네 음절로 같고, 첫 두 음절의 '하겐', 마지막 음절의 '스', 세 번째 음 초성의 'ㄷ'이 서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9당1101 2010허2766	화장품 구매대행서비스업, 마사지업 등	나리싱크림, 리퀴드 루즈 등	이들 표장들은 도형의 유무, 영문자의 수, 문자의 종류와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다르다.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각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그 표장 전체에 의하여 '퀸 이즈 드리밍'으로 호칭하거나, '퀸' 또는 '드리밍'으로 분리하여 약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퀸'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인 '퀸'과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도 '여왕'으로 동일하며, '드리밍'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 1의 호칭인 '드리밍'과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도 '꿈꾸는, 꿈꾸기'로 동일하다.	
	Queen Is Dreaming	Dreaming (선등록상표1) QUEEN 퀸 (선등록상표2)		
2009원2101 2010허1220	공(空) CD, 공(空) 오디오카세트 등	골프화, 묘지관리업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하기가 어려우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인 HULU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문자의 발음 경향에 따르면 '후루' 내지는 '후르'라고 호칭될 것으로 판단되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한글로 표기된 그대로 '후르'라고 호칭된다 할 것이다. 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후르'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후루'로 호칭된다 하더라도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대비하여 첫음절의 발음이 '후'로서 같고, 둘째 음절의 발음도 초성이 'ㄹ'로서 동일하고 종성인 모음만 'ㅜ'와 'ㅡ'로서 서로 다를 뿐이므로, 발음할 때 느껴지는 전체적인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HULU	후르		
2008원11547 2010허2322	음료바업, 주점업 등	일본음식점경영업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요자들의 경우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간에 삽입된 일본글자인 'の'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앞글자인 '梅'와 뒷글자인 '花'를 연결하여 수식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梅花'를 한글로 발음한 '매화'로 호칭될 것이다. 한편, 선	
	梅の花	梅花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등록서비스표의 한자부분은 비록 독특한 글자체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 더욱이 영문자 부분에 'MAEHWA'가 포함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 영문자로부터 한자부분이 '梅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문자 부분은 'MAEHWA' 외에 'ROBADAYAKI'(화로구이를 뜻함)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정서비스업인 일본음식점경영업과 관련하여 통상 사용되는 용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 의하여 주로 '매화'로만 호칭될 것이다. 양 서비스표는 모두 매화, 즉 '매실나무의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비록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009원857 2010허2056 2010후2148(심불)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BANG'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뱅' 또는 '방'으로 호칭될 개연성이 크다. 선출원상표는 'BANG'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뱅' 또는 '방'으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그 각 지정상품 중 유사한 지정상품인 골프용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빵' 또는 '빵'으로 호칭될 개연성이 크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BANG'의 호칭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서로 유사하여, 그 각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에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BANGGOLF	BANG BANG (선출원상표) BBANG (선등록상표)		
2009당671 2010허1978 2010후1978(심불)	보호마스크, 프린팅 블록 등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Teddy Bear'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그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Teddy Bear kids	TEDDY BEAR MUSEUM (선등록상표1) TEDDY BEAR MUSEUM (선등록상표2) SWEETMEMORIES TEDDY BEAR MUSEUM (선등록상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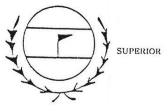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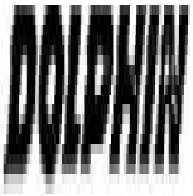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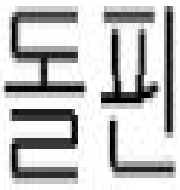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CURLYBROWN TEDDY BEAR MUSEUM (선등록상표4)		
2009당427 2010허1060 2010후1855(소취하)	단화, 운동용 등 TATE	단화, 운동용 등 TAT	양 상표는 알파벳의 개수와 'E'자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글자체와 글자간의 간격에서 약간씩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앞 3글자인 'TAT'가 대문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고 글자체도 고딕체 계열로서 비슷하게 인식되는데다가 이와 같은 유사점이 그 차이점을 압도할 정도로 지배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는 선등록상표가 '탯'으로 발음되면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않지만, '태트'나 '티에이티'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두 단어 모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들이므로, 양 상표가 관념의 차이로 구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8당3743 2009허9433 2010후1817(상고취하)	모피, 원피 등 LEGEA	가방, 의류 등 LEGEA LEGEA (선사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LEGEA'는 선사용상표 'LEGEA'와 색채(분홍색, 회색)만 다를 뿐, '( )'와 같은 도형부분과 'LEGEA'라는 영문자 부분이 동일하여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LEGEA'와 색채(분홍색, 회색), '( )'와 같은 도형부분, 도형과 문자의 배열 등이 달라 외관은 다르지만, 두 표장은 모두 'LEGEA'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레게아'라고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9당272 2010허425 2010후1664(심불)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등 G마켓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등 G마켓	두 서비스표는 도형화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G마켓'으로서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G'와 같은 도형부분이 영문자 'G(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지마켓'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G(지)'라는 명칭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동일하게 관념된다 할 것이다.	
2009당273 2010허432 2010후당1671(심불)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판매대행업 등		두 표장은 한글문자 '지마트'의 유무, 'G'와 'G'의 도형화 정도의 차이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마켓'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출원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지마트G마켓	G마켓	비스표의 호칭인 '지마켓'과 그 호칭이 동일하고, 두 표장의 관념도 모두 'G(지)라는 명칭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동일하게 형성된다.	
2008당3201 2009허9334	골프화, 하이킹화 등	단화, 가죽신 등	양 상표는 대, 소문자 여부, 알파벳의 갯수, 'S-'자의 유무, 도형의 유무, 글씨체 등이 서로 달라서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양 상표의 호칭은 가운데에 '스'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두 음절이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스' 다음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가 'ㅋ'이어서 '스'의 소리가 다음 음절에 연음되지 않아 아주 짧고 약하게 발음되며, 양 상표 모두 첫음절인 '단' 내지 '댄'에 강세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양 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양 상표는 비록 그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dansko	DANKO (선등록상표1) DANCO (단 코 (선등록상표2)		
2008원14057 2010허340	가방, 지갑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요부가 각각 walker'와 'walkerS-' 가 되고, 이들은 호칭의 면에서는 각각 '워커'와 '워커스'로 유사하고, 관념의 면에 있어서도 '보행자'와 '보행자들'로서 유사하다 할 것이다.	
	WISE-WALKER	Walkers		
2008원9206호 2009허9600	데스크탑 컴퓨터	TV게임세트,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Art PC Black Picasso이나 그 요부인 'Picasso'에 의해 요부관찰되어 그로부터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를 선등록상표들인 Picasso나 PICASSO와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에 있어 '피카소'로서 동일하다.	
	Art PC Black Picasso	Picasso (선등록상표1) PICASSO (선등록상표2)		
2008원9207 2009허9617	데스크탑 컴퓨터	TV게임세트,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Art PC Picasso이나 그 요부인 'Picasso'에 의해 요부관찰되어 그로부터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를 선등록상표들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Art PC Picasso	Picasso (선등록상표1) PICASSO (선등록상표2)	Picasso 나 PICASSO와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에 있어 '피카소'로서 동일하다.	
2008원9421 2009허9464	비건축용 가공 광학유리, 비건축용 가공 굴곡유리 등 HERA 헤라	뇌파를 이용한 학습 증진기용 안경, 이어폰 등 Hera 헤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HERA'와 그 아래의 '헤라'로 구성된 문자들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Hera'와 그 아래의 '헤라'로 구성된 문자들의 결합상표로서, 각 상표의 글씨체가 다르고 알파벳 세 글자가 대문자와 소문자로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008원13075 2009허9167	정형외과업, 가축치료보조업 등 RAPHA 라파메디앙스 RAPHA Medience	이비인후과업, 소아과업 등 라파 (선등록서비스표1) RAPHA E.N.T. CLINIC (선등로서비스표2)	비록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각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독립하여 자타서비스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라파'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1, 2 역시 그 구성 중 '라파'만으로 독립하여 호칭·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009당991 2009허8300 2010후982(각하)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 주기판 등 아즈락	컴퓨터 주기관 ASRock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자의 한글 낱글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아즈락'으로 호칭되고 그 자체로 별다른 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확인대상표장은 6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아즈락'이나 '애즈락'으로 호칭되며 별다른 뜻이 없어 역시 특정한 의미로 관념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표장은 외관은 상이하고 관념은 서로 비교할 수 없으나, 그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8당3633 2009허7482 2010후890(심불)	가스렌지가방,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소시지제조용 창자,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등	양 표장에 있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외관상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기억·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적인 부분은 기본 도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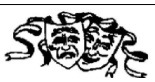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와 ''의 모양 및 그 기본 도형이 두 개의 점에 의해 연결된 모양이라고 할 것인데, 양 표장은 기본 도형의 모양이나 기본 도형이 두 개의 점으로 연결된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장을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로서는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9당269 2009허5332 2010후814(심불)	래커, 청동래커	래커	양 표장의 외관은 문자와 도형 부분의 각 구성 및 상호 배치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락카' 또는 '락카 스프레이'로 호칭되고, '분무방식으로 뿌리는 래커'로 관념될 것이다(양 표장의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별다른 호칭이나 관념이 형성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 수요자들에게 '락카'는 래커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스프레이'는 분무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미약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문자 부분에 의해 형성되는 호칭 및 관념에서의 동일, 유사성은 양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9당1275 2009허8133 2010후883	그림엽서, 달력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딱정벌레 형상의 도형 뒤에 'S-OMS-S-I'라는 영문자를 배치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나뭇잎 형상의 도형 뒤에 'S-omS-S-i'라는 영문자를 배치하여 구성한 결합상표인바, 두 표장은 모두 '솜씨'라고 호칭되고, '손을 놀려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 재주'(갑 제4호증)라는 같은 뜻을 가지므로,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비록 앞부분의 도형이 서로 다르고 영문자의 글씨체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요부인 문자 부분의 철자가 같고, 도형을 앞에 배치한 구성이 유사하므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에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2008당1523 2009허5356 2010후593(심불)	광디스크, 개인용 컴퓨터 등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 비교할 때 일부 색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도안화의 정도와 글씨체까지 거의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선사용상표 1과 비교하여도 동일한 영문자로서 도안화 여부, 글씨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므로, 이들 상표의 표장은 거의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선사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사용상표2)		
2008당1524 2009허5363 2010후609(심불)	광디스크, 개인용 컴퓨터 등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맨 앞에 육각형을 이용하여 도안화한 'e'를 배치하고, 'e'와 'machineS-' 사이에 '-'을 넣은 점 등에서 선사용상표들과 차이가 있으나, 그 육각형 속의 도안화된 'e'는 선사용상표 2의 도안화된 'e'와 흡사하고, 'machineS-' 부분은 선사용상표 2의 'machineS-' 부분과 필체까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일부 유사하므로, 이들 상표의 표장은 아주 유사하다.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2008당3599 2009허4582 2009후3770(파기) 2010허463(환송) 2010후1008(심불)	이불, 요 등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 제외), 이불커버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모두 이불을 갠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선을 구부려 포갠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영문자 'C'자 형상의 흰 부분의 위 끝은 선으로 막혀있고, 아래 끝은 열려 있는 점, 윗부분과 밑 부분이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의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다.	
				
2009당501 2009허6571 2010후449(심불)	관광운송업, 운송예약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모두 식별력 있는 이스타로 분리 호칭, 관념되는 경우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9당501 2009허6571 2010후449(심불)	관광운송업, 운송예약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모두 식별력 있는 이스타로 분리 호칭, 관념되는 경우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8당1183 2008허11842 2009후610(심불)	비치파라솔, 양산 등	골프의류, 골프가방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인 'S-UPERIOR'를 도형 오른쪽에 작게 배치한 점에서 선사용상표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영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자가 동일하고, 그 도형 부분이 극히 유사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고, 그 호칭 또한 '슈페리어'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8원9318 2009허5998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등	상품중개업, 과자류 판매알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라베르'와 같이 호칭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가 '라벨르'나 '라베르'와 같이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과 동일 또는 유사해진다. 서비스표의 호칭의 동일 또는 유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08당1739 2009허4681 2010후180(심불)	가죽제 시계줄, 골프시계 등	전자시계, 팔목시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돌고래를 뜻하는 영단어 'DOLPHIN'과 그 한글음역인 '돌핀'이 아래위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사용상표들은 영단어 'DOLPHIN'으로 또는 그 한글음역인 '돌핀'으로 구성되거나 영단어 'DOLPHIN' 아래에 도안화된 돌고래 그림을 배치하여 구성된 표장이므로, 이들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같고 일부 외관이 비슷하여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선사용상표3)		
2008당2411 2009허6595	족욕기 판매대행업, 족욕기 판매알선업 등	가스렌지, 전기쿠커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3은 모두 '스완'으로 호칭되고, '백조'라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표장은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3은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쉬워 보이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8당2410 2009허6588	족욕기 판매대행업, 족욕기 판매알선업 등	가스렌지, 전기쿠커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3은 모두 '스완'으로 호칭되고, '백조'라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표장은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3은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쉬워 보이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8원13293 2009허6489	보석목걸이, 보석반지 등	팔뚝시계, 반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글자의 수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ee'와 'Gold'가 띄어져 있지 아니하여 전체로서 '리골드'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나, 'Lee'와 'Gold'의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나뉘어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old'는 '금' 또는 '금으로 만든, 금빛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품질의 우수성이나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경	
		 (선등록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2008당2368 2009허191 2009후4476(심불)	침해, 소파 등	가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중 '가구'는 지정상품 자체를 나타내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노블레스'만으로도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확인대상상표 역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한 것이지만,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문자부분인 'noblesse'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노블레스'와 'noblesse'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9당302 2009허5431	검도복, 사이클선수 운동복 등	속셔츠, 속팬티	양 표장은, 두 번째 영문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C'이고, 선등록상표는 'K'인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영문자의 개수나 나머지 영문자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다. 호칭을 대비해 보면, 양 표장 모두 '이카루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하다. 관념을 대비해 보면, 양 표장에 있어서 영문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아니하므로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2008원11730 2009허6007	전자부품 제조산업에서 발생한 폐기물 취급/정화/처리용 연소장치, 전자부품 제조산업에서 발생한 폐기액 취급/정화/처리용 연소장치 등	콤프렛샤, 착암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는 영어단어 'Copco' 부분의 유무, 도형의 유무 및 글자체가 달라서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도형 부분보다는 문자 부분이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것이고, 문자 부분인 'AtlaS-' 부분과 'Copco'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가 'AtlaS-'로 분리되어 관찰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9당173 2009허6175	선박 또는 항공기용 스프링완충기, 비수송기계 기구용 스프링완충기 등	밸브(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제 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등	확인대상표장과 피고의 선등록상표를 서로 대비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알파벳 대문자가 변형된 글꼴'이 정자체의 형태로 바뀌었고, '글꼴 사이에 부가된 온점'이 삭제되었으며, 알파벳 철자의 외부에 타원형이 부가된 정도의 변형만이 가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알파벳 대문자가 변형된 글꼴과 그 글꼴 사이에 부가된 온점'은 피고의 선등록상표의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알파벳 철자 외부의 타원형'은 그 자체로는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볼 수 없는 부가요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외관상의 변형에 의해 요부에 변경이 생긴다거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	
		 (확인대상표장)  (선등록상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넘이 형성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확인대상표장 역시 피고의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NSV'라는 문자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누구나 확인대상표장을 피고의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게 '엔에스브이'라고 호칭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피고의 선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당2870 2009허4100 2009후4414(심불)	클린싱크림, 스킨밀크 등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등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도형 부분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요부인 도형 부분  와 다음의 점에서 극히 유사하다. 즉, 전체적으로 두개의 탈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한쪽은 웃는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우는 얼굴로 되어 있는 점, 탈의 턱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점, 얼굴이 계란형으로 상하로 다소 길게 되어 있는 점, 두개의 탈이 일부 겹쳐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두개의 탈의 윗 부분과 중간 부분에 리본으로 감싸는 형상인 점 등에서 일치하여, 두 표장의 전체적인 느낌이 극히 유사하다.	
				
2008당2871 2009허5585 2009후4438(심불)	래커제거제, 세탁용 유연제 등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등	등록상표의 요부인 도형 부분  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요부인 도형 부분  와 다음의 점에서 극히 유사하다. 즉, 전체적으로 두개의 탈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한쪽은 웃는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우는 얼굴로 되어 있는 점, 탈의 턱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점, 얼굴이 계란형으로 상하로 다소 길게 되어 있는 점, 두개의 탈이 일부 겹쳐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두개의 탈의 윗 부분과 중간 부분에 리본으로 감싸는 형상인 점 등에서 일치하여, 두 표장의 전체적인 느낌이 극히 유사하다.	
				
2008당2872 2009허5578 2009후4421(심불)	립스틱, 마스카라 등	배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등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도형 부분  은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다음의 점에서 극히 유사하다. 즉, 전체적으로 두개의 탈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한쪽은 웃는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우는 얼굴로 되어 있는 점, 탈의 턱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점, 얼굴이 계란형으로 상하로 다소 길게 되어 있는 점, 두개의 탈이 일부 겹쳐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두개의 탈의 윗 부분과 중간 부분에 리본으로 감싸는 형상인 점 등에서 일치하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두 표장의 전체적인 느낌이 극히 유사하다.	
2008당3097 2009허5165 2009후4377(심불)	화장용 안면수렴제, 인조손톱 등	신사복, 스웨터 등	선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도형 부분보다 작게 도형 밑에 기재되어 있어 선출원상표에 있어서 식별력 있는 주된 요부는 도형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도형 부분을 대비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의 유사 여부를 대비한다.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은 문자나 색채의 유무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개의 형상이나 모양이 극히 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호나 그 상표권자가 가지고 있을 다른 문자 상표로 호칭될 것이고, 선출원상표 또한 전체로서 관찰하는 경우나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나 모두 '던 필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개 모양의 도형과 색채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개 형상의 도형과 'DAWN FIELD'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양 표장은 모두 동물인 개를 연상시키므로 관념은 동일·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비록 호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DAWN FIELD (선출원상표) (선등록상표)		
2008원13124 2009허5462	수송기계기구용 온도조절장치, 온도센서 등	감광지, 자동온도조절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위 선등록상표 등을 대비하면, 표장을 구성하는 도형의 유무와 알파벳의 종류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은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LICO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리코'로 한글 발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등록상표 등의 한글 발음인 '리코'와 호칭이 같다 할 것이다. 양 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관념대비는 의미 없다 할 것이다.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은 외관이 다르지만,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4)  (선등록서비스표1  (선등록서비스표2)  (선등록서비스표3)		
2008원10316 2009허3954	스키복, 우의 등	귀걸이, 목걸이 등	두 상표는 글자의 수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그 전체인 '패션 트레스'로 호칭되는 외에, ① 'FASHION'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등 상품에 널리 쓰이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데 비하여, '여자의 삼단 같은 치렁치렁한 머리털', '(고어) 여자의 땋은 머리'라는 뜻을 가진 'TRESS'는 위 지정상품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그 식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TRESS' 부분만에 의하여 '트레스'라고 요부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TRES'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 역시 그 구성 중 'TRESS'만으로 독립하여 호칭·관념될 경우, 두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TRES-TEX	FASHION TRESS		
2008당2996 2009허2388	연예물공연업, 연예물제작배급업 등	연예물공연업, 가수공연업 등	확인대상표장은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이라고 전체로 호칭되거나, 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후2302	Art Valley		중 '구로(GURO)'는 서울특별시의 구(區)의 명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그 중 '예술극장'은 그 사용서비스업인 '극장운영업 등'의 보통명칭 또는 그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각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아트밸리'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아트밸리'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예술 계곡 또는 예술 골짜기'와 같이 유사하게 형성된다.	
2008원7478 2009허3725 2009후3961(심불)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필 등	선글라스, 가죽신 등	두 상표가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영어 알파벳 'D'와 'T', 한글 자음 'ㄷ'과 'ㅌ'가 달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모두 ① 영어 알파벳 5자와 한글 2자가 2단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 형태 및 모티브가 동일하고, ② 차이가 있는 영어 알파벳과 한글 자음이 위치한 곳도 중간 부분이므로 쉽게 알아 보기 어려운 부분에 있고 나머지 영문자와 한글 자모는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NANDA'는 한글 '난다'를 영문자로 옮겨 적은 것이므로 '난다'로, 선등록상표들의 'NANTA' 또한 한글 '난타'를 영문자로 옮겨 적은 것이므로 '난타'로 각 호칭되는데 양 상표는 그 호칭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난다'는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또는 '어떤 느낌이 난다'의 의미가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들의 '난타'는 '마구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NANDA 난다	NANTA 난타 (선등록상표1) NANTA 난타 (선등록상표2)		
2008원9634 2009허4827 2009후3701(심불)	로봇, 윈치 등	콤팩타, 분쇄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들은 한글문자와 영문자의 결합 여부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의 결합 여부, 구성문자의 총 개수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들의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위 상표들의 관념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영원"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하여, 위 상표들의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각각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지정상품의 출	
	YONG WON	영원 YOUNGONE (선등록상표) 영원 K5200 (선출원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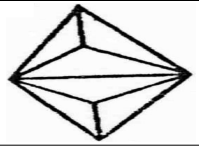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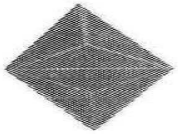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영원 V5500 (선출원상표2) 영원 V6000 (선출원상표3) 영원 (선출원상표4) 영원 V7000 (선출원상표5)	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2008원11533 2009허5295	견출지, 공책 등	계산척(計算尺), 주판 등	선등록상표가 "MICRO"와 "STRAIN"이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영어 단어가 결합된 상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그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MICRO"로 호칭되고 관념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 경우, "MICRO"로 호칭·관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MICRO	MICROSTRAIN		
2008원11534 2009허5301 2009후3718(심불)	견출지, 공책 등	계산척(計算尺), 주판 등	선등록상표가 "MICRO"와 "STRAIN"이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영어 단어가 결합된 상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는 그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학용품·사무용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주판"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MICRO", "STRAIN", "MICROSTRAIN" 가운데 "MICRO"가 가장 친숙한 영어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MICRO"로 호칭되고 관념될 개연	
	마이크로	MICROSTRAIN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마이크로”로 호칭·관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2007원9636 2008허8273 2008후5120(파기) 2009허6731(환송)	머니벨트(의류), 반바지 등	승마바지, 승마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표장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KENNETH'로 같고, 그 외관을 고려하더라도 문자상표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의 호칭, 관념이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KENNETH LADY BYLYNN	KENNETH COLE (선등록상표1) KENNETH MOTORS (선등록상표2)		
2008원7462 2009허4544	그라인더, 오븐 등	에어컨디셔너, 주방용오븐렌지 등	구성문자의 수, 도형의 유무 등이 달라서 두 표장은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표장 전체에 의하여 '디토에렉트로룩스(또는 디토일렉트로룩스)'로 호칭하거나, '디토' 또는 '에렉트로룩스(또는 일렉트로룩스)'로 분리하여 약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디토'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디토'와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이 도출되지 않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동, 위와 같음(갑 제8호증)'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표장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하여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DITO Electrolux	DITTO		
2007당2566 2009허3503	가죽신, 고무신 등	등산화, 안전화 등	이 사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도형과 문자,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도형과 문자, 문자와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K2'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K2'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되는 경우 선사용상표나 선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	
	T·CLASS K2	K2 (선사용상표) K2 (선출원상표)		
2008당787 2009허504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 등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선등록 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한편, 영문자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도 Capital은 자본을, Corporation은 법인, 회사 등을 의미하는 말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IBK	주식회사기은캐피탈 IBK Capital Corporation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개발금융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선등록 서비스표는 영문자 IBK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선등록 서비스표가 IBK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2008원10618 2008허14155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건과자, 비스킷 등	양 상표는 명조체이거나 그에 가까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글자의 모음이 'ㅠ'의 형태를 가진 점에서 같으나, 초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ㅉ'의 형태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1은 'ㅈ'의 형태인 점에서는 다르다. 그러나 'ㅉ'은 'ㅈ'를 중복시킨 형태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의 외관 유사의 정도는 상당히 높다. 양 상표는 거래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모두 전체로서 호칭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쮸쮸'로, 선등록상표 1은 '쥬쥬'로 호칭될 것이다. 이 경우 양 상표는 초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한글 음운에서 쌍지읒(ㅉ)은 지읒(ㅈ)과 마찬가지로 설면음(舌面音) 또는 구개음(口蓋音)이고 서로 된소리와 예사소리에 해당하여 청음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쮸쮸	쥬쥬 (선등록상표1)		
2008원13052 2009허3046 2009후3541(심불)	압력변환기, 압력환기 주문가공업 등	압력계 등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글자의 수와 철자의 배열이 다르다. 따라서 양 상표의 외관 유사의 정도는 낮다. 선등록상표가 '쿨라이트'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쿠울라이트'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에도 유사의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다소 다르나 호칭의 유사성이 커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KULITE	COOLRITE		
2008원9122 2009허4001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기판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용 스티커 등	선등록상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거래하는 경우 그 표장 전체에 의하여 '제이드 파워'로 호칭하거나, 'POWER' 부분은 지정상품인 '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성능이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제이드'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가 '제이드'로 약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비취' 또는 '옥' 등과 같이 동일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JADE	JADE POWER		
2008당578 2009허2883 2009후3312(심불)	야구화, 농구화 등	남방셔츠, 와이셔츠 등	양 표장 모두 악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둘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악어의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전체적으로 옆쪽에서 본 악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등,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들 표장의 외관은 앞서 본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 및 관념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악어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뿐, 양표장의 악어를 좀 더 세분하여 구체적인 호칭 또는 관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별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없으므로, 모두 '악어'라는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008당1261 2009허2487 2009후2654(심불)	골프가방, 골프공 등	자동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글씨체만 다를 뿐 동일한 영문자이고, 선사용상표 2의 영문자 부분과는 글씨체까지도 유사하므로, 이들 상표는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LINCOLN	LINCOLN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2008당556 2009허597 2009후2494(심불)	가죽신, 고무신 등	화장품, 보석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HOUSE는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장소적 의미가 내포되어서 식별력이 약하므로 요부에 해당하는 AVON 부분만으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AVON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원고의 선사용상표 AVON과 동일하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AVONHOUSE	AVON		
2008당1787 2008허13008 2009후2623(심불)	핸드백, 지갑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부분 또한 ''를 180° 회전한 것에 불과하여 선사용상표 ''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이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영문자 D, B에 의해 '디비 디비'로 호칭될 것이나, 두 부분의 문자 또는 도형의 모양이 서로 180° 회전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서로 유사하고 발음이 중복되는 관계로 '디비'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 한편, 선사용상표 역시 영문자 D, B에 의해 '디비'로 호칭될 것인바, 양자는 '디비'로 호칭되는 경우 호칭이 동일하다.	
				
2008원3 2009허2074	공업용 가성소다, 공업용 구연산 등	내화페인트, 화장비누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각 표장을 구성하는 글자의 수와 한글과의 병기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응 외관이 상	
	ORGASOL	ORGA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1) OLGA 올 가 (선등록상표2)	이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의 ORGA와 식별력이 미약한 SOL로 분리 관찰이 가능하고, 이때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ORGA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요부에 해당하는 ORGA만으로 분리하여 약칭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라 "오르가" 또는 "올가"로 한글 발음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의 ORGA와는 한글 발음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의 OLGA 올 가 와는 한글 발음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ORGA와 기능적 표장 부분에 해당하는 SOL이 결합된 조어상표로서 아무런 관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념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비록 외관은 상이하지만, 요부에 해당하는 ORGA만으로 분리 호칭될 때에는 선등록상표 1, 2와 호칭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8당2012 2008허13190 2009후2203(심불)	가죽신, 고무신 등	청바지, 스웨터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ZARATRF는 ZARA와 TRF로 분리하여 호칭이 가능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분리된 구성부분만을 놓고 대비하여 보면, 선등록상표 1, 2와 외관과 호칭·관념이 각각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	
	ZARATRF	(선등록상표1) ZARA (선등록상표2) TRF		
2008당2359 2009허2036 2009후2067(심불)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 등	식당체인업	확인대상표장이 '은고개'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은고개' 부분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은고개	은고개 애마		
2007원12680 2009허962 2009후1996(심불)	기관지 확장제, 약제제형제조용 조성물 등	뼈/골격 질환 예방용 약제, 뼈/골격 질환 치료용 약제 등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FO-S-TE-의 구조를 가짐으로서 비록 글자체에서 바탕체와 고딕체라고 하는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두 개의 표장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클 것으	
	FOSTER	FORST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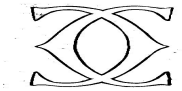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로 판단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어두의 "포스트" 부분이 세게 발음되고 말미의 "ㅓ"나 "ㅔ오" 또는 "ㅣ오"는 약하게 발음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게 청음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8원661 2009허1026	긴소매 스웨터, 양복바지 등	목걸이, 양말 등	이 사건 출원상표 '' 중 사각도형 ''은 테두리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도형 ''은 일반수요자가 여러 단계의 추리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쉽사리 영문자 'B'를 생각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도형화되어 있어 일반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영문자 'B'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zen'에 의하여 '젠'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젠'으로 호칭되는 경우 선등록상표 '젠 ZEN'과 그 호칭이 동일하고 그로부터 연상되는 관념 역시 '선(禪), 선종(禪宗)'(을 제2호증 참조)으로 동일하다.	
		젠 ZEN		
2008원4175 2009허2500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등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nicole' 또는 'Nicole'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니콜'로 동일하다(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만 인식 및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은 '니콜리'로서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니콜' 뒤에 마지막 음운 'ㄹ'과 발음이 유사한 '리'를 더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의 호칭은 여전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nicole lee	Nicole StGilles		
2007당2445 2008허10979 2009후1798(심불)	과자용 향미료(精油), 음료용 향미료(精油) 등	국립대학교 운영업	"경기대학교" 부분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요부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양 표장은 앞부분 2음절 "경기"와 뒷부분 3음절 "대학교"가 동일하고, 확인대상서비스표의 구성부분에 비록 "국립"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주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인에게는 식별력 없는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교 명칭을 호칭할 경우 "사립" 또는 "국립" 부분의 호칭은 생략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KGU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경기국립대학교		
2006당1300 2008허13206	반합성섬유직물, 직물용유리섬유직물 등	반사원단	음영만 다를 뿐 모두 삼각뿔 형태를 상하로 접합시켜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보이고, 다이아몬드 도형 등으로 동일하게 불릴 수 있으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원5882 2009허1477	Semiconductor wafer processing equipment, namely thermal treatment reactors(반도체웨이퍼 가공기, 즉 열처리반응기);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s, also operating with electric gas discharge(전기식 가스방전으로 작동하는 화학증기증착 반응기) 등	집적회로, TV게임 세트 등	선등록상표가 '드래곤'이라고 호칭될 경우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다. 선등록상표가 'Dragon'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경우 두 상표는 '용'이라는 동일한 관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가 전체로서 '황금 용'이라고 관념된다 하더라도 '용'이 중심적인 관념을 형성하므로, 두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DRAGON	Golden Dragon		
2008당363 2008허12548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등	플라센타를 주성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제형·입자형·과립형·액상·캡슐형·분말형·젤리형의 가공식품, 식육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1, 2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도형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도형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비교대상상표 1, 2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비교대상상표 4도 마찬가지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warakunuel	寿康美 JUKOHBI (대상상표1~2) (대상상표3~4)		
2008원4424 2009허283	인터넷전화서비스업, 개인휴대통신업(PCS서비스업) 등	Calendars, diagrams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약칭인 "LiiTS-"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약칭인 "RITZ"의 한글음역은 모두 "리츠" 또는 "릿츠"로 되어, 결국 위 양 표장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LIITS LIVING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RITZ ESCOFFIER		
2008원2888 2009허689 2009후1583(심불)	비만관리업	문신업, 위생시설임대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는 외관에서 영문과 한글로 되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2와는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	
	JUVIS	쥬비스 (선등록서비스표1) JUV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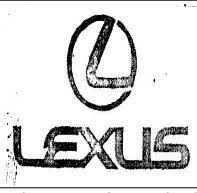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서비스표2)	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다.	
2008원2889 2009허672	비만관리업	문신업, 위생시설임대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는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2와는 외관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호칭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다.	
	쥬비스	쥬비스 (선등록서비스표1) JUVIS (선등록서비스표2)		
2008원7457 2009허870 2009후1521(심불)	가스도관부설공사업, 간이식건물조립공사업 등	건물절연설비공사업, 절연건축계획검사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고, 도형 부분에는 특별한 호칭이 있을 것 같지 않으며, 'DAOU' 부분이 '다오우' 또는 '다우'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다우', '도우' 등으로 각각 호칭될 것이므로 이들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DAOU	DOW		
2008원6481 2009허566	감주(음료) 등	인공광천수, 사이다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래스' 또는 '라스'라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나, 'RAS-S-'와 같이 영문 자음 다음에 모음 'A'와 쌍자음 'S-S-'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들은 모음 'A'가 주로 'æ'로 발음되는 점(을 제2호증의 1 내지 7)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라스'보다는 '래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래스'로 호칭될 경우 '레스'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다.	
	RASS	레 스		
2008당2634 2009허764 2009후1576(상고취하)	커피, 차의 잎 등	타우린을 주성분으로 한 드링크제(의료용 음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Bull'만으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관념뿐만 아니라 외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관념이 동일·유사하며, 그 외관에 있어서도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Red Bull ENERGY DRINK	serve chilled carbonated Bull force Energy Drink		
2007당3283 2008허12784	누비이불, 두베 등	화장크림, 매니큐어 세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글씨체를 달리하였지만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한 알파벳 앞에 'ES-'를 추가한 것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 선등록상표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앞부분 'ES-'는 'ES-CAPE', 'ES-CHEAT' 등의 영단어에서 보듯이 영어에서의 접두어 'EX'의 변형으로서 '~으로부터, 밖으로'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로(갑 제180, 181호증) 선등록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점과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ESPRADA	PRADA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ES-'가 접두어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식하여 그 부분의 발음 '이스'나 '에스' 등을 약하게 발음하고, 그 뒷부분의 발음 '프라다'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그 청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8당1395 2008허12159 2009후1545(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단화, 편상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외관, 관념, 호칭이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만이 조금 다르고 관념, 호칭이 동일하다.	
	QUEENBABY	QUEEN (선등록상표1) QUEENBABY (선등록상표2) Queen baby since 1977 (선사용상표)		
2008당2011 2008허13053	선그라스, 보통안경 등	립스틱, 마스카라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POLHAM'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비교대상상표 1, 3, 5 및 비교대상서비스표 1 'POLHAM'과 그 표장이 동일하다.	
	POLHAM	POLHAM		
2008원5925 2009허399	음악 또는 비디오 파일 라이브러리 내의 콘텐츠 검색용 컴퓨터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for browsing the contents of a library of music or video files)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등	두 표장 모두 알파벳 'COV'부분과 'FLOW'부분이 일치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다. 첫 두음절의 모음이 다르기는 하나 자음의 구성이 같고 모음도 그 분류상 공통되어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COVER FLOW	COVIFlow		
2007당3154 2008허12364 2009후1354(심불)	알로에, 알로에즙 등	농산물 이유식(제5류), 콩 등	이 사건 등록상표 'Namyang'은 선등록상표 2 '남양' 및 선등록상표 4 '남 양'과 그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南陽乳業株式會社 선등록상표 1 '남양유업주식회사'는 한글과 한자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문자부분 중 '유업'은 지정상품의 업종을, '주식회사'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부족한바, 선등록상표 1의 중요부분은	
	Namyang	南陽乳業株式會社 남양유업주식회사 (선등록상표1) 남양 (선등록상표2) 남 양 南 陽 NAM YANG (선등록상표3) 남 양 (선등록상표4)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南陽 '남양'으로서 '남양'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선등록상표 3 '남 양 南 陽 NAM YANG'은 한글과 한자 및 영문이 3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남양'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2008당614 2008허12258 2009후1330(심불)	알로에, 알로에즙 등	농산물 이유식(제5류), 콩 등	이 사건 등록상표 '남양'은 선등록상표 2 '남양' 및 선등록상표 4 '남 양'과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동일한 표장이다. 선등록상표 1 '南陽乳業株式會社 남양유업주식회사'는 한글과 한자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문자부분 중 '乳業 유업'은 株式會社 지정상품의 업종을, '주식회사'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부족한 바, 선등록상표 1의 중요부분은 '南陽 남양'으로서 '남양'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선등록상표 3 '남 양 南 陽 NAM YANG'은 한글과 한자 및 영문이 3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남양'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남양	南陽乳業株式會社 남양유업주식회사 (선등록상표1) 남 양 (선등록상표2) 남 양 南 陽 NAM YANG (선등록상표3) 남 양 (선등록상표4)		
2008당1076 2008허13282	스킨밀크, 향수 등	과자용 향미료 외 203종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윤진"으로, 선출원상표는 "비윤진"으로 각 호칭될 것인데, 이 경우 양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보윤진 保潤珍	비윤진	상표는 음절의 수가 3음절로서 같고, 발음에 있어서도 2, 3음절이 '윤진'으로 같으며, 첫 음절이 '비'와 '보'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초성이 'ㅂ'으로 같고 중성인 모음만이 'ㅗ'와 'ㅣ'로 다른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에 대한 호칭의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8원1195 2008허13855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등	메주, 간장 등	양 표장은 앞 두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은 "애"와 "네"로서 유사하며,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의 종성인 "ㄹ"과 마지막 음절의 초성인 "ㅇ" 및 "ㄴ"이 자음동화현상을 보여 그 청감이 더욱 유사하게 된다.	
	산들애	산들네		
2008원3139 2008허12111	나리싱크림, 가죽제 여행가방 등	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버클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하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하비'와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하비라는 남성의 성(姓) 또는 이름 등과 같이 유사하게 형성된다.	
	HARVEY NICHOLS	HARVEY		
2007당2403 2008허9870	반지, 목걸이 등	캔오프너(can-openers), 포크 등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가 소재로 채택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 사이의 교차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중앙에 위치한 타원형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므로 전체적으로 타원형이 형성되어 있는 'C'모양이 서로 교차된 것으로 인식되고 직관적으로 관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C'모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가운데에 타원형이 형성된 모양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비교대상상표1~4)  (비교대상상표5~6)		
2007당3199 2008허9191 2009후1149(상고취하)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등	침대, 매트리스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로, 비교대상상표는 '장수온'으로 각 호칭될 것인데, 이 경우 비교대상상표의 호칭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장수'라는 2음절의 발음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단지 끝에 '온'이라는 1음절의 발음을 부가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청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들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상표의 관념을 살펴보면, 비교대상상표에 있어서 '장수'라는 단어 뒤에 띄어쓰기 없이 결합해 있는 '온'이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불러 일으키지 않아 일반 수요자들은 이 부분을 '장수'라는 단어 뒤에 별다른 의미 없이 부가되어 있는 글자 정도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장수'라는 동일한 관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장수	장 수 온		
2008당2095 2008허13183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① 첫음절과 둘째음절의 모음이 동일한데다가 셋째음절은 완전히 동일한 점, ② 양 서비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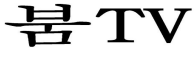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가쓰라	かつら 카츠라	모두 그 전체적인 청감이 일반수요자들에게 일본어 발음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첫음절의 초성과 둘째음절의 초성의 차이로 인한 청감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점, ③ 게다가 일본 히라가나 "かつら"를 식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 있어서는 보통의 일본어 발음습관상 "かつら"를 '카츠라, 가쓰라, 카쓰라, 가츠라'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되고 표기될 수 있는 점에서, 그러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양 서비스표의 호칭이 더더욱 유사하게 청감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표의 호칭은 그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7당3527 2008허11811 2009후962(심불)	화장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 등	나리싱크림, 마스크팩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美彩" 또는 "(미채)" 부분에 의하여 '미채'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美體" 또는 "MICHE" 부분에 의하여 '미체'로 호칭될 수 있는바, '미채'와 '미체'는 첫째 음절의 자음과 모음 및 둘째 음절의 자음이 동일하고 둘째 음절의 모음만 'ㅐ'와 'ㅔ'로 상이할 뿐이어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美彩(미채)화장품	美體 MICHE		
2007원10570 2008허9078 2008후4684(파기) 2009허1323(환송)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필 등	나리싱크림, 립스틱 등	모두 일반적 서체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 6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철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철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여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호칭에 있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코르세스', '코세스'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코르셋', '코르세트' 등으로 각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코르세스', 선등록상표가 '코르세트'로 각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마지막 음절의 초성만이 다를 뿐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	
	CORSES	CORSET		
2008원3666 2008허12036	세탁기, 팩시밀리 등	전기세탁기(상품류 구분 제7류), 선풍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TECO"에 의하여 '테코'로 자연스럽게 호칭되는데, 선등록상표도 "TEKOH"에 의하여 '테코'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호칭이 같다.	
	TECO	TEKOH		
2007원9924 2008허7638	비전기가열식 헤어컬기구(수동기구는 제외한다), 장식틱 수염 등	나리싱 크림, 비의료용 방향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KENNETH"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KENNETHLYNN	KENNETH COLE NEW YORK		
2007원12584 2008허11774 2009후955(심불)	골프가방, 골프장갑 등	승용차 등	선사용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없는 도형 ""이 있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 일응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위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여 부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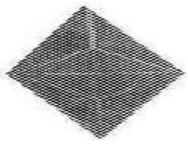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LEXUS		인 외관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양 상표는 동일한 영문자 4자인 "LEXUS-"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7원6335 2008허11583	금속제 버클, 등산용 아이젠 등	배낭, 비귀금속제 지갑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하단의 문자부분에 의하여 약칭되는 경우에는 '알마니아' 또는 '아르마니아'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1, 2는 '알마니' 또는 '아르마니'로 호칭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끝음절에 있고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아'를 제외한 나머지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ARMANI (선등록상표/서비스표1) ARMANI (선등록상표/서비스표2)  (선등록상표/서비스표3)		
2007원10322 2008허10481	도로용 롤러, 굴착기 등	금속제밸브(기계부품은제외한다), 금속제수도관용밸브 등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는 '사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 2는 그 문자의 구성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샤니'가 다른 문자들에 비하여 다소 크게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샤니'로 간략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등록상표 3은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사니 펀치'라고 호칭되거나 첫머리의 영문자인 'S-ani' 부문에 의하여 '사니'만으로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3이 '사니'만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과 같고, 선등록상표 1, 2의 호칭인 '샤니'와 이 사건 국제출원상표의 호칭인 '사니'는 그 호칭에 있어서의 차이가 첫음절의 모음 'ㅑ'와 'ㅏ'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SANY	주식회사 샤니 SHANY CO., LTD. (선등록상표1~2)  (선등록상표3)		
2007당1126 2008허7126 2009후825(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전자 진단용 키트	유전자 추출 키트를 포함한 유전자 진단용 키트	이 사건 등록상표 "KIAGEN"은 선사용상표 중 "[illegible]"과 비교할 때 6개의 영문자 중 첫 글자를 제외한 다섯 글자가 동일하므로 유사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키아젠' 혹은 '키아겐'으로 불릴 것이고 선사용상표는 ① '키아젠'이나 '키아겐' 혹은 ② '퀴아젠'이나 '퀴아겐'으로 불릴 것인바, 선사용상표가 ①과 같이 불리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같고, 선사용상표가 ②와 같이 불리더라도 그 음가가 비슷하여 청감의 유사성이 크다.	
	KIAGEN			
2007당1165 2008허6932 2009후818(상고기각)	머니벨트(의류), 검도복 등	야구화, 운동화 등	선출원상표는 그 오리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띠에 'BUS-AN LOTTE GIANTS-'라는 영문자가 2회 표기되어 있으나, 그 글자체가 아주 작은 점, 오리 모양 아래에 배치된 'GiantS-'라는 영문자가 물결 모양의 밑줄 등으로 도안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체 또한 눈에 두드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GIANTS	Giants	지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이언츠'라고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또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이언츠'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두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하다. 두 상표는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거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야구공과 야구방망이를 든 오리의 형상을 보태어 보면 '야구하는 거인들'이라는 뜻을 가질 것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2007당2564 2008허9696 2009후672(심불)	머니벨트(의류), 검도복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K2'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K2' 부분으로 분리 호칭, 관념되는 경우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K2 Salaman	K2		
2007당2565 2008허9702 2009후689(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K2'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K2' 부분으로 분리 호칭, 관념되는 경우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K2 Greyowl	K2		
2007당2563 2008허9726 2009후702(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K2'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K2' 부분으로 분리 호칭, 관념되는 경우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K2 PINATUBO	K2		
2007당2562 2008허9719 2009후696(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K2'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K2' 부분으로 분리 호칭, 관념되는 경우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K2 LEGASPI	K2		
2007원8180 2008허11057 2009후788(심불)	내화제, 공업용 접착제 등	목재 보존제	이 사건 출원상표 "WOLMANIT"는 영문 대문자 8자가 굵은 고딕체로 횡서된 형태이고, 선출원상표 "WOLMAN"는 영문 대문자 6자가 명조체와 유사한 굵은	
	WOLMANIT	WOLMAN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글자체로 횡서된 것인바, 글자체와 글자수는 다르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 8자 가운데 앞 6자가 같고 굵은 글자체로 횡서된 점에서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크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월매닛'이나 '월마닛' 또는 ② '월매니트'나 '월마니트' 등으로 호창될 수 있는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는 '월맨'이나 '월만'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①과 같이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상표의 호칭과 대비하여 세 음절 중 마지막 음절의 중성과 종성만 다를 뿐이고 그 다른 부분도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청감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007원12368 2008허11088	화장품(cosmetics) AUTOMAGICALLY	향수, 매니큐어 등 MAGIC AUTO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거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영어단어인 "AUTO"와 "MAGIC"에서 도출되는 의미로서 주로 "(화장품의 효용이 발휘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마술에 걸린 듯하게"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MAGIC"과 "AUTO"가 띄어서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지정상품인 향수 등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AGIC"과 "AUTO" 부분에서 도출되는 의미로서 주로 "(향수 등 상품의 효용이 발휘됨에 있어서) 마술에 걸린 듯하고, 자동적인 것"의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2007당1407 2008허5199	코트, 바지 	롱코트, 반코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M' 부분은 영어알파벳의 한 글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요부는 'DIA'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의 경우, 고딕체의 영문자 'DIA' 부분이 그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영어문구 부분에 비하여 훨씬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위 영어문구를 구성하는 각 단어, 즉 'dream', 'in', 'affect'의 맨 앞글자만을 따서 조합한 축약어로 보이기도 하므로, 선등록상표 역시 그 요부는 'DIA'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공통적으로 'DIA' 부분을 그 요부로 하고 있어 이들 상표는 요부인 'DIA'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들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8당1185 2008허11859 2009후580(심불)	비치파라솔, 양산 등	골프의류, 골프가방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인 'S-UPERIOR'와 그 음역인 한글을 오른쪽에 작게 배치한 점에서 선사용상표와 다소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UPERIOR 슈페리어	SUPERIOR	영문자가 동일하고, 그 도형 부분이 극히 유사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고, 그 호칭 또한 '슈페리어'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8원1355 2008허10894 2009후337(심불)	거들, 속셔츠 등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속팬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가오 기우사'(또는 '가오 그루사')나 분리되어 앞 부분인 '가오'만으로 호칭되고, 앞 부분인 '가오'만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단어 발음 호칭상 '카오' 또는 '가오'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 1과 청감이 유사하여 서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Gao Gi Usa	KAO		
2008당958 2008허11439	신사화, 숙녀화	신발류(숙녀화)	양 상표는 모두 그 지정상품(또는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강한 영문자 'MODE MORE'(또는 'Mode More')를 요부로 두고 있고, 위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식별력이 강한 위 'MODE MORE'(또는 'Mode More')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모두 위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모드 모아' 등으로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MODE MORE 모드모아	Mode More COLLECTION		
2005당432 2008허11798 2006후2288	등산화, 안전화 등	등산화, 등산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위 영문자 및 숫자의 발음에 의하여 '케이투'로 호칭되고, 인도의 카라코람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의 명칭으로 관념될 수 있으며, 한편 선사용상표인 " K2 " 또한 위 영문자와 숫자의 발음에 의하여 '케이투'로 호칭되고, 인도의 카라코람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의 명칭으로 관념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K-2 PINATUBO	K2		
2007원10028 2008허11095	전동모터 및 서보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특히 스텝모터 등	직류발전기, 진공청소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윗 부분의 'HIPERFACE'와 아랫 부분의 'DS-L'이 그 사이의 곡선형상의 도형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 두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HIPERFACE' 부분과 'DS-L'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DS-L' 부분에 의하여 관찰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DS-L'과 동일하므로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같게 될 것이다.	
	HIPERFACE DSL	D S L		
2007원11438 2008허11569	속셔츠, 속팬티 등	잠옷, 슬립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ARMOUR" 또는 "ARMOR"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아머", "아모", "아모르" 등으로 동일하고, 그 관념 역시 위 영어 단어들의 뜻인 "갑옷" 등으로 동일하다.	
	UNDERARMOUR	ARMOR-LUX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677 2007허3363 2008후101(파기) 2008허13534(환송)	신사복, 양복바지 등	롱코트, 반바지 등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 또는 'GUESS' 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 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	
				
2008당850 2008허10085	건물분양업, 공인중개사업 등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등	'for you'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너를 위하여'라는 관념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식별력이 다소 약하지만, 업종을 표시하는 '이엔지' 부분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이엔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포유' 부분만으로 분리·약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가 '포유'로 약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주]포유이엔지		
2004당2757 2008허4912	반바지, 단화 등	자켓, 청바지 등	선사용상표는 영문자 'A'와 숫자 '6'이 결합한 상표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A'와 '6'를 둘러싼 원 두 개가 일부 겹쳐지면서, 문자는 파란색으로, 원은 노란색 그리고 두 개의 원이 겹쳐지는 부분은 파란색과 노란색이 얼룩지게 채색되어 있는 색채상표인바, 양 상표는 문자 부분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2007원11249 2008허7027 2008후5359(상고취하)	건강대, 목발 등	휠체어 등	양 상표의 표장은 외관이 다소 상이하지만 일요부인 영문자 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7원12466 2008허9603	위성텔레비전 방송업 등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VOOM' 부분만으로, 이 사건 선출원상표서비스표는 '붐' 부분만으로 각각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붐'은 '어떤 사회 현상이 갑작스레 유행하거나 번성하는 일(영어의 'boom'에 해당) 또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비하여 'VOOM'으로부터는 어떤 특정한 관념이 도출된다고는 볼 수 없어 양자는 관념이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VOOM'과 '붐'이 모두 '붐'으로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양 부분들은 서로 유사하다	
				
2007원12209 2008허9528 2008후5243(상고취하)	서류봉투, 수첩 등	서류봉투, 수첩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마놀로' 또는 '마노로'로(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마놀로'만으로 호칭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마노로'로도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1은 '마노노'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마노로'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음절수가 3음절로 동일하고 첫째	
	MANOLO	manono (선등록상표1) 마노노 (선등록상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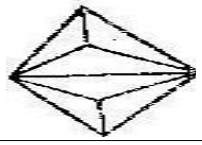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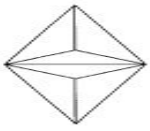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와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마노ㄴ'로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의 초성도 'ㄹ'과 'ㄴ'으로 모두 치조음(혀끝소리)에 속하여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2008원1119 2008허9955 2008후4837(심불)	papers(종이), envelopes(봉투) 등	봉투 등	이들 상표는 "SKIN"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모두 위 영어단어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스킨'으로 호칭되고, '피부', '가죽' 등과 관련된 것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SKIN Curious Collection	NU SKIN		
2007당1607 2008허8112 2008후5113(심불)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광고물출판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일요부인 CARLIFE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CARLIFE	자동차생활 CARLIFE		
2008당443 2008허9825	침대, 탁자 등	매트리스	한글 음역인 '로얄'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위 표장은 'Flora' 및 그 한글 음역인 '플로라'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에 해당하고 그 부분만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구성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및 관념과 동일하다.	
	FLORA 플로라	로얄플로라 Royal Flora		
2006당1299 2006허11213 2008후5076(심불)	반사경, 경고표시장치 등	반사원단	이들 표장은 모두 같은 모양의 둔각삼각형(이 사건 등록상표의 "◢"를 그 삼각형의 둔각과 예각의 차이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확인대상표장의 "▲"가 된다)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마름모 도형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내부 중앙에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을 자동으로 형성하고 있어 그 전반적인 구성의 모티브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둘 다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 등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서로 유사하다.	
				
2007원9326 2008허8297 2008후5045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	망원경, 쌍안경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각 "ACTIV", "ACTIV" 및 "ACTIVE" 부분만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ACTIV.A.C.	액팁 ACTIV (선등록상표1) ACTIVE LIFE (선등록상표2)		
2008원1280 2008허9382	주로 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 구성된 비디오시스템(디스플레이 제어회로	텔레비전수신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iVISION"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아이비전'으로 호칭되고,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시야' 등과 관련된 것으로 관념될 것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가 내장 또는 내장되지 않은 것), 즉 영화, 텔레비전, 뮤직비디오 시청과 게임을 위한 액정 디스플레이장치와 우리의 눈과 안경에 착용 가능한 영상광학장치 및 머리에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IVISION"은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아이비전'으로 호칭되고,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시야' 등과 관련된 것으로 관념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iVISION"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DIGITAL iVISION	IVISION		
2007원9575 2008허11002	가루비누, 면도용 비누 등	상처치료용 연고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호칭과 관념이 '마데카솔'로서 동일하고, 외관도 선사용상표 1, 4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마데카솔비누	마데카솔 (선사용상표1) MADECASSOL (선사용상표2) MADECASSOL PLUS (선사용상표3) 마데카솔 플러스 (선사용상표4)		
2008원3066 2008허9665 2008후4967(심불)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anti-theft, anti-counterfeiting 등	칩(Chip), 회로기판(Circuit Boards) 등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 단어의 발음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마티아스, 스마테아스, 스마티스' 등으로 호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스마티아, 스마트 아이에이' 등으로 호칭될 수 있는데, 양 상표가 '스마티아스'와 '스마티아'로 각각 호칭될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스'의 유무만이 다를 뿐 전체적인 청감은 비슷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SMARTEAS	SmartIA		
2007원11629 2008허9511	단화, 목욕 가운 등	우산, 양산 등	선등록상표들은 영문자 'SPAR'에 의하여 '스파'만으로 분리·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가 모두 '스파'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	
	Spa VILLAGE	SPAR		
2007원9428 2008허5748	소시지제조용 창자,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등	머니벨트(의류) 등	이 사건 출원상표 "XTM"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따라 '엑스티엠'으로 호칭되고("X" 부분이 도형화되기는 하였지만,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수요자들은 영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자 "X"로 인식한다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는 '이엑스티엠, 엑스티엠'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가 '엑스티엠'으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2007당1133 2008허2626 2008후4844(심불)	침대, 매트리스 등	침대, 비의료용 돌 침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장수" 부분과 "구들방"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수"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선등록상표 역시 그 요부인 "장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장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들 표장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장수구들방			
2008당232 2008허8396 2008후4645(심불)	운동용 아노락, 반바지 등	운동용 아노락, 사파리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물소 형상의 도형 부분과 독특한 글꼴의 문자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이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BUFFALO'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요부는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8당229 2008허8525 2008후4615(심불)	운동용 아노락, 반바지 등	운동용 아노락, 사파리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물소 형상의 도형 부분과 독특한 글꼴의 문자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이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8당233 2008허8549 2008후4639(심불)	운동용 아노락, 반바지 등	운동용 아노락, 사파리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물소 형상의 도형 부분과 독특한 글꼴의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7원6733 2008허8051	레스토랑업, 식품소개업 등	반찬판매대행업, 도시락판매대행업 등	양 서비스표는 모두 'purple'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TEA purple	Purple & Yellow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008당230 2008허8532 2008후4622(심불)	반코트, 사파리 등	사파리, 잠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로 관념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버팔로' 또는 '버펄로우'로 호칭될 것이고, 물소 또는 물소의 뿔로 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7원7534 2008허1050 2008후1470(파기) 2008허12005(환송)	자동차 오디오용 헤드유닛(Stereo head units), 카 헤드유닛(car head units) 등	카메라, 보수계 등	사건 출원상표를 그 요부인 "CIRCLE"을 가지고, 지정상품을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등으로 하고 "Circle"로 구성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8081호)와 대비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외관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호칭 과 관념이 유사하다.	
	CIRCLE SURROUND AUTOMOTIVE	Circle		
2007원8893 2008허8723	여성용 골프복, 골프 바지 등	골프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의 경우 "Birdie" 부분이 "Blue" 부분과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lue"는 뒤의 "Birdie"를 꾸미는 단어에 불과하여 "Birdie" 부분이 "Blue"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하고, 또한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Birdie" 단어를 "Blue" 단어로부터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Birdi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birdie" 또는 "Birdie"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7원10568 2008허7683 2008후4363(심불)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등	컴퓨터모니터, 컴퓨터키보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부분의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글씨인 'THE TOWER OF ETERNITY'와 윗부분의 'AION'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관찰되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분리관찰할 경우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크고 시각적으로 뚜렷이 들어오는 'AION' 부분에 의하여 관찰되어 '아이온'으로 호칭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는 'ione'에 의하여 '아이원'으로 호칭될 것인 바, '아이온'으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지막 음절인 끝 부분이 조금 다르게 호칭된다. 그러나, 양 상표는 모두 3음절로 호칭되면서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서로 같고, 마지막 음절에서 초성과 종성이 동일하여 'ㅇ'으로 시작하여 'ㄴ'으로 끝나고 있고, 중성모음에서만 서로 다를 뿐인데, 외국어로 표기된 문자의 발음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매우 유사하게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7당3077 2008허7300 2008후4295(소취하)	커피, 코코아 등	샌드위치, 스파게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각각 "TOMS" 부분 및 "Toms"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이 경우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톰스' 또는 '탐스'로 호칭되고, 'TOM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이라는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7당3078 2008허7317 2008후4301(소취하)	피 전 문 점 경 영 업 , 커피전문점체인업	피자전문점업, 피자전문점체인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각각 "TOMS" 부분과 "Tom's"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톰스' 또는 '탐스'로 호칭되고, 'TOM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 또는 'TOM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7당3385 2008허8433	여행가방, 모피 등		양 상표는 유사한 딸기 소녀형상으로 인하여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에 관하여서도, 양 상표는 직관적으로 관찰되는 소녀형상에 의하여 '소녀' 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딸기 소녀'로 호칭하고 관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2007원10982 2008허8747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 등	생수, 인공광천수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상표는 그 외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아리랑생수' 또는 '아리랑'으로, 선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미네럴워터' 부분은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생수'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며, 일반 수요자들은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출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애니쿨 미네럴 워터 아리랑 (anycool mineral water arirang)	상표는 '애니쿨' 또는 '아리랑'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2005당2530 2006허3458 2006후2295(파기) 2008허8808(환송)	반합성섬유직물, 직물용 유리섬유직물 등 	반사원단제품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특별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낳는 추가적인 기호나 문자 없이 2개의 삼각프리즘을 상하로 접합시킨 다이아몬드 도형만으로 구성된 도형 상표로 그 표장이 동일·유사하다(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도 없다).	
2007원10435 2008허7386	가죽신, 고무신 등 	무두질한 가죽, 인조가죽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사각형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사각형 안에 표기된 새의 모양이라 할 것인바, 양 표장의 새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양 날개를 위쪽으로 활짝 펼친 상태에서 착륙하려고 하는 새의 외관을 띠고 있는 등 외관이 유사하다. 양 표장은 모두 '새',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새' 또는 '착륙하려 하는 새' 등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호칭, 관념되므로, 호칭·관념이 유사하다.	
2007당3469 2008허7645 2008후4509(심불)	래커, 청동래커 IS 락카 Spray	래커 	양 표장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전체적인 도형과 글자의 모양, 색채, 배치형태 등이 서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아이에스락카 스프레이' 또는 '아이에스락카'로 호칭되거나 식별력이 부족한 '락카 스프레이'를 제외하고 '아이에스'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문자 부분에 의하여 '아이에스아이락카 스프레이', '아이에스아이락카' 또는 '아이에스아이'로 호칭될 것인바, 확인대상표장에는 '아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청감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다. 양 표장은 식별력이 부족한 '락카 Spray'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특별한 관념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비교할 수 없다.	
2007당789 2008허5212 2008후4264(심불)	건설엔지니어링업, 도로건설공사업 등 KT 건설주식회사 KT Construction Co.,ltd.	전기설비설치공사업, 전기통신기계기구수리업 등 KT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건설'은 지정서비스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식회사'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며, 'Construction Co., ltd.' 부분은 '건설주식회사' 부분을 단지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KT'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외관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KT'와 선사용서비스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KT'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보거나 들었을 때 저명서비스표인 선사용서비스표를 용이하게 연상하거나 선사용서비스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서비스표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7원9579 2008허8358 2008후4257(심불)	수영모자, 수영복 등	가죽신, 골프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비록 외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검은 색 형태의 십자가를 공통된 요소로 하고 있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LIF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 상대적으로 강하게 청감되는 어두의 3음절이 일치하며, 특히 그 지정상품인 '수영복, 수영모, 수영팬츠' 등과의 관계에서 '생명(인명)구조자(구원자)'와 같은 의미내용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직감할 수 있어 관념의 면에서는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IFESAVER	LIFE GUARD		
2007당2074 2008허6796	순환기관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동일한 알파벳을 그 순서만 달리 배치한 것으로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토스크' 또는 '애토스크'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선등록상표 "ACTOS"는 '악토스' 또는 '액토스'로 호칭될 것인 바, 첫 음절의 모음이 '아'로 유사하고,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이 '토스'로 동일하며, 나머지 선등록상표의 '크'는 그 파열음의 특성상 약하게 발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토스'만으로 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청감에 있어 유사하여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ATOSC	ACTOS		
2007당2079 2008허6802	순환기관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등록상표는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토스크'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선등록상표 "ACTOS"는 '악토스' 또는 '액토스'로 호칭될 것인 바, 첫 음절의 모음이 '아'로 유사하고,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이 '토스'로 동일하며, 나머지 선등록상표의 '크'는 그 파열음의 특성상 약하게 발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토스'만으로 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청감에 있어 유사하여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이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	
	아토스크	ACTOS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2007원8403 2008허8563	기저귀가방, 등산백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미씽 도로씨(시)'라고 호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MISSING'은 'DOROTHY'를 꾸미는 수식어인 점, 'MISSING'과 'DOROTHY'가 상하로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는 점, 'DOROTHY'는 널리 알려진 '오즈의 마법사'라는 뮤지컬 영화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OROTHY' 부분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발음 또한 '도로씨'로서, 선등록상표의 발음인 '도로시' 또는 '도로씨'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다르거나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7원11102 2008허7867	보통안경, 선글라스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RANGLER"와 "HERO"가 간격을 두고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그 각각의 문자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WRANGLER" 부분과 "HERO" 부분 모두 요부가 되거나 분리관찰 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요부인 "HERO"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선출원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2007당1980 2008허2312	맥주, 스타우트 등		선등록상표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문자부분인 'Hite'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므로, 선등록상표는 'Hite' 부분에 의하여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선등록상표 중 직관적으로 관찰되는 'Hite'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영문자 알파벳의 배열위치와 글자 구성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모두 첫글자 'H'를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 세 글자를 소문자로 하여 전체적으로 네 글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전체적인 알파벳의 구성에서도 'H', 'i', 't'를 가지고 있으면서 끝 글자의 'e'와 'o'도 시각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 '', '' 등과 같이 각 글자에 외곽선을 두어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 상표의 문자 부분은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이격적·직관적 관찰에 의할 경우 문자 부분이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 상표는 비록 호칭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은 있으나 외관이 매우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7원9792 2008허5922	증폭기(앰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에는 위 영문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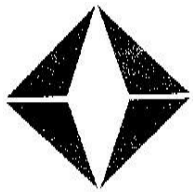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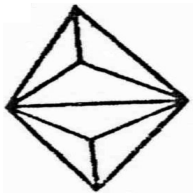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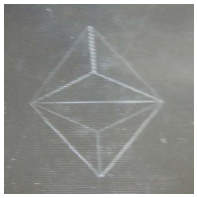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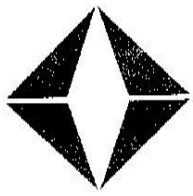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XLO	한글식 발음에 따라 '엑스로' 또는 '엑스알오'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고, 한편 선출원상표인 "XLO"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엑스로' 또는 '엑스엘오'로 호칭될 수 있는바, 이들 상표는 각각 '엑스로'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엑스알오'와 '엑스엘오'로 달리 호칭되는 경우에도 위의 각 호칭들 중 세 번째 음절의 모음만 "ㅏ"와 "ㅔ"로 상이할 뿐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은 일응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XRO"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에는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2007원9791 2008허5939	증폭기(앰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XRO"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에는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엑스로' 또는 '엑스알오'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고, 한편 선출원상표인 "XLO"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엑스로' 또는 '엑스엘오'로 호칭될 수 있는바, 이들 상표는 각각 '엑스로'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엑스알오'와 '엑스엘오'로 달리 호칭되는 경우에도 위의 각 호칭들 중 세 번째 음절의 모음만 "ㅏ"와 "ㅔ"로 상이할 뿐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은 일응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XRO"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에는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XLO		
2007원8501 2008허6765	카탈로그, 서적 등	직류발전기, 백열전구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글자의 배치관계, 크기와 굵기 및 서체 등에 비추어 볼 때, 'GRAZIA' 부분이 눈에 잘 띄는 중요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GRAZIA'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GRAZIA'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경우 '그라치아, 그라지아'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2 "GRACIA"는 여자이름인 'gracia'(을 제8호증의 1, 2)가 대문자로 다소 굵게 구성된 상표로서, '그라시아, 그라치아, 그래키아'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그라치아' 등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GRACIA		
2007원10483 2008허7416	닭고기, 돼지고기 등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지점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전체에 의하여 '팜에버'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영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으며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에버팜'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FARM'과 'EVER'가 뒤바뀌어 배치되어 있는 결과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들은 양 상표를 직관적, 이격	
	FARM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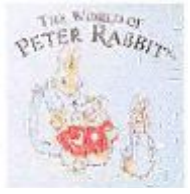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적으로 관찰을 하면 각각의 단어에 중점을 두고 기억하고 그 배열 순서에 혼동을 일으켜 양 상표를 모두 '팜에버' 또는 '에버팜'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농장은 언제나' 또는 '언제나 농장' 등으로 관념된다 할 것이고, 'FARM'과 'EVER'의 배열 순서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별개의 관념이 창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2007원7433 2008허1104	쌀, 국수 등		양 표장은 문자의 종류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짧은 영어 단어 형식으로 분리 호칭의 여지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영어발음 규칙에 따라 전체적으로 '푸드젠, 후드젠, 훗젠'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푸르젠'으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푸드젠'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첫 자음만 'ㄷ'과 'ㄹ'로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므로, 그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푸드젠'과 '푸르젠'으로 호칭되어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FOODGEN	푸르젠		
2007원9923 2008허6178 2008후4073(심불)	핸드백, 지갑 등		여러 음절의 외국어로 된 단어를 복잡하게 호칭, 기억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줄여 호칭, 기억하되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어두 부분의 'KENNETH' 부분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KENNETH' 부분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KENNETHLYNN	KENNETH COLE		
2007원8953 2008허4486	비치백, 서류가방 등	인조가죽,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큰 새 한 마리를 도형화한 양 표장을 직접적, 부분적으로 대비할 때에 비로소 관찰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는 모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독수리'로 직감되어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동일·유사한 상표이다.	
				
2007원10899 2008허7249	컴퓨터프로그램, 편지지 등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컴퓨터프로그램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후3971(상고취하)		이 수록된 디스켓 등	일부인 'LOST' 부분과 'ODYSSEY'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LOST ODYSSEY	오 딧 세 이		
2007당2442 2008허6581	모피, 우산 등	원피스, 투피스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5, 7, 8의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FOXEY"와 선등록상표 5, 7 및 선등록상표 8의 요부인 "FOX"는 그 외관에 있어서 접미사 "-EY"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관념에 있어서도 지소적 접미사로부터 유래하는 "작다"는 한정의 유무에서만 상이하고 모두 "여우, 교활한 사람, 매력적인 여성"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FOXEY	FOX (선등록상표5) FOX (선등록상표7) FOX LADY (선등록상표8)		
2006당1865 2008허1838 2008후3568(심불)	사이클선수운동복, 운동화 등	모터사이클용 부츠, 모터사이클용 슈트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구성부분 중 문자부분인 "ALPINES-TAR"에 의하여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는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알파인스타'로 호칭되고, 위 영문자를 구성하는 'alpine'과 'S-tar'의 의미에 따라 '알프스 산맥의 별' 또는 '스키 활강의 별'로 관념될 것이다. 한편 선사용상표 1은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알파인스타스'로 호칭되고, 위 영문자를 구성하는 'alpine'과 'S-tarS-'의 의미에 따라 '알프스 산맥의 별들' 또는 '스키 활강의 별들'로 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외관은 상이하나 문자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매우 유사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되는 경우, 영문 소문자 'a'와 별모양의 도형 '☆'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S-tar' 또는 한글단어 '별'을 결합한 한글식 발음에 따라 '에이스타' 또는 '에이별'로 호칭될 수 있고, 위 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영문자 a와 별' 또는 '에이 등급 별' 등으로 관념될 수 있다	
	 ALPINESTAR	ALPINESTARS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고 할 것이며, 한편 선사용상표 2인 ""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도형이 배치된 각도만 조금 상이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 관념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2와 외관은 상이하나 도형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7당411 2008허4417 2008후3599(심불)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 등	전기이불, 전기침대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는 등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서비스업이 '돌침대'판매대행업, 건강'돌침대'판매대행체인점관리업,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건강'돌침대'판매대행업 등이므로, "장수돌침대"라는 문자 부분에 있어서 "돌침대"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인 "J S-"와 "장수 옥돌"이라는 기재가 별도형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명확히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씨체 역시 확연히 다르므로 "장수 옥돌" 부분을 "J S-"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장수 옥돌" 부분에서 "옥돌" 부분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요부는 "장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장수"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그 요부인 "장수"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으나 분리관찰 결과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게 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7당2692 2008허2794	애완견 샴푸, 애완견 린스 등	얼룩 및 냄새 제거제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N·S'는 '내쳐스 솔브'의 영문인 'Nature's Solve'의 약자로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여 식별력이 있는 점, 글자의 크기와 채색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N·S'부분의 식별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하는 수요자들은 영문자 부분인 'N·S' 부분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위에서 본바와 같이 'N·S' 부분만으로 인식될 경우 확인대상표장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	
2007원4168 2008허3100 2008후3728(심불)	자켓, 조끼 등	등산용품, 모자 등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을 문자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 ""과 선등록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세 개의 굵은 줄로 형성된 원의 1/4을 절단한 모양인 점에서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은 완전한 원의 형태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운동장 트랙을 연상하는 타원의 형태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그 외 관상 차이가 크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		
2007원2250 2008허3605	휴대용게임기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전자회로, 휴대용뷰어 등	자기카드작동식 오락기계기구, 슬롯머신 등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은 "CRISI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이 "CRISIS"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크라이시스" 또는 크리시스"로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CRYSIS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DINO CRISIS (선등록상표3) CRISIS CORE (선출원상표서비스표1) BEFORE CRISIS (선출원상표서비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표2)		
2007원3700 2008허2367 2008후3681(심불)	건물분양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은 일응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로서 '포유'로 호칭되고, 위 영어단어들의 전체적 의미에 따라 '너를 위하여'로 관념된다. 선등록서비스표는 앞서 본 'for you'의 의미에 따라 '너를 위하여'로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포유'로 호칭되고, '너를 위하여'로 관념될 가능성이 있다.	
				
2006당2220 2006허6471 2008후4004(심불)	반사경, 경고표시장치 등	반사원단	이들 표장은 모두 같은 모양의 둔각삼각형(이 사건 등록상표의 "◢"를 그 삼각형의 둔각과 예각의 차이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확인대상표장의 "◿"가 된다)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마름모 도형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내부 중앙에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을 자동으로 형성하고 있어 그 전반적인 구성의 모티브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둘 다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 등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서로 유사하다.	
				
2006당671 2006허6808 2008후4028(심불)	반합성섬유직물, 직물용유리섬유직물 등	반사원단	이들 표장은 모두 음영만 다를 뿐 같은 모양인 둔각삼각형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마름모 도형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내부 중앙에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을 자동으로 형성하고 마름모 도형의 가로 방향으로 대칭되는 양쪽 꼭짓점을 연결하는 선을 추가로 그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확인대상표장의 직사각형의 검은색 바탕 부분은 흰색 선으로 위 마름모 도형을 표현하기 위한 배경처리에 불과하다) 그 전반적인 구성의 모티브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둘 다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 등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서로 유사하다.	
				
2006당672 2006허6488 2008후4011(심불)	반사경, 경고표시장치 등	반사원단	이들 표장은 모두 같은 모양의 둔각삼각형(이 사건 등록상표의 "◢"를 그 삼각형의 둔각과 예각의 차이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확인대상표장의 "◿"가 된다) 네 개를 상하좌우에 서로 대칭되게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마름모 도형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내부 중앙에 또 다른 작은 마름모 도형을 자동으로 형성하고 있어(확인대상표장의 직사각형의 검은색 바탕 부분은 흰색 선으로 위 마름모 도형을 표현하기 위한 배경처리에 불과하다) 그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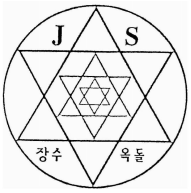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 구성의 모티브나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둘 다 '마름모 도형'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 등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서도 서로 유사하다.	
2006당371·372·376·378·379·380·384 2007허10231	가죽 끈, 개목걸이 등  (등록상표1)  (등록상표2)  (등록상표3)  (등록상표4)  (등록상표5)  (등록상표6)  (등록상표7)	침구류, 욕실용품 등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선사용상표3)  (선사용상표4)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선사용상표들과 제일 오른쪽의 토끼를 거북이로 대체하거나(선사용상표 1, 2, 4) 거북이를 새로 넣은(선사용상표 3) 정도와, 이 사건 등록상표 5, 6이 색채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선사용상표들은 홈드레스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의인화된 엄마토끼가 망토를 걸친 세 마리의 아기토끼들을 안으려고 하는 형상에서 유사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 1, 2, 3, 4, 7은 엄마토끼가 파란색 홈드레스를, 이 사건 등록상표 1, 3, 4는 세 마리의 아기토끼들이 빨간색 망토를 걸친 점에서 선등록상표들과 색채까지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선사용상표들은 의인화된 엄마토끼와 망토를 걸친 아기토끼들이라고 하는 공통된 모티브 및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갖게 되는 인상과 시각적 잔상이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된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7당1010 2008허2251	연필깎이, 문방구용자 등	고무지우개, 플라스틱지우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Miss Rabbit'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문자 부분은 미혼 여성의 성 또는 이름 앞에 붙이는 경칭으로서 '…씨, …양'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 'Miss'와 '토끼'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 'Rabbit'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들 단어가 분리되어 'Rabbit'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그 호칭 및 관념이 토끼를 의미하는 'Rabbit'으로 동일하게 된다.	
				
2007원9700 2008허3766	슈퍼마켓관리업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문자 부분 중 상단의 '700' 부분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선출원서비스표도 좌측의 'HAPPY' 부분과 우측의 '700' 부분이 도형화된 'Y'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좌우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HAPPY' 부분뿐만 아니라 '700' 부분으로도 호칭 및 관념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가 '700' 부분으로 관찰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700'으로 호칭 및 관념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7원6609 2008허3995 2008후3698(심불)	핸드폰 줄	키홀더, 목걸이 등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모두 "大長今"의 한글 발음인 '대장금'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2007원6181 2008허4776	반도체웨이퍼 제조장치, 반도체웨이퍼 세정장치 등	컴퓨터하드웨어, 컴퓨터하드웨어부품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iRiS' 부분만으로, 선등록상표는 'IRIS' 부분만으로 각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양 상표의 영문자 'iris'는 '아이리스' 등으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 또한 '홍채, 붓꽃' 등으로 동일하다.	
				
2007원8045 2008허5106	그림엽서, 노래책 등	서적, 잡지 등	선등록상표는 사전 상으로는 '링궈'가 정확한 발음이라 할 것이나(갑 제3호증), 일반 수요자들이 반드시 사전 상의 발음대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선등록상표를 '링구아'로도 호칭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가 '링구아'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고, 만약 선등록상표가 '링궈'로 호칭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 '링구아'의 '구아' 부분을 빨리 발음하면 '링궈'와 비슷하게 들리어 이 경우 역시 두 상표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관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에 있어서 '혀' 또는 '언어'의 의미를 가지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의미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2006당1389 2007허13292 2008후3438(상고취하)	골프화, 운동화 등	골프 관련 용품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M U S"와 한글 "머스"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상표로 그 중 "머스" 부분이 매우 작은 글자로 "M U S"와는 간격을 두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M U S" 부분이 하나의 요부라 할 것인데, 이는 선사용상표인 "M U S", "M. U. S"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상표이다.	
	M U S 머스	"M U S", "M. U. S"		
2007원9024 2008허4981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업무용(또는 가정용) 비디오게임 머신용의 게임프로그램이 기록된 메모리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Bubble Fighter"로나, 분리되어 앞 부분인 "Bubble"만으로,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BUBBLE BOBBLE"로나, 분리되어 윗 부분인 "BUBBLE"만으로 각각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모두 '버블'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이 있다.	
	Bubble Fighter	BUBBLE BOBBLE		
2007원9023 2008허4998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업무용(또는 가정용) 비디오게임 머신용의 게임프로그램이 기록된 메모리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버블파이터"로나, 분리되어 앞 부분인 "버블"만으로,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BUBBLE BOBBLE"로나, 분리되어 윗 부분인 "BUBBLE"만으로 각각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는 모두 '버블'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이 있다.	
	버블파이터	BUBBLE BOBBLE		
2006당3236 2008허2299 2008후2954(심불)	소아과 의원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아과 의원'과 비교대상서비스표 1의 '병원'은 모두 동일·유사한 관념을 형성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소아과 의원'은 넓은 의미의 '병원'의 한 종류에 불과하여, 치과,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의원을 지칭할 때도 '병원'으로 흔히 통칭하므로(경험칙), 위에서 살펴본 양 서비스표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양 서비스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예소아과 의원	예병원		
2007당1075 2008허2633 2008후3193(심불)	침대, 소파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모두 '잠자리'만으로 동일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상표가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단순히 '잠자리'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고, 선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역시 '잠자리'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이들 상표는 그 호	
	장수잠자리	잠자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2007당1613 2008허5311 2008후2893(심불)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촌", 또는 "등촌샤브칼국수"만으로 분리되어 인식, 호칭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등촌", 또는 "등촌샤브칼국수"만으로 분리되어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들 서비스표들이 "등촌" 또는 "등촌샤브칼국수"로 불릴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주광원 味家등촌샤브칼국수	등촌샤브칼국수		
2007원10030 2008허6093	비디오스크린, 영사기스크린 등	전자회로학습기, 제어용 시뮬레이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엔룩스"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emnux"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따라 "엠눅스"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그 호칭이 유사하다.	
	엔룩스	emnux		
2007원10032 2008허6109	비디오스크린, 영사기스크린 등	전자회로학습기, 제어용 시뮬레이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 "ENLUX"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따라 "엔룩스"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emnux"는 "엠눅스"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그 호칭이 유사하다.	
	ENLUX	emnux		
2006당3387 2007허12596 2008후3018(심불)	가스렌지가방,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등	이들 상표들은 표장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결합형태와 그 배열개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양 상표 모두 영문자 알파벳 'C'자를 극히 유사하게 변형한 도형을 기본도형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 'CC', 'CCC' 도형들을, 선등록상표는 'CC', 'CC', 'CC' 도형들(이들을 각 90°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C', 'CC', 'CCC'와 같이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거의 동일하다)을 결합하여 구성하면서 서로 방향만 상이할 뿐 전체적인 도형의 구성방법이나 모티브 등이 매우 유사하다.	
2006당2711 2008허231	골프화, 농구화 등	가방류, 신발류 등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각형 내의 큰 글자인 'SLAM' 부분에 있어서, 이들 양상표는 글자체가 완전히 동일하고 '슬램'으로 동일하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의 유사표장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SLAM advancedtachnology slamadvancedtachnology	SLAM ADVANCED TECHNOLOGY SPORTWEAR		
2007원8680 2008허668	반지, 귀걸이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위의 각 구성부분 중 "STEPHEN"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되는 경우에는 위 영어단어 "STEPHEN"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스티븐' 또는 '스테판'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스티븐' 또는 '스테판'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STEPHEN DWECK	STEPHEN WEBSTER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관념될 것이다.	
2007원8194 2008허4059 2008후2855(심불)	휠체어, 낙하산 등	생고무, 개스킷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Amore' 부분에 의하여 '아모레'로 또는 'Amor' 부분에 의하여 '아모르'로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ARMOR' 부분에 의하여 '아-머' 또는 '아-모르' 등으로 약칭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장단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어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Amore Amor	ARMOR CRYSTAL		
2007당2090 2008허4240	산업용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전기보일러, 전기온수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요부인 '강남' 부분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강남심야전기보일러	**강남심야전기온수기, 강남전기보일러, 강남태양열**		
2007원12067 2008허4875	포장용 종이제 포대 등		"PHOENIX"와 "CONTACT" 부분은 지구본 형상의 도형은 물론 도안화된 "P"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형 속에 있는 다른 영문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상하로 병기되어 있어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PHOENIX" 또는 "CONTACT"로 분리 인식, 호칭할 가능성이 높다. 선등록상표 또한 "PHOENIX" 부분이 그 왼쪽에 위치한 도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PHOENIX"만으로 인식, 호칭될 경우 그 관념과 호칭이 선등록상표와 동일하여 이들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2007원3882 2008허323 2008후2732(심불)	조끼, T셔츠 등/		선등록상표 2는 전쟁포로를 의미하는 priS-oner of war의 약자 또는 평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POW"만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외관이 일응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Paw"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영문자 "Paw"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파우', '포우' 또는 '포오'로 호칭될 수 있고, 한편 선등록상표 2는 영문자 "POW"의 한글식 발음에 의하여 '포우' 또는 '파우'로 호칭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Paw"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되는 경우 선등록상표 2와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POW		
2006원10920 2007허14240	젖병, 젖병용 젖꼭지 등	청진기구, 마취흡입용기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각각 'Chocolat' 부분과 'CHOCOLATE'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경우에, 영어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Chocolat' 부분을 그 영어 표기인 'chocolate'을 연상하지 않더라도 영어식 발음에 따라 '초콜릿' 또는 '초콜렛'으로 호칭하여 '초콜릿'으로 호칭되는 'CHOCOLATE' 부분과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양자의 의미도 '초콜릿'으로 동일하므	
	Tartine et Chocolat	CHOCOLATE TEX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로,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7원7412 2008허3391	크린싱크림, 선스크린로션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중 "COSMETIC"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고, 선출원상표 1의 "-1" 부분은 단순한 부가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ALEX" 부분에 의하여 '알렉스'나 '앨렉스'로, 선출원상표 1, 2는 각각 '알엑스'와 '엘렉스'로 호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는 전체 세 음절 가운데 단지 한음절의 초성 내지 중성이 'ㅇ'과 'ㄹ', 'ㅏ'와 'ㅔ'로 다르다는 점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다.	
		알엑스-1 (선출원상표1) 엘렉스 ELEX (선출원상표2)		
2006당946 2007허14059 2008후2855(심불)	금속제밸브(기계부품제외), 금속제수도관용밸브 등	수격방지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인 "NS-V"와 선사용상표인 "NSV"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하여 모두 영문 대문자 "NS-V"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외관이 유사하고, 위 영문 대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엔에스브이'라고 불릴 것이어서 호칭이 동일하다.	
				
2007당1132 2008허1517 2008후2589(심불)	구들장치가 되어 있는 의료전용침대, 구들장치가 되어 있는 의료용 물침대	전기이불(옥돌이 들어있는 전기이불에 한함), 전기침대(옥돌이 들어있는 전기침대에 한함)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요부인 '장수'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선등록상표 역시 문자부분의 요부인 '장수'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표장이 '장수'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그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2006당3259 2008허33 2008후2497(심불)	보통안경, 선글라스 등	코안경집, 선글라스 안경집 등	선등록상표 "ESPIRIT"는 'SPIRIT'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경우 'SPIRIT'는 "SPIRIT" 중 'I'자 하나가 생략되어 있으나 'P'자와 'R'자의 세로획에 의하여 그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고, 관념에 있어서도 같은 의미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SPIRIT"은 '스피리트' 또는 '스피릿'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ESPIRIT"의 'E'부분이 'E'를 표기하거나 도형화한 것으로 다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SPIRIT"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두 상표는 모두 그 호칭되는 음절수에 있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이 '피'와 '프'의 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세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청감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2007당1526 2008허330 2008후2428(심불)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김치, 송이버섯 등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문자의 구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관념에 있어서 양 표장은 '빙고'로 호칭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은 대히트', '빙고게임' 등의 의미로 관념되어 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BINGOBINGO	빙 고 BINGO (선등록상표)		
2007원5904 2008허1661 2008후2305(심불)	전력 제어용 케이블, 선박 전력 제어용 케이블 등	KS인증을 획득한 전기제품	이 사건 출원상표 'KS-CLF'는 'KS-'와 'CLF'가 하이픈(-)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KS-' 또는 'CLF'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KS-'에 의하여 약칭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인 'KS-'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	
	KS-CLF	KS(한국산업규격표시)		
2007당320 2007허12558	석유스토브, 난로 등	전기스토브 등	선출원상표는 "FUJIKA" 부분만으로 또는 "후지카"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FUJIKA" 또는 그 발음의 한글 표기인 "후지카"로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게 되므로, 이들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FUJIKA	FUJIKA 후 지 카		
2007원11165 2008허2619	모직재킷, 방한재킷 등	스커트, 재킷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루이스' 또는 '루이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MS.'와 'LOUISE'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구성부분 중 'MS.'가 여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르는 경우에 붙이는 경칭으로서 식별력이 약하여, 'LOUISE' 부분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루이스', '루이' 또는 '루이제'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LUISE	MS. LOUISE		
2006당1390 2007허12664	청바지, 사파리 등	티셔츠, 슬랙스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그 도안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의 외관, 호칭은 선사용상표 "M·U·S", "MUS"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MUS	"M·U·S", "MUS" 등		
2006당2696 2008허1791	가죽신, 고무신 등	반지, 사진용섬광분 등	선등록상표 1의 핵심요부인 "POLO"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POLO"부분을 강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POLO"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분으로 분리관찰된다 할 것이고, 그러할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영문자 알파벳 8자 중에 7자가 동일하고 중간부분의 모음 1개만 차이날 뿐이어서, 선등록상표 2와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6당2815 2007허12763	건축 및 구축물 모형, 모형 제작용 점토 등 	모형물 및 모형 제작용 재료, 게임용품 및 장난감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된 문자상표이고 피고의 등록상표는 '상의(上衣) 모양의 도형'의 아래 쪽에 'deltasand'라는 영문자를 겹치게 배치한 결합상표이므로, 그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	
2007원987 2008허1395 2008후2152(심불)	스웨터, 양말 등 	무두질제, 피혁용 침투제 등 	모두 '드라이워크' 또는 '워크드라이'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문자부분으로 분리되어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모두 leather S-hoeS-(가죽신) 등 신발류에 속하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건조한 상태로 걸을 수 있는 신발', '걸을 때 발을 건조하게 유지시켜 주는 신발' 등으로 관념된다 할 것이고, 'WALK'와 'DRY'의 배열 순서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별개의 관념이 창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2006당3168 2007허12213	교과서 출판업, 서적 출판업 등 	호텔업  (선사용서비스표1) (선사용서비스표2)  (선사용서비스표3_	문자의 종류나 수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직감되는 외관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더블유 호텔'로 호칭, 관념될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의 호칭, 관념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7원365 2007허12145	만년필, 볼펜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FORMULA" 또는 "Formula"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7원6160 2008허2855	전류제어기, 달력 등	벽지, 포스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자 "PHOENIX"부분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휘닉스벽지 PHOENIX WALL COVERING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7당758 2007허12619 2008후1982(심불)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리무버 등	위스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이들을 구성하는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모두 '잭다니엘스'라고 호칭되고, '잭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또는 '잭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그 호칭 및 관념도 동일하다.	
	JACK DANIELS	JACK DANIEL'S		
2007당970 2007허11876 2008후2022(심불)	오데코롱 등	오데투왈렛	이 사건 등록상표는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인대상표장 역시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MOUR"라는 영문자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인 "AMOUR"로 서로 동일하다.	
	AMOUR 아모레			
2007당2554 2008허2053 2008후1890(심불)	차량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위성이용 항법장치 등	전자사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식별력이 강한 "cmp"만으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확인대상상표는 식별력이 강한 "CMP"만으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씨엠피'만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cmp MULTIPLAYER	RD-CMP2100R		
2007원3066 2008허1760	등산화, 방한용 장갑 등	등산화, 방한용 장갑 등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라고 할 수 있는 "POLAR" 부분만으로 약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양 상표의 호칭, 관념은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POLAR SPORT	ONE POLAR		
2007원5347 2007허13544	Electrolysers(electrolytic cells, 전해조)	가정용 정수기, 에어컨디셔너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인데, 영어의 접두어로서 '둘, 쌍, 복(複), 중(重)'의 뜻을 갖는 'bi-'가 우리말로는 '바이'로 발음되는 점과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로 '바이택'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BiTAC	바이택	상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7원8110 2008허1944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꽃병받침 등	침대커버, 침대보포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안화된 부분과 "creation" 부분 및 "asb" 부분의 결합 정도가 느슨하고 "creation" 부분이 쉽게 눈에 띄므로,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되고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선등록상표 1은 "CREATION"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부분의 다른 부분과의 결합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되어 호칭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선등록상표 2 역시 "CREATION" 부분이 그 앞부분과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비교적 긴 표장이므로, "CREATION"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되고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고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creation asb	CREATION absorba (선등록상표1) MANSTAR CREATION (선등록상표2)		
2006당2674 2007허5864 2007후4601(파기) 2008허2961(환송)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들 상표는 모두 세 음절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의 전부 및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각각 "마르"와 "ㅅ"으로 같고, 양 상표의 마지막 음절의 일부 차이가 전체적인 청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그 관념과 외관을 고려하더라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마르샤	마르셀		
2006원10734 2007허13407	과자용 향미료(精油), 음료용 향미료(精油) 등	비의료용방향제, 방취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영문 'Inko'에 'ii'가 추가되고, 첫 글짜 'I'가 점 없는 소문자 'i'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의 문자체가 유사하고 'ii'가 글자 끝에 덧붙어 있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3음절인 '인코이'로, 선등록상표는 2음절인 '인코'로 호칭될 것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인코' 뒤에 '이'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고, '인'이라는 발음 다음에 곧바로 '코이'가 함께 길게 발음되어 '코이' 부분 발음이 선등록상표의 '코'와 비교하여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상표의 호칭을 들으면 두 상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	
	inkoii	Inko		
2007당537 2007허12879	광학렌즈, 망원경 등	컴퓨터,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선등록상표 중 'internet' 부분과 'DIGITAL'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요부가 될 수 없어,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DIOS'라고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등록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DIOS	intern@t DIGITAL DIOS	상표와 동일한 문자이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유사하다.	
2006당751 2007허9538	알로에시럽, 알로에액 등	분유, 우유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의 요부(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의 요부도 될 수 있다)는 '남양'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남양알로에	남 양		
2007원2547 2008허897	팬츠, 자켓 등	가죽신, 샌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영문 'FOREVER'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 1의 'SPORT' 부분은 지정상품인 '육상경기용화, 체조화, 축구화'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가 'FOREVER'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외관·관념 및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다.	
	FOREVER 21	FOREVER SPORT (선등록상표1) FOREVER (선등록상표2)		
2007원7619 2008허682	스캐너, 팩시밀리 등	스캐너, 전자복사기 등	선출원상표가 "A VISION"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에는, '어비젼', '아비젼', '애비젼'으로 호칭, 관념될(비록 조어이나 "A"에 비하여 "vision"의 식별력이 높아 '전망', '비젼' 등으로 관념되기 쉽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Avision	A VISION AHEAD		
2005당1982 2006허5829 2007후180(파기) 2008허5908(환송)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등	광고대행업, 라디오 광고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로 표기된 바에 따라 '세티즌'으로 호칭되고, "CITIZE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는 '시티즌'으로 호칭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는 호칭되는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고, 세 음절 중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전부가 'ㅅ'과 '티즌'으로 같으며,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ㅔ'와 'ㅣ'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	
	"세티즌"	"CITIZEN"		
2005당1983 2006허5812 2007후197(파기) 2008허5915(환송)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등	광고대행업, 라디오 광고업 등	"Cetizen"에 의하여 '세티즌'으로 약칭되고, "CITIZE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는 '시티즌'으로 호칭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는 호칭되는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고, 세 음절 중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전부가 'ㅅ'과 '티즌'으로 같으며,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ㅔ'와 'ㅣ'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	
	Cetizen.com Mobile Opinion Leader	"CITIZEN"		
2007당1346 2007허7082 2008후279(파기) 2008허5991(환송)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 제외), 이불커버 등	이불, 요 등	모두 이불을 갠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점, 전체적으로 검은 선을 구부려 포갠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영문자 'C'자 형상의 흰 부분의 위 끝은 검은 선으로 막혀있고, 아래 끝은 열려 있는 점, 윗부분과 밑 부분이 직선 또는 직선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의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하다.	
2007원5699 2008허1425	스피커, 증폭기(앰프) 등	MP3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이들 상표는 영문자를 약간 도안화한 것이나 그 도안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므로, 그 글씨체와 색상이 약간 다르고 영문자 "e"가 있는지 없는지 등의 근소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NaviOne	naviON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유사점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내비원", "나비원"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내비온", "나비온" 등으로 각각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호칭될 경우 그 청감이 아주 유사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2006당2924 2007허9613 2008후1630(심불)	귀걸이, 목걸이 등	휴대폰줄	이들 상표는 "大長今"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大長今"의 한글 발음인 '대장금'으로 불리고, 피고가 방영한 드라마의 제목 또는 그 여주인공의 이름인 '대장금'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大長今 대장금	Korea style Mobile phone Accesory 大長今 www.catchstar.net / www.starppl.co.kr		
2006당2563 2007허9750	스커트, 자켓 등	의류, 신발 등	양 날개를 펴고 착륙하고 있는 새라는 공통된 모티브 및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에 대해 직관적으로 갖게 되는 인상과 시각적 잔상이 매우 유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된다.	
				
2006당2789 2007허7464 2008후1371(심불)	키홀더, 괘종시계 등	팔목시계, 자명종 등	비교대상상표는 영문자 'SODA'와 'DEUX'를 간격을 두고 결합한 문자상표인데, 위 각 부분은 사전에도 없는 조어로서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호칭되거나 'SODA' 또는 'DEUX'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소다'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SODA	SODA DEUX		
2006원10873 2007허13582 2008후1395	투약용 디스펜서, 가스분석기구 등	세균배양기, 시험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 "SEWON"에 의하여 "세원"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인식될 수도 있다. 선등록상표 또한 문자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는 경우 그 중 맨 앞 부분 "Sewon"에 의하여 "세원"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인식될 수도 있다. 결국 양 상표가 모두 "세원"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SEWON CELLONTECH 세원셀론텍(주)	SPL Sewon Plastic Labware		
2007당403 2007허8061	샤프펜슬, 연필 등	샤프펜슬, 연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마이크로리스' 또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마이크로'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후자인 경우에는 '마이크로'로 호칭, 관념되는 비교대상상표들과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마이크로리스	마이크로 (비교대상상표1) MICRO (비교대상상표2)		
2007당404 2007허13681	샤프펜슬, 연필 등	샤프펜슬, 연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마이크로리스' 또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마이크로'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후자인 경우에는 '마이크로'로 호칭, 관념되는 비교대상상	
	마이크로에스피	마이크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비교대상상표1) MICRO (비교대상상표2)	표들과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2006원9138 2007허9279 2008후1357(심불),	간행물광고업 등	간행물광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다.	
				
2007당104 2007허10774 2008후1241(심불)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애완동물용 의류 등	보통 안경(spectacles -ordinary spectacles), 선글라스(sunglasses)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중 “VERSACE” 부분은 문자 중간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과 같은 크기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일견 알파벳 “O”로 직감됨에 따라 “버로(베로)에이스”나 “베로아체”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VERSACE" 부분으로 인하여 “베르사체”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VERSACE (선등록상표1) Versace (선등록상표2) GianniVersace (선등록상표3) GIANNI VERSACE (선등록상표4)		
2005원5928 2006허4222 2006후3335(파기) 2008허4370(환송)	향수, 화장비누 등	신사복, 와이셔어츠 등	사건 출원상표가 하나의 요부인 ‘ROS-E’ 부분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3 ‘ROS-E’와 대비할 때 호칭이 ‘로즈’로 같고 관념도 ‘장미’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지정상품도 열쇠고리 등으로 동일·유사하고, 선등록상표 2 와 대비할 때에도 호칭(로즈)과 관념(장미)이 동일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요부인 ‘FANFAN’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과 대비하여 볼 때 호칭이 ‘팬팬’ 또는 ‘판판’으로 유사하다.	
	ROSEFANFAN	PANPAN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ROSE (선등록상표3) ROSE (선등록상표4)		
2006당2000 2007허10682 2008후1166(심불)	홈쇼핑을 통한 돌침대판매대행업, 홈쇼핑을 통한 돌침대판매알선업 등	침대, 비의료용 돌침대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장수”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그 요부인 “장수”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장수돌침대 ★★★★★	시 골 장수촌 옥돌		
2006원9823 2007허9330 2008후1043(심불)	Pencil lead holders(연필심 홀더), pencils (연필) 등	루스리프 용지, 폴리프로필렌제 루스리프용 시트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를 포함하여 '빅프로플러스' 또는 위 기호 부분을 생략하여 '빅프로'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빅프로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빅프로'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는 '스'의 유무에 따른 차이밖에 없어 서로 유사하다.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할 정도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전혀 다른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BIC PRO +	BIGPROS		
2007원1611 2007허11654 2008후1036(심불)	의류(clothing), 모자(headgear) 등	단화, 편상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새(그림)', '새(그림)표'로 호칭될 수도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새의 종류 중 뒷목덜미에 깃이 솟아 있는 특징을 보고 '앵무새'로 호칭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앵무새'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 2와 호칭이 동일하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새' 또는 '앵무새'로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2와 관념이 동일하다.	
		앵무새		
2006원11072 2007허12107 2008후1050(심불)	화장지, 직물제 가구용 커버 등	맛사지용 오일, 베이비오일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중 "CHELSEA"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CHELSEA" 부분과 선등록상표 2·4·8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 2·4·8과 유사하다.	
		CHELSEA (선등록상표2) CHELSEA (선등록상표4,8)		
2006원9080 2007허11029	jute fabric(황마직물), hemp fabric (대마직물) 등	면직물, 대마직물 등	'MARIO' 부분과 'ZEGNA' 또는 'CAPRA' 부분이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양 상표가 일부 구성 부분인 'MARIO'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서로 동일하다.	
	MARIO ZEGNA	MARIO CAPRA		
2005원3621 2006허6792 2006후4086(파기) 2008허2978(환송)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등	수출입업무 대행업, 텐트 및 스포츠레저용품 도매알선업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	
	DRAGON QUEST	QUEST (선등록서비스표1, 선등록상표1,4,5) (선등록서비스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3,6)		
2005원3621 2006허6792 2006후4086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향이 녹음된 광디스크 등	수출입업무 대행업, 서적, 신문, 실험용 도자재기구 등	'DRAGON'과 'QUEST' 부분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호칭도 짧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중 'QUEST' 부분이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 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	
	DRAGON QUEST	QUEST QUEST 퀘 스 트		
2006당3206 2007허9323 2008후651(심불)	란도셀, 명함케이스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비교하면, 그 글꼴만 다를 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안 부분은 선등록상표의 도안화된 문자 부분을 상하 또는 좌우로 뒤집은 것과 형상이 아주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다.	
	ee eve & eve	GG		
2007당362 2007허10958	가정용 정수기, 가스렌지 등	가정용 정수기	선등록상표가 "웰스"로 호칭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웰시스"와 대비하여 보면,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모두 "웰"과 "스"로서 동일한데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만 있는 가운데 음절인 "시"도 마지막 음절 "스"와 가까운 발음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청감이 비슷하다.	
	wellsys	wells		
2006원9616 2007허11432	soaps powder, liquid soaps 등	물비누, 미용비누 등	"Sil"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구성상 "Sil"만으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는 양쪽 상표 모두 물비누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도 없다)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다.	
	Sil	Sil		
2006원10642 2007허12992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점업 등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부분 "L·Bean"과 "El Bean"(또는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한글부분 "엘빈")에 의해 생기는 호칭,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Café de L·Bean	El Bean ESPRESSO COFFEE 엘빈		
2006당1946 2007허9453	비 수송기계기구용 압축공기기관	건조기, 제습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GFG"의 영어발음대로 "지에프지"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영문자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선등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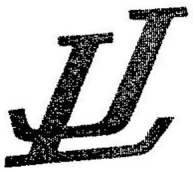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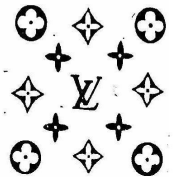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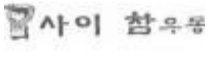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표는 도형부분과 영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문자부분 중 "HAYOUNG KOREA"는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잘 보이지 않아서, 일반수요자들은 중앙부분에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된 영문자 "GFG" 부분만으로 관찰하기 쉽고, 그럴 경우 선등록상표는 "지에프지"로 호칭될 것이다.	
2006원10115 2007허9705	행주걸이, 침실용 간이변기(요강) 등	행주,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등	일반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보는 순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는 것보다는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전반부와 식별력이 강한 앞의 단어 'Antique'에 의해 인식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양 상표는 공통되는 'Antique'에 의해 호칭 및 관념될 경우에 서로 유사하다.	
	Antique Lock			
2006원8648 2007허10491	전기가위(상품류 구분 제07류), 개인용 비전기식 이발기 등	lass having an electrical conductor(전도체 유리), electric locks(전기자물쇠) 등	양 상표의 외관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크다. 선등록상표가 "벤즈"와 같이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과 두 번째 음의 중성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강세를 앞에 두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상표의 호칭의 청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BENZO	BENZ		
2006원10954 2007허9668	공(空) 비디오테이프, 공 오디오테이프 등	케이블반송기계기구,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부의 영문자부분인 "dvb"와 "DVB"에 의해 생기는 호칭,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원10108 2007허9637 2008후453(심불)	안경사업	인화지(상품분류전환등록시 상품류구분 제1류), 모형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신태양"을 간격 없이 일련으로 결합한 표장으로서,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 등을 거느리는 해"로 인식될 것이고, 이러한 "태양" 앞에 "신"을 결합하였을 경우 "새로운 태양"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관념에 있어 "신태양"은 태양과 유사하고, 선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태양"으로 분리되어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관념에서 극히 유사하다.	
	신태양			
2007당831 2007허7778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학습지, 녹음된 테이프(영어테이프)	외관이 매우 흡사하고, 호칭이 '업 앤드 업'으로 동일하며,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관념 또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UP & UP	UP&UP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382 2006허11558 2008후149(심불)	가정용 정수기	침구류, 욕실용품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파란색 홈드레스에 흰색 앞치마를 두른 의인화된 엄마토끼가 빨간 망토를 걸친 세 마리의 아기토끼들을 안으려고 하는 형상과 색채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제일 오른쪽의 토끼를 거북이로 대체하거나(선사용상표 1, 2, 4) 거북이를 새로 넣은(선사용상표 3)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의인화된 엄마토끼와 망토를 걸친 아기토끼들이라고 하는 공통된 모티브 및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갖게 되는 인상과 시각적 잔상이 매우 유사하다.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선사용상표3)  (선사용상표4)		
2006원7974 2007허7648	의료영상검토워크스테이션, 의료진단영상의 적용을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의료진단영상의 적용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ADVANTAGE'만으로, 선등록상표는 'ADVANTAGE' 또는 'GEN'으로 각각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양 상표는 'ADVANTAGE'로 동일하게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ADVANTAGE WORKSTATION	ADVANTAGE GEN		
2006원8929 2007허9170 2008후118(심불)	거들, 브래지어 등	스웨트셔어츠, 티-셔어츠 등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에 있어 "magicS, 매직스", "MAGIC", "magic, 매직"은 대비시 전체적 부분으로서 포함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대비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공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역시 유사하다.	
		 (선등록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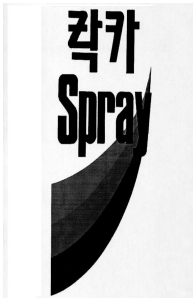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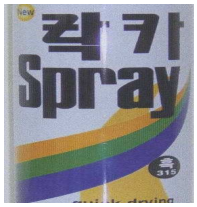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2007당752호 2007허8863	장롱, 책상 등	가구	확인대상상표의 경우 "아동학생가구, 침구전문기업" 부분은 사용상품이나 업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은 표장임을 감안하면, "사사앤톰과제리", "사사", "톰과 제리" 등으로 분리 인식·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호칭들 중 "사사앤톰과제리"는 상당히 긴 호칭이므로, 그 보다는 "사사" 또는 "톰과 제리"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높다.	
				
2006당2020 2007허7600 2007후5154(심불)	단화, 샌달 등	의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알선업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한글 "쿠허스"가 영문자의 발음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한글부분에 의해 "쿠허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쿠부스", "쿠버스", "커부스", "커버스"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쿠허스"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가 "쿠버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서비스표)는 모두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고 첫음절과 끝음절이 각각 "쿠"와 "스"이고 둘째음절의 모임이 "ㅓ"로 동일하며, 둘째음절의 자음만이 "ㅎ"과 "ㅂ"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CUHUS 쿠허스	CUBUS		
2006원862 2007허5611 2008후194(심불)	애완동물용장난감,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 등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등	이들 표장은 활자의 크기는 상이하나, 동일한 영문 철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서로 유사하고, 호칭도 위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인 '리움'으로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LEEUM	LEEUM		
2007원17 2007허8405	녹차, 커피, 코코아 등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샘'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새암'과 '샘'은 중간에 '아'가 있고 없는 차이로 글자 수가 다르나 첫 음 '새'와 끝 음 'ㅁ'이 동일하여 이를 빠르게 발음할 경우 제2음절과 제3음절이 혼합되어 발음되는데다가,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샘'으로 들릴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산샘'의 청감과 비슷하게 호칭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념, 호칭은 동일·유	
	산샘	산새암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사하다	
2007원1259 2007허7143 2008후19(심불)	거품목욕, 가죽쇼핑가방 등 	가죽제 상자 , 가죽신 등 	모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독수리'로 직감되어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동일·유사한 상표이다.	
2006원7300 2007허6799	운동화, 신사복 등 CITIZENS OF HUMANITY	양산, 슬리퍼 등 CITIZEN (선등록상표 1) CITIZEN (선등록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 중 "CITIZENS"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의 "CITIZEN"과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당2157 2007허4168 2007후4809(심불)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냉면전문식당업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각 그 요부인 '장비' 부분에 의하여 약칭,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당1932 2007허5000 2007후4823(심불)	알콜성 과일엑기스, 아라크(Arak) 술 등 五粮液	소주, 고량주 등 五糧오량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의 한자 부분에 "진액, 즙"이란 뜻을 가진 "液"을 부가한 것으로 그 관념에 있어서 액체인지 아닌지 정도의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역시 선등록상표의 호칭에 "액"이 더 붙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호칭이 비슷하므로, 이들 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	
2006원9646 2007허5505 2007후5161(심불)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ACCESS	카메라, 브르터스칩 등 AXESS	이들 상표는 모두 "엑세스" 또는 "악세스"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선등록상표의 "X" 대신에 "CC"가 들어간 셈이어서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도 일부 유사하여 이들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5당3068 2007허2582 2007후4748(심불)	알로에가 함유된 사이다, 알로에가 함유된 탄산수 등 남 양 알로에팅	알로에시럽, 알로에액 등 남양알로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3의 '남양알로에'에 '팅'이 추가되고, '남양' 부분과 '알로에팅'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는 '남양알로에'라는 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팅'은 특별한 관념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어서 선등록상표 3과 관념의 차이가 없고, 전체상표 6음절의 문자 중 한 글자에 불과하여, 호칭 역시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3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6당750 2007허3387 2007후4755(심불)	알로에즙, 알로에 등	우유, 발효유 요구르트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중 문자 부분의 요부(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의 요부도 될 수 있다)는 '남양'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남양알로에	남 양		
2005당3067 2007허2575 2007후4779(심불)	비알콜성 과일쥬스(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함)[이하 '주우스' 또는 '쥬스'는 바른 표기인 '주스'로 표시한다], 비알콜 칵테일 음료(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함) 등	알로에시럽, 알로에액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3의 '남양알로에'에 '生'이 추가되고, '남양' 부분과 '알로에生' 부분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는 '남양알로에'라는 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알로에生'은 알로에가 신선하다는 의미여서 '生' 부분의 추가로 인하여 '알로에'와는 다른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 3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남 양 알로에生	남양알로에		
2007원856 2007허6706	피자전문식당체인점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있는 중요부분은 'BINGO' 및 '빙고'이다.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자빙고 PIZZA BINGO Take Out 죽석피자전문점-PIZZA BINGO	BINGOBINGO		
2006원6461 2007허4922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서양음식점경영업 등	부동산임대업, 쇼핑센터관리업, 사우나업 등	'bistro'와 'd°'로 분리되어 그 중 'bistro'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수 있거나 또는 'd°' 부분이 영문 알파벳 소문자 1자와 온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 '°'가 결합된 간단하고 흔한 표시이어서 전체로서 'bistro d°'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bistr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비스트로'로서 동일하고 관념도 동일하다.	
	bistro d°	BISTRO 비 스 트 로		
2006원8405 2007허5987	뉴스레터, 신문, 잡지 등	만화영화, 영사된 필름 등	'net'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ARENA	Arenanet		
2006원3319 2007허5338 2007후4670(심불)	립스틱, 마스카라 등	나리싱크림, 립스틱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 "MAC" 혹은 "PREP + PRIME" 등으로 호칭 및 관	
	MAC PREP + PRIME	PREP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 PREP"만으로도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 PREP"만으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일치하게 된다.	
2006당232 2007허5246	휴대용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등	통, 포대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및 선등록상표 2의 요부로 볼 수 있는 ". "과 대비하여, 영문자 2자를 모노그램화 하여 겹쳐놓는 방법으로 도형화한 모티브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의 전체적인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2005원7253 2006허8293 2007후692	서양주사위놀이구, 게임용 공 등	가정용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카메라 등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는 'MANSION' 부분이라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이를 영문자 'LUIGI' S'와 'MANSION'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그 중 'MANSION'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오락용구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MANSION' 부분이 'LUIGI' S' 부분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사회에서 선등록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 또는 'LUIGI' S'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고, 'MANSION' 부분만으로는 호칭, 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MANSION ENTERTAINMENT	LUIGI'S MANSION		
2006원10526 2007허6249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 인조손톱 등	라벤더유, 스킨밀크, 화장용탈지면 등	전체적, 이격적, 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	
	Ipum	Ipsum		
2006원5410 2007허5727	간이식당업, 뷔페식당업 등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부분과 하단의 문자 부분인 'FOODCENTER'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3041 2007허3882 2007후4014(심불)	쌀 해맞이쌀		양 표장은 외관과 호칭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호칭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특히 관념에서 극히 유사하여, 양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우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2006당3273 2007허3851 2007후3899(심불)	물리요법장치, 의료용 신체훈련장치 등 마사이워킹	신발 마사이족워킹슈즈	확인대상표장이 "마사이"와 "마사이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에, 아프리카 동부 케냐와 탄자니아 경계의 초원에 사는 주민을 의미하는 "마사이" 또는 "마사이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2007원529 2007허3950	Agates, Alarm clocks 등 SUPERMECCANICA	손목시계, 시계팔찌 등 ELLIPTICA MEKANIKA	'super'는 '최고급의, 훌륭한, 멋진' 등의 의미를 지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이므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중 "**SUPER**" 부분을 그와 같은 의미로 직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위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메카니카' 혹은 '메까니까' 등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 상표는 모두 '메카니카'로 호칭되어 거래에 놓여질 가능성이 충분한데, 양 상표의 외관은 다르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2006원8067 2007허3097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 리무버, 눈썹용 연필 등 STELLA MCCARTNEY	향수, 일반화장수, 비의료용 목욕/샤워용 겔 등 STELLAR	"STELLA"부분은 표장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구성부분으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선뜻 그 의미가 도출되지 않으며, 이를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이름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아주 흔하게 알려진 이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성질표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구성부분이다. 출원상표가 "스텔라"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1의 호칭인 "스텔라"와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스텔라라는 여성의 이름 등과 같이 유사하게 형성된다.	
2006원4555 2007허4410	복권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은행업 등 넥슨	기통신서비스업, 공적 또는 사적 성격의 다른 통신서비스업 등 NEXEON	선출원등록서비스표가 '넥션', '넥선', '넥슌'으로 호칭되는 경우, '넥션', '넥선', '넥슌'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인 '넥슨'은 모두 2음절로 발음되고, 첫 음절의 발음이 '넥'으로서 동일하며, 둘째 음절의 발음도 초성과 종성이 각 'ㅅ'과 'ㄴ'으로 동일하고, 중성인 모음만 서로 다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발음할 때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당2777	래커, 청동래커		문자와 도형 부분의 각 구성 및 상호 배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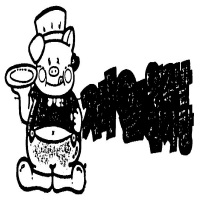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7허5215 2007후3967(심불)			등이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두 표장은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락카'와 'Spray'가 상·하로 병기되어 있어서 '락카' 또는 '락카 스프레이'로 호칭될 것이므로, 두 표장은 호칭이 서로 동일하다.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분무방식으로 뿌리는 래커'로 관념되므로, 두 표장은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2005당3111 2006허11619 2007후1879	알루미늄 새시, 알루미늄의 주물, 알루미늄 합금의 주물 등	금속제 난간, 금속제 문, 금속제 창문틀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남성알미늄 NAMSUNG ALUMINUM			
2006당724 2007허3042	등산백, 배낭 등	예복, 슈트 등	선등록상표는 미국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상표로서 사람의 이름과 성(姓)으로 각각 인식되는 영문자 "PERRY"와 "ELLIS"가 띄어 쓰여 결합된 문자표장임을 알 수 있는바, 각각 그 식별기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PERRY"와 "ELLIS"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ELLIS"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PERRY ELLIS		
2006원10151 2007허4717	감자튀김, 감자프레이크, 건조야채 등	김밥, 초밥, 농산물 건강보조식 등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가 "에스지에스"로 축약되어 호칭될 경우에 그 호칭이 동일함은 물론이고, 선등록상표가 "에세스지에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양 상표에는 "에스지에스"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선등록상표의 "에세스"부분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에스"부분은 그 청감이 서로 비슷하므로 양 상표의 전체 호칭은 유사한 범위 내에 있다.	
		SSGS		
2006당1188 2007허1886	단화, 비닐화 등	단화, 야구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의 전체적인 구도가 좌측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다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형상도 초승달이나 갈고리 형상과 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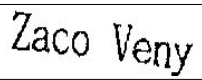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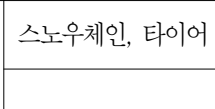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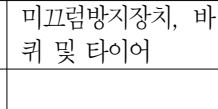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1845 2007허3295	전기자물쇠, 감시카메라 등	홈오토메이션기기,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	home과 wiz의 배열 순서를 달리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반수요자가 각각 다른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이들 상표를 호칭할 경우 이들 상표의 구성부분의 배열 순서에 혼동을 일으켜 호칭을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상표를 마법사(또는 귀재)와 집(또는 가정), 마법사의 집, 집에 관한 마법사 등의 의미로 관념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WizHome	HOMEWIZ		
2006당400 2007허1527 2007후3547(심불)	샤워기, 세면기 등	절수전자밸브의 발 스위치	두 상표를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 중 '투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투 - 원'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 중 'TWON' 부분도 그 옆에 '(주)투원테크'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어 언뜻보면 '투원'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투 - 원'과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투 - 원	TWON (주)투원테크		
2006원6412 2007허4625	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첫 부분이자 주요부분의 하나인 "ANGEL"만으로 인식되고 "엔젤"만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분리 인식·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들 표장은 유사하다.	
	ANGEL CAT SUGAR	ANGEL		
2005원6044 2006허7979 2007후951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선출원상표·서비스표가 "Lemon"과 "Ball"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양 단어의 결합으로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의미가 생기는 경우도 아니며, 거래실정상 선출원상표·서비스표가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문자 전체에 의해서만 아니라 "Lemon"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다.	
	LEMON	LemonBall		
2006원6698 2007허2445	가스레인지가방, 가죽 끈, 등	애프터셰이브로션, 화장용 수렴제 등	각각 그 식별기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VIKTOR"와 "VICTOR"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VIKTOR&ROLF	VICTOR ALFARO		
2006당2460 2007허4267 2007후3349(심불)	소시지제조용 창자, 모피 등	원피, 유혁 등	"amore"는 피고에 의하여 1964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다수 상품에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광고되어 온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저명상표 "amore"의 뒷부분에 "amo"를 덧붙이거나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mor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칭·	
	amoreamo 아모르아모	amor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관념될 수 있다.	
2006원5386 2007허1176 2007후3271(심불)	콘택트 렌즈	eyeglasses, sunglasses 등	ACUVE' 부분과 'OASYS'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OASYS'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되는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호칭이 유사하다.	
	ACUVUE OASYS	OASIS		
2006원4372 2007허2094	가죽신, 단화(shoes), 등산화 등		문자 전체에 의하여 '써프 보드 베어' 또는 '써프 베어 보드'로 호칭되고, '파도타기 하는 곰'으로 관념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관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인 'BOARDS'를 생략한 채 '써프 베어'로 호칭되고, '파도타기 하는 곰'으로 관념될 수도 있다. 출원상표가 'SURF BEAR'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선출원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Surf Bear		
2006원6722 2007허1473 2007후3103(심불)	가공된 인삼, 딸기와인 등	스타우트, 샴페인 등	비교적 큰 글자로 표기된 것을 중심으로 프랑스어식 혹은 영어식으로 '라 꼴렉시옹 데 셰프', '라 콜렉션 데스 셰프', '르 꼬르동 블뢰' 혹은 '코르돈 블루' 등으로 호칭 및 관념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마르텔' 혹은 '코르돈 블루' 또는 이들을 결합한 '마르텔 코르돈 블루'로 호칭 및 관념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호칭과 관념이 일치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2006원1738 2007허3301	치킨판매 대행업, 치킨판매 알선업, 호프전문점 경영업 등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 조리대행업, 닭요리 준비 조달업 등	이사건 인용상표는 "닥스"가 반복되어 구성된 것으로 "닥스"로만 분리되어 인식, 호칭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거의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닭스	닥스닥스		
2005당2487 2006허9074 2007후2834	핸드백, 가죽신 등	구두	확인대상표장은 입체의 형상을 가지는 장식물이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있어서는 가장 유사성이 큰 평면으로써 대비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의 평면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2개의 오메가 문자(Ω)를 1개의 막대가 연결하는 형태인바, 막대 형태의 길이와 두께, 오메가 문자의 직선 부분의 길이, 막대의 연결 부분의 곡선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 및 결합의 모티브가 유사한 점으로 고려하면 양자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당935	접착패드, 사무	비직물제 꼬리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포스틱'으로 호칭되고,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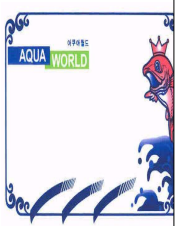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7허1398	용 패드 등	비직물제 접착라벨 등	등록상표가 '포스팃'으로 호칭될 경우에 두 상표는 첫 음절의 '포'와 중간 음절의 '스', 그리고 마지막 음절의 초성자음('ㅌ') 및 중성모음('ㅣ')까지 모두 동일하다.	
	포스틱	POST-IT		
2006원6201 2007허920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게임센터제공업, 오락설비공급업 등	온라인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모바일 게임서비스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eXtrem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각각 영어단어 "eXtreme" 및 "Extrem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그 한글발음인 '익스트림'으로 호칭되고 '극도의', '과격한'이라는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Xtreme Soccer	Extreme Skateboard		
2006원717 2006허11688	데이터통신업 등	데이터통신업 등	ANGEL 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외관은 상이하지만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ANGEL 유엔젤㈜	엔젤아이		
2006원1247 2007허1060 2007후2476(심불)	MP3 플레이어용 디스크드라이브, 가정용 전자제품을 위한 디스크드라이브이브 등	인쇄기판, 직류발전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WESTERN"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호칭될 것으로도 보이고, 그와 같이 인식·호칭될 경우 그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들 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WESTERN DIGITAL	WESTERN ELECTRIC (선등록상표1) WESTERN ATLAS (선등록상표2)		
2006당1042 2007허661	과실시럽, 과실액 등	매실차, 홍차 등	'설매'만으로 약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매'가 한자 '雪梅'의 음역으로 인식되는 경우 '눈과 매화' 또는 '눈 속에 피는 매화'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선출원상표인 '설중매(雪中梅)'의 '눈 속에 피는 매화'의 의미와 통하므로, 두 상표는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설매	雪中梅 설중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1322 2007허2254	화장지, 종이제 쓰레기봉투 등	화장지, 한지 등	"한문천재"나 "굿모닝"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요부인 "모나리자"나 "굿모닝" 등으로 각각 호칭될 수 있으며, 모두 "굿모닝"으로 호칭되고 의미가 어렵지 않은 "좋은 아침"으로 관념될 경우 그 호칭, 관념은 동일하다.	
	한문천재 뉴 굿모닝	모나리자 굿모닝		
2006원6004 2007허1138	콘택트렌즈용 용액	약재용사향, 소화기관용약제 등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 중 "GLYDE 글라이드" 부분과 선등록상표 "글라이드 GLIDE"의 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TEARGLYDE 티어글라이드	글라이드 GLIDE		
2006당1497 2007허913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등	여행도매업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보통 '여행사와 함께'라는 의미보다는 '여행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	
	여행사랑 LovingTravel	여행사랑 yeohangsarang		
2006원465 2006허10760	광천수, 생수	광천수, 생수	'비타' 부분과 '삼다수'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외관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여 유사하다.	
	비타 삼다수	삼다수		
2005당2993 2006허9500	타르, 피치 등	금광석, 은광석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 부분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는 '삼성'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호칭이 연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삼성'만으로 분리약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요부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주)삼성산업 Building Korea's Foundation	삼성		
2006원6282호 2007허1671 2007후2155(심불)	화장용 비누, 화장품류 등		"touch" 부분은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손을 대거나 가볍게 건드린다'의 의미로 지정상품인 미용비누, 스킨밀크 등 화장품류를 피부 등에 사용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소울(솔) 터치"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소	
	SOUL	Soul Touch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울(솔)"만으로 호칭되어 그 의미가 어렵지 않은 "정신", "영혼"으로 관념될 수 있다.	
2006원5003 2007허1114	위생용품 및 화장품, 샴푸 등	디스켓, 디스크 등	그 칭호에 있어 너무나 유사하고, 관념 및 외관은 일응 상이하나, "JUNIPER"와 "쥬니버"는 그 관념의 특이성이 일반 수요자들이 직감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상이함이 칭호의 유사 정도를 극복하기에 이른 정도로 보이지 아니므로,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	
	JUNIPER NETWORKS	**주니버 쥬니버**		
2006원2007 2006허11060	CD-ROM, DVD, 광학식 문자판독장치 등	서적, 소책자 등	양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서는 아니되고 표장 전체를 서로 대비하여야 한다.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유사하다.	
	auto motor & sport	모터스포츠 MOTOR SPORTS NEWS		
2005당3187 2006허9555 2007후1893(심불)	돼지족발요리전문업, 감자탕요리전문업 등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수요자들은 "제일"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모두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제일" 부분이 요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다.	
				
2006당1710 2006허10326 2007후1923(심불)	나리싱 크림, 베이비 오일 등	바디 로션	NATURAL" 또는 "NATURE"나 "FLOWER"는 모두 지정상품의 성질 또는 원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관념과 호칭이 유사하므로 유사하다.	
	NATURAL FLOWER	FLOWER NATURE		
2006원5835 2007허692	은행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도형과 글자의 구성, 'ubi' 부분의 도안화 정도가 서로 달라서 그 외관이 전혀 상이하지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경우 그 중 영문자 'UbI'에 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같이 '유비아이' 또는 연음하여 '유비'로 호칭될 것이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관념 또한 동일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1) UBi (선등록서비스표2)		
2006원1033 2007허241 2007후1862 (상고취하)	액정프로젝터(liquid crystal projectors)	모뎀, 허브, 라우터 등	"INSTANT"가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각각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즉시의, 즉각적으로" 등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는 할 수 없어 그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 상표의 요부로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요부인 "INSTANT"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INSTANT OFF	INSTANT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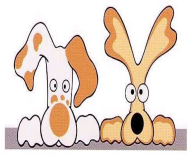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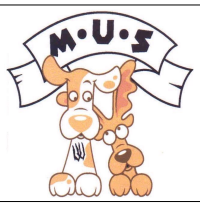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원6498 2007허1220	항울약(우울증치료제) 	신경안정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첫번째 음절의 받침의 유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럭셀'과 '리셀'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원4747 2006허11893	메모리 유닛 등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데이터통신업, 전기자물쇠 등  (선등록서비스표)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존"으로 호칭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최고"라는 의미로 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각각 동일하다.	
2006원4362 2006허11480	핸드백, 학생가방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선등록상표는 띄어쓰기와 대문자로 외관상 분리되어 있는 "Zaco"와 "Veny"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경우 외관이 다르나 칭호가 동일하여 유사하다.	
2005당2778 2006허8460 2007후1787	사탕과자, 비의료용 추잉껌 등 	초콜릿, 땅콩과자, 롤리팝 등 	두 상표는 문자의 글씨체 및 철자수가 같거나 비슷하고 "BOLIN BOLA"와 "BOLA BOLA"의 전체적인 단어 구조도 'BOL-- BOLA'와 'BOL- BOLA'로서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두 상표는 각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두 상표에 공통된 'BOLA'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갖는 요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두 상표를 모두 'BOLA'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원6646 2006허4161 2006후3502	스노우체인, 타이어 	미끄럼방지장치, 바퀴 및 타이어 	양 상표에서 'SPIDER' 또는 'Spider'의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양 상표의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양 상표가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거래사회에서 인식되고 통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그 전체로서는 물론 각 요부만으로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 상표는 요부인 'SPIDER' 또는 'Spider'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6원1812	유모차, 유모차 핸	반바지, 잠바 등	관념은 동일하고, 외관 및 호칭 역시 동일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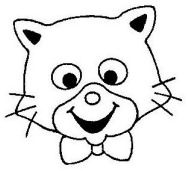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허10715	들부착용 주머니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HYSTERIC MINI			
2005원2010 2005허9107 2006후1223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신용대부업, 신용금고업 등	양 서비스표는 요부인 “프렌드” 또는 “Friend” 부분에 의하여 각 “프렌드”로 동일하게 약칭·관념될 수 있어,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	
	드루 프렌드	Good Friend		
2006원4906 2007허159	모자, 양말, 잠바 등		사건 출원상표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간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되거나, “간지의 세상(세계) 또는 그 집합체”라는 정도로만 관념될 수 있다. 그 호칭, 관념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다.	
	Ganzinala	GANZI		
2006원1299 2006허9678 2007후1473(심불)	T셔츠(T-shirts), 농구화 등	배낭, 운동가방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FITNESS” 또는 “Fitness"의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경우 그 외관 및 관념과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FitnessFirst	24 HOUR FITNESS		
2006당1361 2006허8828 2007후1480(심불)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식당업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주요부분인 “omuto”의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Omuto tomato fusion omurica	OMUTOPIA		
2005당2671 2006허7740	소켓 텅, 안테나기둥 받침대 장착용 밴드 등	전자식 자동차 원격시동기	우리 나라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들의 영어식 발음경향에 따라 등록상표는 ‘엔스토’로, 선등록상표는 ‘엔스타’로 각각 호칭된다. 그런데 두 상표는 전체 3음절 중 처음 두 음절의 발음은 완전히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도 초성 자음이 ‘ㅌ’로 동일하면서 종성 모음만이 ‘ㅗ’와 ‘ㅏ’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발음할 때 느껴지는 청감이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ENSTO	Enstar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	
2005원5810 2006허7696 2006허7696(심불)	단추, 머리핀 등	바늘꽂이, 비귀금속제 바늘상자 등	두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 및 로마자 부분의 철자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로마자 부분의 전체적인 단어 구조가 'Za--Ra'와 'ZARA'로서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로마자 부분의 구성과 배치형태가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에 한글 부분이 없으므로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원고의 출원상표는 '자하라'로, 선등록상표는 '자라'로 호칭된다. 만일 출원상표의 '하'가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인 '자'의 모음 'ㅏ'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에는 '자-라'로 호칭될 수 있고, 또 선등록상표도 첫글자인 '자'가 뒤에 오는 단음절의 유성음인 '라'의 영향을 받아 길게 발음되어 '자-라'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두 상표는 호칭이 서로 동일하다.	
		ZARA		
2006원1104 2006허9838	피부손상의 치료용 의료장치	어린이 약제용 주사기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의료보조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노" 또는 "지노"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선출원상표가 "GENO"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호칭될 경우 "게노", "기노", "제노", "지노"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데, 선출원상표가 "제노" 또는 "지노"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ZENO	GENO-CAPS		
2006원2385 2006허10128	검도복, 유도복 등	예복, 신사복 등	"CLUB"은 취미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와 관련하여 볼 때 수요자 집단을 표시하는 단어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미약하여 "CLUB"만으로 호칭될 가능성도 낮은 점, (3) 상표를 약칭하여 신속하게 호칭하려고 할 때 특히 앞 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튼클럽" 또는 "클럽"으로 호칭되기보다는 그 앞 부분인 "ETON"만으로 인식되어 "이튼"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EATONS		
2004원6265 2005허6597 2006후77	갈치, 게, 고등어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AQUAWORLD' 부분에 의하여 '아쿠아월드'라는 호칭과 '물의 세계, 물의 나라' 등의 관념이 생겨나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AQUALAND' 부분에 의하여 '아쿠아랜드'라는 호칭과 '물의 나라, 물의 세계' 등의 관념이 형성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AQUAWORLD' 부분과 'AQUALAND' 부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호칭·관념이 유사하다.	
		AQUA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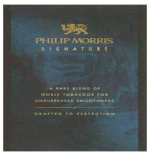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원7130 2006허8088	양말, T셔츠 등	축구복, 반바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AQUAMIRACLE(아쿠아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MIRACLE(미라클)"로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AQUAMIRACLE	MIRACLE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2004당360 2004허6088 2005후674	닭요리전문간이식당업, 닭요리전문식품소개업 등	닭고기, 햄버거용 고기(닭고기), 달걀 등	그 식별력 있는 "불닭"으로도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홍초불닭	불닭		
2005원4696 2006허7733	컴퓨터, 컴퓨터와 오디오 장비의 음향 품질을 조절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전화기, 비디오테이프레코더 등	문자 부분인 'ZEN'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등록상표 1은 '젠'으로 호칭되고 영어 단어인 'zen'의 의미로 관념될 개연성이 있다.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한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ZEN	ZEN (선등록상표1) Zen-c (선등록상표2)		
2006당473 2006허7870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 등	건축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칭호에 있어 확인대상표장은 "삼익"과 "그린뷰"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므로, "그린뷰"로 호칭할 경우 양 표장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녹색의 전망, 조망"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하다.	
	그린뷰	삼익그린뷰		
2006당26 2006허7276 2006후4055(심불)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등	전기이불, 전기침대 등	양 상표는 모두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글 "장수"만으로 약칭 및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유사하다.	
	장수★★★★★	J S 장수 옥돌		
2005당2426 2006허6921	반바지, 스커트 등	배낭, 여행가방 등	그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관사 "THE"가 "SSAM"에 부가되어 있는 조어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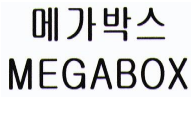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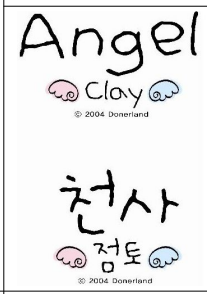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THESSAM 덧셈	SSAM	분명하므로 선등록상표와는 정관사 "THE"가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SSAM" 부분은 동일하므로 그 외관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영어단어를 호칭함에 있어 정관사 부분을 반드시 불가분적으로 붙여 호칭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관사를 생략하여 호칭하는 경우에는 "쌤"으로 동일하다. 그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SSAM"에 정관사를 붙여 특정한 것 외에 별다른 관념이 없고 선등록상표도 "SSAM"은 영어사전에 수록된 단어가 아니므로 별 다른 관념이 없어,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당1843 2006허2332 2006후2004	의혁지,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요부는 영문자 'G'를 오른쪽, 왼쪽 역 대칭으로 도형화한 ''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도 영문자 'G'를 오른쪽, 왼쪽 역 대칭으로 도형화하면서 그 일부 구성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외관에서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선등록상표 1의 요부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표장을 이격적으로 보았을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 보인다.	
				
2005원3009 2006허2530 2006후1964	인쇄용지, 포장용지, 표지, 명함용지 등	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제공업 등	양 서비스표에 공통된 한글 '비상' 부분은 특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매우 강하게 끌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서비스표를 모두 '비상'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부분에 의하여 양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고 이를 기억·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그 관념 또한 서로 동일하다.	
				
2005원547 2005허6146 2005후3383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컴퓨터 등	컴퓨터, 컴퓨터펌웨어 등	문자부분은 그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도 있지만, 그 중 "system"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Entel"부분과 일체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Entel"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Entel"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 "INTEL"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다.	
				
2004원2385 2005허346	공인중개사업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	선등록서비스표는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후1134		업 등	별기능을 가지는 "25時"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5時	LG 25時		
2004원1615 2005허1677 2005후1769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	계란, 분유, 돈육 등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 또한 서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부분에 의하여 '목초당'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목초'로 호칭될 수 있어, 양 상표의 호칭은 세 번째 음절인 '당'의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 앞의 2음절이 '목초'로서 동일하여 그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NICE FOOD 목초당 FRESH MEATS	木酢초 PYRO-		
2004당1281 2005허2090 2005후2250	건과자, 드롭스, 비스킷 등	건과자, 아이스케이크, 비스킷 등	호칭에 있어서 세 음절 중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 및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음절의 중성인 모음이 같고, 가운데 음절의 초성도 'ㅋ'과 'ㅌ'의 파열음이어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포카칩	POTACHIP 포 타 칩		
2005당1470 2006허3403	의료용 및 수의과용 화학시약, 의료용 팅크제 등	생물기관의보전용액성조성물, 생물기관의관류용액성조성물 등	원고의 등록상표는 '셀레시오'로, 비교대상상표는 '셀시오' 또는 '셀시오르' 등으로 호칭된다. 따라서 비교대상상표가 '셀시오'로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강조되어 불리우는 첫음절인 '셀'과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음절부분인 '시오'가 같고, 원고의 등록상표의 둘째 음절인 '레'도 그 앞의 음절 '셀'의 받침 'ㄹ'의 영향으로 약하게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상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CELESIO	CELSIOR		
2005당1274 2006허3939 2006후3106(심불)	우산, 양산 등	아동복, 자켓 등	확인대상상표가 동물 도형 부분에 의하여 간략하게 관념되고 호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관념은 물론이고 두 마리의 강아지 도형에 맞추어 붙여질 수 있는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2004원4110 2005허3918 2005후2533	브레지어, 밴도 등	브레지어	NuBra 부분에 의하여 "누브라"로, 선등록상표는 NOBRA 또는 노브라 부분에 의하여 "노브라"로 각 호칭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NuBra	NOBRA 비비안 노브라		
2005당2016 2006허4642 2006후2950(심불)	단화, 신사복 등	예복, 신사복 등	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방', '랭뱅'과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랑벵', '랭벵'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여 유사하다.	
	LANGBANG	LANVIN		
2005당637 2005허8272 2006후381	스웨터, 카디건, 티셔츠 등	아동복, 스커트, 잠바 등	분리관찰 하는 경우 양 상표가 모두 '톰 앤 제리'로 호칭, 관념된다. 호칭과 관념이 같은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한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TOM & JERRY			
2005원5138 2006허3182	인체용 방취제, 인체용 발한방지제 등	유액, 스킨로션 등	출원상표와 등록상표는 모두 철자가 11자이고, 그 중 8자가 동일하며 동일한 철자의 배열순서도 'N-UTR-' 'ACTIV'와 'NUTR-ACTIV-'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이 유사하다. 출원상표는 '뉴트라 액티브'로, 선등록상표는 '뉴트리 액티브'로 호칭될 수 있어 음절수가 6음절로 동일하며, 그 중 5음절의 호칭이 동일하고, 나머지 1음절도 초성이 동일한 데다 강조되어 불리는 부분이 아니어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매우 흡사하다.	
	NEUTRA-ACTIV	NUTRIACTIVE		
2005당1611 2006허1094	샤프펜슬, 볼펜 등	샤프펜슬, 볼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중요부분은 식별력을 갖춘 '마이크로'이고, 선등록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중요부분과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2 내지 4가 '마이크로'로 약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마이크로팬시	마이크로 (선등록상표 1) 마이크로 제도 (선등록상표 2) 마이크로리스 (선등록상표 3) 마이크로에스피 (선등록상표 4)		
2005원2871 2006허3335	과일젤리(Fruit jellies), 설탕에 절인 과일(Crystallized fruits) 등	초콜릿, 아이스캔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Smoothie'부분이 나머지 'King'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Smoothie'와 'King'의 두 개의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고, 나아가 두 개의 문자부분 중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인 'Smoothie'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그 요부인 'Smoothie'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Smoothie King	스무디 (선등록상표1) SMOOTHIE (선등록상표2)		
2005원4506 2006허3267	가방 판매대행업, 가방 판매알선업 등	양초, 심지(wicks)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LULU'와 'GUINNESS'로 분리관찰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GUINNESS' 부분만에 의하여 약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기네스'로서 동일하고 관념이 유사하다.	
	LULU GUINNESS	GUINNESS		
2005원3189 2006허2080	호텔업,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업 등	호텔업, 레스토랑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리츠" 부분이다.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이 유사하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리츠플라자호텔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RITZ (선등록서비스표 2)	유사하다.	
2005당2058 2006허3465 2006후2400	립스틱, 마스카라 등 L♡VCAT 러브캣	핸드백, 서류가방 등 L♡VCAT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 2는 모두 요부인 도안화된 영문자부분이 "L♡VCAT"으로 그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004원4701 2005허2427 2005후2182	헤어컨디셔너, 헤어 임벨리싱제, 헤어토닉 등 WELLA BIOTOUCH nutrition·care	공업용 세정제, 세탁비누, 유리용 세정제 등 BIOTOUCH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한 요부인 'BIOTOUCH'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BIOTOUCH"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 '바이오터치'로 동일·유사하다.	
2003원3505 2004허1748 2004후2901(파기) 2006허6747(환송)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feline vaccines) 등 FEL-O-VAX Lv-K IV	혈압강하제, 순환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등 펠로 Fello	"FEL-O-" 부분만이 요부가 되므로 이 부분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다.	
2005원3388 2006허2868	부츠, 승마바지등 BILLYWILLY	잠수복, 승마바지 등 BILLY INTER-SALPIA (선등록상표 1) BILLY INTER-SALPIA (선등록상표 2) Billy Blues	각 구성부분인 'BILLY'와 'WILLY'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호칭과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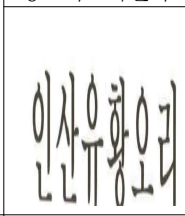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 3) Willy (선등록상표 4) WILLY MIANI (선등록상표 5)		
2005원5080 2006허2547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등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기업경영용 컴퓨터 프로그램과 일체로 판매되는 매뉴얼	'ACT'와 'DELUXE'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ACT DELUXE 액트디럭스	ACT!		
2005원1313 2006허1261	티에프티 엘씨디 드라이빙 아이씨, 엘씨오에스), 이미지 프로세싱 칩 등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유사하다.	
	Himax	HYMAX		
2005원2503 2006허2653	샌달, 슬리퍼등	신사복, 한복치마 등	NBA'와 'FUSION'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분리하여 인식되고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NBA FUSION	FUSION		
2005원2372 2006허2592	라이터, 성냥 등	권연, 여송연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이 "SIGNATURE"만에 의하여 "시그너처"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 선등록상표인 SIGNATURE와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SIGNATURE		
2003원1824 2003허6579 2004후936	암 예방용/치료용 약제	인체용항생제	"PRIXAR"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95058호)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상으로는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플리사(르)" 또는 "아프리사(르)"로, 선등록상표는 "프리사(르)"로 각각 호칭될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	
	APLYXAR	PRIXAR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프리사(르)"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프리사(르)" 부분이 동일하다.	
2005당1279 2006허657	한식점 경영업 등	한식점 경영업	이 사건 서비스표는 '쌍용해장국' 또는 간략하게 '쌍용'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쌍룡해장국' 또는 간략하게 '쌍룡'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의 호칭과 관념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5원4780 2006허2387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등	소시지제조용 창자,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호칭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유사하다.	
				
2005당1030 2005허10077	극장운영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업, 노래방 운영업 등	양 표장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큰 상자"로 관념됨에 반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관념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큰, 최대한"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관념 또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 "메가박스"와 확인대상표장의 호칭 "메가맥스"는 그 청감이 매우 비슷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호칭은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록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호칭이 너무 유사하여, 유사하다.	
				
2005원2159 2006허756	모형제작용 점토	학습용 모형 등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clay'나 '점토' 부분은 지정상품의 성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도형 부분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있어 부가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angel' 혹은 '천사' 부분이 요부로 인식되고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는 BABE(베이브) 혹은 Angels(엔젤스)로 호칭 및 관념될 수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선등록상표가 Angels(엔젤스)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그것과 유사하게 된다.	
				
2005원2080 2006허1988	신발안창, 신발쿠션용 삽입물	단화, 장화 등 신발류	등록상표 1, 2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고, 도형 부분은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결국 문자 부분인 'ACTIV' 내지 '액티브'로 관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원상표는 NEUTRA' 부분과 'ACTIV' 부분이 '—'로 연결되어 있어 외관상 결합의 정도가 약하므로 '뉴트라' 또는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액티브' 만으로 줄여서 호칭될 수도 있다. 외관 및 칭호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NEUTRA-ACTIV	 (등록상표 1)  (등록상표 2)		
2005당985 2006허1247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가죽제 열쇠	잠바, 슬랙스 등	가는 선의 오각형 부분의 유무나 좌·우측 돌출부 모양의 고저의 차이 등은 세부적인 모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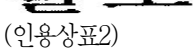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케이스 등		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를 직감하기 쉽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오각형 안의 도형부분이 영문자 필기체의 “n”자, 갈매기, 또는 산봉오리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도 양 상표의 호칭과 관념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2005원5424 2006허190 2006후1377(심불)	권연, 끽연용 라이터 등	코담배, 권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각 단어별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MAYFAIR'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비교대상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호칭되는 것이므로 유사하다.	
				
2005원1639 2006허1117 2006후1360(심불)	우편업, 서신발송업, 전자우편업 등	녹음된 테이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등	양 표장을 전체로 관찰할 때에는 외관이나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005원2207 2005허10343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블렌더 등	전기청소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Bulle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경우에 서로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앞서 본 외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5원2960 2006허275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등	합성수지제 크리스마스트리,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성부분인 ‘CRYSTAL'과 ’CHRONICLES‘가 분리관찰되어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하다.	
		CRYSTAL 크리스탈 (선등록상표 1) CHRONICLES (선등록상표 2)		
2005당798 2005허9015	정류기, 변압기 등	배전반, 전기 개폐기 등	양 상표는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그 중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도 모두 받침이 없이 자음에 미세한 차이만 있어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ensco	ENSTO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당1033 2006허305	머니벨트(의류), 샌달 등 ECCLIME 이 끌 림	속팬티, 브레지어 등 Iklim 이 클 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표기인 "이끌림"은 선등록상표의 "이클림"과는 전체 3음절 중 중간 음절의 초성만이 "ㄱ"과 "ㅋ"으로 서로 다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ㄱ"과 "ㅋ"도 모두 안울림소리에 속하여, 청감상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거의 동일하게 청감되어 칭호가 극히 유사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상표 자체의 구성으로 볼 때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과는 유사하지 않다.	
2005원1758 2005허9862	마스카라, 모발염색제 등 DISE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등 디 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식으로 "디스", "다이스" 또는 "디세"로 발음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출원상표가 "디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2005원673 2005허9855	골판지, 냅킨용지 등 WAVE	가정용풀, 쓰레기봉투 등 Lee Wave	'Lee'부분과 'Wave'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선등록상표가 분리관찰되어 'Wave'로만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5원1426 2005허10350	컴퓨터 소프트웨어, 간행물 등 lonely planet	서적, 포스터 등 Mr. Lonely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각각 "lonely" 및 "Lonely"부분으로 분리관찰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Animal Planet	"Animal"과 "Planet"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문자부분 중 일부인 "planet" 및 "Planet"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동일하게 호칭,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5원1940 2005허9732	로봇, 전기마사지기 등 듀라브랜드	반도체제조기계 DURATE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듀라"와 선등록상표의 "DURA"는 특정의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 조어로서 식별력이 매우 강한 반면, 양 상표의 위 "브랜드" 및 "TEK" 모두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므로, 결국 양 상표의 중요부분은 각 "듀라"와 "DURA"라고 할 것이고, 양 상표가 중요부분에 의해 "듀라"로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원2530 2005허4638	라벤더유, 스킨밀크	나리싱크림, 스킨크리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받지 않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를 없애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쉽고, 선등록상표 1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다” 등의 의미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같은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동종 상품인 위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의미내용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UNSTRESS	STRESS-OUT S T R E S S BUFFER		
2005원4067 2006허343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발신기등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TAG” 부분과 선등록상표 “TAG”를 대비하여 보면, 위 양자는 외관상 유사하지는 아니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TAGMASTER	TAG		
2005원666 2005허8708	T셔츠, 남방셔츠 등	운동화, 부츠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 중 영문자 'N'과 'A'가 겹치게 도안된 형태와 선등록상표의 영문자 'N'과 'Y'가 겹치게 도안된 형태가 동일하고, 영문자 'N'의 도안이 모두 좌우로 잘록하게 들어가 곡선미가 있게 처리되는 등 매우 유사하며, 영문자 'A'의 도안 또한 선등록상표의 'Y'자 도안을 뒤집어 놓은 것과 유사한바, 그 외관이 유사하다.	
	NEIGHBORH			
2003원4377 2004허2093 2004후3041	대학의 초급/중급/고급 수준별 과정의 교육지도업 등	교육지도업, 컴퓨터학원경업업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Cal	CAL		
2005원39 2005허9299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면봉 등	단화, 샌달 등	양 상표의 호칭은 “씨크릿”과 “우먼” 혹은 “위민”이 발음되는 순서가 뒤바뀐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각각 다른 일시에 다른 장소에서 호칭할 경우 호칭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상당히 있으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를 구체적인 특정의 관념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보다는 여성과 비밀이 무언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여성의 속성으로서의 비밀스러움, 혹은 비밀을 간직한 여성 등의 의미로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출원상표와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범위에 있다.	
	women'secret	Secret Woman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원4431 2005허8678	유황오리엑기스, 유황오리고기젤리 등 	요양소업, 토종농축산물판매대행업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은 '인산'이라 할 것이고, 仁山家' 중 '家'는 친족단체, 가문 또는 어떤 방면의 일을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하는 사람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식별력이 없어 '仁山'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중요부분 중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는 '인산'으로 호칭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2004당1189 2005허8395 2006후626(심불)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등 	컴퓨터주기판,컴퓨터하드웨어 SLock (인용상표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애즈락", "애즈록" 또는 "애스락"등으로 호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에스락", "에스록", "슬록" 또는 "슬락"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애스락"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에스락"으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이 "애"와 "에"로 다르기는 하나, 양 상표 모두 3음절로 음절수가 같고, 일반 수요자들이 "애"와 "에"의 발음을 구별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 상표는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4당2692 2005허7866 2006후343(심불)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하늘아래첫동네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등 하늘아래첫집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호칭과 관념 또는 관념이 같은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2005당6501 2005허8159	보석등급감정업 	다이아몬드, 산호 등 SAMSUNG (선등록상표1) SAMSUNG (선등록상표2) 삼성 (선등록상표3) 三星 (선등록상표4) SAMSUNG PLAZA (선등록상표5) 삼성플라자	이 사건 서비표는 문자부분의 하나인 "SAMSUNG" 또는 "SG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서비스표가 "SAMSUNG" 부분에 의하여 "삼성"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6)		
2004당2131 2005허7514 2006후299(심불)	화장지, 한지 등	휴지, 화장지	호칭, 관념에 있어서는 확인대상표장의 도형과 문자 부분 및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들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의 '굿모닝'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양 표장은 모두 '굿모닝'으로도 호칭, 관념되며, 그와 같이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5원2065 2005허7798	셔츠, 조끼 등	농구화, 청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SABREMAN"과 "STAMPEDE" 어느 것으로도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STAMPEDE"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 선등록상표와 영문철자가 같으므로 그 호칭도 동일하다. 비록 외관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 동일한 이상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5원1148 2005허7583	전기통신기계기구 수리업, 전화기 수리업 등	측정기계기구수선업, 동력기계기구수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엔젤" 부분이, 선등록서비스표는 "ANGEL" 부분이 각 요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엔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ANGEL"의 한글 표기음인 "엔젤" 또는 그 사전상의 발음인 "에인젤"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엔젤" 또는 "에인젤"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고, 한글의 "엔젤"이 영문자 "ANGEL"의 한글 음역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고 그 의미도 "ANGEL"과 같은 "천사"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관념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는바, 양 서비스표는 그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4당1484 2005허278 2006후213	향수, 나리싱크림 등	모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본 더취' 또는 '폰 더취'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양 표장은 외관 가운데 문자 부분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2005당963 2005허7736	광천수, 생수		확인대상표장의 "구천"과 "석청수"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천"과 "석청수"로 분리관찰되고, 그 중 "석청수"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의 주요부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석청수"로 약칭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 "석정수"와 비교하여 보면, 그 청감이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다.	
2005원545 2005허7224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설비에 관한 리스업	이 사건 서비스표는 문자부분 중 "Entel"만에 의하여 "엔텔" 또는 "인텔"로 약칭될 수 있고, 이 사건 서비스표가 "인텔"로 호칭되는 경우 역시 "인텔"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동일하다.	
2003원3589	야채수프, 햄버거용	밀감, 배합사료, 마	출원상표의 구성 중 일본어 문자부분은 우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4허1854 2004후2253	고기 등 れとると倶楽部	카로니 등 	나라의 일본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그 호칭이나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한자 부분과 일본어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고 ,'구락부'로만 호칭될 수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락부'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그 호칭이 동일하다.	
2005당443 2005허7682	화장품 또는 그 포장용기 제조원 주식회사 푸른화장품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등 	확인대상상표의 요부는 "푸른화장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도형과 "푸른화장품"으로서, 양 상표는 일요부가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4당2652 2005허5112	단화, 신사복 등 LANGBANG	예복, 신사복 등 LANVIN	선등록상표들이 '랑방', '랑벵', '랭벵'으로 불리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거나 청감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4원5132 2005허5860	호흡기관용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 	항암치료보조제, 세포부활용 약제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심바스트'로, 선출원상표는 '심바스타'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4음절 중 앞의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같고 마지막 음절의 중성만 달라 유사하게 호칭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2원3775 2003허2713 2003후2270	신사복, 반바지 등 	신사복, 양복바지 등 POLO (인용상표1)  (인용상표2) POLA (선상표)	'POLO' 또는 '폴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인용상표 1, 2의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POLO'만으로 분리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	
2004당2602 2005허4744	나리싱크림, 라벤더 향수 등 JUPIER	라벤더유, 스킨밀크 등 JUPIEN	양상표는 그 청감이 매우 유사하고, 양 상표는 모두 알파벳 6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마지막의 한 글자만 "N"과 "R"로 다른 뿐 나머지 5글자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의 외관도 유사하다.	
2002당1597 2003허663 2003후1949	말초신경계용 약제, 약용캡슐 등 OxyIR	살균제, 방충제 등 oxy.co.kr	'Oxy'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서비스표의 요부와 첫 글자의 대소문자 차이 외에는 동일하다.	
2004원4762 2005허5594	데이터통신업, 무선통신업, 밴통신업	(VAN)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서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로지테크", "로지텍" 등으로,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부분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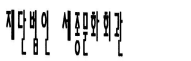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등	및 화상송신업, 데이터통신업 등	"로지넷"으로, 각각 호칭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로지텍"으로 호칭될 경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로지넷"을 비교하면, 앞부분의 두 음절과 세째 음절의 중성이 동일하고, 단지 세째 음절의 초성과 종성이 상이한 뿐인데, 통상 세음절로 이루어진 경우 첫째, 둘째 음절이 강하게 발음되고 마지막 세째 음절은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에 비추어, 세째 음절의 초성도 약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서비스표의 세째 음절의 종성이 모두 짧게 끊어지는 발음이어서, 마지막 음절의 발음이 그 청감상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LOGITECH	로지넷 LOGI-NET		
2004원5552 2005허3130	문구 판매대행업, 사무용품 판매대행업 등	문방구사업상담업, 문방구정보제공알선업 등	양 서비스표는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Alpha", "알파"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경우, 양 서비스표의 호칭은 완전히 동일하고, 일반수요자들에게 '그리스어의 첫째 자모'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그 관념 또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문구의 모든것 아스트 Alpha 알파&AST Alpha Stationery Mart	Alpha 알파아트센터		
2004원4644 2005허4232 2005후2557(심불)	오디오 레코더, 비디오 레코더	캠코더, 카메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국 "하이마트" 혹은 "하이엠에이티"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하이마트"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 1과 그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다(	
	HIGH M·A·T	하이마트 HI-MART		
2004원5289 2005허3048 2005후2373	대여금고업, 대여금회수대행업 등	신용카드발행업, 대여금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의 요부는 'Heart'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 부분도 그것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인지 여부를 떠나 'Heart'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그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Heart'와 선등록서비스표의 'HART'가 서로 다르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양 서비스표가 모두 '하트'로 호칭되어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Heart Cashing	HART 하 트		
2004당964 2005허261 2005후2366(심불)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등	콤퓨터, 컴퓨터 단말기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에 의해 "유니에스큐엘" 또는 "유니스큘"로 호칭될 수 있고,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알파벳 부분에 의해 "유니에스큐엘" 또는 연음하여 "유니스큘"로 호칭될 수 있어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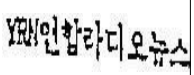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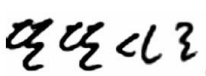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유니에스큐엘	UNISOL (비교대상상표)  (비교대상서비스표)	표장이 유사하다.	
2004원2458 2005허3772	화장용수렴제, 마스크팩, 볼터치	향수, 화장비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이 '니콜밀러'로서 비교적 짧은 4음절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의 성명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거래사회의 실정 및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과 "MILLER"가 분리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NICOLE"과 "MILLER"가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수요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NICOLE"과 "MILLER"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NICOLE"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그 한글음역이 "니콜"이 될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들의 한글음역인 "니콜"과 그 호칭이 동일하고	
	NICOLE MILLER	NICOLE		
2004원4640 2005허3369	갈비전문식당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도형과 각 문자 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본'과 '갈비'가,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옥'이 각 식별력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에서 쉽게 어떠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불러일으켜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 서비스표는 모두 문자 부분인 '만수'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만수옥		
2004원4999 2005허3352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간이 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전통토속음식점' 부분은 식당업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인 '소담골' 부분만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인 '소담원'과 대비의 대상이 된다. 양 표장은 세 음절 중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앞부분 두 음절이 같아 전체적인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중요부분의 관념 또한 같다.	
		소담원		
2004원4756 2005허2557	두발건조기	TV게임세트, 무선통신용단말기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베스, 도브스, 돕스"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도베, 도브,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dobes	DOVE	돕"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브스, 돕"으로, 선등록상표가 "도브, 돕"으로 각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어미 부분에 '스'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지만 어두 부분 '도브, 돕'이 동일하고 어미 부분 '스'는 매우 약한 발음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2004원3250 2005허3086	레이져용접기, 레이져마킹기 등	벨브, 선반 등	"캡, 캅"으로도 호칭될 것이며, 매우 드물게는 전체에 의하여 "캡(캅) 케이에이비"로 호칭되기도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가 "캡, 캅"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인 "캡, 캅"과 동일하다.	
	CAB	K A B 케이에이비		
2004당1626 2005허1004	토지개발공사업, 도로건설공사업 등	아파트 건축업, 도로건설 공사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스카이'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관찰 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정은Sky빌	SKY		
2004원21 2005허2687	피부과 전문병원업, 피부과 전문의료업	이동통신장비임대업, 이동통신장비설치관리업 등	011'이 흔히 있는 간단한 숫자이고 'Club'은 외래어로 분류될 정도로 일반 수요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므로 그 중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Leaders'에 의하여 "리더스"로 호칭될 수 있는 바, 선등록서비스표가 "리더스"로 호칭될 경우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 "리더스"와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게 된다.	
	리더스 LEADERS	011 Leaders Club		
2003당365 2003허6319 2004후1113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연필 등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등	첫 번째 음절과 마지막 네 번째 음절은 완전히 동일하며 두 번째 음절 "스"와 "시"는 모두 자음 "ㅅ"에 중성모음이 결합한 형태이고 세 번째 음절은 모두 양성모음인 "ㅏ"와 "ㅘ"로 이루어져 있어 청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다.	
	LISCIARE	10-' 93- 3792 리스와르 LISOIR		
2004당1929 2005허2120	모피, 인조모피 등	속팬티, 브레지어 등	이 사건 등록상표 "ECCLIME"은 영문자로만 구성되어 일반적인 영문발음에 따라 "이클림, 이끌림"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IKlim"과 한글 "이클림"으로 구성되어 한글부분에 의하여 "이클림"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클림"으로 호칭되는 경우 선등록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끌림"으로 호칭되더라도 선등록상표의 "이클림"과는 전체 3음절 중 중간 음절의 초성만이 "ㄱ"과 "ㅋ"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거의 동일하게 청감되어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ECCLIME	Iklim 이 클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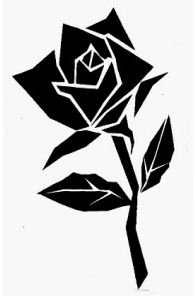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4원995 2005허1875 2005후1950(소취하)	비스켓(biscuits), 머핀(muffins) 등	드롭스, 박하사탕과자 등	선등록상표 중 사탕 모양의 도형은 지정상품인 사탕과자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는 그 도형 안의 문자부분에 의하여 "샘스(즈)", "삼스(즈)"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샘스(즈)", "삼스(즈)"로 약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SAM'S CHOICE	SAM'S		
2004원4121 2005허1714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등	양 서비스표는 모두 문자 부분인 '무명'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무명골	MOOMYONG 무명 無名		
2004원3808 2005허1530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무진장'으로 호칭, 관념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무진장매운갈비	무진장		
2004원4494 2005허1783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편상화, 레인코트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문자부분의 첫 부분인 "YUKI"만으로 인식되어 "유키" 또는 "유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들의 호칭과 동일하다.	
	YUKI TORII	YUKI 유 키 YOOKI		
2004당1438 2005허1318 2005후1714(심불)	냄비, 비귀금속제 주전자 등	공기, 술잔 등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두 도형이 서로 분리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 '은행잎'과 '해가 빛을 내며 떠오르고 있는 모양'으로 분리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은행잎 표', 또는 '해 표', '뜨는 해 표', '빛나는 해 표' 등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 역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마름모 모양을 제외하고 '은행잎 표'로 약칭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은행잎 표'로 약칭 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2003원2449 2004허2178 2004후3447	골프화, 롱코트, 반코트 등	우산, 장화, 금속제 버클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문자부분이 "PAOLO" 부분과 "GUCCI"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GUCCI"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약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 2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PAOLOGUCCI	GUCCI		
2004원2381 2005허919	자동차용 카펫, 매트 등	농, 탁자 등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ROBERTA"만으로 약칭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ROBERTA"로 약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ROBERTA DI CAMERINO	ROBERTA		
2002당202 2002허4873 2003후281	호프집경영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등	호프집경영업	"블랙쪼끼" 표장 중 "블랙"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검은'이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되어 '검은 쪼끼'와 같이 인식될 것이므로 피고들 표장의 요부는 "쪼끼" 부분이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쪼끼쪼끼	블랙쪼끼		
2004원3568 2005허216 2005후1462(심불)	단화, 운동화 등	단화, 장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바바라'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바발라'로 호칭되더라도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바바라'와 비교하여 볼 때 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단지 두 번째 음절의 종성에 세 번째 음절의 초성과 동일한 'ㄹ'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므로 양 상표는 그 청감에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 전체적인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Vavala	BARBARA		
2004원2461 2005허735	슬리퍼, 단화 등	샌달, 투피스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표기된 대로 "네이트" 또는 영문자에 의해 "네트" 등으로 호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내트", "네이트" 등으로 호칭될 수 있어, 선등록상표가 "네이트"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NATE 네 이 트	NATTE		
2004당407 2004허6781 2005후1424(심불)	오케스트라서비스업, 오케스트라운영업 등	오케스트라서비스업, 교향악단공연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선출원표장과 마찬가지로 요부인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및 'SEOUL PHILHARMONIC ORCHESTRA'에 의하여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호칭되고, '서울시관현악단'으로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와 같이 호칭, 관념될 경우 선출원표장들과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모두 분리 관찰되어 위와 같이 호칭, 관념될 것이다)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주식회사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SEOULPHILHARMONIC ORCHESTRA INCORPORATION SINCE 1992	(선출원서비스표1) 서울시관현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선출원서비스표 2~3,선출원업무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장1)  (선출원서비스표4)   (선출원업무표장2)		
2002당2581 2003허1529 2003후2461	깻묵비료, 해산비료 등 **서해생명정**	깻묵비료, 해산비료 등 **大地生命精**	"서해" 부분과 "생명정" 부분이 대등한 식별력을 갖고 각각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한자인 "大地"와 "生命精"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상표로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각 부분이 식별력을 갖고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2004원2734 2005허612 2005후1318(심불)	타이어판매대행업, 타이어공기주입서비스업 등 TYRE PLUS	자동차타이어판매알선업, 자동차타이어판매대행업 등 TIRE PLUS 타이어 플러스	문자 부분 중 'PLUS'가 식별력이 없음은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TYRE'도 그 지정서비스업의 대상 물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그 호칭과 관념이 모두 '타이어 플러스'로 동일하다.	
2003당2571 2004허8329 2005후1349(심불)	비의료용 추잉껌, 초콜릿 등 포칸 PO KHAN	건과자, 비스킷 등 40-88-002384 POCKA 포 카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그 중 첫음절 "포"가 동일하며, 둘째음절은 "칸"과 "카"로 다소 강한 발음의 초성과 중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상표에 종성 "ㄴ"이 추가된 것으로 2음절의 상표에서 "ㄴ"받침의 유무의 차이밖에 없고, 종성 "ㄴ"이 다소 부드러운 발음인데다가 강한 발음의 초성의 영향으로 뚜렷하게 발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상표에 있어서 상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뒷 부분은 다소 약하게 발음되는 현상까지 고려하면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할 것이다.	
2004당1108 2005허476	매니큐어세트, 면도기케이스 등 B·Bel	칼, 송곳 등 BELL	호칭에서 "B"와 "BEL"은 쉽게 분리될 수 있으며, 그 중 "B"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벨"로 약칭될 수 있고, 설사 전체에 의하여 "비벨"로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비"는 어두부에 오는 비음(鼻音)의 초성음으로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벨"이 강하게 발음됨으로써 "벨"과 유사하게 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의 호칭 "벨"과 동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동일, 유사한 이상 그 외관과 관념에서 위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2003당2249 2004허6217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문자부분 중 "聯合"만에 의하여 "연합"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역시 "연합"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4)		
2004원2201 2004허7241	암치료용 약제	갱년기질환치료제	양 상표는 영문 철자의 구성, 글자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다르고,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누발렌" 또는 "누밸렌"으로, 선등록상표는 "누벨레" 또는 "누벨"로 발음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누밸렌"으로, 선등록상표가 "누벨레"로 발음될 경우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여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NUBALEN	NUVELLE		
2004원51 2004허6996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와 비디오게임 플레이어에서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 등	반도체 및 실리콘 웨이퍼용 반제품 작동을 위한 기계, 반도체용 반제품을 부식/세척/광택 건조 및 거칠게 하는 기계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SPIN"과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Spin"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SPIN"은 각 그 호칭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	
	TOP SPIN	 (선등록상표) SPIN (선등록서비스표)		
2004원2960 2005허810	고무제완구, 금속제완구 등	봉제완구, 지제완구	"또또"라는 부분은, 국내 일반수요자에게 국어사전의 게재 여부와 관계 없이 통상 "또"를 강조하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또또"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4원2514 2004허8275	자양강장제,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영양제 등	축산물 이유식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새한”, “아이”, “키커”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 요부인 '키커'와 선출원상표들의 요부인 '키커'만으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표는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새한아이키커	KicKer 키 커 (선출원상표1) KIKER 키 커 (선출원상표2)		
2001당395 2001허5237 2002후567(파기) 2005허377(환송) 2005후1202	화장지, 한지 등	화장지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표장은 그 요부인 "굿모닝"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서체 또한 거의 동일하여 외관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모나리자·굿모닝	굿모닝 Plus		
2004원1224 2004허8725	키홀더, 시계줄 등	귀금속제 키홀더, 시계줄 등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개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개도형만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 ‘검정개 또는 강아지’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역시 ‘검정개 또는 강아지’로 호칭 및 관념될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shuny			
2004원2845 2005허513	광고대행업, 홍보대행업, 광고알선업 등	광고물작성업,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중요부분인 ‘KorCom' 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면, 선등록서비스표 1인 'KOCOM KOREA COMMUNICATIONS‘는 위 (가) 1)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KOCOM'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호칭은 ‘코콤’이며,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의 호칭 역시 ‘코콤’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과 각 동일하다.	
	KorCom Porter Novelli (Korea Communication)	KOCOM KOREA COMMUNICATIONS 코 콤 COKOM		
2004원26 2005허315	새들백, 연료탱크백 등	양말, 타이츠, 운동가방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중요부분 중 하나인 "ROCKET" 또는 “ROCKETS"에 의하여 "로켓, 로케트”와 "로케츠, 로키츠”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니,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 또는	
	JOE ROCKET	ROCKETS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유사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다.	
2004원3092 2005허247 2005후1066(심불)	단화, 운동화 등	체조복, 청바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잇코"로 호칭되면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엣코"로 호칭되면 선등록상표와 음절수가 같고 모음의 속성상 음역에 크게 차이가 없어 청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엣코르, 잇코르"로 호칭되면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호칭 뒤에 약하게 발음되는 "르"가 추가된 것일 뿐이어서 역시 청감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결국 양 상표의 호칭은 동일·유사하다.	
	etKor	ItKO		
2004원2358 2004허8619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비디오디스크 레코더 등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NET" 부분의 유무와 글자체 등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NET" 부분 이외에는 조어로 구성된 상표로서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비할 것이 없으나, 호칭에 관하여 보건대, 선등록상표 중 "NET"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중 중요부분은 "DIGA"라 할 것인바, 따라서 선등록상표가 중요부분에 의해 "디가"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문자로 된 조어상표의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DIGA	DIGANET		
2004원1587 2004허7050	모발염색제, 모발탈색제 등	메니큐어용나멜, 헤어스프레이 등	양 상표는 가장 일반적인 장미꽃 형상의 도형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잎이 2-3개 있는 줄기의 끝에 한송이의 장미꽃이 피어 있는 형상의 도형으로서 그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양 상표의 외관에서 직감되는 이미지는 "장미꽃 한송이"이고, 달리 호칭·인식될 수도 없으므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3당2455 2004허2888 2004후3140	전동호이스트, 크레인, 콤베이아	호이스트, 크레인	반도'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되므로 외관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半島機械株式會社 BANDO MACHINERY CO., LTD	반도호이스트 BANDOCRANES		
2004원1148 2004허6880	청바지, 면바지 등	신사복, 양복바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Calif"만에 의하여 "캘리프" 또는 "칼리프"로 호칭될 수 있고, "이슬람의 교주, 이슬람 세계 전체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관념되거나 아무런 관념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데, 선등록상표 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고, 문자부분인 "CALIPH"만에 의하여 분리관찰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	
	Califdream	 (선등록상표1) Kalif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및 관념될 것이며, 선등록상표 2 또한 전체로서 이와 동일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Calif”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관념은 선등록상표 1, 2와 동일하다.	
2003원4435 2004허6163 2005후858 (상고장각하)	스티커(stickers), 공책(note books) 등	스티커, 스프링제본 공책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 요부인 'NANAS'와 선등록상표 3, 4의 요부인 'NANA'에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어떠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선등록상표 3, 4는 영문자 'NANA'와 한글 ‘나나’에 의하여 ‘나나’로 호칭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NANAS‘에 의하여 ’나나스‘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나나스‘의 ’스'는 약음에 해당하고 영문자 ‘S’는 복수를 나타내는 정도로 인식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는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이 유사하다	
		NA NA 나 나 (선등록상표3) NA NA FASHION 나 나 패 션 (선등록상표4)		
2001당1016 2004허8084	탄산수, 탄산수제조제 등	토마토 주우스, 포도 주우스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문자 부분인 “Cap's”에 의하여, 선출원상표가 “CAP” 부분에 의하여 각 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캡”이나 혹은 “CAP”이 ‘모자, 뚜껑' 등의 의미가 있는 낱말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설령“Cap's”와 같이 영어의 소유격을 의미하는 형태로 다소 변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의미로 쉽게 직감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도 유사하다.	
				
2004원1442 2004허7326	눈보호관리용 약제, 안과용 약제 등	구충제, 순환기 관용약제 등	양 상표는 알파벳의 구성 및 수가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상이하고, 양 상표 모두 조어로만 구성된 상표이므로 관념상 서로 대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칭에 있어서,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젠틸”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젠틸”과 “젠텔”로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그 청감을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ㅣ”인지 “ㅔ”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발음 및 음절수가 모두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GENTEAL	ZENTEL		
2003당553 2004허1342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전기침대	돌침대, 전기침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상표가 “장수”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 내지 서비스표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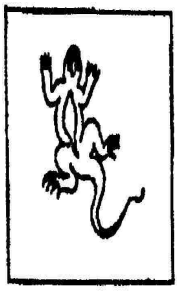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장수온돌	장수王家온침대		
2004원34 2004허5818	공책, 그림물감통 등	샌달, 슬리퍼 등	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 부분과 한글 '마녀 배달부'와 '키키'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선등록상표 2는 도형과 영문자 'kiki'로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들의 한 요부인 '키키' 또는 'kiki'에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어떠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선등록상표 2의 'kiki'는 영문의 일반적인 발음에 따라 '키키'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 '끼끼'와 선등록상표들의 '키키'가 음절수와 모음이 같고 자음 역시 동일한 파열음이어서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이 유사하다	
	바나나를 탄 끼끼	KIKI's Delivery Service 마녀 배달부 키키 (선등록상표1) kiki (선등록상표2)		
2003당943 2004허6040 2005후711 (상고취하)	슈우트, 스커어트 등	신발류, 스포츠위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A6"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확인대상표장인 "A6"와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A6	A6		
2003당1229 2004허2932 2005후605(심불)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각각 "Valentino" 및 "valentino" 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발렌티노"만으로 간략히 호칭·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Rudolph Valentino	valentino garavani V (선등록상표1) VALENTINO V (선등록상표2)		
2004원594 2004허6538 2005후681(심불)	암예방 및 치료용 약제, 암예방 및 치료용 약물	자양강장변질제, 대사성약제 등	우리 나라의 외국어 보급수준과 발음습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젠비크", "젠빅"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그 한글 부분에 의하여 "젠빅"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젠빅"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에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ZENVIQUE	GENBIG 젠 빅		
2004원1146 2004허6484	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외관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모두 영문 대문자 8개로 구성된 상표로 문자 인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앞부분의 'MYPRO'와 마지막부분의 'L'이 같아 유사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마이프로셀'로 선등록상표는 '마이프로돌'로 호칭되어 앞의 네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도 앞의 두 부분이 다르나 마지막 부분이 'ㄹ'로 같아서 거의 동일하게 청감되어 양 상표는 그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	
	MYPROCEL	MYPROD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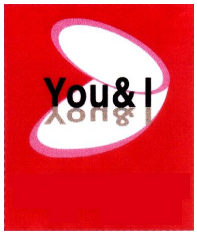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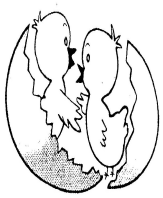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적으로 유사하다.	
2004원1328 2004허6422	개/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 동물용 약제	동물용 약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랍박", "랩박" 등으로 발음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라박" 혹은 "래박"으로 발음될 것인바, 양 상표는 위와 같이 2개의 음절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결국 양 상표는 그 청감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RABVAC	LAVAC		
2004원1048 2004허5849	향수(perfumes and scented water), 오데코롱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인 "TOUS"는 영한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이나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 외관에 의하여 영어 단어로 인식되어 영어식 발음에 따라 "토우스" 또는 "토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2는 앞부분의 "Tous"부분만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로마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에 따라 선등록상표 2는 "토우스" 또는 "토스"와 같이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TOUS	Tous les caleçons (선등록상표2)		
2004당530 2004허5054 2005후551(심불)	공원경영업, 동물원 경영업 등	공원경영업, 유원지 경영업 등	양 상표의 요부는 소인국이라 할 것이므로 요부에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제주소인국테마파크	소 인 국 MINI WORLD		
2004원262 2004허6156	컴퓨터 작동용 소프트웨어(computer operating software), 원격화상 회의용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for teleconferencing and video conferencing)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디스크 등	각 구성부분인 "POLYCOM"과 "WEBOFFICE"로 분리관찰되어, "폴리콤" 또는 "웹오피스"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는 "웹오피스"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WEBOFFICE" 만에 의해 "웹오피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POLYCOM WEBOFFICE	웹오피스		
2003원4120 2004허5955	비의료용 추잉껌(chewing gum), 박하사탕과자(mints) 등	추잉껌, 캔디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DENTAL" 부분과 "FRESH" 부분으로, 선등록상표 1은 "DENTAL" 부분과 "CARE" 부분으로 각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DENTAL"만에 의하여 "덴탈"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 1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DENTAL FRESH	DENTAL CARE		
2003당1723 2004허4099	노광된 영화필름, 노광된 필름 등	망원경, 녹음테이프 등	선출원상표는 "D2iable"이 그 요부의 하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선출원상표는 "디아블"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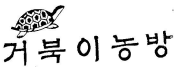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후483(소취하)	DIABLO		칭될 것이므로, "디아블로"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4원8 2004허6118 2005후391(심불)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등	인터넷광고업, 자료제공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PENTA"와 "BREED"로 각각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penta" 및 한글 "펜타"에 의하여 언제나 "펜타"로만 호칭된다고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PENTA" 부분으로 분리되어 그 발음인 "펜타"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PENTABREED	Penta 펜타 (선등록서비스표2)		
2003원4940 2004허5887 2005후407 (상고취하)	가스총, 기관총 등	가스총, 공기총 등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독일어임을 모른다면 영어식으로 '앤슈츠'로 호칭될 것이고, 독일어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안쉬츠' 등으로 호칭되기보다는 '안슈츠'로 호칭될 것이며, 선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인 '앤슈우트'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앤슈츠'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첫음절이 같고('안슈츠'로 호칭되더라도 첫음절의 처음과 마지막이 'ㅇ'과 'ㄴ'으로 같고 중간만 'ㅏ'와 'ㅐ'로 다를 뿐이어서 유사하다) 중간 부분의 '슈'도 장음 또는 단음으로 발음될 수 있어서 선등록상표의 '슈우'와 유사하며 마지막 음절도 앞 부분의 자음만 'ㅊ'과 'ㅌ'으로 다를 뿐 뒷부분의 모음이 'ㅡ'로 같아서 거의 동일하게 청감되어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ANSCHÜTZ	앤 슈 우 트 ANSHOOT		
2004원274 2004허6064 2005후308(심불)	기념조형물판매대행업, 사진복제업 등	공원경영업, 동물원경영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 1, 2가 도형의 유무와 일부 한글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 1, 2가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한 요부 내지는 요부가 '소인국'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선출원서비스표 1, 2와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제주소인국테마파크 (선출원서비스표1) 미니월드소인국테마파크 (선출원서비스표2)		
2004당954 2004허5276	청주, 소주 등	탄산수, 셀처탄산수 등	이사건 등록상표의 각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면적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큰 활자체의 로마자 부분 “Cass”만으로 관찰하여 확인대상상표의 “Cash”와 대비하는 경우, ①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4자 중에서 3자가 완전히 동일할 뿐 아니라, 다소 도형화되어 있는 양 상표의 활자체도 매우 유사하여 구분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고 있고, 특히 확인대상상표의 마지막 로마자 “h”는 상당한 정도로 도형화되어 선뜻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로마자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구성하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하되 그 크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게 표현되어 있는 구성 및 글자의 크기 비율도 유사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며, ②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카스”로, 확인대상상표는 “캐쉬”로 각 호칭될 것이지만, 첫 음절은 거의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의 초성도 “ㅅ”으로 동일하며, 특히 첫 글자를 강하게 발음하며 빨리 발음하는 경우 마지막 음절을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우리의 언어습관을 고려하면, 호칭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청감상 유사하다.	
2004원541 2004허5535	심장혈관 상태의 치료를 위한 약제	호흡기관용약제, 비타민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니아스판’, ‘니아스팬’, ‘냐스팬’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나스펜’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니아스팬’, ‘냐스팬’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마지막 두 음절이 거의 같게 청감되고, 그 첫 음절도 ‘니아, 냐’와 ‘나’로 자음인 ‘ㄴ’과 모음인 ’ㅏ‘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들 모두가 혀끝이 입천장의 앞부분인 경구개에 닿으며 전설모음이어서 거의 동일하게 청감되어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NIASPAN	나스펜 NASPAIN		
2004당428 2004허5436	슬리퍼, 가죽신 등	레인코트, 블루존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가 도형의 유무와 일부 영문자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THOMAS'는 선출원상표의 한 요부와, 'HARDY'는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와 같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선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와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THOMAS HARDY	THOMAS BURBERRY (선출원상표) HARDY AMIES (선등록상표)		
2003당1860 2004허2871	병원업	병원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참병원”으로만 호칭될 것이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한글 “츰병원”과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그 중 “츰” 부분이 비록 고어(古語)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참병원”으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참병원 Cham Medical Center	츰병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2004원199 2004허5467	케이블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업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오락물 제작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등	연예정보제공업, 쇼 좌석예약업 등	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Tele”와 “visa”로 분리되어 “텔레” 또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분리 관찰되어 “visa” 만에 의해 ”비자“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	
		VISA		
2003원4467 2004허5177	서류가방, 열쇠케이스 등	학생용가방, 서류가방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falchi” 만에 의해 ”팔치, 팔찌, 폴치, 폴찌“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004원1968 2004허6194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등	레스토랑업, 관광음식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Crystal” 부분은 선등록서비스표 1의 로마자 부분과 “Jade” 부분은 선등록서비스표 2의 로마자 부분과 각 동일하고, 또한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크리스탈” 혹은 “제이드”라고 약칭될 수 있을 것이며, 선등록서비스표 1은 “크리스탈”로, 선등록서비스표 2는 “제이드”로 각 약칭될 수 있을 것이다.	
		CRYSTAL BALLROOM 크리스탈볼룸 (선등록서비스표1) THE JADE ROOM 더 제이드 룸 (선등록서비스표2)		
2004당119 2004허6149	지갑, 배낭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양 상표를 외관과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나 선등록상표의 동물을 “머리와 몸통, 꼬리와 네 발을 가진 파충류로 보이는 동물”로 인식하리라고 보이므로 양 상표는 거래 통념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4원1281 2004허4907	목욕염류, 가루비누 등 LooLoo 룰루	립스틱, 매니큐어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표기음에 의하여 '룰루'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룰루'와 '라라'가 방점(●)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들 구성부분이 자연스럽게 분리 관찰된다 할 것이고 신속하고 간략하게 상표를 호칭하려는 거래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룰루' 또는 '라라'로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상표가 '룰루'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2001당1016 2001허7240 2002후1164(파기) 2004허8084(환송)	탄산수, 탄산수제조제 등 	토마토 주우스, 포도 주우스 등 	선출원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선출원상표는 거래계에서 "캡, CAP"만으로 간략하게 인식될 수 있다. 양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2003당2255 2004허4877	비알콜성 과일넥타, 사이다 등 	사과주스, 사이다 등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도형과 문자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Hite'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인 'Hive'가 '벌통, 벌집, 꿀통'의 사전적 의미를 가짐에 반하여, 선등록상표서비표의 요부인 'Hite'에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어떠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외관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셋째 글자가 'v'와 't'로 다르기는 하나, 나머지 세 글자가 동일하고 그 표기의 방식에 있어서도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나머지 글자는 모두 소문자이며 그 글씨의 형태도 유사하여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하이브'로, 선등록상표서비스표가 '하이트'로 각 호칭되어 청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앞의 두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같아서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3당963 2004허2819	신사복, 아동복 등 DIFENDI	신사복, 아동복 등 FENDI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디펜(휀)디"로, 선등록상표들은 문자 부분에 의해 "펜(휀)디"로 호칭된다 할 것인데, 양 상표들은 각각 3음절과 2음절로 음절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2음절인 "펜(휀)디" 부분이 동일하고 어두에 "디"가 있고 없는 미차에 불과하며, 그 호칭에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품	인용상품 등		
			아야 할 것이다.	
2003원4018 2004허4167	몹걸레(MOPS), 위생걸레 등	광택기계기구, 소제기계기구 등	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STAR”와 “LUX”로 분리되어 “스타” 또는 “룩스, 럭스”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룩스, 럭스”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LUX” 만에 의해 ”룩스, 럭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STARLUX			
2004원35 2004허4716	CD-ROM,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등	컴퓨터 비디오게임 프로그램이 수록된 카트리지, 컴퓨터 비디오게임 프로그램이 수록된 카세트 등	영문자 부분과 한글 ’마녀 배달부‘와 ’키키‘로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 키키'에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어떠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끼끼‘와 ’키키‘가 음절수와 모음이 같고 자음 역시 동일한 파열음이어서 청감이 유사하다.	
		KIKI's Delivery Service 마녀 배달부 키키		
2003원4256 2004허4020	경계질환예방/치료용 약제, 면역계질환예방/치료용 약제 등	두발용파우더, 머릿기름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프틱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부분의 두 음절 “에프”, 세 번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인 “티”, 마지막 부분의 “스”가 그대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EFTYX	FTS		
2003당2667 2004허3782	반화장수, 스킨로션 등	선스크린로션, 립스틱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유앤아이” 또는 “유앤드아이”로 호칭되고 “당신과 나”로 관념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역시 문자부분에 의하여 “유앤아이” 또는 “유앤드아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각각 문자부분에 의하여 “유앤아이” 또는 “유앤드아이”로 호칭·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 관념은 동일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003당1952 2004허2840	돌침대(옥이 포함된 돌침대에 한함)	침대, 탁자 등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옥 침대 부분을 제외한 ”AURA 장수“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요부는 다시 로마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새	
	AURA	음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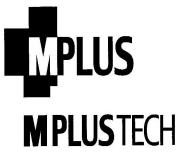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장수옥 침대	장수 (선등록상표) 장수돌 침대 (선출원상표1)  (선출원상표2)  (선출원상표3)	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마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분리되어 관찰된다고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는 "음이온장수"와 같이 한글 5자로 된 문자상표로서 "음이온" 부분과 "장수"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분리되어 관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수" 부분만으로, 선등록상표가 "장수" 부분만으로 관찰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다. (2) 한편, 선출원상표 1은 "장수돌침대", 선출원상표 3은 "장수돌"인바, 선출원상표 2는 "장수돌침대"와 나머지 도형 및 로마자 "e"그리고 "뜨거운 침대" 부분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선출원상표 2의 위 각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장수돌침대"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1과 2의 "장수돌침대" 중 "돌침대" 부분이나 선출원상표 3의 "돌" 부분은 선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으므로 "장수"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수"만으로 관찰되는 경우 동일하다.	
2002당2050 2003허892 2003후1871	침대(옥돌로 만든 제품에 한함), 비의료용 돌침대(옥돌로 만든 제품에 한함) 등	의자, 침대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장수촌 옥돌			
2003당1930 2004허2567	향수, 정유 등	칫솔갑, 칫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CREATIVE" 또는 "SPA"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분리관찰되어 "SPA"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그 호칭으로부터 도출되는 관념이 '광천, 온천' 등이어서,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SPA"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CREATIV ESPA	 SPA 스파		
2003원4852 2004허3010	식용갈분, 샌드위치 등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는 'Etang'이라 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ÉTANG'과 'CLAIR'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Etang'과 선등록서비스표의 한 요부인 'ÉTANG'에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어떠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Etang'과 선등록서비스표의 한 요부인 'ÉTANG'이 모두 '에땅'으로 호칭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Pizza Etang	 ÉTANG CLAIR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원423 2004허2895 2004후2932(심불)	기저귀가방, 등산백 등	금속제 가스보온통, 금속제 오일저장통 등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의 한 요부인 'GUCCI'가 선등록상표와 같아 그 호칭과 관념이 같다.	
				
2003당875 2004허202	슬라이드 파스너	금속제 버클, 귀금속제 버클 등	양 상표 모두 전체 알파벳 글자수가 3글자이고 그 중 앞부분의 영어 알파벳 2글자 "YB"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매우 비슷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이비비"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와이비에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YBB	YBS		
2003원2703 2004허1830 2004후2833(심불)	등산백, 명함케이스 등	단화, 장화 등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선등록상표들이 요부인 '76' 부분으로 인식되고 관념되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3당1911 2004허2246 2004후2840(심불)	봉제용 가위, 원예용 가위 등	가위(가정용)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표기된 대로 '조개표'로 불릴 것이고, 피고의 선등록상표는 그 도형에 의하여 '조개' 또는 '조개표'로 불릴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조개'로서 동일하다.	
	조개표			
2003원2679 2004허1861 2004후2673(심불)	보온병, 종이접시 등	밥통, 도시락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음영으로 표현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외관을 하고 있는 표장들로서, 나아가 호칭과 관념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표장들이라고 할 것이다.	
				
2003원3111 2004허1755	보통안경, 선글라스 등	보통안경, 선글라스 등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일부 문자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한 요부가 'valentino'로 같아 그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Rudolph Valentino	valentino garavani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유사하다.	
2003원3279 2004허1632	대부업, 담보대출금융업 등	대부업, 보증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나 선출원(등록) 서비스표 1, 선출원 서비스표2 모두 식별력 없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유사 여부는 전체 관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 서비스표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우선 외관 및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름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 ①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와 선출원(등록) 서비스표1 "우리은행"과의 대비에 있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캐피탈'은 할부금융 및 소비자대출을 주로 하는 곳으로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곳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과 다른 금융거래를 하는 곳(제2금융권)으로 인식되어 있어 '캐피탈'과 '은행'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서로 같은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금융지주 주식회사"는 2000. 10. 제정된 법률 제6247호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은행업무 외에도 증권, 투자신탁 등 금융전반에 관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캐피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 서비스표2는 관념에 있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인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매우 높다.	
	우리캐피탈 WOORI CAPITAL	우리은행 (선출원(등록)서비스표1) 우리금융지주㈜ WooRi Finance Holdings (선출원서비스표2)		
2003원2643 2004허2123 2004후2567(심불)	페인트, 니스 등	인쇄잉크, 등사잉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한자 부분이 "동양"이라고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관념 또한 '동쪽 아시아' 등으로 동일·유사하다.	
	TOYO INK 東洋インキ	동양잉크 DONG YANG INK		
2003당1652 2004허1922	기모직물, 라미네이트직물 등	면직물, 합성섬유직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Ger-tex" 부분이 '거어텍스'로 호칭되는 경우 그 문자부분이 'GORE-TEX'에 의하여 '고어텍스'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에 있어서 단지 첫 번째 모음에 있어서 '오'와 '어'의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청감으로서는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BIO Ger-tex GER-TEX	40-86-015495 GORE-TEX (선등록상표1) GORE-TEX (선등록상표2)		
2002당2524	데이터통신업, 무선	컴퓨터통신업, 전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인 "AOL"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허2249	통신업 등	우편업 등	호칭 및 관념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선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문자와 도형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도형부분은 삼각형으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선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AOL"로 관념·호칭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선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AOL"의 관념·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AOLNEKR	(선등록상표) AOL.COM (선출원상표)	피고의 선출원서비스표인 "AOL.COM" 중 ".COM"은 인터넷 도메인 체계에서 최상위(Top Level) 도메인 중의 하나를 뜻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선출원서비스표의 요부도 "AOL"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의 선출원서비스표 또한 그 요부를 같이 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2003당1691 2004허660 2004후2420(심불)	병원업, 성형외과업 등	건강관리업, 병원업 등	호칭에 있어서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한글음인 "지앤드미" 또는 "지앤미"로 호칭될 것인데 선출원서비스표가 그 중 "지앤미"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지앤미	知 & 美		
2003원3936 2004허1526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모피 등	포올로우셔츠, 스웨트셔츠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魂" 부분 및 "Soul" 부분으로 각각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 2 역시 도형 부분에 뚜렷한 호칭 및 관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것인데 문자 부분은 "LADY" 부분과 "SOUL" 부분이 그 사이의 도형에 의해 외관상 구분되어 있어, 만일 양 상표가 각각 "Soul", "SOUL"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魂 Soul	LADY SOUL (선등록상표2)		
2003당960 2004허356	카메라, 선글라스 등	비디오게임플레이어, 글로벌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기록된 컴퓨터작동 프로그램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파벳과 한글이 결합된 "X박스"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영문자 "XBOX"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양 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 모두 "엑스박스"로만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X박스	XBOX		
2003당882 2003허6890 2004후2161(심불)	팔뚝시계, 탁상시계 등	전기시계, 측정용시계 등	각 구성부분 중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보이는 "de"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Santos" 부분 또는 "Cartier" 부분으로 분리되어 간략히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선등록상표가 앞부분의	
	SANDOZ	Santos de Cartier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antos” 부분에 의하여 간략히 호칭될 경우, 그것이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에 “산투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Santos” 부분은 영어식 발음에 의하여 “산토스”, “산토즈”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산도즈” 또는 “산도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2003원2095 2004허1663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트북 컴퓨터 등	상품 추적 확인용 전자기계기구, 인간 추적 확인용 전자기계기구 등	선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원코트, 일코드’보다는 알파벳 표기에 따라 “아이코드”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는 마지막 음절이 ‘드’와 ‘다’로 모음이 약간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호칭의 청감이 유사하다.	
	아이코다	I-CODE		
2003원1730 2003허7312	치과용 맨드릴, 치과용 버 등	인공수정체, 인공수정체 삽입기구 및 안구내 삽입물(수술 및 의료용 기계기구 및 장비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SOF"와 "LEX" 사이에 "하이픈(-)"이 있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문자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하이픈(-)"의 유무에 따라 같은 문자 구성으로 이루어진 양 상표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SOF-LEX	SOFLEX		
2002당3249 2004허1007 2004후2048(심불)	한식점경영업, 서양음식점경영업 등	닭튀김업, 닭튀김체인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처가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 그 외관, 관념, 호칭이 동일하다.	
	처가Chicken	처 가 (선등록서비스표1)		
2003원2307 2004허233	심장혈관치료용 약제, 가축병치료제 등	강장제, 구충제 등	선등록상표의 ‘주’나 ‘CO’, ‘LTD’ 등 식별력 없는 부기된 부분을 제외한 “BINEX”와 이의 한글음역인 “바이넥스”로 분리되어 “바이넥스” 또는 “비넥스”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비넥시스”로, 선등록상표가 “비넥스”로 호칭되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바이넥시스”로, 선등록상표가 “바이넥시스”로 각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의 끝 부분이 “시스”와 “스”로 호칭되는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호칭은 동일하며 위 끝 부분 호칭은 발음상 유사음군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이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다.	
	BINEXIS	(주) 바 이 넥 스 BINEX CO., LTD.		
2003원2231 2004허1335	헤어린스, 모발용 염색제 등	모이스쳐라이징크림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가 각 분리 관찰되어 “MANAGER”만에 의하여 “매니저”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위 두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Style Manager	OIL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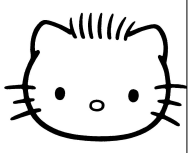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당1284 2004허1083	립스틱, 매니큐어	립그로스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문자의 배열순서도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롤폽, 롭팝"으로 호칭되고, 확인대상상표가 "롤리 팝, 랄리 팝"으로 호칭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이고 확인대상상표는 "막대기 끝에 붙은 사탕"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므로, 관념에 있어 서로 대비할 수 없다.	
	roll pop	Lollipop		
2003원1184 2003허6500 2004후1960(심불)	간판용 플라스틱필름	경·연질에보나이트, 경·연질캐더펠트 등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PANA" 만에 의해 "파나"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PANAGRAPHICS	PANA		
2003원2479 2004허1199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application development) 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서버 등	비교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분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ADVANTAGE	SERVERADVANTAGE		
2003원2329 2003허7480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전자식 조립카드 등	서적, 잡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M"과 "Plus"는 모두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으므로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언제나 "M"과 "Plus"가 결합된 영문자 "MPlus"의 한글음인 "엠플러스"로 호칭된다. 선등록상표 2가 "엠플러스"로 분리되어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3당1182 2003허7428 2004후1755(심불)	모자, 바이저 등	산시복, 오우버코우트 등	"J"는 영어 알파벳 하나로 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COX"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COX"와 선행상표의 한 요부인 "cox"가 같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행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J-COX	cox-comb		
2002당2959	곡물을 원료로 한	오행생식요법에 의	양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문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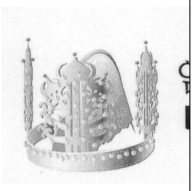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허4009 2003후2751	건강보조식품(음료 제외) 판매대행업	한 농수산물가공식품판매대행업, 오행생식요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식품판매 알선업 등	분 중 "오행"과 나머지 문자 부분은 모두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모두 "오행"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양 서비스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오행생식원	오행육기생식원		
2001원2459 2002허147 2002후1645	공업용 접착제, 공업용 풀 등	공기타이어용 접착제, 공업용 고무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라비아숫자 "401"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LOCSTAR401	401 (인용상표 1) LOCTITE 401 Gold (인용상표 2)		
2002당3222 2004허417 2004후1625(심불)	화학조미료, 소오스 등	통닭조리용 양념통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모두 닭머리 모양의 도형과 한글 "처갓집"에 의하여 식별된다 할 것인데, 위 각 부분의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처갓집	처갓집양념통닭		
2003원1787 2003허6784	보온백, 보온병 등	보온병, 보온병마개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는 모두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의하여 "CAMEL" 또는 "camel"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CAMEL Sack	green camel		
2003원1664 2003허5446 2004후1434(심불)	종양치료용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등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셀미드" 또는 "셀마이드"로, 선출원 등록상표는 "셀(셉)미드", 또는 "셀(셉)마이드"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양 상표는 다같이 호칭 상 보다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의 초, 중성이 "세"로 동일하고 종성도 약음으로 발음되어 청감에 의한 구별이 쉽지 않은 "ㄹ"과 "ㅍ(ㅂ)"으로서 그 첫음절은 유사하게 호칭되는 것이고, 나머지 2, 3음절은 "미드" 또는 "마이드"로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Celmide	CEFM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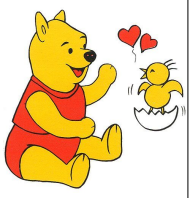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당1715 2004허42 2004후1281(심불)	칫솔갑, 칫솔 등	토너, 에멀젼 등	양 상표의 도형과 문자부분 및 확인대상상표의 각 문자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가 "SPA", "스파" 또는 "SP△" 부분에 의하여 "스파"로 동일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2003원1178 2003허6937	목걸이, 서류가방 등	목걸이, 직물제 손수건 등	"CUCCI"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비교상표들인 "GUCCI"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이므로 "PAOLO"와 "CUCCI"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CUCCI"만으로 "쿠찌" 또는 "구찌"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비교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PAOLOCUCCI	GUCCI (비교상표1~2) GUCCIO GUCCI (비교상표3)  (비교상표4)		
2003원1166 2003허5972 2004후967(심불)	립스틱, 스킨로우션 등	머리기름, 향유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IPKN" 또는 "N°5"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바,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N°5"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일반 수요자에 의하여 위 "N°5"와 외관이 유사한 "No. 5"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IPKN Manhattan N°5	N°5		
2003원1165 2003허5965 2004후950(심불)	립스틱, 스킨로우션 등	머리기름, 향유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입큰" 또는 "넘버 5"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No. 5"와 매우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넘버 화이브"로 호칭되어 "제5번, 다섯 번째"의 의미로 관념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넘버 5"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입큰 맨해튼 넘버 5	N°5		
2003당264 2003허6296	단무지	냉면, 만두피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 중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합천"을 제외한 나머지 "해든나라"(영문자는 그 음역에 지나지 않음)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역시 문자 부분인 "해든나라"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는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 면에서 양 상표 모두 요부인 "해든나라"에 의하여 "해가 든 나라" 또는 "햇빛이 든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나라"로 관념되므로 그 관념도 동일하다.	
2003원2678 2003허7404 2004후1038(심불)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등	냉장고, 세탁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DIAL"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비교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WARPDIAL	WARP (비교상표 1,2,3)		
2003원2677 2003허7398 2004후1021(심불)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등	냉장고, 세탁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CALL"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비교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WARPCALL	WARP (비교상표 1,2,3)		
2003원2676 2003허7381 2004후1014(심불)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등	냉장고, 세탁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GATE"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비교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WARPGATE	WARP (비교상표 1,2,3)		
2003당898 2003허5859 2004후1076(심불)	쿠션, 방석 등	농, 탁자 등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ROBERTA"와 "CAMERINO"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 요부와 선행상표가 같아 양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ROBERTA DI CAMERINO	ROBERTA		
2003당1386 2003허6098 2004후899(심불)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등	슬라이드필름, 플라스틱제 조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행상표 1, 2의 "프뢰벨"이 독일의 유명한 교육가이자 유치원 창시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호 자체가 아닌 "프뢰벨"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프뢰벨"부분도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행상표 1, 2는 그 요부인 한글 "프뢰벨" 또는 영문 "FROEBEL"의 호칭과 관념이	
	프뢰벨 FROEBEL	FROEBEL 프 뢰 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프뢰벨 은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3당609 2003허5507	배낭, 보스턴백	핸드백, 서류가방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중앙에 영문자 “E”가 있고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므로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고, 호칭에 있어 양 상표 모두 “러브 캣”으로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선출원상표가 비록 “LOV”에 영문자 “E”가 빠져 있기는 하나 하트모양이 있어 전체적으로 “LOVE” 즉 “사랑”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 모두 관념이 “사랑스런 고양이”로 동일·유사하다.	
	LOVECAT	LOVCAT		
2002당1611 2003허4849 2004후882(심불)	신사복, 슈우트 등	슈트, 스커어트 등	양 상표의 도형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동그라미나 네모 도형 안에 영문자 "V"나 "B"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상표장의 영문자 "Cashmere"는 그 사용상품의 원재료 표시여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 모두 다른 호칭으로 불려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로 “발렌타인”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아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Valentine	BALLANTYNE Cashmere		
2002당3058 2003허4702 2004후875(심불)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등	건과자, 증과자 등	호칭에 있어서도 인용상표가 하이픈(-)에 의해 “JELL”과 “O”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발행 관행상 ”젤“과 ”오“로 분리하여 호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젤로“로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역시 ”젤로“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 표장 모두 ”(과일의 맛, 빛깔을 넣은) 젤리“라는 의미가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1 내지 5)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다.	
	JELLO	JELL-O		
2003원1783 2003허6609 2004후844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아이크림, 화장용비타민C 등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쓰 등	호칭,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flora"와 "BASIC"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flora"부분이 선행상표와 같이 “플로라”로 호칭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한 요부와 선행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	
	flora BASIC	플로라 FLORA		
2002당362 2003허1802 2004후769(심불)	연마포, 연마지 등	슈우트, 양복바지 등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 “CROCODIL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고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 1은 악어 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밖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없을 것이고, 인용상표2는 악어도형 자체로서 역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다.	
2002당1575 2003허359 2004후745(심불)	성불능 치료용 약제, 비뇨생식기용 약제 등	화학요법제, 항생물질제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으로 "업리마", "유프리마" 또는 "어프리마"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유프리마"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는 네 개의 음절 중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의 초성만이 "ㅁ"과 "ㄴ"으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3개의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중성이 모두 동일하여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청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UPRIMA	유프리나		
2002당149 2003허4559 2004후721(심불)	스티커, 종이제 게시판 등	파스텔, 팔레트 등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호칭 및 관념이 모두 '고양이', '고양이 얼굴', '새끼고양이' 등으로서 동일하고, 인용상표가 한글 "고양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도형의 외관에 의하여 '고양이'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	
				
2002당2957 2003허4375 2004후608(심불)	의료업, 병원업 등	소아과의료업	㈜호 표장은 "아이사랑", "소아과의원"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호 표장이 "아이사랑"으로 약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아이사랑	아이사랑소아과의원		
2003당11 2003허4344 2004후660(심불)	부동산 컨설팅, 인터넷 결혼 중개업	남성복, 여성복 등	인용상표 "DAKS"가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과 "CLUB"이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서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기본단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 부분만에 의하여, 그 중에서도 "DAKS"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인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한 표장이다.	
	DAKSCLUB 닥스클럽	DAKS		
2002당3243 2003허4627	양복, 스웨터 등	작업복, 스커어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루웨이"로 호칭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문자부분은 호칭에서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상표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BLUEWAY			
2003원1552 2003허6456 2004후516(심불)	공책, 볼펜 등	냉장고, 스케줄링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DOOR”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WARPDOOR	WARP (인용상표1,2,3)		
2003원459 2003허3907	배	배, 배나무묘목	출원상표의 요부는 “왕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도형” 또는 “임금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용상표는 “임금” 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요부인 “임금님”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임금”과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임금		
2002당2754 2003허2843	안내렌즈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 “ACRYFOLD”와 인용상표 “ACRYSOF”는 전체적인 구성, 문자의 서체 및 크기가 서로 비슷하고, 영문자 “ACRY”의 문자수가 4자로서 양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문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뒷부분 문자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게 보여진다 할 것이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크리폴드” 또는 “아크리”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크리소프” 또는 “아크리솦”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어두부분의 3음절이 모두 “아크리”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된다.	
	ACRYFOLD	ACRYSOF		
2002당2958 2003허4979 2004후424(심불)	곡물혼합가루, 보리가루 등	오행생식요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식품, 오행생식요법에 의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생식제품 등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다. 양 상표는 모두 “오행”으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오행토생식	 오행육기		
2001당2143 2002허2778 2002후2723	효모추출엑기스가 함유된 혼합음료, 인삼차 등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의 사용표장은 호칭과 관념에서 동일하며, 후자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은 혼합음료에 해당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위 지정상품들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사용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40-94- 17919 바 란 스	Balance3	리범위에 속한다.	
2001당438 2002허444 2002후1249	우육, 돈육, 등		피고의 사용 표장이 한글 문자부문에 의하여 '핫윙'이라고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사용 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	
	핫윙	아람골드		
2003당74 2003허3792 2004후325	농, 커어튼 등	농, 탁자 등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영문자부분의 일부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ROBERTA"와 "CAMERINO"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 요부와 선행상표가 같아 양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ROBERTA DI CAMERINO	ROBERTA		
2003원1394 2003허5552	의료용 여성가슴확대기계기구	우유병, 보청기 등	인용상표 1의 문자부분 중 '리오' 및 'RIO'는 브라질의 옛 수도인 '리오데자네이로'의 약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인용상표 1의 요부는 나머지 '부라보' 및 'BRAVO'라고 할 것인바,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다.	
	BRAVA	리오부라보 RIOBRAVO		
2002당3030 2003허5750	우산, 양산 등	책가방, 큰지갑 등	양 상표가 곰 형태의 도형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경우 양 상표에 표현된 곰의 자세, 표정, 복장 등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모두 간략히 의인화된 "곰" 또는 "곰돌이"로 불려지고 인식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Pooh		
2002당2363 2003허3365 2004후233(심불)	향수, 화장크림 등	단화, 장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분리되어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루돌프" 부분과 "발렌티노" 부분은 분리 관찰되어, "발렌티노"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들 모두 "VALENTINO" 또는 "valentino"부분에 의하여 "발렌티노"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들이 모두 "발렌티노"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루돌프 발렌티 노	VALENTI V (인용상표1~2) valentino garavan V (인용상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valentino garavani (인용상표4)  (인용상표5)  (인용상표6~7)  (인용상표8)  (인용상표9)		
2002원3683 2003허4795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바닥판 등	포틀란트 시멘트, 천연석재 등	식별력있는 요부라고 할 수 있는 “Ville”이라는 영문자 부분 또는 그 한글음역인 “빌” 부분만에 의하여 “빌”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Ville” 또는 “빌”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베스트빌 Best Ville	그 린 빌 GREEN VILLE		
2003원266 2003허3051 2004후97(심불)	서류가방, 핸드백 등	화장품소매점관리업, 안경소매점관리업 등	분리관찰될 경우 이를 이 사건 출원상표인 “ Fareagemo ”와 대비해 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서비스표는 9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숫자가 같은데다가 모두 필기체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서체형도 같아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어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 상표권자의 명칭이 “살바토레 훼(페)라가모”인 사실을 감안하면 “mo”의 표기인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어서 ‘페라가모“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파레아게모“, ”파레게마“ 등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서비스표는 호칭에 있어	
	Fareagemo	Salvatore Ferraga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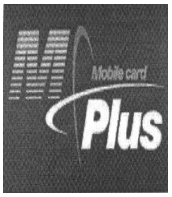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서도 유사하게 청감된다.	
2002당2805 2003허3310 2004후127(심불)	단화, 샌달 등	예복, 스키복 등	영문자 "Lucas"가 그 한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선행상표의 문자부분이 분리관찰이 가능함도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선행상표의 요부는 "MARIO"와 "LUCAS"라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한 요부인 "LUCAS"의 호칭과 관념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3원1551 2003허4962 2004후28(심불)	비디오리코더, 텔레비전수신기 등	냉장고, 스케줄링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STATION”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STATION"보다는 어두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WARP"에 의하여 호칭,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에 의하여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WARPSTATION	WARP (인용상표1,2,3)		
2002당2387 2003허3358 2004후11(심불)	신사복, 양복바지 등	슈트, 재킷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가운데 “VALENTINO” 부분만에 의하여 “바렌티노” 또는 “발렌티노” 등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 모두 “VALENTINO” 또는 “valentino”부분에 의하여 “바렌티노” 또는 “발렌티노”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들이 모두 “바렌티노” 또는 “발렌티노”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VALENTINO AMEDEO	VALENTINO (인용상표1) valentino garavani (인용상표2) valentino Miss V (인용상표3)		
2003원500 2003허4719 2003후2935(심불)	안경줄, 보통안경	전자시계, 신사복 등	‘ACTIVE’라는 영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액티브’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들 또한 영문자 또는 한글 문자 부분에 의하여 모두 ‘액티브’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ACTIVE’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때에는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camel active	ACTIV 액티브 (인용상표1,5~6) ACTIV 액티브 (인용상표2~4)		
2002당3160 2003허3457	신사복, 양복바지 등	스웨터, 목걸이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프랑스어인 “MONT BLANC"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부분인 ”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몽블랑 MONT BLANC	MONT BLANC MONTBLANC	몽블랑"은 위 부분에 관한 한글 발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관념 및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상표이다.	
2002원4027 2003허3006	핸드모이스처라이저, 바디모이스처라이저 등	향수, 화장비누 등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 의하여 '브론리' 또는 '브론레이'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일반 수요자에 의하여 '브로니' 또는 '블로니'로 호칭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브론리'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이 '브로니'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청감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BRONNLEY	**BLONY** (인용상표1~2)		
2002원1954 2003허2454 2003후2867(심불)	스톱워치, 크로노그래프 등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Original"은 원본, 원형, 진품 등을 뜻하는 낱말로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로 "Glashütte"에 착안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 모두에 "GLASHÜTTE"가 표시되어 있어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두 상표를 유사한 상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Glashütte Original	A. LANGE & SÖHNE GLASHÜTTE/SA		
2002원4856 2003허3914	운동용 아노락, 반바지 등	스커트, 와이셔츠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DANA'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영어식으로 '다나'라고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다나'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DANA	DANA BUCHMA		
2002원4192 2003허3662	향수, 일반화장수 등	공기청향제, 담배냄새제거용 공기청향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BODY'와 'COCOON'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그 중 'BODY'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향수 등 화장품류 및 비누류의 사용 대상을 뜻하는 문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COCOON'만으로 간략히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는 언제나 'COCOON'으로만 호칭, 관념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COCOON'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BODYCOCOON	**COCOON**		
2002원3837 2003허3075	저축은행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인 '삼성'만으로 분리되어 간략히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 1은 그 요부인 '삼성', '三星', 'SAMSUNG'의 호칭인 '삼성'만으로 간략히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인용서비스표 2 역시 '삼성'만으로 간략히 호칭, 관념될 수 있다.	
	삼성상호저축은행	삼성생명 三星生命 SAMSUNG LIFE INSURANCE (인용상표1) everywhere · everytime · everything e-money삼성카드 (인용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원3054 2003허3532	보석시계	시계줄, 팔목시계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영어발음습성이 영문자 "L"과 "R"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어 가운데에 들어가는 영문자 "LL"의 경우에는 "ㄹ"로 두번 내지는 한번 발음하고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칼라" 또는 "카라"로, 선행상표는 "카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카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행상표와 호칭이 같다.	
	KALLA	CARRA 카라		
2002당3288 2003허2379 2003후2546(심불)	건과자, 케이크 등	화과자의 광고표지판, 인터넷 광고 등에 표시하여 사용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수예당' 중에서 '당' 부분은 제과점 점포 또는 귀금속 취급 점포 등의 이름 밑에 붙여 쓰는 흔한 용어로 쉽게 직감될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예'만으로 분리 인식되어 호칭될 수 있고, (가)호 표장은 문자 그대로 단순히 '수애'로만 호칭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예'로 호칭될 경우 (가)호 표장의 호칭인 '수애'와는 그 청감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양 상표를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매우 유사하다.	
	수예당	수애(手愛)		
2002당1662 2003허1260 2003후2584(심불)	백세주		이 사건 등록상표는 '神仙' 또는 '신선'과 '百洗酒' 또는 '백세주'로, 인용상표는 '국순당'과 '백세주'로 각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가 모두 '백세주'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神仙 百洗酒 신선 백세주	국순당 백세주		
2002당2668 2003허2959	신사복, 와이셔어츠 등	양복바지, 코우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MARE"로 분리 관찰되고, 인용상표가 "MARE"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Mare Monte	ARMATA DI MARE		
2002원4001 2003허3068	모발용착색제, 손톱광택제 등	치약, 칫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토니'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TONYMOLY	Tonee 토니 (인용상표1) Toney 토니 (인용상표2)		
2002원2065 2003허2546	약주, 소주 등	소주, 맥주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오름" 부분과 "이슬" 부분이 대등한 식별력을 갖고 각각 분리되어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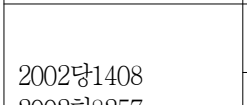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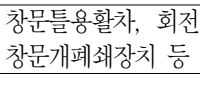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오름이슬	참眞이슬露	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 1은 한글 부분인 “참이슬”과 한자 부분인 “眞露”로 쉽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참이슬” 부분 중 “진짜” 또는 “참된”이라는 의미가 있는 “참”은 “이슬”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위 부분의 핵심적 요부는 “이슬”이라 할 것이다. “이슬” 또는 “참이슬”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2002당3025 2003허2942	단화, 장화 등	단화, 우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 혹은 “Vivienne”와 “Westwood” 부분으로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위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들은 모두 “Westwood”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Westwood”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등록상표를 “Westwood”만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글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Vivienne Westwood	웨스트우드 WestWood (인용상표1) WESTWOOD (인용상표2) WESTWOOD (인용상표3) WESTWOOD (인용상표4) WESTWOOD (인용상표5)		
2002원3924 2003허2881 2003후2324(심불)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펌웨어 등	무선호출기, 카메라 등	호칭,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에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palm"부분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로서 관찰되는 인용상표 1의 "TELEPALM"과 비교하여 보면 그 호칭, 관념이 다르나, 인용상표 2의 요부인 "palm"과 비교하여 보면 그 호칭, 관념이 같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palm	TELEPALM (인용상표1) net2palm (인용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원4231 2003허2621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조제품, 살충제 등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등	인용상표의 식별력있는 요부라고 할 수 있는 'DIAZOL' 또는 '다이아졸' 부분에 의하여 '디아졸' 또는 '다이아졸'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디아졸' 또는 '다이아졸' 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다.	
	DIAZOL	헤모다이아졸 HEMODIAZOL		
2002원3183 2003허1000	심장혈관용 약제, 폐질환용치료용 약제 등	근육이완제, 동물용 약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라크(클)리-어" 인용상표들은 "트라크리움"으로 각 호칭되어 이들 상표들은 모두 5음절로 동일하게 호칭될 뿐만 아니라 호칭상 보다 강하게 인식되는 어두의 4음절이 "트라크리"로 동일하게 호칭되며, 끝 음절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어"와 인용상표들의 "움"으로 다소 다르게 발음되기는 하나 양 음절의 초성이 "ㅇ"으로서 동일하고 중성도 "ㅟ"와 "ㅜ"로 발음되어 유사모음군으로 전체적으로 상호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에서 유사하다.	
	TRACLEER	TRACRIUM (인용상표1) 트라크리움 (인용상표2)		
2002원3254 2003허1864	일정시간 경과 후 투약되도록 고안된 약용 캡슐, 일정시간 경과 후 투약되도록 고안된 정제형태의 통증치료제 등	항균감지제, 항원 등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디프코어"로, 인용상표는 "디프코"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앞 3음절이 인용상표와 같을 뿐만 아니라 끝 부분도 "코어"와 "코"로 유사하게 발음되어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DIFFCORE	DIFCO		
2003원14 2003허2218	생선회전문 식당업, 생선회전문 식당체인업 등	카페업, 카페테리어업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있는 요부인 '가교'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가 한자 부분만에 의하여 '가교'라고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다리를 놓음' 등으로 동일·유사하다.	
	가교세꼬시	架け橋(か はし)		
2002원4229 2003허2089	비자기식 크레디트카드, 비자기식 전철카드 등	서적, 연필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M"부분은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영문자 "Plus"부분은 수학에서 (+), 즉 더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여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M"과 "Plus"부분은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 호칭,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엠플러스 (인용상표3)	"곡선형태가 엇갈리게 된 도형"부분에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영문자 "Mobile card"부분은 자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호칭시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엠플러스"로, 인용상표 3은 "엠플러스"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관념이 인용상표 3과는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3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2원3089 2003허1932	김치통, 찬용 식품 저장용기 등	상품진열대, 프라이팬 등	이를 전체로 관찰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HANDYBOX"와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HANDYBOX	 (인용상표1) 핸 디 (인용상표2) HAND (인용상표3)		
2002원3796 2003허1383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 응용소프트웨어간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고객관계관리용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디스켓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SALES' 또는 'LOGIX'로 각각 분리되어 인식되고 약칭될 수 있다. 인용상표들은 언제나 'LOGIX'로만 호칭, 관념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뒷부분의 'LOGIX'로만 호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SALES LOGIX	 (인용상표1) LOGI (인용상표2)		
2002당1396 2003허1222	비금속제 문틀, 비금속제 창문틀 등	비금속제 창문, 비금속제 창문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가운데 '퀸' 부분은, 다른 한글 문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으므로, 위 '퀸' 부분이 '하이'와 '샤시'라는 문자 사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요청에 따라 '하이샤시' 또는 '하이' 등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하이샤시'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하이샤시'로 약칭되	
	설악 하이퀸샤시	하이샤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002원4078 2003허1130 2003후1925(심불)	회보, 정기간행물 등	신문, 서적 등	전체적인 호칭, 관념에 있어서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좋은, 훌륭한” 등의 뜻이 있는 영어 단어 "NICE"의 한글 음인 “나이스”로 쉽게 호칭, 관념될 것이고 인용상표 역시 같은 뜻을 가진 “나이스”로만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NICE 나이스		
2002원3736 2003허1055	공책, 그림물감통 등	그림엽서, 서적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에 나타난 인형의 이름으로 보이는 “뚝딱이”로만 간략히 호칭, 관념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그 일부인 “뚝딱이” 또는 “탐구대장”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것인바, 만일 인용상표가 “뚝딱이”로만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뚝딱이는 탐구대장		
2002원1763 2003허649 2003후1819(심불)	가죽신, 등산화 등	잠바, 스웨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 “CARTE" 만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 프랑스어식으로 ”까르뜨“로 호칭되거나 영어식으로 ”카(르)트“ 또는 ”카르테“로 호칭될 수 있고, 위 ”CARTE" 는 프랑스어로는 “카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메뉴, 식단, 카드”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CARTE BLUE			
2002당1598 2002허7100	세탁용유연제, 스킨 밀크 등	공기청향제, 방취제 등	인용상표 4, 5의 구성 중 그 지정상품 중 “싱크대배수구용살균제, 싱크대배수구용소취제, 싱크대배수구용살균소취제” 외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인용상표 4, 5의 각 문자 부분이 요부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싱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4, 5의 일 요부인 “싱크” 또는 "SINK"가 “싱크”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2음절의 짧은 음절에서 첫 음절과 뒷 음절 첫부분이 같아 청음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싱 키 SINKY	싱크 볼 (인용상표4) SINK BALL (인용상표5)		
2002원2804	신사복, 오버코트	신사복, 스웨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신속을 요하는 거래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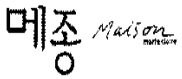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허991	등		요청에 따라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ESSESS'라는 조어 부분만에 의하여 '에스에스'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영문자 조어 부분인 'ESSESS' 만에 의하여 '에스에스'로 약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ESSESSCLASSIC	ESSES 에스에스 (인용상표1) ESSESS ECONO SHOP (인용상표2)		
2002원1857 2003허21 2003후1659	펜던트(pendant) 형상의 물건을 포함한 녹음 또는 재생을 위한 장착 가능한 휴대용기기, 손목밴드(wrist strap) 형상의 물건을 포함한 녹음 또는 재생을 위한 장착 가능한 휴대용기기	헤드폰, 이어폰	인용상표의 마침표를 무시하고 비교, 관찰하면 모두 "wear"로 인식될 수 있어 서로 동일, 유사하게 관념될 수 있다.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웨어" 또는 "이닷웨어"로 호칭되거나 마침점에 따라 "이"와 "웨어"로 분리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더블유 이어" 또는 "더불유 닷 이어" 또는 마침점에 관계 없이 "웨어"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웨어"로 분리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웨어"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서로 동일, 유사하다.	
	e.wear	w.ear		
2002원3313 2003허724	명함케이스, 승차권 케이스 등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모피 등	양 상표의 "BLUe"와 "East"는 뒤에 오는 단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없어서 양 상표의 요부는 영문자 "Navy"로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BLUE NAVY	East Navy		
2002원3847 2003허1376	배낭, 서류가방,	등산백, 란도셀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각 'Spring'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때에는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Spring Cooler 스프링쿨러	Spring Break		
2002당1331 2002허7582 2003후1475(심불)	아동복, 슈우트 등	아동복, 슈트 등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모두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양 상표는 모두 한 마리의 개를 도형화한 표장으로서, 몸의 색깔 및 오른쪽 앞발의 위치, 꼬리의 모양과 위치, 몸의 동작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비슷하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1)  (인용상표2)		
2001당1427	샴푸, 헤어스타일링		요부인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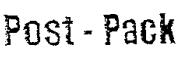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허1287 2002후2112	용·헤어케어용 젤 	콤팩트, 칫솔 등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2002원2862 2003허151	외과 기계 기구, 내과 기계 기구 등 	배액 카테터 	영문자 부분인 'MAC'과 'LOC' 부분으로 분리되어 'MAC' 부분만에 의하여 '맥'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	
2002원1665 2003허632	건부 병균용 살균제, 구강청량제 등 	상처소독제, 살균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한글 및 영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세라픽" 또는 "쎄라픽"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어식 발음 표기에 따라 "쎄라핀" 또는 "케라핀"으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쎄라픽"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쎄라핀"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 또한 셋째 음절의 종성만이 'ㄴ' 과 'ㄱ'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청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세라핀"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세'와 '쎄'가 청감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쎄라핀"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2002원1792 2002허6930	슈트, 스커트 등 	슈우트, 스커어트 등 	"Forum" 부분은 식별력을 갖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Forum"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의류로서 "FORUM" 부분이 식별력을 가진 점, 그리고 "LE" 부분은 프랑스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남성 단수를 표시하는 정관사로서 특별현저성이 없고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단지 영문자 2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용상표 역시 "FORUM"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2002당1408 2002허8257	후로아힌지, 피벗힌지 등 	창문틀용활차, 회전창문개폐쇄장치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8300"과 인용상표의 일 요부인 "8300"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2원2819 2003허526	페인트 제거/페인트 스트립핑 및 기타	비의료용 방향제, 피혁보존용 광택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르멕스" 또는 "아-멕스"로 호칭될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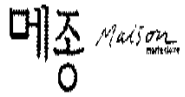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코팅의 세척/제거용으로 제형된 중탄산나트륨 혼합물	등	준과 영문자로 된 조어상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표기된 영문자의 발음 그대로 호칭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 달리 호칭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르멕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로맥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앞 부분의 1, 2음절이 "아르"와 "아로"로, 뒷 부분의 3, 4음절도 "맥스"와 "멕스"로 거의 동일하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호 유사하게 청감되는 유사상표이다.	
	ARMEX	Aromax 아로맥스		
2002당1593 2002허7889 2003후1307(심불)	김치통,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플라스틱제 용기	이 사건 등록상표는 "LOCK" 또는 "LOCK & LOCK"과 도형부분으로, (가)호 표장은 "PERPECT"와 "LOCK"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하여 보았을 때, (가)호 표장의 "PERPECT"는 뒤에 연결되는 단어를 수식하는 성질표시적 형용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 (가)호 표장의 요부는 "LOCK"이라고 할 것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LOCK" 또는 "LOCK & LOCK"과 (가)호 표장의 "LOCK"은 그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도 유사하다.	
	LOCK & LOCK	PERFECT LOCK		
2002원3098 2002허8356	골프가방, 골프공	낚싯대, 낚시릴 등	인용상표의 경우 “DREAM"과 ”BASS" 이들 두 개의 단어를 분리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DREAM" 또는 ”BASS"로 호칭, 관념된다 할 것이서 만약 인용상표가 “DREAM"만으로 호칭, 관념될 때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에서 동일, 유사하다.	
	DREAM	DREAMBASS		
2002원2437 2003허144	살충제, 살균제 등	자율신경계용 약제, 살균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PILAR” 부분은 영문자 “L”자 하나만이 다르고 그 발음은 동일한 영어단어 ‘pillar’와 같이 관념되고 2개 음절의 ‘필라’와 같이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 1 역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영문자 “R”자 하나만이 다르고 발음은 동일한 같은 영어단어 ‘pillar’와 같이 관념되고 2개 음절의 ‘필라’와 같이 호칭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과 관념 및 호칭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GLYCIN” 부분은 설령 그 관념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글리신’으로 호칭되어 인용상표 2와 호칭에서 동일하다.	
	PILARGLYCIN	PILLA 필 라 (인용상표 1) 글리신 (인용상표 2)		
2002원3055 2003허328	부동산 중개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인용서비스표를 영문자 부분과 숫자 부분으로 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과 인용서비스표의 영문자 부분은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당1648 2002허7124	세탁용섬유유연제, 미용목욕물첨가제 등	향수, 아이샤도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의 표장인 'AMORE'에 첫 번째 알파벳과 두 번째 알파벳 사이에 'ME'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A'로 시작하여 'MORE'로 끝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외관이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메모레'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두 번째 음절인 '메'가 있고 없음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음절은 모두 동일하고, 따라서 그 외관,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AMEMORE	AMORE (인용상표1,3)  (인용상표2)		
2001당830 2002허7834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업, 건강식품에 대한 교육업 등	약제연구업, 건강진단업 등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오행'과 '육기'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하나인 '오행'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부의 구성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오행'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오행육기	오행생식원		
2002당1783 2002허6909	향수, 선스크린로션 등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BEAUTEMPS' 또는 'DODO'(대부분의 경우 '도도'로 발음될 것이다)만으로 간략하게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 '피어리스', '도도' 및 토끼 모양의 도형이 함께 결합된 상표로서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중 한글 '도도' 부분이 한글 '피어리스'에 비하여 외관상 훨씬 큰 글자체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주로 '도도'로만 약칭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뒷부분의 'DOD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BEAUTEMPSDODO			
2002원1465 2002허7018	전기녹즙기, 가정용 전기믹서 등	TV위성방송수신기,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등	인용상표 2는 '동아' 또는 '오츠카', 'DONG-A' 또는 'OTSUKA'로 각각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2가 만일 '동아' 또는 'DONG-A'로만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2는 '동아'로만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는 그 호칭, 관념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동아 DONGA	동아오츠카 DONG-A OTSUKA (인용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당1082 2002허6589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한글부분과 영문자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에 의하더라도 “위브”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또한 일반적인 영어 발음에 따라서 “위~브”(~는 장음을 뜻함)라고 호칭되거나 또는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요청에 따라 “위브”라고 호칭될 것인바, 인용상표가 “위브”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고, 인용상표가 “위~브”라고 호칭될 경우에도 첫 음절의 장·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브 WIV	WE`VE		
2001당826 2001허6520 2002후1942	두류를 혼합한 것을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건조야채를 혼합한 것을 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등	쌀, 보리 등	“오행”과 “육기”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그 중 “오행”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인용상표 1, 2 등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인용상표 1, 2 등과 동일·유사하다.	
	주식회사 오행육기	(인용상표 1) **오행 천공 생식** (인용상표 2) **오행생식원** (인용서비스표)		
2002당1270 2002허5586	모자, 반바지 등	학생복, 양복바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부분과 영문자부분의 결합구조, 도형부분의 기본적 형상, 영문자부분의 구성문자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 1이 “니크” 또는 “니케”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과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NEEK	NIKE (인용상표1)		
2002당261 2002허4903	양복바지, 스커어트 등	스웨터 등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은 모두 갓 또는 갓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이 오른손에 타원형 모양의 장식이 달린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실루엣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형상이 극히 유사하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은 모두 ‘갓 또는 갓 모양의 모자를 쓰고 오른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으로 직감적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동일·유사하다.	
2002원2329 2002허6220 2003후311(심불)	가죽제열쇠케이스, 란도셀 등	모피, 원피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BERTO"와 "NARICE"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ROBERTO"만에 의하여 ”로베르토“로 호칭되고, ‘서양 사람의 이름’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	
	ROBERTO NARICE	ROBERTORINA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넘이 동일하다.	
2002원309 2002허5357 2003후298(심불)	롱코트, 반바지 등	해수욕복, 샤쓰 등	양 상표의 문자 부분에는 모두 영문자 'HEAD'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성이 있는 도형 부분과 영문자 'HEAD' 부분이 단순하지만 독특한 구성을 이루면서 주요부를 구성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상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HEADA'와 'GREEN'이나 'HEAD', 'A', 'GREEN'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HEADA' 부분에 의하여 '헤다'로 호칭되거나 'HEAD' 부분에 의하여 '헤드'로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그 문자 부분인 'HEAD'에 의하여 '헤드'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두 번째 음절의 모음만이 'ㅏ' 및 'ㅡ'로 다를 뿐이어서 서로 유사하다.	
				
2002원27 2002허5609	서적, 신문 등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MAISON" 부분과 "FIGARO" 부분이 분리되어 구성된 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간이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계의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MAISON" 부분만에 의하여 프랑스어 발음에 따라 '메종'으로 호칭되거나, 영문자로 인식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메이즌, 메이슨, 마이손'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인용상표 1을 '메종'으로 약칭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마이손'으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MAISON FIGARO	 (인용상표1)  (인용상표2)		
2002원389 2002허5098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및 게임매뉴얼	배전반, 백열전구 등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IMPRESSIONS"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IMPRESSIONS"만에 의하여"임프레션즈"로 호칭되고 "인상, 감명, 느낌'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IMPRESSION		
2002원1217 2002허5630	단화, 부츠 등	예복, 신사복 등	양 상표들 중에서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내부의 도형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에 비하여 눈, 코, 입 등 사람의 얼굴 형상을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인용상표 2, 4는 사람의 얼굴이 음영처리되어 어둡게 보여지는 차이는 있으나,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공통점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그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꼬여지고 부시시한 머리카락과 턱부분 장식	
		 (인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인용상표4)	이 있는 사람의 얼굴' 등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2002원310 2002허4767 2003후69(상고취하)	서적, 소책자 등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사진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중 "i"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요부인 "Seum"부분만에 의하여 "세음" 또는 "세움"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인용상표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한글 "세음" 및 영문자 "SEUM"에 의하여 "세음"으로 호칭될 수 있다.	
	iSeum			
2002원341 2002허5005	종이제라벨, 종이제상자 등	인쇄용지, 필기용지 등	세부적인 모양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두 상표 모두 그 도형으로부터 지구에서 식물이 자라는 관념이 도출되므로 관념도 서로 유사하다.	
		 Environmental Friendly		
2002원54 2002허5135 2002후3023(심불)	계산척, 광학렌즈 등	모사전송기, 전화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Post'만에 의하여 '포스트'로 호칭·관념되고 인용상표들 역시 '포스트'로 각 호칭·관념되는 경우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PostPet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인용상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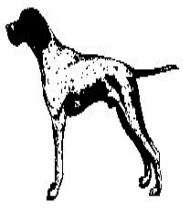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5)		
2002원63 2002허4934	서적, 신문 등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메종' 또는 '휘가로'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인용상표는 '메종' 부분이 다른 표장보다 큰 크기로 독립하여 표시되어 있어 그 나머지 구성 부분과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인용상표를 '메종'으로 약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메종'으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경우 두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메종휘가로			
2002당229 2002허4514	모발염색제, 콜드퍼머용액 등	스킨밀크, 모발염색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SAMSIN"과 "L.P.P."가, 인용상표 1은 "C-9"와 "L.P.P"가, 인용상표 2는 "DIVINA"와 "L.P.P."가, 각각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각각 "SAMSIN"과 "L.P.P.", "C-9"와 "L.P.P", "DIVINA"와 "L.P.P."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어, 결국 양 상표들은 "L.P.P."또는 "L.P.P"만에 의하여 "엘 피 피"로 호칭되고 영문자 3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SAMSIN L.P.P.	C-9 L.P.P (인용상표1) DIVINA L.P.P. (인용상표2)		
2002당298 2002허4699	서류가방, 핸드백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양 상표는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 1은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 1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 1과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상표1)		
2001당2320 2002허2822 2002후3009(심불)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비듬두피 가려움증 치료 의약품비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덴트롤"로 호칭되는 경우에 양 상표는 모두 세음절로 발음되며 그 중 첫 음절이 완전히 같고, 둘째 음절은 "ㅡ"모음	
	DANTROL	Dendro, 덴드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이 동일하고 이에 선행하는 자음은 “ㅌ”와 “ㄷ”로서 상이하나 이들 자음은 모두 동일한 파열음의 계통에 속하며 특히 영문자 “t”를 “ㅌ”가 아닌 “ㄷ”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감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주에 있으며, 나아가 셋째 음절은 “롤”과 “로”로서 청각적 인상을 좌우하는 “로” 부분을 공유하면서 단지 “ㄹ” 받침이 있고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은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2002원1028 2002허5104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및 게임매뉴얼	배전반, 백열전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Games'는 지정상품인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및 게임매뉴얼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Impressions' 라는 문자와 도형부분이라 할 것인데, 결국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임프레션즈‘로, 인용상표는 ’임프레션‘으로 각 호칭될 것인데, ’임프레션즈‘는 ’임프레션‘의 끝 음절에 ’즈‘만을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고, 통상 영어에서 명사의 복수형을 표시하는 ’-s'부분은 약하게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도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IMPRESSION		
2002원1236 2002허4446 20002후2891 (상고기각)	모피, 스펀지레더 등	핸드백, 서류가방 등	인용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각각 “CARTE"와 ”BLANCHE", "CARTE"와 "BLUE"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CARTE"만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 프랑스어식으로 ”까르뜨“로 호칭되거나 영어식으로 ”카(르)트“ 또는 ”카르테“로 호칭될 수 있고, 위 ”CARTE"는 프랑스어로는 ‘카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메뉴, 식단, 카드’의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CARTE BLUE	CARTEBLANCHE		
2001당2128 2002허4156 2002후2761(심불)	비알콜성 과일넥타, 사이다 등	사과주스, 사이다 등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시각적 인상을 좌우하는 영문자 부분의 4글자 중 3글자가 동일하고 그 표기의 방식도 유사할 뿐 아니라, 이를 개구된 직사각형 또는 이와 매우 흡사한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는 점에서 전체적 배치구도도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인용상표는 영문자 및 한글자 부분에 의하여 “하이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이브”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호칭의 마지막 음절이 “트”와 “브”라는 차이가 있으나, 3음절의 호칭 중 청음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앞의 2음절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서로 유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2001당829	건강식품 판매대행	쌀, 보리 등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각 구성부분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허3429	업, 건강식품 판매 알선업 등		'오행'과 '육기'가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지지 아니 하는 이상 '오행'과 '육기'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하나인 '오행'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 1은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쉽게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 1의 "오행생식"과 인용상표 2의 "오행 천공 생식" 그리고 인용서비스표의 "오행생식원"은 "오행"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결합하여 그 본래적 의미를 버리고 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기 보다는 구성부분인 "오행"과 나머지 부분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진 채 합하여져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오행'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부의 구성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오행'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인용상표 및 인용서비스표들과 호칭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오행육기	(인용상표1) 오행 천공 생식 (인용상표2) 오행생식원 (인용서비스표)		
2002원592 2002허4231	아동복, 청바지 등	아동복, 유아복 등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배열방법, 단어 및 글자의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표를 신속하고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Cerf" 또는 그 한글발음 표기인 "세르"만에 의하여"세르"로 호칭되고, '사슴'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Cerf bébé 세르-베베	CER 세르		
99당1185 2000허945 2000후2156(파기) 2002허5678(환송)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등	사업조사 평가업, 호텔업 등	'파크(PARK)'가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과의 관계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대명(DAEMYUNG)'과 '비발디(VIVALDI)'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비발디(VIVALDI)'만으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에 인용서비스표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daemyung 대명비발디파크 DAEMYUNG VIVALDI PARK	비 발 디 VIVALDI		
2002원314 2002허4736 2002후2808(심불)	습자용 책, 음악교재 등	서적, 학습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WITTE" 또는 "비테에"만에 의하여 "비테에"로 호칭되고 외국인의 성 등으로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 중 한글 부분은 영문자 부분의 한글 발음표기이고, 영문자 부분 "KARL WITTE"는 "KARL"과 "WITTE"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KARL WITTE"는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진 성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성명은 간이신속이 요구되는 거래사회의 속성상 일반적으로 성 또는 이름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KARL"	
	WITTE IMAGE CARD 비테에 이미지 카드	K A R L WITTE 칼 비 테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및 "칼"에 의하여 "칼"로 호칭·관념되거나 "WITTE" 및 "비테"에 의하여 "비테"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2000당35 2000허4534 2001후1556(파기) 2002허8004(환송)	상자, 지갑, 핸드백 등	핸드백, 트렁크, 오페라백 등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COACH(코치)' 부분에 의하여 '코치'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 1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다같이 동일하다.	
	SPORTSCOACH 스포츠코치	COACH LEATHERWARE		
2001당1690 2002허680 2002후2662 (상고기각)	가축병치료제, 동물용약제 등	동물용 약제, 가축병 치료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진프론'과 같이 한글로 구성된 문자 상표로서 '진프론'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모두 '진프로'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유사한 상표이다.	
	진프론	ZINPRO (인용상표 1) 진프로 (인용상표 2)		
2001당1689 2002허673 2002후2655 (상고기각)	가축병치료제, 동물용약제 등	동물용 약제, 가축병 치료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ZINPRON'과 같이 영문 7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진프론'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모두 '진프로'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ZINPRON	ZINPRO (인용상표 1) 진프로 (인용상표 2)		
2000원2874 2001허3057 2001후2955	화장제거용 얇은 천, 행주 등	보통 안경, 신사복, 등	"valentino"와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 4가 모두 "Valentino"로 약칭되는 경우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valentino garavani (인용상표 1) VALENTINO AMEDEO (인용상표 2) Giovanni Valentino (인용상표 4)		
2001당1925 2002허3948	성형외과업	성형외과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에 포함된 '성형외과'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가)호 표장이 그 요부 중 하나인 '드림'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역시 '드림'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드림'이라는 호칭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꿈, 희망' 등의 관념이 동일하다.	
	드림성형외과	서현드림성형외과		
2001원3535	신용조사업, 채권추	개발금융업, 국제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신용정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허3030 2002후2389(심불)	심업 등	융업 등	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모두 요부로서 파악하여 서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영문자 'Solomon'만으로, 인용서비스표 1, 3이 'SALOMON'만으로 분리하여 파악되고, 인용상표 2는 그 자체로서 각 '솔로몬, 솔로먼', '살로몬, 살로먼' 등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첫음절의 모음이 'ㅗ'와 'ㅏ'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Solomon 솔로몬신웅정보	SALOMON BROTHERS (인용서비스표1) SALOMON (인용서비스표2) SALOMON SMITH BARNEY (인용서비스표3)		
2001원3355 2002허2792 2002후2266(심불)	반도체, 집적회로 등	반도체제조기계, 액정디스플레이장치제조기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AIRCHILD'만에 의하여 '페어차일드'로 호칭되고 '좋은 어린이'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결국 'FAIRCHILD'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유사하다.	
	FAIRCHILD SEMICONDUCTOR	FAIRCHILD		
2002원301 2002허4200	비의료용 추잉껌, 초콜릿 등	케이크파이, 식빵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단부 "LOTTE"와 하단부 "DE ART"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DE ART" 또한 "DE"와 "ART"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E"가 '...의', '.....부터' 등의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전치사에 불과하므로 "AR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LOTTE DE ART	ART		
2001원2564 2002허1645	다이오드, 반도체 등	레이저 직접 이미징 시스템(Laser direct imaging systems)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도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문자부분을 일체로서 파악하여 '디지라이트'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편 인용상표는 'DIGIRITE'라는 영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므로 '디지라이트'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도 서로 유사하다.	
	DIGILITE	DIGIRITE		
2001원3053 2002허2709	서적, 신문 등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일부인 '프론티어'만으로 분리되어 관념되거나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인용상표의 경우에도 한글 부분의 '뉴'와 영어 부분의 'new'는 이른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요부는 한글 부분 '프론티어'와 영문자 부분 'Frontier'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이 '프론티어'만으로 분리되어 관념되거나 호칭되는 경우에 인용상표의 한글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관념, 호칭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사이버프론티어	뉴프론티어 NewFrontier		
2001당2384 2002허3269	아이새도우, 메이컵 파우더 등	스킨로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개)호 표장은 모두 고딕체의 영문 대문자 5개로 구성된 표장으로 네 번째 영문자가 'D'와 'N'으로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첫 번째 영문자 위에 강조표시(악상테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 영문자 및 그 배열순서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ÉTUDE	ETUN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에투데' 또는 '이투데'로 호칭되고, ㈜호 표장은 '에투네' 또는 '이투네'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모두 3음절로서 첫 2음절이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의 초성 자음만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유사하고 따라서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1당2132 2002허3177	방향제	향수, 아이샤도우 등	양 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호칭이 다름이 자명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MOODMAKERS'는 '분위기 창조자들' 혹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는 'MOODMAKERS'가 'MOOD'와 'MAKERS'로 분리 가능한 표장이라고 보든 그렇지 않다고 보든 차이가 없다)을, 인용상표인 'MOOD CREATION' 역시 '분위기의 창조', 혹은 '분위기 만들기'를 각 의미하여 양 상표의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	
	MOODMAKERS	무 드 크리에이션 MOOD CREATION		
2001당2387 2002허3078 2002후2280(심불)	양복바지, 스커트 등	아동복, 숙녀복바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상표는 모두 갓 또는 갓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이 오른손에 타원형 모양의 장식이 달린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실루엣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표장이 완전히 동일하다.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상표는 '모두 갓 또는 갓 모양의 모자를 쓰고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직감하게 하여 동일하다.	
				
2000당319 2000허5582 2001후751	아동복, 슈트, 신사복등		모두 한 마리의 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개", "사냥개" 또는 "경주견" 등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호칭, 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또한 양 상표는 네 발을 곧게 펴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날렵하게 생긴 개의 옆모습을 도형화한 점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몸의 색깔 및 꼬리의 모양과 위치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이 비슷하므로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2001원3139 2002허2693	정보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자료처리업 등	온라인잡지제공업, 온라인팜플랫제공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화된 영문자 'i'와 'WALLET'으로 분리되어 'WALLET'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 또한 하나의 요부인 'WALLET'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각각 하나의 요부인 'WALLET'에 의하여 인식되고 호칭된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동일하다.	
	iwallet	RIGHTSWALLET		
2001당1705 2002허2167 2002후1966(심불)	트럼프, 놀이카드 등	트럼프, 놀이카드 등	인용상표가 문자 부분인 "WIND MILL"만으로 분리하여 파악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윈드밀"이라는 호칭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WIND MILL		"풍차"라는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의 표장은 유사하다.	
2001당2352 2002허2952	종양치료용약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올젤' 또는 '오르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오라젤' 또는 '오라겔'로 호칭되어 그 청감이 거의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ORZEL	ORAGEL		
2001원3356 2002허2808 2002후1881(심불)	반도체, 집적회로 등	반도체제조기계, 액정디스플레이장치제조기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요부인 "페어차일드"만에 의하여 "페어차일드"로 호칭되고 '공정한 어린이', '좋은 어린이', '예쁜 어린이' 등으로 관념될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식회사	FAIRCHILD		
2000당1286 2001허2276 2001후3118	지갑, 배낭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양 상표는 모두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Christian' 또는 'Nicole'만으로,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는 별도로 'Nicole' 또는 'StGille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Nicole'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니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다.	
	Christian Nicole			
2001원3144 2002허2051	전화기, 인터폰 등	텔레비전 수신기, 오디오(가정용)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앞부분 영문자 5자 "GINGA"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 영문자의 호칭이 "긴가" 또는 "진가"임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 부분으로 쉽게 분리관찰이 가능하므로, 그렇다면 위 "GINGA" 부분이 "진가"라고 호칭되는 경우에 인용상표의 한글부분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GINGANET	ZINKA 진 가		
2001당1338 2002허2112 2002후1591(심불)	미용업, 분장기술학원경영업 등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과의 관련하여 보면 "cosmetics"나 "코스메틱"은 기술적(記述的)인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그 구성 부분 중 일부인 "dodo"나 혹은 "도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도도'라고 호칭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의 주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dodo cosmetics 도도 코스메틱		된 한글 부분인 “도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상호 양자를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더라도 상호 유사하다.	
2001당1677 2002허1546 2002후1492(심불)	팔목시계, 탁상시계 등	팔목시계, 시계무브먼트 등	양 상표의 외관은 다르다 할 것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벨로체‘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영문의 발음례에 따라 그 어미인 ‘-ce‘가 ‘-스‘로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벨로스‘로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인용상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벨로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벨로스‘로 불리는 경우 호칭이 동일하고, 가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벨로체‘로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와는 세 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할 뿐더러, 통상 단어의 앞 부분이 강하게, 뒷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VELOCE			
2001원3365,3366(병합) 2002허1683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등	과인산석회비료, 골분비료 등	인용상표서비스표는 ”세리박“ 전체로서 호칭되거나 ”세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용상표서비스표가 ”세리“와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과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2와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세리 (출원서비스표1) 새리 (출원서비스표2)	SeRi Pak 세리 박		
2001원1130 2002허2204	전기손실 지시계, 측정용 유리기구 등	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미처리 콤팩트디스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NOW’에 의하여 ‘나우’로 호칭 및 관념되고, 인용상표도 컴퓨터에 관하여 사용될 경우 주요 부분인 ‘NOW’ 또는 ‘나우’에 의하여 ‘나우’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의 호칭 및 관념은 동일	
				
2001당1334 2002허468 2002후1621(심불)	향수, 아이새도우 등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professional"과 “make up”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그 구성 부분 중 "dodo"만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호칭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dodo professional make up		같이 영어의 동사 “do”를 연상하여 “두두”라고 호칭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도도”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이 동일하게 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이나 관념이 상호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2001당1198 2002허62 2002후1409(심불)	향수, 화장크리임 등	콤팩트, 퍼푸(분첩)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FANCL”과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판클’ 또는 ‘환클’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한글 문자상표이므로 그 기재대로 ‘판켈’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가 모두 조어상표로서 별다른 관념을 갖지 않으며 통상의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도 별다른 특징이 없는 상표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FANCL	판켈		
2001원725 2002허1478	의료진단용 X-선 영상기구, 의료용 X-선 튜브 등	임상시험용 기계기구, 소독 및 멸균기구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드밴텍스’, ‘어드밴트엑스’ 또는 ‘어드밴티엑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어드밴텍’ 또는 ‘어드밴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의 앞 부분 3음절이 ‘어드밴’으로 동일하고, 이어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텍’, ‘트엑’, ‘티엑’도 인용상표의 ‘텍’과 매우 흡사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ADVANTX	ADVANTEC		
2001당837 2001허6889	단무지		모두 가마솥의 형태를 도형화한 것으로 가마솥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위쪽으로 향하여 둥근 곡선으로 표현하고 그 중앙 위쪽에 뚜껑의 손잡이 부분을 둥글게 돌출되게 표현하였으며, 가마솥의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13개의 점을 아래쪽을 향하여 둥근 곡선형태로 배열하되 그 간격이 좌우 측 끝 부분은 넓고 중앙 부분은 조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 표장은 가운데 문자 부분의 외관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고, 각 도형 부분에 의하여 ‘가마솥’이라는 관념이 생기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1원2705 2002허765	나이트가운, 브래지어 등	속팬티, 슬립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앤블린‘으로만 호칭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앤블린‘과 ‘eblin‘ 이 모두 요부에 해당하여, 한글로 읽힐 때에는 ‘앤블린‘으로, 영문으로 읽힐 때에는 ‘에블린‘ 또는 ‘이블린‘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앤블린 eblin	Evelyn	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마다 상표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Evelyn'은 '에블린' 혹은 '이블린'으로 발음되면 호칭은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1당795 2001허6599	비전기식 고기구이판, 요리용 석쇠 등	약탕기, 압력솥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三省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삼성'이라고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	
	和平三省	삼성		
2001원2567 2002허222 2002후994(심불)	건축 창호용 실리콘, 건축 파일용 실리콘 등	건축 및 건설자재(시멘트, 모르타르, 인조석, 아스팔트, 시멘트블록)	이 사건 출원상표는 "DAWOO" 또는 "다우"만에 의하여 "다우"로 호칭되고 이는 원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관념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는 영문자 "DOW"만에 의하여 "다우"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DAWOO" 또는 "다우"에 의하여 "다우"로 호칭·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이 동일하다.	
	DOW GREENSIL 808 다 우 그 린 실 808	DOW		
2001당652 2002허277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등	돈육, 계육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Weeny"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위니'라고 호칭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상호 양자를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더라도 상호 유사하다.	
	Weeny bopper	위니		
2001당777 2001허6766	휴대용 컴퓨터, 모니터 등	직류발전기, 전기솥 등	인용상표 1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비하여 훨씬 더 작게 표현되어 있어 위 문자 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위 도형 부분만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된 호칭·관념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인용상표 1의 문자 부분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 인용상표 1은 그 요부인 "SOLO"만에 의하여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 등으로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SOLO	SOLOTEC (인용상표1)		
2000당1412 2001허1419 2001후2917	스커트, 슬랙스, 양복바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티투비"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의 경우는 문자의 뒤에 찍힌 " . "은 통상 이를 발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언어습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티비투"로 호칭될 가능성이 많은데, 인용상표가 "티비투"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나머지 음	
	T2B	T.B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절도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한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호칭이 유사하다.	
2001원1200 2001허6629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등	뉴스공급업, 출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중 "CAR"는 '자동차'의 의미로, "LIFE"는 '생활'의 의미로 흔히 쓰이는 낱말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카라이프'로 호칭되고, '자동차 생활'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인용서비스표는 한글 부분인 "자동차생활"과 영문자 부분인 "CARLIFE"가 2단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한글 부분에 의하여 '자동차생활'로,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카라이프'로 호칭될 것이고 '자동차 생활'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인용서비스표가 '카라이프'로 호칭될 경우 호칭도 동일하다.	
	CARLIFE	자동차생활 CARLIFE		
2001원752 2001허5701 2002후697 (상고취하)	저온펌프용 전자모니터, 저온펌프용 조절기 등	전류제어기, 네온등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CTI"와 "CRYOGENICS"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인데, 그 중 "CRYOGENICS"는 저온학(低溫學)을 의미하는 낱말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요부인 "CTI"에 의하여 '씨티아이'로 호칭될 것이다. 인용상표는 문자 부분인 "CTI"와 "씨·티·아이" 및 그 사이의 도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자 부분이나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에 의하여 '씨티아이'로 호칭될 것이다. 양 표장은 외관에 차이가 있지만 호칭이 동일하다.	
	CTI-CRYO GENICS	CTI 씨·티·아이		
2001당794 2001허6391	리용 화덕, 비전기식 가열튀김기 등	약탕기, 압력솥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드시 상표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인 "三省"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삼성'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CSE三省	삼성		
2001원1622 2001허6056	레인코트, 반바지 등	폴로셔츠, 스포츠셔츠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인 'FOREVER' 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일치한다.	
	FOREVER SPORT	FOREVER		
2001당1431 2002허390	청바지, 청자켓 등	청바지 등의 의류	㈀호 표장이 'T2B'를 표현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티투비' 또는 '티이비'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티비투' 또는 '티비이'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호 표장의 '티투비'라는 호칭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티비투'라는 호칭과 첫음절이 동일하고 2, 3음절은 동일한 문자를 순서만을 바꾼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	
	T_B2	T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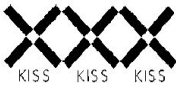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1원1454 2001허6292	어린이 침대시트, 담요 등	보자기, 수건 등	양 상표는 모두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없는 다섯 번째 철자 "I"가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에 없는 "'S"가 후반부에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상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카터'로, 인용상표가 '카티어'로 각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앞의 첫 음절 및 둘째 음절의 초성 'ㅌ' 부분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ㅓ' 부분과 인용상표의 'ㅣ어' 부분도 청감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유사하다.	
	CARTER'S	CARTIER		
2001당205 2001허6254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초음파살충기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HOMESAFER)에 대하여 보더라도 영어로 집, 가정 등을 의미하는 "HOME"과 "SAFER"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 두 단어가 가지는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SAFER"만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는 모두 "SAFER"로 호칭·관념되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	
				
2000당1913 2001허2030 2002후598(심불)	병풍, 꽃병 등	도자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척주동해비"로 호칭되고 '척주의 동해 바닷가에 있는 비석' 등으로 관념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형부분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없어 문자부분만에 의하여 "척주동해비"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척주동해비 陟州東海碑			
2001원486 2001허6186 2002후529(심불)	시스템인증 및 자기적합성평가인증 제도 관련 심사 및 등록 업무, 시스템 인증 및 자기적합성평가인증 제도 관련 사후관리 업무 등	산업표준의발간/보급과 산업표준실시의 촉진, 산업표준화에 관한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등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 중 "QA"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은 그 주된 요부인 "KSA"만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인용업무표장은 영문자부분도 "KSA" 또는 "Korean Standards Association"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과 인용업무표장이 각각 그 하나의 요부인 "KSA"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한국표준협회 KSA(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01원888 2001허5787	비금속제 지갑,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	향수, 운동용 가방 등	도형부분 중 원 도형은 상표의 테두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문자부분 중 "표" 역시 상표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캉가루 도형 또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캉가루"로 호칭·관념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 1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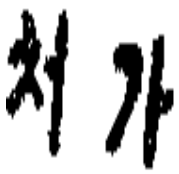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1)	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부분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없어 문자부분만에 의하여 "캉가루"로 호칭·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2000당730 2001허7110 2002후512(심불)	나리싱크림, 마스크팩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투에이"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투웨이"와는 첫째 음절 "투-"와 셋째 음절 "-이" 부분이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에-' 부분과 인용상표의 '-웨-' 부분도 청감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극히 유사하다.	
	투에이스타	투웨이		
2001당741 2001허6612	잠바, 반코트 등	슬리퍼, 스웨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이 각각 도형부분만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또한, 인용상표 2는 문자에 의하여, 인용상표 3, 4는 도형에 의하여, 각각 "코뿔소"로 호칭·관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2, 3, 4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3, 4는 외관상으로도 유사하다.	
		 (인용상표1) 코뿔소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인용상표4)		
2001원1290 2001허6605	가죽신, 고무신 등	단화, 장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요부 중의 하나인 'WILDERNESS'만으로 분리하여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역시 'WILDERNESS'로 구성된 인용상표들과는 '윌더니스'라는 호칭 및 '황야, 황무지' 등의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WILDERNESS (인용상표1) WILDERNESS (인용상표2)		
2001원1265 2001허6032	기저귀 가방, 등산백 등	서류가방, 배낭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인 "Woori Doori"에 의하여 '우리 두리'로 호칭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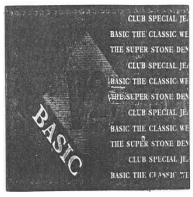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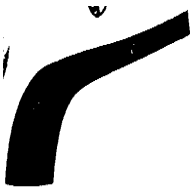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Woori Doori		인용상표 역시 문자 부분인 “WOOLI·BOOLI”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설전음인 ‘R’과는 달리 ‘L’은 설측음이지만 한글로 표기할 때 동일한 ‘리을’이고 국내의 그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어발음 관습상 ‘R’과 ‘L’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동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인용상표는 ‘울리 불리’보다는 ‘우리 부리’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인용상표를 ‘우리 부리’로 호칭할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셋째 번 음절의 초성만이 ‘ㄷ’과 ‘ㅂ’으로 다를 뿐 전체 음절수와 그 나머지 음절이 모두 동일하므로 극히 유사하다.	
2001당598 2001허6148	찻스푼, 숟가락 등	스텐레스스틸제컵, 스텐레스스틸제사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과 “엘미트”의 두 부분으로 분리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한일” 또는 “엘미트”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한일”이라고 호칭·관념될 것이다. 양 상표는 그 외관은 다르나,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한일엘미트	한 S 일		
2001원342 2001허4326	광고대행업, 기업선전홍보업 등	전화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 @ ”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요부가 “iNET" 부분이어서 ”iNET" 부분만에 의하여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인데, 인용서비스표들도 모두 “아이넷” 또는 “아이네트”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iNET	I·NET (인용서비스표1) I·NET 아이넷네트 (인용서비스표2) Inet (인용서비스표3)		
2001원536 2001허5046	컴퓨터,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노트북컴퓨터 등	외관에 있어서는, 양 상표는 6자의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다섯 번째의 철자가 “M"과 ”G"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5자의 철자가 동일하므로 외관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코레마”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코레가” 등으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모두 3음절로 호칭되고 그 중 처음 두 음절이 “코레”로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도 자음이 “ㅁ"과 ”ㄱ"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모음이 “ㅏ”로 동일하므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다.	
	COREMA	COREGA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1원57 2001허5435	서적, 소책자 등	녹음된 디스크(음악이 아닌 것), 녹음 또는 녹화된 광디스크(음악이 아닌 것)	인용상표(1)은 그 구성부분 중 "MD"와 "WALKMAN"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구성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간단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의하여 "MD" 또는 "WALKMAN"만으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이 모두 "엠디"라고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엠디 MD JOURNAL	MD WALKMAN (인용상표1)		
2001원559 2001허5169	피부병 치료제, 의료용 고약 등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HYAL"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또한 인용상표도 앞부분인 "HYAL"과 뒷부분인 "2000"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HYAL"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표를 '"HYAL" 부분만으로 호칭할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HYAL-SYSTEM	HYAL 2000		
2001당492 2001허4845	면역조절제, 소화기관용약제 등	향수, 향유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 요부인 'EVENE'만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AVENE'와는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네 글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나아가 'EVENE'는 병기된 한 글자와 같이 '이브네'로 호칭되거나, 이벤느, 에베네' 등으로 호칭될 수 있고, 'AVENE'는 프랑스의 온천도시를 지칭하는 '아벤느'로 호칭되거나, 영문자 조어로 파악되어 '아브네, 에브네, 아베네'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각각 이브네 : 에브네, 이벤느 : 아벤느, 에베네 : 아베네로 호칭되는 경우에 양 상표는 3음절 중 뒤의 2음절의 호칭이 동일하고 나머지 한 음절의 호칭도 모음의 속성상 음역에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이 브 네 E V E N E	AVENE		
2001당390 2001허3446 2002후208	청바지, 청자켓 등	혁대, 멜빵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티비"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티비투" 또는 "티비이"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양 상표는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 "투" 또는 "이"가 있고 없는 차이에 불과하며 특이 "비이"의 경우에는 "비"를 길게 발음하는 것과 같으므로 양 상표는 일반인들에게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다.	
	T. B2	TB		
2000당529 2001허270 2001후2467	여론조사업,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부동산 중개업 등	부동산 중개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1세기"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인용표장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	
	21世紀건설리株式會社	CENTURY 2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당815 2000허1566 2000후2033	신사복, 청바지 등	장신용품과 조화류 등	인용상표 1이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 1과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	
				
2001원963 2001허5442 2002후원154	청바지, 남방셔츠 등	스웨터, 아동복 등	'MEGA' 부분 또한 뒷 부분인 'POINT' 가 매우 많거나 크다는 뜻의 수식어로서의 의미밖에 없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의 중심적 요부는 영문자 'POINT'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중심적 요부에 의하여 '포인트'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그 호칭과 관념이 인용상표와 동일하다.	
				
2000원2616 2001허2672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요부인 'Trust'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TRUST'와 비교할 때 '트라스트'라는 호칭 및 '신용, 신뢰, 신뢰하다' 등의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eTrust	TRUST		
1997원3360 2001허4852	셀방식의 전화기	차량용통신기계기구, 확성기계기구 등	인용상표의 구성 중 "STAR" 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인 "TECH"는 아예 식별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요부가 없어 전체로만 호칭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AC"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기 전체로서 호칭될 경우에는 전자는 '스타택(스타탁)' 또는 '스타태크(스타타크)'로, 후자는 '스타텍' 또는 '스타테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StarTAC	*STARTECH*		
2001원67 2001허3927	콩나물, 김치 등	쌀, 돈육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참손"으로 인용상표들은 "참존"으로 각각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둘째 음절은 "손"과 "존"으로서 첫소리가 "ㅅ"과 "ㅈ"의 차이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다.	
	참 손	 (인용상표1~3)		
2001원310	향수, 바디오일 등	콜드크림, 향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RALPH LAUREN" 또는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1허3682	RALPHLAUREN ROMANCE	로 망 스 ROMANCE (인용상표1)	"ROMANCE"만으로 분리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1)은 그 한글 또는 영문자에 의하여 "로망스" 또는 "ROMANCE"로 호칭, 관념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ROMANCE"만으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1)과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이격적·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000당127 2000허7151 2001후3514(심불)	스케치북, 그림첩 등	서적, 잡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 중 "아기나라" 부분이 주된 요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양 상표들은 "아기나라" 부분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매우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신기한 아기나라 (인용상표1) 아기나라 (인용상표2,인용서비스표)		
1999당2382 2000허7144	학습교보재 대리점 간판 등	서적, 잡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 중 "한글나라" 부분이 주된 요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양 상표들은 "한글나라" 부분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매우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신기한 한글나라 (인용상표1)  (인용상표2) 한글나라 (인용상표3)		
2001원329 2001허4104	청바지, 반바지 등	스포오츠셔어츠, 스키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키스"와 "클럽"으로 분리되어 관찰되거나 "키스"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 1은 동일한 문자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문자인 "KISS"만으로 호칭, 관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키스"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되고, 양 상표의 위 두 부분은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키스클럽	 (인용상표1)		
2000원2051 2001허1303 2001후2443(파기) 2001허6940(환송)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등	우산, 양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면,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TRIPLE CROWN	CROWN 크 라 운 (인용상표 1)		
2000당1426 2001허2559	김치, 장아찌 등	라면, 닭튀김업 등	인용상표는 "빙그레"와 "처가집"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빙그레" 및 "처가집"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처가집"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경	
	처 가	빙그레 처갓집 (인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관념이 동일하다.	
		 (인용서비스표1)  (인용서비스표2)  (인용서비스표3)	인용서비스표 2 및 3은 각각 한글 "처 가" 및 "처갓집"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서비스표 2 및 3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인용서비스표 1이 "처갓집"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 1은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고 관념이 동일하다.	
1999당2036 2001허2443	우편업, 전보통신업 등	국내·국제 전화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PC통신을 활용하는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하는 통신서비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은 모두 한글 "하나로통신"만으로 구성된 문자 서비스표로서 외관과 관념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하나로통신	하 나 로 통 신		
2000당1674 2001허1662	세액, 물비누 등	의류용 합성세제, 유리용 세정제 등	인용상표가 "OXY"만에 의하여 "옥시" 또는 "옥씨"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첫음절이 "옥"으로 동일하고 둘째 음절도 자음이 "ㅅ" 또는 "ㅆ"으로 동일하며 모음이 "ㅗ"와 "ㅣ"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그리고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OXO		록상표 "OXO" 및 인용상표 중의 "OXY"는 모두 '산소를 함유한'이라는 뜻을 가진 결합사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1999당1530 2001허4883	청바지, 반바지 등		"BASIC"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여지고, ㈎호 표장에 있어서도 "BASIC"이 글자가 비교적 크고, 전체의 중앙부에 있는 특이한 도형 안에 들어가 있으며, 단어 전체가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디자인되어 있는 등 다른 문자부분과 분리관찰이 가능한 일요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양 상표의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2001당99 2001허3408	단화, 농구화 등	샌들나막신, 슬리퍼 등	인용상표 1은 피고가 창안한 독창적인 도형상표인 점, 양 상표 모두 우측으로 휘어진 도형으로서 좌측의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폭이 넓고, 우측으로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동일·유사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여지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한없이 이어지는 도로를 원근감 있게 표시한 것으로 관념,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 1 역시 그 외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동일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보여지고 인용상표 1이 주로 하키스틱이나 담배파이프의 모양으로 인식, 호칭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1)		
2000원2919 2001허4111	배합비료, 공업용 콩가루 등	순환기관용 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등	호칭에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소겐', '이소젠', '아이소겐', '아이소젠' 등으로, 인용상표는 '이소켓', '아이소켓'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소겐'이나 '아이소겐'으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과는 앞의 두 음절 내지 세 음절인 '이소-' 또는 '아이소-' 부분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겐' 부분과 인용상표의 '-켓' 부분도 청감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유사하다.	
	ISOGEN	ISOKET		
2001원386 2001허3552	세탁용 유연제, 스킨밀크 등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외관상 "Soft" 부분과 "Multi" 부분이 분리되어 있고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므로, 간이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계의 경향에 따라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Multi" 부분만으로 약칭할 수 있다. 또한 인용	
	Soft Multi	MULTI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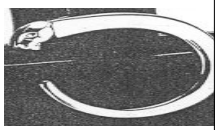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상표도 앞부분인 “MULTI”와 뒷부분인 “V”가 하이픈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V”는 부기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MULTI” 부분이다.	
2001원223 2001허3545	립스틱, 립글로스 등	향수, 향유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LIP”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상품인 ‘립스틱, 입술 광택제, 입술 피부 보호제’ 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인 “MIX”만이 요부가 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요부인 “MIX”에 의하여 ‘믹스’로, 인용상표를 ‘믹사’로 각 호칭할 경우 첫음절 ‘믹’ 및 둘째 음절의 초성인 ‘ㅅ’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의 모음만이 ‘ㅏ’ 및 ‘ㅡ’로 다를 뿐이어서, 양 상표의 호칭은 극히 유사하다.	
	LIP MIX	MIXA		
2000원2014 2001허3187	키홀더, 귀금속제벨트장식 등	핸드백, 우산 등	한글자 ‘다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그 표장과 같이 ‘다음’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D'aum’으로 구성된 조어상표이므로 자모음을 순차로 이어서 발음하는 거래계의 통상적인 발음법에 따라서 ‘다음’ 또는 ‘다움’으로 주로 호칭되며, 만일 'D'와 'a' 사이의 아포스트로피로 인하여 앞뒤 문자의 발음상의 연결이 차단된다면 예외적으로 ‘디아움’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위와 같이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다음	401998011689 D'aum		
2000원2791 2001허2467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등	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가 그 요부인 ‘한’과 ‘HAN’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한’이라는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한메일넷	HAN NET		
2000당2038 2001허2931	마스카라, 아이섀도 등	여성용아이섀도우, 눈썹연필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 요부인 ‘PARFAITE’로 호칭될 경우에는 ‘파-펫’ 또는 ‘빠르펫’ 등으로 발음되고, 인용상표들이 일 요부인 ‘PARFAIT’로 호칭될 경우에는 ‘파-펫’ 또는 ‘빠르페’ 등으로 발음되어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401998025577 POUDRE PARFAITE de Pierre Cardin	40-92-011536 CONTOUR PARFAIT (인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40-92-012766 HYDRA-PARFAIT (인용상표2)		
2000원2733 2001허2566	신사복, 반코트 등	스포츠셔츠, 스웨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앤디'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역시 '앤디(ANDY)'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ANDY & KAREN (인용상표1) 앤디·카렌 (인용상표2)		
2000원2817 2001허2344 2001후원3170	타일변기 세정제, 미용비누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를 '리바이브르'나 '리바이브리'로 호칭할 경우, 한글 부분에 의하여 '리바이벌'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처음의 세 음절인 '리바이-' 부분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브르' 또는 '-브리' 부분과 인용상표의 '-벌' 부분도 초성인 'ㅂ'이 동일하여 청감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유사하다.	
	REVIVRE	리 바 이 벌 REVIVAL		
2000원1474 2000허8369 2001후2139(파기) 2001허6575(환송)	세탁용 유연제, 스킨밀크 등	머릿기름, 샴푸, 등	"Evening"과 "Flower"만으로도 각기 분리관찰하면 외관에서는 상이하나, 호칭과 관념이 서로 동일하다.	
	Evening **Flower**	이브닝 (인용상표 1, 2)		
2000당1828 2001허3088	일반화장수, 약용화장수 등	향수, 아이샤도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니아" 또는 "매니어"로 호칭되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매니어"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열광, 열중, ... 광'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인용상표 또한 그 영문자의 한글음 표기에 불과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다.	
		매니어		
2000원2447 2001허1884 2001후3033	레스토랑업, 칵테일바업 등	카페업, 뷔페식당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HOOTERS"라는 영문자와 그 영문자 중 "-OO-" 부분을 두 눈으로 이용하여 표현한 올빼미 도형을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단순히 "Hooters"라는 문자만으로 구성한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Hooters	만, 양 표장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후터스'로 호칭될 수 있다. 양 표장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호칭이 동일하다.	
2000당1172 2001허713 2001후3217	이탈방지압륜, 압륜 등	고무패킹, 죠인트 등	이들 상표들이 일 요부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한글 '주'의 글씨체가 약간 상이할 뿐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고 그로부터 '톱니바퀴 모양'이라는 관념도 동일하게 인식되는바, 위 도형 부분이 그 위치 및 크기, 표현형식 등에서 문자 부분에 못지 않는 주요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도형 부분의 외관과 관념의 유사성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	
	401997051441 주 신신산업엔지니어링	 (인용상표1)  (인용상표2)		
2000원2213 2001허119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한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하림"으로 호칭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1) 내지 (4)의 "賀琳覺", "하림장", "하림원", "하림성" 중 "~覺, ~장, ~원, ~성" 부분은 음식점의 명칭 끝에 붙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인용서비스표(1) 내지 (4)의 요부는 모두 "賀琳" 또는 "하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서비스표들이 그 요부에 의하여 "하림"으로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들과 호칭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1)  (인용서비스표2)  (인용서비스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하림성 (인용서비스표4)		
2000당1235 2001허2184	트럼프, 마스코트 인형 등	탁상용 핸드폰 꽂이	양 표장의 도형의 얼굴 부분은 모두 어린 동물을 정면에서 표현한 점, 눈과 코는 모두 점과 같이 처리하고 입은 생략하였으며 두 귀는 얼굴 윤곽선의 일부를 삼각형 모양으로 위로 돌출 시켜 간략하게 표현한 점, 가로로 긴 타원형 얼굴에 좌우 세 갈래씩의 긴 수염이 양 볼에서 얼굴 밖으로 일부 삐쳐 나와 있는 점 등이 같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상단에 기재한 문자에 의하여 '헬로키티' 또는 '키티'나 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새끼 고양이' 또는 '고양이'로 호칭·관념될 것이고, (가)호 표장은 그 도형 부분에 의하여 '어린 동물', '고양이' 또는 '새끼 고양이'로 호칭·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이 모두 '새끼 고양이' 또는 '고양이'로 호칭·관념되는 경우 그 호칭·관념이 동일하다.	
	HELLO KITTY			
2000원2461 2001허1365	지국, 도난경보기 등	타자기, 판매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대'로 호칭·관념될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다.	
	HYUNDAI MicroElectronics	現代		
2000원2878 2001허3071	전자자동판매기	망원경, 카메라 등	인용상표는 앞 부분에 기재된 "SeRi" 또는 "세리" 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용상표가 "SeRi" 또는 "세리"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SeRi	SeRi Pak 세 리 박		
1999원1233 1999허7780 2000후2064	영양보충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악어배, 앵두 등	양 상표는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인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M"과 "L" 사이에 "I"자가 삽입되어 있는 차이만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매우 유사한 외관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양 상표는 외관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MLO	MILO		
2000원2578 2001허1754 2001후2795	세탁용 유연제, 모발염색제 등	화장크림, 화장품 상자 등	상표의 구성상 "Mist"와 "Green"은 분리되어 있고, "Green"은 '녹색' 등의 의미를 지닌 낱말로서 흔히 있는 색깔의 단순한 영문표기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Mist"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Mist"에 의하여	
	Mist Green	MI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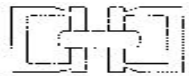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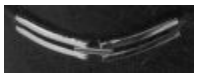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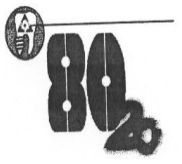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미스트'로 호칭될 경우, '미스티'로 호칭될 인용상표 (1)과 마지막 음절의 모음만이 "ㅡ"와 "ㅣ"로 다를 뿐이어서 양 상표의 호칭은 극히 유사하다.	
2000원2925 2001허1563	세탁용유연제, 향수 등	모발탈색제, 머릿기름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CLINIC"만으로 호칭·관념할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CLINIC		
1999당1530 1999허9472 2000후3937(파기) 2001허4883(환송)	청바지, 반바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BASIC"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여지고, ㈜호 표장에 있어서도 "BASIC"이 글자가 비교적 크고, 전체의 중앙부에 있는 특이한 도형 안에 들어가 있으며, 단어 전체가 위는 넓고 아래는 좁게 디자인되어 있는 등 다른 문자부분과 분리관찰이 가능한 일 요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외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서로 공존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000당774 2000허7786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공업용 비누 등	자동차용 세정제, 타일변기 세정제 등	(가)호 표장 중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불과하여 요부는 "파이씨스" 부분이다. (가)호 표장이 "파이씨스"로 약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파이씨스 PISCES	주식회사 파이씨스		
2000원2734 2001허2573	신사복, 반코트 등	스포츠 셔츠, 스웨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를 '앤디'와 '가르시아'로 분리하여 호칭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상표들의 경우 "&"로 연결되어 있는 "ANDY"와 "KAREN" 및 "·"로 연결되어 있는 "앤디"와 "카렌"의 결합 정도 및 거래계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앤디(ANDY)' 부분이나 '카렌(KAREN)'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Andy"에 의하여 '앤디'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역시 '앤디(ANDY)'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Andy Garcia	ANDY & KAREN (인용상표 1) 앤디·카렌 (인용상표 2)		
2000당1620 2001허720 2001후2733	선오일, 손톱광택분 등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영문부분과 한글부분은 이를 분리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 관찰할 수 있고, 한글부분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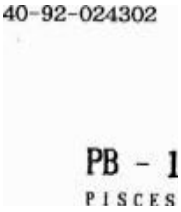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들 Beautiful People Co.,Ltd.	아름다운 사람들	주식회사"는 법인의 표시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1999당665,744 (병합) 1999허9793 2000후2071(파기) 2001허4876(환송)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켓 등	포말유리, 장식유리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Think"와 "Map"의 두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서비스표는 "MIND(마인드)"와 "MAP(맵)"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위 두개의 문자부분이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역시 "MIND(마인드)"와 "MAP(맵)"의 두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씽크맵' 또는 약칭으로 '씽크' 혹은 '맵'이라고 불릴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마인드 맵' 또는 약칭으로 '마인드' 혹은 '맵'이라고 불릴 것이므로, 양 표장 모두 '맵'으로만 약칭되고 인식될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4019980038866 ThinkMap	마인드 맵 MIND MAP		
1998당379 1998허11065 1999후1119	벨트, 반코우트 등	오우버코우트, 잠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40-93-022620 MUSSO	40-88-008619 코뿔소		
2000당962 2000허7403 2001후2504(심불)	가죽제 열쇠케이스, 보스턴백 등	가죽제 열쇠케이스, 보스턴백 등	양 상표들 모두 전체적으로 영문자 “C”의 좌우를 바꾸어 놓은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한쪽 끝은 동물머리모양을 하고 있고, 다른 쪽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바, 양 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인용상표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정도이고, 인용상표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중 머리 부분에 가까운 쪽에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에 있어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원2941 2000허2538 2000후2040	생수, 탄산수 등	홍차 녹차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한자 "名水" 부분과 한글 "촘물" 부분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名水" 또는 "촘물" 만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名水"만에 의하여 "명수"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가 동일하고, "名水"는 '유명한 물' 등의 의미가 있고 인용상표 "명수"도 그 지정상품인 '탄산수', '광천수'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유명한 물' 또는 '맑은 물'을 의미하는 '名水' 또는 '明水'로 인식될 수 있어서 인용상표와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다.	
	名水촘물	명수		
2000당1053 2001허1334	감자, 고구마 등	야채판매중개업, 야채판매대행업 등	인용서비스표 중 "식품"은 '야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야채판매중개업, 야채판매대행업, 야채판매알선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인용서비스표도 식별력 있는 요부인 "싱싱원"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 표장은 "싱싱원"으로 호칭되는 경우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싱싱원	싱싱원식품		
2000당527 2000허7496 2001후2429(심불)	농산물 이유식, 곡물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등	쌀, 보리 등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목화토금수" 또는 "상화"로 호칭, 관념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생식"부분은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뜻이 있어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의 요부는 "상화"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401997045270	40-94-11809 상화생식		
2000당526 2000허7489 2001후2412(심불)	농산물 이유식, 곡물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등	쌀, 보리 등	인용상표(1), (2)의 지정상품이 식품인 점을 고려할 때 "생식"은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뜻이 있어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들의 요부는 "오행"이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들이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오 행	40-94-4953 (인용상표1) 오행생식 (인용상표2)		
1995당584 1997항당42 1998후1099	아미노산제,자양강장변질제 등	산류,염류 등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와 그 한글음이 상, 하로 배치되어 결합된 조어상표로서 관념은 비교할 수 없고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ㅋ"와 "C"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한글과 영문자의 위, 아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마로덱스 MARODEX	MACRODEX 마크로덱스	의 배시(배치의 오기로 보임)의 차이 등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극히 유사한 표장이다.	
2000원1025 2001허348	철도차량용 콤프레서, 철도차량용 에어드라이어 등	계전기, 검출기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에서 특별한 호칭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문자부분은 앞부분의 "SAB"와 뒷부분의 "WABCO"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은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부분에 의하여 "싸브" 또는 뒷부분에 의하여 "와부코, 왑코" 등으로 약칭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뒷부분 "WABCO"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SAB WABCO	WABCO		
2000당359,360호 (병합) 2000허4299,4305 (병합)	핸드백, 서류가방 등	장화, 비닐화 등	이 사건 등록상표(1),(2)는 "ActionTrax" 부분에 의하여 "액션 트랙스"라고만 호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ax" 부분에 의하여 "에이엑스"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1),(2)는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엑스"라고 호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1),(2)와 인용상표(1),(2)는 외관은 다르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양 상표가 모두 "에이엑스"라고 호칭될 경우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ax	A/X		
2000원1817 2001허1624	디스크,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티브이수신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파이널"은 뒤의 "환타지"를 수식하는 용어로 자연스럽게 일반인에게 인식될 것일 뿐 아니라 "파이널"과 "환타지"가 결합한 결과도 위 문자들이 본래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의미 이외에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 관찰할 경우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들에 의하여 주로 "환타지"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환타지"로 호칭될 경우에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파이널 환타지	FANTASIA 환타지아		
2000당1141 2001허447	목욕비누, 미용비누 등	화장비누, 향수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프로바이탈' 또는 '프로비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1 중 '프로비타, PROVITA'는 그 한글 부분에 의하여 '프로비타'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프로비탈'로 호칭될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의 받침 부분의 'ㄹ'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의 호칭은 같고, 마지막 음절의 받침으로 되어 있는 'ㄹ'은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게 청음된다.	
	PRO-VITAL	쥬단학 프로비타 JUTANHAK PROV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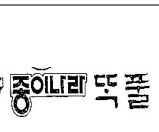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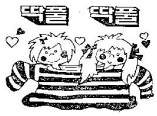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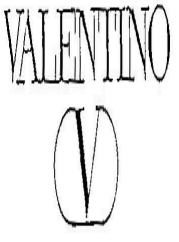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0원1884 2000허8505	자켓, 스커트 등 DIANA	자켓, 스커트 등 DIANA GALLESI	인용상표는 앞부분의 "DIANA"와 뒷부분의 "GALLESI"가 이를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IANA" 또는"GALLESI"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따라서 인용상표가 "DIANA"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 "DIANA"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이다.	
2000당541 2000허6424	의류용 린스, 세탁용 유연제 등 팔공이공 8020	치과업, 치과보조업 등 팔공이공 치과병원 (인용서비스표) 8020 (인용서비스표) 8020 치과병원 (인용서비스표) 팔공이공 치과의원 (인용서비스표) 8020 치과의원 (인용서비스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외관은 동일하지 아니하나, 인용서비스표의 구성 중 "치과병원" 내지 "치과의원"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팔공이공" 또는 "8020"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는데, 인용서비스표가 '팔공이공'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그 구성이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1999원3361 2000허4039 2001후원2016(심불)	립스틱,마스카라 등 40199801546 3 KATE SPADE	콤팩트, 훈향 등 40-85-005078 스페이드 SPADE	이 사건 출원상표는 "KATE" 또는 "SPADE"로, 인용상표는 "스파드" 또는 "SPADE"로 분리하여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SPADE"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스페이드'라는 호칭 및 '삽' 등의 관념이 동일하다.	
2000당264 2000허8635 2001후당1990(심불)	골프연습장 경영업 등	호텔업, 섬유기술 용역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Sporex 스포렉스"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要部)에 해당하고, 그 구성상 다른 부분보다 큰 활자로 상단에 표시한 "ys" 부분 또는 "Young 영" 부분과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비스표를 “ys” 부분에 의하여 ‘와이에스’로 호칭하거나 “Young Sporex 영스포렉스” 부분에 의하여 ‘영스포렉스’ 또는 ‘스포렉스’로 호칭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스포렉스’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000당542 2000허6677 2001후1976(심불)	단화, 부츠 등	여성용 단화 등	㈎호 표장의 경우 마주 보는 두 직사각형이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과 마찬가지로 연결고리와 결합하는 쪽의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홈을 형성해 놓고 있는 점, 두 표장 모두 동일한 위치에 홈을 형성한 직사각형 두개를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한 모양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000원1415 2000허8307 2001후1853	배낭, 여행가방 등	슈우트케이스, 지갑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일 요부인 ‘Olive’만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올리브’라는 호칭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올리브 나무 또는 그 열매’ 등의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0당607 2000허6431	의류용 린스, 세탁용 유연제 등	화장비누, 치과보조업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덴탈크리닉”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애경” 또는 “2080”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 한편 인용서비스표의 구성 중 “치과병원” 내지 “치과의원”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팔공이공” 또는 “8020”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2080” 부분에 의하여 ‘이공팔공’만으로 호칭되고 인용서비스표가 ‘팔공이공’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양 표장의 차이가 ‘이’자와 ‘팔’자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거래계에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애경덴탈크리닉 2080	 (인용상표)  (인용서비스표)  (인용서비스표)  (인용서비스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서비스표)  (인용서비스표)		
2000당775 2000허8321	자동차용세정성광택제, 자동차용광택제 등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공업용비누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파이씨스', 'PISCES'는 인용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영문자 'PISCES'가 "어류, 물고기자리"를 뜻하는 영어단어임에 비추어 볼 때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국파이씨스 *KOREA PISCES*	 (인용상표1)  (인용상표2)		
1999당2067 2000허5926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의류용세정제 등	자동차용세정제,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SPECIAL"이나 "GOLD" 모두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말로서 거래업계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그 중 식별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PB"이다.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음절인 "피비"로, 인용상표 2는 세 음절인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이 인용상표 2의 호칭 중 발음상 인상이 강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앞의 두 음절과 동일하고, 인용상표 2의 호칭에 있어서 말미에 붙은 나머지 한 음절인 "원"이나 "일"은 영문자 "PB"에 잇달아 연결된 "-1"을 호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영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의 말미에 숫자가 덧붙여진 경우에는 숫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PB"와 "PB-1"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SPECIALPB-GOLD	**PB-1** (인용상표2)		
2000당1213 2001허362	조도계, 주행거리기록계 등	콘덴서, 콘덴서마이크로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인 '삼영'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1,2,3은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 '電子工業株式會社', '전자공업주식회사', 'ELECTRONICS CO., LTD.'을 제외한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 4는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Y 삼 영	三瑩電子工業株式會社 (인용상표1) 삼영전자공업주식회사 (인용상표2) SAM YOUNG ELECTRONICS CO., LTD. (인용상표3) 삼영 (인용상표4)	원래의 표장 그 자체에 의하여, 모두 '삼영'으로 불려질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이 동일하다.	
1997항원421 1998후1006	알카리천, 광천수 등	녹차, 소오다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상하로 병기하여 결합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Alka"와 "Life"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Alka"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이 동일하다.	
	Alkalife	알카 ALKA		
2000원2086 2001허638	타이어, 튜브 등	모우터싸이클, 포오크리프트트럭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인 "" 내에 영문자 "TOYO"가 위치하는 모양에 의하여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과 문자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호칭에 있어서는 문자부분인 "TOYO"에 의하여 불리워질 것이므로, "TOYO(토요)"로 약칭되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호칭이 동일·유사한 표장이다.	
	TOYO	TOYOACE		
2000원2085 2001허621	타이어, 튜브 등	모우터싸이클, 포오크리프트트럭 등	인용상표의 "ACE"는 "우수한, 일류의, 최고의"라는 뜻의 단어로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는 "TOYO"가 요부로서 거래상 "TOYO(토요)"로 약칭되고 관념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는 "TOYO(토요)"로 약칭될 경우에 영문자 "TOYO"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다.	
	TOYO	TOYOACE		
2000원1906 2000허8567	자켓, 저지 등	아동복, 속샤쓰 등	이 사건출원 상표는 "드라이테크" 또는 "드라이"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또한 "드라이"로 호칭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드라이"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인용상표와 동일하며 관념 또한 동일·유사하다.	
	Dry-Tech	드라이		
2000당1063	비듬로션, 비듬크림	화장비누, 세탁비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프러스"는 수학에서 더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0허8260	등 뉴트라프러스	등 NUTRA	하기 기호인 (+) 또는 '덧붙여진, 위의' 뜻을 가진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식별력이 약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뉴트라"라고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뉴트라"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2000당1062 2000허8253	비듬로션, 비듬크림 등 뉴트라덤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NUTRA	이 사건 등록상표는 "뉴트라덤"으로, 인용상표들은 "뉴트라" 또는 "누트라"로 호칭될 것인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의 말미에 붙는 "덤"은 짧고 보통의 음으로 호칭되고, 상표의 호칭을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줄여서 호칭하거나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종합하여 보면 "뉴트라덤"과 "뉴(누)트라"는 마지막 음절"덤"의 유무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그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	
1999당1521 2000허594 2000후1160	청주, 탁주 등 清風明月酒	청주, 소주 등 40-93-026996 明 月 명 월	淸風과 明月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淸風과 明月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이 淸風明月이 명월(明月)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000원942 2000허6943	복사용지, 봉투 등 SUPPLY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 SPRY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서플라이"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스프라이"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양 상표는 우선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이 "서"와 "스"로서 유사하며, 중간 음절도 "플"과 "프"로서 "ㄹ"받침이 있고 없는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사하고, 나머지 음절은 "라이"로서 동일하다. 따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다.	
2000원461 2000허6912	선글라스, 티켓 자동판매기 등 PIA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모니터 등 PIAA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인 'PIA'로 직감되고 인식되어 '피아'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용상표 역시 '피아'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다.	
2000당551 2000허6844	이불, 이불커버 등 DEWKS 딕 스	이불, 베개 등 DAKS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딕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닥스" 또는 "다크스"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인용상표들이 "닥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들은 전체 음절수가 2음절로 동일하고,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며, 단지 첫음절의 모음 부분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ㅣ"와 "ㅏ"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약하게 발음되는 부분으로서 그 차이는 미세하다고 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1999원1273 1999허6602 2001후1150	공업용 풀, 공업용 접착제 등	풀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뚝풀"은 고어인 "ㅏ"의 고어에 해당하는 "·"을 사용한 글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딱풀'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1의 문자부분이 "딱풀 딱풀" 또는 간략하게 "딱풀"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	
		 (인용상표1)		
2000원1044 2000허7366	조울증 치료용 약제, 간질 치료용 약제 등	항생물질제제, 항바이러스제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비아', '조바이어' 또는 '조바이아' 등으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조비아'로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조비어'와 대비할 때, 전체 음절 수 및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다만 세 번째 음절이 '아'와 '어'로 다를 뿐이어서, 양 상표는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JOVIA	조비어		
1999당2167 2000허5766	화장비누, 약용비누 등	화장비누, 약용비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ELIZABETH ARDEN SPA"의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나무 도안 아래 "SPA"의 영문자와 그 아래에 다시 "스파"의 한글자가 결합되어 있어 외관은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ELIZABETH ARDEN"과 "SPA"는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구성부분이 각각 요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후반부의 "SPA"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SPA"를 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ELIZABETH ARDEN SPA			
2000원757 2000허6646	유류 및 가스 송출 분배 파이프라인과 수도관용 밸브 및 쵸크	제어밸브, 전자기밸브 등	양 상표 모두 영문자 5자로 구성되어 있고, 철자에 있어서도 세 번째 철자가 "V"와 "B"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4개의 철자는 완전 동일하여 외관상으로 유사하고, 또한 양 상표는 모두 '나브코'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가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NAVCO	NABCO		
1999당2259 2000허4657	서류가방, 핸드백 등	핸드백, 서류가방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GOVER"와 "VALENTINO"가 각각 하나의 요부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 1은 "VALENTINO"에 "V"자 도형이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VALENTINO"가 일 요부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동일한 "VALENTINO"를 요부로 한 양 상표는 서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GOVER VALENTINO	 (인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당1775 2000허4312 2001후829	콩나물, 녹두나물 등	쌀가루, 밀가루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해들녘”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 1은 “해찬들”로 호칭되어, 모두 3음절이라는 점, 어두부분 “해”가 동일한 점, “들”의 호칭도 일치하고 다만 순서가 도치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녘”과 인용상표 1의 “찬”이 강음으로서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녘”부분을 분리하여 “해가 들 무렵”으로 관념되거나 또는 “들녘”부분을 분리하여 “해 들녘, 즉 해가 있는 들(들녘)”로 관념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 1은 “해가 가득찬 들”로 관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해가 있는 들”로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 1과는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해 찬 들 (인용상표1)		
2000원1050 2000허6349 2001후737	신사복, 양복바지 등	수영복, 속팬티 등	사건 출원상표는 “주타노”로, 인용상표는 “기타노” 또는 “지타노”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가 “지타노”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3음절 중 2음절이 동일하고 첫 음절은 “주”와 “지”로서 다소 다르나 서로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호칭에 있어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ZUTANO	GITANO		
1999원4428 2000허5148	건과자, 비스킷 등	스낵과자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형 부분만으로 인식되어 ‘고래'로 호칭, 관념되고, 인용상표가 도형 부분만으로 인식되어 ‘고래'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부분의 외관의 형상 및 특징적인 요소가 유사하고, 그 부분의 호칭 및 관념도 동일·유사하다.	
				
1999당975 2000허969 2001후768(심불)	서적, 잡지 등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Sweet's”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1)은 “SWEET” 또는 “BASIL” 모두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1)이 그 요부인 “SWEET”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인 “Sweet'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	
		SWEET BASIL (인용상표1)		
2000원126 2000허5773 2001후614	운동용 아노락, 운동용 유니폼 등	오우버코우트, 골프공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가 모두 “사가” 또는 “싸가”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들은 칭호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싸가”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1, 2가 “사가”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들은 칭호가 유사하다. 또한 일반적인 영어 알파벳 발음방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싸카”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1, 2가 “사가”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양 상표들은 음절수가 2음절로 동일하고, 모음 부분이 모두 “ㅏ ”로 동일하며, 자음 부분의 “ㅆ"	
	ssaka	40-81-007644 SAGA (인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AGA (인용상표2)	과 "ㅅ" , "ㅋ" 과 "ㄱ"은 동일 계통의 자음으로 "ㅆ"은 "ㅅ"의 된소리, "ㅋ"은 "ㄱ"의 거센소리에 불과하여, 양 상표들은 그 청감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들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0원201 2000허5612 2001후607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 등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각 그 요부인 "동아리"에 의하여 "동아리"로 호칭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패를 이룬 무리' 등으로 관념될 수 있어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시사 영어동아리	**동아리교육**		
1999당2181 2000허3173 2001후577	사과주스, 사이다, 탄산수 등	탄산수와 탄산음료 등	(가)호 표장은 원고의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HITE 하이트	HIT		
1999당2181 2000허3173 2001후577	사과주스, 사이다, 탄산수 등	탄산수와 탄산음료 등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양 상표 모두 같은 방패 모양의 테두리선을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선 상단의 중앙이 비어있는 대신 그곳에 같은 크기의 도형이 있으며, 테두리선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HITE"가 그보다 작은 글씨의 한글 "하이트"와 함께 병기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HITE"에서 끝의 E자만 탈락된 "HIT"가 HITE와 같은 크기와 같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상표의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다.	
	HITE 하이트	HIT		
2000원661 2000허6455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각각 그 요부인 "WIN"에 의하여 "윈"으로 호칭되고, '이기다', '획득하다', '승리', '성공' 등으로 관념될 수 있어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NETSWIN 네 츠 윈	WIN21		
2000당973 2000허6783 2001후430(심불)	학생화, 등산화 등	구두 등	(가)호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요부로 인식될 것이다. (가)호 표장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형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 (가)호 표장의 도형 부분은,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도형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구도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하여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1999당1058 2000허624	관광음식점업, 식당 체인업 등	한식점경영업, 레스토랑업 등	호칭의 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 "예천"은 인용서비스표(2)의 호칭 "옛천"과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2)는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동일 유사한 표장이다.	
	藝 泉 예 천	옛 천 (인용서비스표2)		
2000원1344 2000허6882 2001후119	양복바지, 스커어트 등	슈우트, 스커어트 등	한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는 특징적이고 지배적인 형상이 유사한 바,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말을 탄 채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재의 동일성, 말의 크기와 형상의 유사성, 말과 사람의 크기 및 비율, 표현의 간략화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외관이 유사하고, 도형에서 우러나오는 관념 및 호칭도 유사하다.	
				
1999원4860 2000허3746	항생제	진료용 약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케톨", "케털", 또는 "케토르"라고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그 전반부인 "케털" 또는 후반부인 "테스트"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용상표가 "케털"만으로 호칭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케톨", "케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호칭이 동일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KETOR	케털-테스트		
1999원2776 2000허1375 2000후1658	자동차용 에이엠/에프엠 스테레오 수신기, 자동차용 카세트 테이프 덱 등	전화기, 인타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인용상표는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BOSS AUDIO SYSTEMS	HUGO HUGO BOSS		
1999원4242 2000허4923	세탁용 유연제, 스킨밀크 등	일반화장수, 알칼리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Snow" 또는 "Rose"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Snow"만에 의하여 "스노우"로 호칭되고, '눈'으로 관념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1, 3과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 인용상표 5는 "SUN" 또는 "ROSE"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Snow Rose	SNOW 스노우 (인용상표1, 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UN ROSE (인용상표5)	수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now" 또는 ”Rose"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Rose" 또는 “ROSE"만에 의하여 "로즈”로 호칭되고 ‘장미’로 관념되는 경우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	
1999원1045 1999허8042 2000후822	핸드백, 서류가방, 지갑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보보리”, “바바리” 등으로, 인용상표는 “밥리”, “봅리”, “바브리”, “보브리” 등으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보보리” 또는 “바바리”로, 인용상표가 “보브리” 또는 “바브리”로 각각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둘째 음절의 모음이 “ㅗ”와 “ㅡ” 또는 “ㅏ”와 “ㅡ”인 차이가 있으나, 첫째, 셋째 음절이 동일하고 둘째 음절도 초성이 “ㅂ”으로 동일하다.	
	BOBOLI	**BOB LEE**		
2000원75 2000허4244	학습지, 포스터 등	학습지, 포스터 등	양 상표가 후단의 한글자만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열린과학”으로, 인용상표는 “열린과학교실”로 발음되어 앞의 4음절의 발음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청음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열린”이라는 수식어는 막히거나 가리어진 것이 트이다는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거래계에서 “고정관념이나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열린과학”은 그와 같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과학이라는 의미를, 인용상표의 “열린과학교실”은 그러한 방식으로 과학을 가르키는 장소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관념 또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A⁺열린과학	40198029514 열린과학교실		
1999당2035 2000허4121	전보통신업, 전화통신업 등	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한 통신업	“망”과 “Net"는 그 지정서비스업 또는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통신망', '방송망', '전산망'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그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의 요부는 ”하나“ 및 ”Hana"라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그 요부가 “하나”로 호칭되어 칭호가 동일하고, “Hana"는 한글 ”하나“의 영문 음역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요부의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하나망“으로 호칭되고 '하나로 연결된 통신망' 등의 의미로 직감되며, (가)호 표장은 ”하나네트'로 호칭되고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 또는 '하나로 연결된 통신망'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양 표장은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하나망	HanaNet		
2000원393 2000허4619 2000후3548(심불)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	영화필름제판업, 편집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 이외에 한글도 병기되어 있으며, 양 서비스표는 영문자 부분의 글자 수에도 차이가 현저하므로 외관상으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칭호 및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는 광고 및 판매촉진에 관련된 정보제공업 등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앞부분 “Double”은 뒷부분 “Click”을 두 번 반복한다는 수식어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중심적 요부는 "Click"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중심적 요부인 “Click”만에 의하여 “클릭”으로 호칭되고, ‘누른다’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	
	DoubleClick	CLick 클 릭		
2000당11 2000허3258	김치통, 반찬용식품 저장용기 등	보울, 케니스터 등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 관념하려는 거래계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Topper”만에 의하여 “토퍼, 타파, 탑퍼” 등으로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2)는 “탑퍼”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2)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할 것이다.	
	RichTopper	탑파		
1999원3760 2000허3951	아동복, 단추 등	신사복, 학생복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원 모자를 착용한 얼굴도형과 그 아래에 한글 “뽀빠이삼용”이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에 의하여 “뽀빠이삼용” 또는 약칭되어 “뽀빠이”로 호칭,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 1은 “뽀빠이”로 호칭, 인식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지만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인용상표1)		
1998원3936 1999허7483	세트완구, 라켓 등	세트완구, 라켓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파파이스”로 호칭되거나 또는 도형부분도 일 요부를 구성하므로 도형부분에 의하여 “뽀빠이와 올리브”로 호칭,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인용상표 1은 “뽀빠이”로, 인용상표 2는 “올리브”로 각 호칭, 인식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고, 도형 내의 얼굴과 머리모양의 특징이 유사하여 외관 또한 유사한 점이 있다.	
		 (인용상표1)  (인용상표2)		
1998원3529,3555 (병합) 1999허7476	학생복, 반코우트 등	학생복, 모자 등	이 사건 출원상표 1은 영문자 POPEYE와 한글 뽀빠이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일 요부인 한글에 의하여 뽀빠이로 호칭,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외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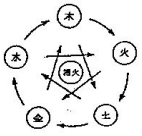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40-79-007509 POPEYE 뽀빠이 (출원상표1)	40-88-028513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1999원4381 2000허4466 2000후3371(심불)	청바지, 풀오버 등 XIX	브라우스, 스커어트 등 X|X 21	외관에 있어서는, 인용상표는 뒷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21”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 ”XIX"와 가운데 부분이 “	”와 “I"로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의 ”| “는 영어 알파벳 ”I"와 극히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XIX"는 인용상표의 앞부분 ”X	X" 와 유사하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유사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인용상표는 앞 부분인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엑스 엑스”로 호칭되거나 “엑스 아이 엑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2000원391 2000허3944	주택건축업, 창호공사업 등 MIGADON (주)삼성엑스테리어 SAM SUNG EXTERIORS CO., LTD.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 등 SAMSUNG (인용서비스표1) 삼성 (인용서비스표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 1은 요부인 문자 부분 “SAMSUNG"에 의하여 "삼성"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 2는 “삼성”으로 호칭·관념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요부 중의 하나인 "삼성" 및 “SAM SUNG"에 의하여 "삼성"으로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2000원391 2000허3944	주택건축업, 창호공사업 등 MIGADON (주)삼성엑스테리어 SAM SUNG EXTERIORS CO., LTD.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 등 SAMSUNG (인용서비스표1) 삼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 1은 요부인 문자 부분 “SAMSUNG"에 의하여 "삼성"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 2는 “삼성”으로 호칭·관념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요부 중의 하나인 "삼성" 및 “SAM SUNG"에 의하여 "삼성"으로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서비스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서비스표2)		
1999원3530 2000허2927	가정용 TV게임 장난감, 가정용 TV게임 소프트웨어	직류발전기, 형광등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의 아래 부분에 발음기호로 [sai]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표장의 구성상 'X' 나 'I' 보다 가늘고 작게 표기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데 비하여, 'X' 와 'I'는 비록 각각 도형의 다른 면에 표시되어 있으나 크고 진한 글씨체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근접하여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sai]에 부분에 의하여 '사이'라고 호칭하기보다는 'X' 와 'I' 부분을 결합하여 '엑스아이' 또는 '엑사이'라고 호칭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용상표도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엑사이'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2000원33 2000허4992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외관상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를 읽을 경우 'SMART'와 'SKETCH'라는 두 단어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으로 보아 'SKETCH'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의 호칭이 동일하다.	
	SMARTS KETCH			
2000당4 2000허4213	식용현미가루, 효모 등	식용현미가루, 효모 등	(가)호 표장 중 "동규자차" 부분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가)호 표장의 요부는 "사르르" 부분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사르르" 부분을 대비하여 보건대, 호칭에 있어서 3음절 중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 '사' 부분이 동일하고,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의 각 초성도 'ㄹ'로서 동일하여 청감이 유사하다. '사라락'은 일반 수요자에게 '어떤 것이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흐르는 듯한 모양' 내지는 '어떤 것이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잇달아 스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라락'과 '사르르'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다.	
	사라락			
1999당1794 2000허1740	화장비누, 샴푸 등	향수, 화장크림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쎄"로, 인용상표들은 "오쎌"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호칭상 첫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에 있어서도 초성과 중성이 동일하고 다만 종성 "ㄹ"이 없고 있는 차이에 불과하므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Ocel 오쎌		
1999당936 1999허9304	백분, 화이트닝마스크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BLANC" 및 "EXPERT"로 각 분리관찰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ERT"만으로 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0후1627	BLANC EXPERT	40-87-000746 엑스퍼트 X-PERT	리관찰되어 "엑스퍼트"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한글부분인 "엑스퍼트"와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2000당162 2000허4176	서류가방, 핸드백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먼저 인용상표 1은 한글부분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해 “리콜”로 호칭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니콜“로 호칭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비교하여 보면, 두 상표의 호칭이 모두 2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첫째 음절은 그 초성이 각 ”ㄹ“과 ”ㄴ“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두음법칙에 의하면 “ㄹ”과 “ㄴ”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둘째 음절은 그 발음이 동일하므로 두 상표는 그 청감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Nicole	NICOLE 리콜 (인용상표 1)		
1999원4668 2000허3197	불소, 산소 등	표면살균제, 진한암모니아수와 탄산암모늄이 주제인 정신들게하는 약	인용상표는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EDWARD’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EDWARD’에 명사의 복수형태로 흔히 쓰여지는 ‘S’만을 첨가한 이 사건 출원상표 ‘EDWARDS’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비록 외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EDWARDS	EDWARD DON		
2000원21 2000허5155	일반화장수, 애프터셰이브로션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CASUAL”만으로 약칭,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CASUAL FRIDAY	캐주얼 CASUAL		
1999당1184 2000허488	관광음식점업, 휴게실업 등	휴게실경영업, 호텔업 등	두 서비스표 중 “건설”부분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아래에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지정서비스업들의 대부분이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용서비스표 중 “고속”부분은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서 서비스표에 사용될 경우 적어도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여지므로 두 서비스표 모두 “동양”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두 서비스표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동양건설	동양고속건설		
2000원274 2000허4831	신사복, 양복바지 등	스커트, 청바지,	호칭에 있어서 12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앞부분에 있는 “PHILOSOPHY”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PHILOSOPHY di ALBERTA FERRETTI	PHILOSOPHY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1999원3912 2000허3234	전자해도(CHART), 항해용 컴퓨터프로그램 등	건전지, 전류계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외국어를 발음함에 있어서 단어의 끝에 붙는 글자 “R”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 언어습관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는 “프리마르” 또는 “프리마”, “프라이머”로 발음될 가능성이 많고, 인용상표의 “PRIMA”부분 역시 ”프리마“ 또는 ”프라이머“로 발음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프리마“ 또는 ”프라이머“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PRIMAR	PRIMAFLAT		
1999당1745 2000허2606 2000후2842(심불)	스커어트, 스웨터 등	아동복, 신사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호칭이 나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문자 부분인 ‘i' 및 ‘sac' 에 의하여 ‘이삭’, ‘이색’, ‘아이삭’, ‘아이색’ 등으로 호칭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삭’으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iSAC	이삭		
1999당1744 2000허2590 2000후2859(심불)	스커어트, 스웨터 등	아동복, 신사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아이삭’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이삭’으로 호칭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어두에 호칭되는 ‘아’는 그 초성음이 비음으로서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이'와 인용상표의 두음인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것은 뒤에 호칭되는 ‘삭’ 부분인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이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아니한 조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극히 유사하게 호칭될 것이다.	
	아이삭	10-89-031025 이삭		
1998원3894,3895 1999허6565 1999후3146	예약업, 자동차 예약업 등	예식장 경영업, 미용실업 등	문자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것인데, 없으므로, "STAR"와 "ALLIANCE"는 모두 대등한 요부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과 관념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는 상표(서비스표)의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는 거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TAR ALLIANCE	알리앙스	계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중 앞부분의 "STAR"나 뒷부분의 "ALLIANCE"에 의하여 "스타" 또는 "얼라이언스(어라이언스)"나 "알리안스"로 약칭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 "알리앙스"의 호칭과 극히 유사하다.	
1999원3178 2000허2330 2000후2576(심불)	컴퓨터, 컴퓨터 하드웨어(computer hardware) 등	피아노, 전기기타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3은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가 'Poly'만에 의하여 '폴리'로 호칭·관념되고, 인용상표 1, 3 역시 '폴리' 로 각 호칭·관념되는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 3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된다.	
	PolyStation	POLY-PIA (인용상표1) 폴리(poly) (인용상표3)		
1999원2370 2000허1146	신문, 잡지 등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HOMMES"와 "VOGUE"에 있다 할 것인바, 위 각 부분을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HOMMES" 부분만으로 호칭되거나(그 관념은 인식되기 어렵다), 또는 "VOGUE"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 (2)와 외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HOMMES"만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1)과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VOGUE"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2)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HOMMES VOGUE	HOMMES 옴므 (인용상표1) 보그 (인용상표2)		
1999원4709 2000허3203	콘택트렌즈용 용액	비타민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ADVANCE"만에 의하여 "어드밴스"로 호칭되고, '전진', '진보', '나아가다' 등으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BOSTON ADVANCE	SIMILAC ADVANCE		
1999원4895 2000허3067	아이새도우, 눈썹연필 등	향수, 향유 등	인용상표가 그 요부인 문자 부분 "LLOYD"에 의하여 "로이드"로 호칭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요부 중의 하나인 "LLOYD"에 의하여 "로이드"로 호칭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LLOYD KLEIN K	LLOYD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당1752 2000허2149	서류가방, 핸드백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비키" 또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팬더곰"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의 경우에는 "VI"와 "KI" 사이에 꽃 도형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호칭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키" 라고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1999당964 1999허9359 2000후2262	타일변기세정제, 헤어린스 등 로 맨 스 ROMANCE	콜드크림, 향수 등 로 망 스 ROMANCE (인용상표1) 아모레로망스 AMORE ROMANCE (인용상표2)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 (1), (2) 모두 "ROMANCE" 또는 그 한글음역인 "로맨스"로 약칭되거나, 관념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로맨스"와 "ROMANCE"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1999당1284 2000허2880 2000후2804	콩, 화분 등  	농산물 이유식, 곡물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등 	외관은 다르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 및 문자 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문자부분에 의하여 '상화'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는 중앙의 원 내의 '相火'에 의하여 호칭, 관념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1999원3560 2000허1979 2000후2132(심불)	간판용 플라스틱필름 PANAGRA PHICS	경질에보나이트, 연질에보나이트 등 PANA (인용상표1) 그 래 픽 GRAPHIC (인용상표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최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PANA" 또는 "GRAPHICS"만에 의해 "파나" 또는 "그래픽스"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 1은 "파나"로 호칭되며, 인용상표 2는 "그래픽"으로 호칭되고 '도표의', '도해의', '그래프의', '그림의'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PANA" 만에 의해 "파나"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1과 칭호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GRAPHICS"만에 의해 "그래픽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2와 칭호에 있어서 마지막 음절의 "스"가 있고 없는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고, 또한 "GRAPHICS"는 명사로서 '그래프' 등의 의미를 갖는데 비해 인용상표는 형용사로서 '그래프의'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양 상표는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	
1999원4531 2000허3104	사진업, 사진촬영업 등 아이i사랑	사진업, 사진촬영업 등 어린이 전용 사진관 아 가 사 랑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아이i"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글자의 모습이 변형된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아이사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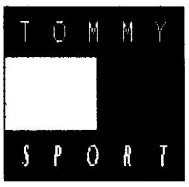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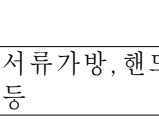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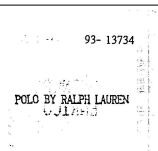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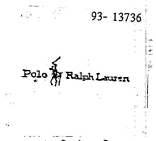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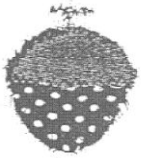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매우 높고, 인용서비스표는 그 중 상단의 “어린이전용사진관”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어서 “아가사랑”만으로 인식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 모두 전체적으로 “아기나 어린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점에서 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99당1334호, 1335호(병합) 2000허587 2000후2224 (상고취하)	향수, 화장수 등	향수, 아이샤도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Plurielle' 부분 및 ‘E(X)PRESS'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E(X)PRESS'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된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익스프레스’ 내지 ‘엑스프레스’로 호칭·관념될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이 프레스’ 내지 ‘에 프레스’로 호칭될 경우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는 각 그 음절 수 및 동일하게 호칭되는 부분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된다.	
				
1999당1339 2000허570 2000후당2217 (상고취하)	마스카라, 백분 등	일반화장수, 스킨로션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VOLUM(E)' 및 ‘EXPRESS'의 결합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입체감, 질량감을 신속하게’라는 관념이나 그 밖의 새로운 하나의 관념을 낳는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중 ‘EXPRESS' 부분이 위에서 본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EXPRESS'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RESS’로 분리 관찰되어 ‘익스프레스’ 또는 ‘엑스프레스’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99당1338 2000허563 2000후2200 (상고취하)	유액, 스킨로션 등	향수, 아이섀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LISS', ‘HYDRA' 및 ‘EXPRESS'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중 ‘EXPRESS' 부분이 위에서 본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EXPRESS'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RESS’로 분리 관찰되어 ‘익스프레스’ 또는 ‘엑스프레스’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99당1336 2000허556 2000후당2194 (상고취하)	나리싱크림, 스킨로션 등	향수, 아이섀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MINCEUR', 'BEAUTE' 및 'EXPRESS'의 세 구성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중 'EXPRESS' 부분이 위에서 본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그 구성부분 중 'EXPRESS'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와 같이 분리 관찰되어 '익스프레스' 또는 '엑스프레스'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MINCEUR BEAUTE EXPRESS	익스프레스 EXPRESS		
99당1337 2000허549 2000후2187 (상고취하)	화장비누, 샴푸 등	향수, 아이섀도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단의 'PHAS' 부분과 하단의 'INSTANT' 부분 및 'EXPRE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중 'EXPRESS' 부분이 위에서 본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EXPRESS'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RESS'로 분리 관찰되어 '익스프레스' 또는 '엑스프레스'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	
	PHAS INSTANT EXPRESS	익스프레스 EXPRESS		
1999원1713 1999허8646 2000후2118(심불)	휴지, 화장지 등	한지, 휴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유한그린텍'의 구성부분 중 '㈜'는 회사의 형태를 의미하는 주식회사의 약칭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그린텍'은 '그린'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로, '텍'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약자로서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린텍'은 환경오염 등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한 휴지, 화장지, 종이물수건'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지므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유한'이라 할 것이다.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양행(洋行)'은 서양식 상점이라는 의미로서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유한'에 있다 할 것이다.	
	안건·사업 성패의 객관적 조사 (주)유 한그린 텍	유한양행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원2805 2000허1603	검파기, 컴퓨터 등	컴퓨터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T"와 "Netcall"이 하이픈으로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로서 호칭되는 경우 "티네트콜" 또는 "티넷콜"로 호칭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그 알파벳 표기에 따라 "티네트", "티넷" 또는 "타이네트", "타이넷"으로 호칭될 것인바, 인용상표가 "티네트" 또는 "티넷"으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마지막 음절의 "콜"의 유무 차이만이 있어 비록 "콜"이 약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되어지는 어두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T-Netcall	TINET		
1999당937 1999허9311 2000후1634	화이트닝로션, 화이트닝마스크 등	향수, 아이섀도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뒷부분인 'EXPERT'로 분리 관찰되어 '엑스퍼트'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한글부분인 '엑스퍼트'와 호칭이 동일하다.	
	WHITE EXPERT	40-87-000746 엑스퍼트 X-PERT		
1999원2950 2000허709	가죽신, 넥타이 등	레인코우트, 스커어트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Gio"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용상표인 "gio"와는 필기체의 서체에 차이가 있으나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다.	
	Gio GIORGIO ARMANI	40-83-010768 gio		
1999원4834 2000허1931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등	편집업, 출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의 하나는 'KOMI' 내지 '코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코미'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할 때, '코미', '코코미'는 모두 조어로서 그 자체로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용서비스표에서 '코코' 부분은 같은 글자를 단순히 반복하여 '코'를 강조하는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은 '코미'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코코미		
1999원3191 2000허1306	시트 쿠션, 시트 패드 등	카페트, 러그 등	인용상표 1 및 2 가 그 요부인 "SELECT"에 의해 "셀렉트"로 호칭되고 '고르다', '선택하다'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SELECT"와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3이 그 요부	
	SELECT EDITION	PROSELECT (인용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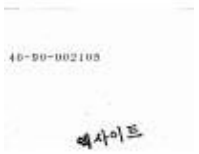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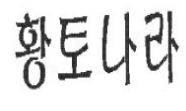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BASICS	SELECT (인용상표2) I-D EDITION (인용상표3)	중의 하나인 "EDITION"에 의하여 "에디션"으로 호칭되고 '(서적, 신문 등의) 판'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EDITION"과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1996당147 1998허2023 1998후1457	요식업, 대중음식점업 등		표장은 문자부분의 글씨체나 도형부분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볼 것이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양 표장의 도형부분이 모두 돼지를 의인화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 도형부분을 보고 '돼지' 또는 '돼지표' 라고 호칭하고 관념하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자부분인 '장충동왕족발' 부분에 의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여지므로(드물게는 도형부분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장충동돼지왕족발' 이라고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양 표장이 다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충동왕족발	 (실사용상표)		
1999원2635 2000허990	네트워크 저장소에서 이용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차량용통신기계기구, TV수신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들 모두 그 요부 중의 하나인 "Traffic"만에 의하여 "트래픽"으로 호칭되고, '교통', '통행', '왕래' 등으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TRAFFIC SERVER	Trafficmaster (인용상표1) Trafficmate (인용상표2)		
1999원2161 2000허808	배합사료, 배합사료용 인산칼슘제 등	배합사료, 개사육용 사료 등	양 상표는 그 요부인 "카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으므로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양 상표 중 "카프"는 영어 "CALF"의 한글 발음 표기로서 '송아지' 등의 뜻을 가지거나 조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완전한 송아지' 또는 '완전한 카프'로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고급의 송아지' 또는 '고급의 카프'로 관념될 수 있어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퍼펙트 카 프	하이카프		
1999당820 1999허8462 2000후1498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캄프랄"이나 "캠프랄" 등으로, 인용상표는 "아캄프랄"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캄프랄"로 호칭되는 경우	
	CAMPRAL	아캄프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와 4음절 중 "캄프랄" 부분 3음절이 동일하고 어두에 "아"가 없고 있는 차이에 불과하고, 더욱이 인용상표의 어두 "아"는 한 개의 모음만으로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1999원2092 2000허464 2000후1405(심불)	건과자, 아이스케이크 등	추잉껌, 캔디 등	양 상표는 첫 음절의 중성이 "ㅣ"와 "ㅖ"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모음 발음으로 유사하고, 둘째, 셋째 음절은 동일하며, 끝 음절도 약간 다르나 모두 "ㅌ" 음으로 시작되어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관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영문자 "EXCITING"은 "흥분시키는, 자극적인" 등의 뜻이 있고, 한글 "익사이팅"은 "EXCITING"을 한글로 음역한 것인바, "EXCITNG"의 동사형인 영문자 "EXCITE"를 한글로 음역하면 "익사이트"가 되므로 인용상표 "엑사이트"와 발음이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양 상표는 모두 "흥분시키다, 자극적이다"의 뜻으로 관념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익 사 이 팅 EXITING	엑사이트		
1999원1612 1999허9250 2000후1399(심불)	추우잉껌, 캔디 등	건과자, 비스킷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롯데" 부분은 원고 회사 상호의 약칭이고 "누크"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로서, 이를 분리 관찰하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거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그 구성 부분 중 "누크"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 "NUK"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 의해서는 "누크"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가 "누크"라고 호칭되는 경우 호칭이 동일하다.	
	롯데누크	NUK		
1999원2073 2000허679	포도주	맥주, 과일주(사과주)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들이 그 요부 중의 하나인 "SUNRISE" 또는 "선라이즈"에 의해 "선라이즈"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	
	401998018831 SUNRISE	40-88-029543  (인용상표1) 40-88-029644  (인용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원14 1999허6510	티셔츠, 양말 등	와이셔어츠, 혁대 등	인용상표는 TOMMY와 HILFIGER가 띄어쓴 채 결합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일체불가분적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TOMMY 또는 HILFIGER로 분리하여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TOMMY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1996항원2621 1997후3715	서류가방, 핸드백 등	가방, 및대물류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각각 대등한 요부를 구성하는 앞부분의 "ROYALQUEEN'S"나 뒷부분의 "POLO" 등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 역시 "POLO"와 "RALPH LAUREN" 등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들이 "POLO"만으로 분리관찰될 경우 이들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이들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1999당1268 1999허9533	행주, 때밀이타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모두 딸기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외관, 관념,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도 행주제품으로서 동일하다.	
				
1996항2456 1998후65	향수, 목욕용 겔 등	향수, 향유 등	"써말"로 약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써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다같이 2음절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도 초성이 같고 중성이 유사음역이며 종성은 약하게 발음되어,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유사하다 하겠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THERMAL"은 "열의, 온도의, 뜨거운" 등의 뜻이 있고, 인용상표는 "온천, 목욕탕" 등의 뜻이어서 서로 유사하다.	
	THERMAL S1	40-92-011534 THERMAE		
1999원3537 2000허761	유흥주점경영업, 식당체인업 등	셀프서비스식당업, 레스토랑업 등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국일"이 되고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로 표기된 부분이 한글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 일"과 "Kukil"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 중 한글부분을 출원서비스표와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 호칭이 동일하다.	
	국일관	국 일 Kukil		
1999원1262 2000허143	호텔업, 음식준비조달업 등	호텔경영업	양 서비스표 모두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벳 5자 "vista" 가 공통적인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 유사한 면이 없지 아니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VISTANA	Vista	하다.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비스타나”로 호칭되고, 인용서비스표는 “비스타” 로 호칭되어, 양 서비스표는 음절수에 차이는 있으나 그 구성음절 중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부분 3음절이 동일하고, 약하게 발음되는 네 번째 음절의 “나”가 있고 없는 차이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유사하다.	
1999원1842 2000허150	집적회로, 대용량집적회로 등	회로기판에사용되는 음원반도체칩	외관에 관하여 보면, 양 상표 모두 영문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8번째 글자가 ‘O'자와 ‘A'자로 서로 다를 뿐 다른 글자는 모두 같고 5번째 알파벳과 6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외관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SCOPE'만으로, 인용상표가 ‘SCAPE' 만으로 각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코프' 또는 ‘스코우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스케이프’로 호칭이 되어 첫째 음절과 끝 음절은 ‘스’와 ‘프’로 서로 동일하게 되며, 가운데 음절은 ‘코(우)’와 ‘케이’로서 동일한 음은 아니나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양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어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	
	SOUND SCOPE	SOUNDSCAPE		
99원1814 2000허51 2000후1023	자동차래디에이터, 에어컨디셔닝콘덴서 등	오수정화장치, 폐수정화장치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프레메어”로, 인용상표가 “프레미어”로 각각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처음 두 음절과 네 번째 음절이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만이 “메”와 “미”로 차이가 있으나, 세 번째 음절도 자음이 “ㅁ”으로 동일하고 모음도 “ㅔ”와 “ㅣ”로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PremAir	Premier		
1999원2109 2000허136 2000후1030	농구화, 골프화 등	단화, 가죽신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NETSGO" 부분이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고,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문자는 ”넷츠고“, ”넷쓰고“ 또는 ”넷스고“으로 발음되기 쉬우므로 그 호칭과 인용상표 1.의 호칭을 비교하여 본다. 먼저, 두 상표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고, 첫째 음절은 그 초성이 각 ”ㄹ“과 ”ㄴ“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두음법칙에 의하면 “ㄹ”과 “ㄴ”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둘째 음절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로 발음될 때는 동일하고, “쓰”나 “츠”로 발음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 모두 둘째 음절에 앞에서 이어지는 첫째 음절의 종성이 “ㄷ”으로 발음이 되고 이 소리에 이어져 발음될 때에는 그 청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되더라도 그 청감이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Let's go to the network! NETSGO	렛스고 (인용상표1)		
1999당601 1999허9076	가스레인지, 오븐 등	석쇠, 알콜버어너 등	용상표 1.은 그 문자부분인 “중동상사”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는바, 그 중 “상사”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중동”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中東GASTECH	40-92-024065  (인용상표1)	만이 인용상표 1.의 요부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中東"부분과 그 호칭이 동일하다.	
1996항원2498 1997후3739	서적,신문 등	서적,잡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40-91-029068 BELLE MAISON ベ ル メ ゾ ン		
1998원856 1999허5524 1999후2907	향수, 정유 등	쌍가풀접착제, 파운데이션크리임 등	"France"부분이 외국인의 성(姓)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프랑스의 국가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Marie"만에 의하여, 인용상표는 "MARIE" 또는 "CLAIRE"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상이하나 인용상표가 "MARIE"로 약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40-83-006611 MARIE-CLAIRE 마 리 끌 레 르		
1997항원132 1998후393	헤어콘디셔너,모발 엉킴방지제 등	샴푸우, 헤어린스 등	또한 이 사건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텡글"이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우,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	
	노 모어 텡글	40-92-027576 탱 글		
1999원2435 1999허9830	신사복, 아동복 등	예복, 신사복 등	양 상표 모두 그 요부 중의 하나인 "CD" 또는 "Christian"만에 의해 "씨디" 또는 "크리스챤"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Christian Daniel"에 의해 "크리스챤 다니엘"로 , 인용상표가 "Christian Dior"에 의해 "크리스챤 디오르"로 각각 호칭되는 경우, 전체의 음절수가 7자로 동일하고 앞부분의 칭호가 "크리스챤"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첫 글자의 자음이 "ㄷ"으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고, 양 상표 모두 기독교도와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또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 "씨디 크리스챤" 부분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1999원750 1999허5692 1999후2747	서적, 잡지 등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fit"와 "FOR FUN"의 두 부분이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에 비하여 굵고 큰 글씨체로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상·하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하 단부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fit"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	
1997항782 1998후652	편지지, 사진첩 등	소주, 합성청주 등	간이 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1999허1485 1999허628 1999후2013	콘크리트보강용스틸화이버	포오틀란드시멘트, 보도판 등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등록번호 제315380호)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9원623 1999허7001 2000후37	건과자, 비스킷, 캔디 등	캔디, 비스켈, 쵸코렡 등	본원상표는 하나의 요부인 "익사이팅"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경우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EXCITING 2002 익사이팅 2002			
1999원1835 1999허7285 2000후945	커피, 코코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MASTER"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양 상표가 공존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1999원1241 1999허8424	신사복, 한복속옷 등	유아복, 와이셔어츠 등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작은 선과 '보디가드' 부분은 상표로서의 식별기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부분에 불과하여 요부는 '황토천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황토나라'와는 '황토' 부분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외관상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인 '황토천국'에 의하여 "황토천국"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황토나라"로 호칭되어 앞부분의 두 음절이 동일하고, 특히 상표의 앞부분의 발음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천국'은 '하늘나라', '이상세계', '낙원'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는 '황토로 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하늘나라', '황토로 된 이상세계 (낙원)'으로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황토로 된 나라', '황토의 세계' 등으로 인식되어, 양 상표는 모두 '황토'와 관련이 있는 '나라' 또는 '세계'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황토'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천국'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므로 인용상표 중 '나라'와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1998원4188 1999허7193	인조손톱, 인조손톱 부착용 접착제 등	향수, 아이섀도우 등	인용상표는 그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Kiss"로 관념되어 "키스"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결국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모두 동일하다.	
	Kiss	40-92-026633 KissMe		
1999당313 1999허7520	테이프직물, 리본직물 등	오우버코우트, 반코우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 중의 하나인 "TOMMY"만으로 약칭될 경우 칭호, 외관, 관념의 면에서 동일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TOMMY GEAR	TOMMY HILFIGER		
1996원2322 1998허4890 1998후1716	아이스크림, 커스타드 등	떡, 식빵 등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가 "RIBBON"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다.	
	WALL'S BULE RIBBON	40-85-016074 리본쿡		
1996항원2373 1997후3999	상품류(제13류)	향수,스킨로우션 등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KID CLEANING POWER	KID		
1999당425 1999허6763	녹차, 홍차 등	녹차, 사과쥬스 등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스피드"와 그의 영문자인 "SPEED"를 병기한 표장인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등록상표는 "SPEED"의 "D"부분에 "D"가 다시 한번 중첩되어 표시되어 있는 차이만 있다 할 것인바,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외관이 극히 유사하여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스 피 드 SPEEDD	SPEED 스피드		
1996항원1841 1997후2323	컴퓨터,전화기 등	각 프로그램된 디스켓·컴퓨터자기테이프 등	본원상표는 '미포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본원상표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호칭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 'MIPOS'와 인용상표의 영문자 부분 'MIPS'와 대비할 경우 영	
	MIPOS	MIPS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문자 'O'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유사하다.	
1998원4059 1999허6473	컴퓨터 게임 및 온라인 매거진 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시장조사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모두 그 요부가 'SPOT'으로서 동일하므로 서비스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하려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가 다 같이 'SPOT'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GAMESPOT	C SPOT		
1999원373 1999허5975 2000후679	전자송금서비스업	재정금융업	인용서비스표는 'GUIDE' 또는 'STAR'라고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가 후반부의 'STAR'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STAR	GUIDESTAR		
1998당451 1999허2747 1999후2426	제4종복합비료, 피복복합비료 등	석회질소, 요소 등	양 도형은 전체적인 구성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그 외관이 매우 유사하고 그 각 도형에서 유추되는 관념이나 호칭도 유사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기가믹스 오페론 GIGAMIX OPERON	40-85-014414		
1997항533 1998후690	단화, 장화 등		두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비추어 두 상표 모두 "모르건(내지 모르간)" 또는 "몰건(내지 몰간)"이라고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 두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M·O·R·G·A·N	40-93-030423 JacK Morgan		
1994당429 1995항당285 1997후3050	비스켓, 커스터드 등	건과자, 비스킷, 드롭스 등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고,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앞 부분의 "M" 과 중간부분의 "&"가 동일하고, 끝 부분 "S" "M's"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 "S"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양 상표는 전후의 간단한 알파벳을 "&"로 연결하여 결합한 모양으로서 상표로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아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할 것이다.	
	M & M's	40-87-019122 m&m's		
1999원2697	해충박멸제, 살충제	아미노산제, 자양강	인용상표가 아타라 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허8738	등	장변질제 등	출원상표의 호칭인 아타라 와 동일하고, 인용상표가 아다라 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과 비교할 때, 음절수가 같고, 다만 두 번째 음절의 초성만이 'ㄷ' 과 'ㅌ'으로 다를 뿐이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 된다.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아 타 라	ATARAH - C 아 다 라 - C		
1999당865 1999허8448 2000후457	용접용타일, 세라믹 타일 등	용접지지구, 용접지지구 부착용 테이프 등	인용상표는 '씨비엠'으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하며, 한편 관념에 있어서 'CBM'은 철구조물 제작에 적용되고 있는 용접 부재료제품인 'Ceramic Backing Material'의 머릿글자로 구성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인용상표에서 '600'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CBM	CBM 600 씨비엠		
1996항원2614 1997후3333	골프화, 농구화 등	샌들화, 슬리퍼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의 병기 여부 및 문자 배열상의 차이 등으로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리아나', 또는 '아라이아나'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아리아' 로 호칭될 것인바, 본원상표가 '아리아나' 로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3음절이 동일하고, 본원상표의 넷째 음절은 약하게 발음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ARIANA	ARIA 아리아		
1999원1244 1999허7599	연필, 펜 등	연필, 샤프펜슬 등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건 출원상표에서 "ANGRY BEAVERS"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물을 연상하여 이 건 출원상표를 "ANGRY BEAVERS" 전체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ANGRY"나 "BEAVERS"로 분리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분리관찰되어 이 건 출원상표가 "BEAVERS"만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비버스" 또는 "비버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비버"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영어음독습관상 강세가 없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들리는 복수형의 어미인 "S"부분의 발음 "스" 또는 "즈"가 덧붙는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양 상표의 청감이나 관념이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GRY BEAVERS	BEAVER 비 버		
1999당559 1999허7889	녹차, 과실액 등		이 건 등록상표는 "네모레몬"으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레모"로 호칭되는바, 이 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NEMOLEMON	LEMO	등록상표의 첫 두 음절 “네모”는 인용상표의 “레모”와 첫 음절의 초성만이 “ㄴ”과 “ㄹ”의 차이만 있을 뿐 매우 유사하고, 이 건 등록상표의 뒷 두 음절 “레몬”은 인용상표의 “레모”와 뒷 음절의 종성 받침자음 “ㄴ”만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어 극히 유사하며, 이 건 등록상표는 이와 같이 인용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고 서로 비슷한 청감을 주는 “네모”와 “레몬”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음될 뿐만 아니라 첫 두 음절 “네모”에서 인용상표와 상이한 초성부분이 뒷 두 음절 “레몬”에서는 동일한 초성으로 연결되므로 뒷 부분의 발음이 앞 부분에 연상작용을 미치는 점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1999원1156 1999허8561	양복바지, 블라우스 등	양복바지, 슈트 등	이 건 출원상표는 상단의 “VINCIS” 부분과 하단의 “BENCH”의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BENCH”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1, 2는 모두 그 문자 부분인 “VENCH”에 의하여 “벤치”로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출원상표가 하단의 “BENCH” 부분만에 의하여 “벤치”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VINCIS BENCH	BENCH 		
1999당487 1999허8103 2000후341	보석감정업, 보석판매대행업	보석감정, 감별업	"오희남”과 그 한문이 요부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인용서비스표는 “오희남”으로 약칭되는데 비하여, 이 건 등록서비스표는 “오이남”으로 호칭되어 첫째 음과 셋째 음이 동일하고 중간음이 “희”와 “이”로서 자음과 모음이 유사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411998000695 오 이 남	41-86-000154 吳熙南寶石鑑別鑑定所 오희남보석감별감정소		
1999당49 1999허5609 2000후389	부동산중개업		‘부동산플러스’라는 용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부동산플러스’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가)호 표장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들은 분리 관찰할 수 있고 문자부분 중 “부동산플러스”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가)호 표장 역시 ‘부동산플러스’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다.	
	부동산플러스 Total Service	부동산플러스		
1997당581 1998허9277 1999후2532	무도유흥음식점업	호텔업, 레스토랑경영업 등	이 건 등록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Holiday” 또는 “Holiday in”만으로 분리되어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도 “Holiday Inn” 부분만으로 또는 그 중의 앞 부분인 “Hol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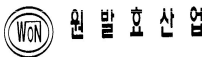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Holiday in Seoul	41-87-002141 Holiday Inn Garden Court	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기 쉬워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따라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1999당418 1999허6404	샴푸, 헤어린스 등	화장비누, 샴푸 등	"L'OREAL"과 "PERFORM -ANCE"는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단어가 각각 요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후반부의 "PERFORMANCE"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40-93-37138 L'OREAL PERFORMANCE	40-80-003221 PERPORMANCE 퍼포먼스		
1996항원608 1997후3074	견인차, 보우트 등	견인차, 보우트등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여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	
	SERON	SETON		
1998원2926 1999허5739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베르타 페레티' 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1)은 '알베르토 페라리스' 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두 상표의 앞단어인 '알베르타' 와 '알베르토' 의 처음 3음절과 뒷단어인 '페레티' 와 '페라리스' 의 첫음절은 모두 동일하고, 다만 앞단어의 끝음절 '-타' 와 '-토' , 뒷단어 중 '-레티' 와 '-라리스' 의 발음이 상이하나,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 일반거래사회의 언어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양 상표의 호칭을 결정적으로 구분할 만큼 뚜렷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된다.	
	ALBERTA FERRETTI	ALBERTO FERRARIS (인용상표1)		
1999원932 1999허8417	팔뚝시계, 탁상시계 등	팔뚝시계, 탁상시계 등	이 건 출원상표는 앞부분의 "BOSS"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상표는 큰 글씨로 기재된 "BOSS"와 작은 글씨로 기재된 "HUGO BOSS"가 상하 이단으로 결합되어 있어 "BOSS"가 주된 요부를 형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모두 "BOSS"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	
	BOSSCLUB	BOSS HUGO BOSS		
1999원1140 1999허7490	반지, 브레이슬렛 등	아동복, 저고리 등	이 건 출원상표는 호칭을 간략하게 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주로 "후레드"로 약칭될 것이고("후레드 조에일리어"라고 전체로 호칭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인용상표는 우선 한글부분에 의하여 "프레드"로 호칭되거나 경우에 따라 영문자 부분 "Presde"에 의하여 그 알파벳의 자, 모음을 읽는 기초적인 방법에 따라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FRED Joaillier	Presde 프레드	"프레스드" 또는 "프레스데"라고 호칭될 것인데, 인용상표가 "프레드"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이 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거의 동일하게 청감되므로(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파벳 F의 발음인 '후'와 알파벳 P의 발음인 '프'는 거의 구별되지 아니한다) 호칭이 거의 동일하다.	
1999당871 1999허8431	칼, 송곳 등	기타주방용품	이 건 등록상표는 알파벳으로 된 조어인 "KALMICS"와 그 한글 발음에 해당하는 "칼믹스"로 구성되어 있고, (가)호 상표는 "CERAMICS SHARPERS"와 "KALMICS"가 2단으로 횡서 표기된 것이어서 하단의 "KALMICS"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 상표가 호칭이 동일하게 되어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KALMICS 칼믹스	CERAMICS SHARPERS KALMICS		

<비유사 판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0당885 2011허3216	택배업, 귀중품운송업 등	서류/소포/화물의 직배/수송/인도/추적/보관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철도 및 항공운수업	양 표장은 영문자 첫글자의 차이, 색채 및 도안화 유무, 글자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세(쎄)덱스'로 호칭되고,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페(훼)덱스'로 호칭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ㅅ'은 설면음이고, 'ㅆ'은 발음법상으로 설단폐쇄음으로서 발음이 분명한 격음이어서 각 그 소리가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되므로 첫 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표장을 호칭할 경우 느끼는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념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SEDEX	FEDEX (인용상표1) FEDEX (인용상표2)		
2009당2852 2011허4400 2011후2275(진행중)	보이차, 차의 잎 등	과실액, 사과주스 등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 부분의 구성과 글자 수, 도안화의 정도 및 색상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4음절에 불과하고, '장원급제' 전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어서 '장원'과 '급제'로 나뉘어 불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원급제'의 '장원'이 '급제'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해 '장원'만이 요부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원급제' 전체로 호칭될 것으로 볼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서도 서로 다르다.이 사건 등록상표는 '베풀 장'의 한자 정자와 '동산 원'의 중국식 간자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에 의해 '베푸는 동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는 일' 등을 뜻하므로, 관념 역시 서로 다르다.	
		장원급제 (선등록상표1) 장원산업 주식회사 (선등록상표2)		
2010당1823 2011허2411	목욕비누, 헤어린스 등	화장품	양 표장은 프랑스어로 된 'BLANC'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전체 글자의 내용이나 배치형태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에 있어서 'BLANC'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구성 부분들과 분리 관찰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구성 부분과 분리되어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로서 호칭, 관념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호칭, 관념을 달리하므로 호칭, 관념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	
	BLANC MAISON	BLANC EXPERT		
2009당2163 2010허8559	대리운전중개업, 대리운전체인업 등	상품배달업, 대리운전업 등	표장은 도형의 형상과 그 배치, 색채의 종류, 문자, 숫자 및 글자체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볼 때 외관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친구친구' 또는 '칠구칠구'로 호칭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나 대리운전 전화번호 중 일부인 '7979'로 관념된다 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친구친구대리 7979 운전	유어친구 yourfriend 유어친구 6579 (선등록서비스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는 '유어친구', '유어프렌드' 또는 '육오칠구'로 호칭되고, '너의 친구, 당신의 친구'라는 의미나 대리운전 전화번호 중 일부인 '6579'로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두 표장은 호칭 및 관념도 서로 다르다.	
2010당1381 2011허1760 2011후2190(진행중)	냄비, 주전자 등	솥 등 주방용기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원 안에 하늘과 구름을 배경으로 목을 빼고 소나무 위에 서 있는 학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도형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어 확인대상표장의 학도형 부분과 대비된다 하더라도 그 외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의 호칭인 '선학' 또는 '서있는 한 마리 학' 정도로 호칭 또는 관념될 것임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의 위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의 호칭인 '학표' 또는 '서있는 학과 앉아있는 학' 내지 '두 마리 학' 정도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결국 '학'이라는 정도의 호칭과 관념이 공통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표장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양 표장의 위 도형부분들과 유사하게 소나무 위에 서있는 학 등 학이 포함된 상표가 다수 등록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호칭과 관념 정도만으로는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11당50 2011허4417 2011후2046(진행중)	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식기소독기 등	전기찜질기	양표장은 외관이 명백히 서로 다르다. 양 표장의 구성을 거래관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로, 확인대상표장은 '황토박사'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호칭도 서로 다르다. 사건 등록상표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로서 '황토'를 강조하는 관념을 가지는 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황토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어, 양 표장이 비록 '황토'라는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 모두가 상이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010원828 2011허3919 2011후1777(진행중)	기록된 컴퓨터작동 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통계정보제공업, 컴퓨터통신업 등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의 사용 유무, 로마자 알파벳의 배치 및 그 알파벳의 수나 내용 등이 달라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공부에 대한 의지' 등의 관념을 가지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공부 잘하는' 등의 관념을 가져 관념상으로도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4음절의 '스터디윌'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부가된 한글 표시에 따라 5음절의 '엔스터디웰'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 또한 서로 다르다.	
	StudyWill	N-STUDY WELL 엔 스터디 웰		
2009당2920	눈썹용 화장품, 라	스킨밀크, 화장용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단순한 영어 알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1허4011 2011후1876(진행중)	벤더 향수 등	탈지면 등	파벳 두 개로 이루어진 "QT"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간단한 표장인 반면에, 선등록 상표 "큐티 Cutie"는 한글과 영어 단어가 상하로 자리잡고 있고, 특히 영문자 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표장 그 자체에서 "귀여운 여자" 등의 관념이 직감적으로 도출되므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념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비록 한글 발음의 호칭이 동일할지라도,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까지 종합해서 관찰하면, 양 상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양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접하게 되더라도 그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2009당2428 2011허1883 2011후1821(심불)	발효사료기 소매업, 발효사료기 판매대행업 등	사료분쇄기, 사료절단기 등	양 표장은 요부인 도형 부분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영문자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다르다. 양 표장의 요부인 도형 부분은 각각 '프로펠러, 송풍기 또는 바람개비 등이 연상되는 형상을 원안에 배치한 구성'과 "영문자 'WoN'을 2중의 타원 안에 배치한 구성"으로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그로부터 직관적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 어려우므로, 양 표장의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바람개비'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원'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니, 이 경우에도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다).	
				
2010당2441 2011허2756 2011후1692(심불)	금속제 병뚜껑, 금속제 병마개 등	소주 병뚜껑	양 표장은 비록 축구공 모양의 도형을 구성의 일부로 한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문자의 유무, 도형의 구체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태극 문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축구공 모양이 뚜렷하여 이 부분에 의하여 '축구공'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훨씬 강한 한글 '참이슬'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고, '참이슬'이 포함된, '참이슬 병뚜껑 축구공' 또는 '참이슬 축구공 병뚜껑'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뿐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2010당578 2011허2619	마사지용 겔, 마사지용 오일 등	음료용 향미료(精油), 가정용 정전기 방지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要部)인 '雪黃'과 선등록상표인 '雪花'는 모두 2글자로 된 한자로서 앞글자인 '雪'이 매우 유사하나, 뒷글자인 '黃'과 '花'가 뚜렷이 구별되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雪黃化粧品	雪花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등록상표의 요부인 '雪黃'은 '설황'으로, 선등록상표인 '雪花'는 '설화'로 각 호칭될 것인데, '설황'과 '설화'는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이 동일하지만, 두 번째 음절의 종성 'o'으로 인하여 그 청감이 상이하며, 위 각 발음은 2음절에 불과하여 '황'과 '화'의 차이만으로도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雪黃'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한자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눈이 노랗다'는 관념을 갖게 하거나 조어표장으로서 아무런 관념도 갖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인 '雪花'는 사전적 의미인 '눈송이, 눈꽃' 등의 관념을 갖게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	
2010원671 2011허3582	가방/지갑 판매알선업, 가방/지갑 도매업 등	가방, 신발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알파벳 대문자 4글자인 'DOHC'와 도형인 ''이 결합한 것이고, 선사용상표의 표장은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크게 표시되어 있는 문자부분인 'DOHC'의 유무에 따라 그 외관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식별력이 강하고 발음도 용이한 'DOHC' 부분에 따라 '디오에이치씨'로 호칭되거나 도형부분을 포함하여 '디오에이치씨, 새', '디오에이치씨, 독수리'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문자부분을 제외하고 도형부분만으로 '새', '독수리', '이글' 등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사용상표가 '새', '독수리', '이글', '아메리칸 이글' 등으로 호칭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인 '디오에이치씨' 등과 차이가 있다.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문자부분인 'DOHC'가 통상 자동차 엔진인 'Double Over Head CamS-haft' 엔진의 약칭으로 쓰이므로 위 엔진으로 관념될 경우 선사용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2010당2054 2011허2138	넥타이, 혁대 등	반바지 등 의류	양 표장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와 무늬,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색채, 닻고리 내부가 동그랗게 드러나는지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10당2056 2011허2145	넥타이, 혁대 등	티셔츠 등 의류	양 표장은 닻채가 기울어져 있는지 여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색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0당2058 2011허2152	넥타이, 혁대 등 	여성용 치마 	양 표장은 색채, 닻줄의 유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10당2060 2011허2169 2011후1548(진행중)	넥타이, 혁대 등 	티셔츠 등 의류 	양 표장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닻줄 자체의 형상 및 색채, 닻고리 내부가 동그랗게 드러나는지 여부, 갈고리가 닻채보다 굵은지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에서는 우측 갈고리 부분에 영문 필기체의 문자까지 부기되어 있다),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10당2062 2011허2176	넥타이, 혁대 등 	티셔츠 등 의류 	양 표장은 닻채가 기울어져 있는지 여부, 닻고리, 닻채, 닻장 및 갈고리의 색채, 닻줄이 휘감긴 형상과 닻줄의 색채, 닻고리 내부가 동그랗게 드러나는지 여부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에서는 우측 갈고리 부분에 영문 필기체의 문자까지 부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9당2274 2011허7884	무장화 덧신, 골프화 등 	신발, 의류판매알선업 등  (선사용상표1) LifeS-tride (선사용상표2) STRIDE RITE (선사용상표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및 선등록서비스표는 'S-tride' 내지 'S-TRIDE'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볼 때 외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호칭도 '스텝앤스트라이드'와 '라이프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라이트, 스트라이드, 라이트'로 서로 다르며, 관념도 '달리는 모습, 달음발질' 등과 '살아 있는(활기 있는) 걸음걸이, 걸음걸이 의식, 걸음걸이, 의식' 등으로 서로 달라, 이들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사용상품,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9당2820 2010허7532 2011후1357(진행중)	신발, 스포츠전용 의류 등 ALPENSTER	모터사이클용 부츠, 스포츠의류 등 ALPINESTARS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굵은 고딕체이고 아홉 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알파벳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 비하여 선사용상표는 명조체이고 열한 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상표를 구성하는 알파벳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르다.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알프'로 시작되는 점에서는 같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네 음절로 호칭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에 비하여 선사용상표는 여섯 음절로 호칭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앞 부분의 '알펜'이 강하게 호칭되고 뒷부분의 '스터'는 짧고 약하게 호칭됨에 비하여 선사용상표는 앞 부분의 '알파인' 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스타즈' 부분도 강하게 호칭되고 뒷부분의 '스타즈'는 길게 호칭되는 점에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않거나 '알프스에 관련된 사람' 정도의 관념을 떠올리게 하나, 선사용상표는 '알프스의 별'이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관념을 비교할 수 없거나 그 관념이 '사람'과 '별'로 서로 다르다.	
2009원7309 2010허9507	골프코스 디자인업, 골프코스 디자인 컨설팅업	골프시설제공업, 골프장 설계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의 한글발음에 의해서 '베어즈 베스트'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서 선출원서비스표 1 내지 4는 곰 도형만으로 구성된 표장이어서 단순하게 '곰표'라고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의 호칭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형에 의해서는 '골프와 관련된 곰', 문자에 의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곰' 등의 여러 가지 관념이 도출된다. 그에 비해서 선출원서비스표는 단순히 '곰'의 관념만 도출되므로, 양 서비표는 관념에는 구체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 1 내지 4는 외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호칭과 관념도 상이하므로 서로 비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Bear's Best	(선출원서비스표 1~3)		
2009당2934 2010허8023	헤어컨디셔너, 헤어 모이스처라이저	모발영양공급제품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단어 'S-ILK'와 'THERAPY'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어두운 색 직사각형 바탕의 상단부분에는 'I S-ILKY MULTI', 중간 오른쪽에는 'THERAPY'의 밝은 색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고, 하단 오른쪽에는 작은 밝은 색 직사각형 안에 어두운 색 'PROFES-S-IONAL'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실크 테라피', '실크 쎄라피', '씰크 테라피' 또는 '씰크 쎄라피' 등으로 5음절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아이 실키 멀티 테라피', '아이 실키 멀티 쎄라피', '아이 씰키 멀티 테라피' 또는 '아이 씰키 멀티 쎄라피' 등으로 9음절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S-ILK'가 '비단, 견사' 등의 의미가 있고 'THERAPY'는 '치료, 요법' 등의 뜻이 있어 '비단결 같은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요법' 등의 관념이 있으나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확인대상표장 역시 'S-ILKY'와 'THERAPY' 부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나머지 부분도 식별력이 미약하여, 양 표장	
	SILK THERAPY	I SILKY MULTI THERAPY PROFESS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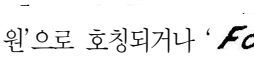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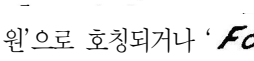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모두 특별히 대비할 만한 관념이 없다.	
2010당406 2010허8740 2011후1005(진행중)	반바지, 가죽신 등	의류	'논노'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과 '(주)논노패션'이라는 문자 위에 'Autobahn®'을 더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논노'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구성과 수 및 국문 사용 여부 등에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어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NON-NO	Autobahn® (주)논노패션		
2010당1041 2011허941 2011후811(심불)	노래책, 달력 등	서적, 신문 등	양 상표는 특히 외관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없으므로 앞 부분부터 인식되는데, 그 글씨체가 다르고 앞 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으로 전혀 다르므로,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양 상표의 호칭은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앞 부분의 두 음절이 전혀 다르므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선등록상표들의 '파동'은 '매질이 움직이는 모양 자체'를 연상시키고, '소리'는 '귀에 들리는 크고 작은 소리'를 연상시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음파'는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는 모양'을 연상시키므로, 양 상표를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직감하는 의미내용은 유사하지 않다.	
	음파작명	소리작명 (선등록상표1) 파동작명 (선등록상표2)		
2010당1040 2011허934	노래책, 달력 등	서적, 신문 등	양 상표는 특히 외관상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없으므로 앞 부분부터 인식되는데, 그 글씨체가 다르고 앞 부분이 '음파', '소리' 또는 '파동'으로 전혀 다르므로,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양 상표의 호칭은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앞 부분의 두 음절이 전혀 다르므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들의 '파동'은 '매질이 움직이는 모양 자체'를 연상시키고, '소리'는 '귀에 들리는 크고 작은 소리'를 연상시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음파'는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는 모양'을 연상시키므로, 양 상표를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직감하는 의미내용은 유사하지 않다.	
	음파이름	소리이름 (선등록상표1) 파동이름 (선등록상표2)		
2009당2708 2010허7549	인조커피, 천연커피 원두 등	씨앗, 풀 등	각 상표들은 도형의 유무와 형태 등에서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된 부분의 한글발음에 의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 빈 칸타빌레'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용상표 1은 도형 부분을 제외한 영문자 부분의 한글발음인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용상표 2는 영문자로 크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의 한글발음에 따라서 '더 커피 빈'으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용상표 1은 커피 원두와 찻잎, 선사용	
	coffee bean cantabile	(선사용상표1) The Coffee Bean (선사용상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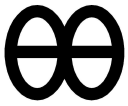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상표 2는 커피 원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커피 원두와 칸타빌레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커피 원두 그 자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통점만으로는 위 각 상표의 관념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9당2707 2010허7556	인조커피, 천연커피 원두 등	씨앗, 풀 등	각 상표들은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및 도형의 유무, 형태 등에서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한글 표장 그대로 '커피 빈 칸타빌레'로 호칭된다. 선사용상표 1은 도형 부분을 제외한 영문자 부분의 한글발음인 '더 커피 빈 앤드 티 리프'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2는 영문자로 크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의 한글발음에 따라서 '더 커피 빈'으로 호칭된다. 선사용상표 1은 커피 원두와 찻잎, 선사용상표 2는 커피 원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커피 원두와 칸타빌레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커피 원두 그 자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통점만으로는 위 각 상표의 관념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커피빈 칸타빌레	(선사용상표1) (선사용상표2)		
2008당3337 2011허446	단화, 레이스부츠 등	넥타이, 혁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9. 5. 무렵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문자 표장이나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다양한 닻 도형이 반복된 장식적인 문양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모두 '닻'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다같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닻'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관념 및 호칭이 아닌, 외관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양 상표는 닻장의 유무, 닻줄의 형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9당3045 2010허5291	종교교육업, 구호사업 등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과 비교대상업무표장은 글자 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다르고, 또한 호칭 및 관념을 보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표장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호칭 및 관념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고 호칭되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이름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관념되어 서로 다르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2010당204 2010허5505	과자용 향미료, 음료용 향미료 등	모이스춰 크림, 모이스춰 4종세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영어 알파벳 'HERB TREE' 부분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감케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외관이나 호칭, 관념 등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대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그 중요도를 낮게 잡아야	
	HERBTREE since 1984	HERB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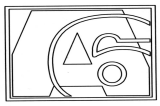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도형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표장은 외관과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비유사하다 할 것이다.	
2010당1441 2010허7471 2011후309(심불)	식당체인업	식당업, 식당체인업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 호칭하여도 3음절에 불과하여 호칭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군삼겹'으로 인식되어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자 '君'으로 인하여 '군'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자 '君'으로 인하여 '임금'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구운 삼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겹'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돼지고기와 관련되는 관념을 가질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외관이 확연히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2009당3115 2010허7402	모발염색제, 가루비누 등	향수, 크린싱크림 등	문자의 구성과 배열, 그리고 도형 등의 존재로 인해 외관이 상이하다. '아름답다'는 부분과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계책(비책)'이라는 부분이 공통되나 이들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생산방법 등 성질표시적인 단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달' 또는 '아름다운 비책 달'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수려' 또는 '수려한', '수려한 비책'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일뿐, 양 상표가 '비책'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 표장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9당3140 2010허4984 2011후101(심불)	침대, 소파 등	전기약탕기, 전기커피포트 등	장수'라는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음절수에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관상 유사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 표장이 長壽라는 관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양 표장의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음절에 불과한 짧은 단어로서 굳이 일반수요자들이 '장수'와 '왕'을 분리하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 표장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9당2334 2010허4885 2010후3608(심불)	골프용 모자, 챙달린 모자 등	샌달, 혁대 등	양 표장은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 및 색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예스'라고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예스 앤 예스'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바, 비	
		 (선등록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YES & YES 예스 앤 예스 (선등록상표2)	록 '예스'라는 발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음절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표장에 포함되어 있는 'yeS-'라는 단어로 인하여 '네'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에 있어서도 그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2010당467 2010허5857	마스크팩(황토를 함유한 제품), 마사지용 겔(황토를 함유한 제품) 등	축열찜질기(황토성분을 포함한 것에 한함), 안마기(황토성분을 포함한 것에 한함) 등	양표장은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로, 확인대상표장은 '황토박사'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 또한 서로 상이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황토황토' 또는 '토황토'로서 '황토'를 강조하는 관념을 가지는 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황토에 있어서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바, 양 표장이 비록 '황토'라는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黃 토황토	황토박사		
2008당3225 2010허2803	피부색소형성 억제용 크림, 약용 피부색소형성 억제크림	비타민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총 글자 수에서 차이가 나고, 선등록상표에는 'CA' 부분이 중간에 추가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E'로 끝나는 것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N'으로 끝나는 점의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데퀴논' 또는 '데키논'으로, 선등록상표는 '데카퀴논' 또는 '데카키논'으로 발음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 표장은 3음절과 4음절로 음절 수에서 차이가 나고, 선등록상표의 '카' 부분이 명확하고 강하게 청감되므로, 양 표장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 표장은 모두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로서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DEQUINONE	DECAQUINON		
2009당2430 2010허3271	전압안정장치, 차단기 등	순간정전보상장치, 뇌보호시스템 등	확인대상표장의 전반부인 "VSP" 부분은 그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별도의 식별력을 갖는 후반부의 "엔티씨" 부분까지 합쳐서 본다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VSP	VSP 엔티씨		
2009당573 2010허1688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등	운동화, 검도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과의 단면 형상으로 인하여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형상으로 인하여 '사과'라고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아 별다른 호칭이나 관념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가지지 않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8당1743 2009허5264 2009후4193	과자, 캔디 등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등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그 뒷부분에 있는 '프로젝트'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좋은엄마프로젝트'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라고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의 계획', '좋은 엄마를 위한 과제'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않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좋은엄마프로젝트	PROJECT		
2008원10258 2009허4919 2009후3596	과자, 캔디 등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등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뒷부분에 있는 'projec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기보다는 'Dr. you project'와 같이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닥터 유 프로젝트'로,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 각 호칭되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예를 들면 '유 박사의 계획', '유 프로젝트 박사' 등과 같이 구체화된 계획 또는 과제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계획', '과제' 등으로 관념되므로 서로 다르다.	
	Dr. you project	PROJECT		
2010당32 2010허3486	스포츠전용 아노락, 아동복 등	신발류	두 표장은 여러 겹으로 구성된 하트 도형을 구성요소로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 중의 하트 도형은 다른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 다른 부분과 일체로서 장식적 기능을 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확인대상표장은 여러 겹으로 구성된 하트 도형 외에도 그와 연결되어 장식적으로 표시된 영문자('PienS-o')와 이를 둘러싼 다수의 작은 원반 형상, 그리고 전체를 둘러싼 다수의 작은 하트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은 'PienS-o'라는 호칭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반면에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해 내기 어렵다.	
				
2008당3918 2009허8195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등	직물제손수건, 직물제수건, 스웨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과 배열, 도안화 여부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으로부터 어떠한 관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에프원엑스'으로 호칭되고, 선등	
	FX	 (선등록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록상표 1은 크게 구성된 '' 부분에 의하여 '에프원'으로 호칭되거나 ''에 의하여 '포뮬러 원'이라고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는 '에프원'으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008당3917 2009허8188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등	직물제손수건, 직물제수건, 스웨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과 배열, 도안화 여부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으로부터 어떠한 관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에프원엑스'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은 크게 구성된 '' 부분에 의하여 '에프원'으로 호칭되거나 ''에 의하여 '포뮬러 원'이라고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는 '에프원'으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F1X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2006당340 2008허1265 2008후4721(파기환송) 2010허5840(환송) 2011후781(심불)	스웨터, 원피스 등	해군의 계급장, 군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의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8당2507 2009허7604	회중시계, 탁상시계 등	목걸이, 귀걸이 등	외관에 관해서 살펴보면, 양 상표는 문자 부분 Clio가 들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영문자와 부가된 도형 및 문자와 도형의 각 배치되는 위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견하여 보더라도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Clio' 부분에 의해서 한글발음 '클리오'로 발음될 것이고, 선사용상표는 영문자 'Clio blue'에 의해서 한글발음 '클리오블루'로 발음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측에 위치한 큰 나비 도형으로 인해서 '나비'의 관념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선사용상표는 아래 부분의 물고기 두 마리와 영문자 'blue'로 인해서 '푸른 바다와 물고기'라고 하는 관념이 표장으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서 차이가 난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당411 2010허1695	명함케이스, 배낭	골프화, 속셔츠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호칭,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외관의 차이로 인하여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78-009109  (선등록상표1~5)  The Sign of Exclusivity (선등록상표6~7)  Elégance (선등록상표8~9)		
2009당1773 2010허1923 2010후2223(심불)	강의대, 거울 등	가구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한글 부분 '핀란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결합표장으로서, 한글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요부가 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외관이나 호칭 등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서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부인 집 도형으로 양 표장을 대비하면 양 표장에서 '집'과 관련된 관념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지만 보통 '집'이란 관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것이고 '집'과 관련하여 다수의 표장이 출원되고 등록될 여지가 많으므로 '집'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관념의 유사성만으로는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양 표장의 유사 여부는 요부에 해당하는 '집 도형'의 외관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양 표장은 집 도형을 이루는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이 모두 달라서 일견하여 보더라도 그 외관이 비유사하므로, 결국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9당2319 2010허944	탁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문자의 수, 구성, 배열과 바탕의 색채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생탁'으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동남 생탁주'로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탁주'와 관련하여서는 확인대상표장의 '생탁주'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동남' 부분을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8당3939 2009허7567	잠바, 남방셔츠 등	직물제수건, 스웨터 등	문자의 구성과 배열, 도안화 여부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에프앤드원' 또는 '에프앤원'으로 호칭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F & 1		고, 선등록상표는 크게 구성된 'F1' 부분에 의하여 '에프원'으로 호칭되거나 'Formula 1'에 의하여 '포뮬러 원'이라고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008당3352 2010허326	스포츠전용 의류, 검도복 등	청바지, 모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7의 공통점은 모두 A6라는 문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나, 부가된 문자와 도형의 유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각 선등록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 경향에 비추어 "아우디 에이식스"로 발음되거나 또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두 부분의 "아우디" 부분만으로 분리되어서 약칭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그에 반해서 선등록상표 1, 2, 3, 4, 5는 A6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거기에 도형이 부가되어 있는 표장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식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크고, 선등록상표 6, 7은 "에이식스 진", 선등록상표 8은 "아우디" 또는 "아오디"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등록상표가 Audi A6 와 Audi 로 분리되어서 앞부분의 Audi 만으로 약칭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 8과 호칭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자동차회사인 독일의 AUDI AG社의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의 종류와 등급을 나타내는 관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서, 각 선등록상표는 영어사전에 나오지 아니하는 조어표장이거나 단순한 조어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에 불과하므로 거기서 특별한 관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Audi A6	 (선등록상표1) A6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4)  (선등록상표5) A6 JEANS (선등록상표6) A6JEANS! (선등록상표7)  (선등록상표8)		
2008당2864 2009허8614	인터넷을 통한 반코트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유아용바지판매대행업 등	와이셔츠, 카디건 등	양 표장은 글자의 수, 한글 및 영문인지 혹은 한자인지, 이단으로 병기된 것인지 등 서로 그 전체적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조어상표로서 그 표장 전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관념 역시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 중 '더샵, the S-hop'은 가게나 상점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몽, Mong'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몽'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은 그 호칭의 면에서는 유사하다.	
	몽 더샵 Mong the shop	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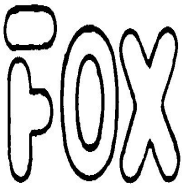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따라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양 표장은 비록 그 호칭의 면에서는 유사하나, 외관과 관념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2009원1938 2010허845	운송중개업, 택배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도형의 유무와 그 문자의 종류, 구성,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코리아' 부분은 우리나라의 명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도형 부분 또한 태극문양을 변형한 정도여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비엔에스 로지스틱'을 제외한 부분은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비엔에스 로지스틱' 부분이 표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비엔에스 로지스틱'으로 인식되어 호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엔엑스'로 호칭되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관념에 있어서 서로 대비할 수 없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비엔에스 로지스틱 코리아	(선등록서비스표1) (선등록서비스표2 (선등록서비스표3)		
2008원12169 2009허8287	커프스 단추, 종이 및 판지 등	사고방지용 장갑, 우산 등	두 표장들은 그 표장을 구성하는 글자체, 'Hysteric XXXX'와 같은 부분의 유무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 '디 히스테릭 엑스엑스엑스' 또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디 히스테릭'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디'로 호칭되므로 두 표장들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대(를)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라고 관념되고, 선등록상표들은 '그대를'이라고 관념되므로, 두 표장들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The Hysteric XXXX	THEE		
2008원11505 2010허1107 2010후1695(심불)	스포츠용 저지, T 셔츠 등	수영복, 수영모자 등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철자의 개수, 서체와 기재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양 상표의 표장이 갖는 관념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그 구성 전체에 의하여 '쇼린지 켐포'로 호칭되거나, 혹은 분리 호칭되더라도 앞부분인 '쇼린지'에 의하여 호칭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자체로 '캠포우', '캄포우' 또는 '캠포' 정도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의 표장은 그 호칭에서도 차이가 있다.	
	SHORINJI KEMPO	CAMPO		
2008원14080 2010허272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등	한식점경영업, 관광음식점업 등	양 서비스표의 표장은 서로 색채, 도형의 유무, 구성요소의 개수, 한글의 서체와 기재 방식 등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관은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신정골' 혹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되거나, '돼지 신정골' 혹은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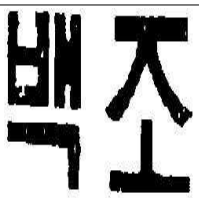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신 정	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자체로 '신정'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되거나, '돼지 신정골' 혹은 '돼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의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신정골'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신정골'과 '신정'은 각각 3음절 및 2음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단어이고, 아래 관념의 대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 부분이 없는 '신정'은 '신정골'과는 달리 다양한 관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양 서비스표를 '신정'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할 만한 개연성은 낮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역시 그 호칭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고, 선등록서비스표 '신정'은 '새로 지은 정자', '양력 설',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지명으로서의 신정(동, 리, 호수)' 등을 관념케 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관념의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신정골'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골' 부분이 없는 '신정'은 위와 같이 다양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 데 비하여, '신정골'은 '지명으로서의 신정'이라는 관념만을 형성하게 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역시 그 관념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돼지 신정골' 혹은 '돼지 에스제이 푸드'로 호칭될 경우, '돼지'는 '신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새로운 관념이므로 더더욱 양 서비스표는 그 관념이 상이한 것이 된다.	
2007원4605 2008허3704 2008후2947	고무신, 등산화 등	고무신, 등산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상단의 영문자 'B' 부분은 그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B'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다.	
				
2008원9227 2009허8850 2010후1442(심불)	건전지, 피복전선 등		외관에서 두 상표는 'BOY'의 포함 여부, 철자수, 대소문자의 혼용 여부, 글자체와 굵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로켓처럼 빠르고 힘센 소년'이라는 관념을 형성하여 단순히 '로켓'이라는 관념을 가지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차이가 있다. 호칭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켓보이' 또는 '로케트보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 '로켓'	
	ROCKET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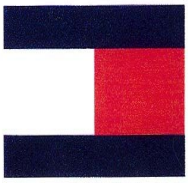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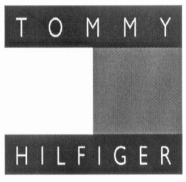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또는 '로케트'로만 호칭되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차이가 있다.	
2009당321 2009허8829 2010후1381(심불)	배전함, 배전판 등	전기기구 사출품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미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과 '㈜미화산업'이라는 문자 앞에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M'을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수와 색의 차이,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미화	㈜미화산업		
2008당3936 20009허7574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등	스포츠분야의 쌍방향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컴퓨터통신업, '포뮬라 원 세계참피언쉽대회'에서 표장 등	양 표장은 통상적인 글자체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문자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것인지 여부, 이단으로 병기된 것인지 여부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그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조어상표로서 그 표장 전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관념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별다른 부분적 특징도 없이 통상적인 글자체로 'F1tech'이 하나의 단어로서 일렬로 기재되어 있는 표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F1tech' 그 전체로서 인식, 호칭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태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인 '에프원'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 호칭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F1tech	Formula 1 (선등록서비스표)		
		F1 (선사용서비스표)		
2008원9233 2009허8805 2010후1053(심불)	편상화, 단화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BOY'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는 글자의 수, 대소문자 여부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서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켓보이'의 네 음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로켓'이나 '로케트'의 두세 음절로 짧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로켓소년, 로켓의 특성을 가진 소년'으로 관념되어 종국적으로는 '소년'으로 관념됨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로켓'으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서도 서로 다르다.	
	ROCKETBOY	Rocket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원9234 2009허8799 2010후1046(심불)	곤충채집용 채,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	공책,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BOY'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는 글자의 수, 대소문자 여부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서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켓보이'의 네 음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 '로켓'이나 '로케트'의 두세 음절로 짧게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로켓소년, 로켓의 특성을 가진 소년'으로 관념되어 종국적으로는 '소년'으로 관념됨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로켓'으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서도 서로 다르다.	
	ROCKETBOY	Rocket (선등록상표1) 로케트 (선등록상표2)		
2008당1538 2009허825 2009후2531	땀흡수용 밴드, 머리밴드 등	바지, 스커어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글자의 수와 배치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폭스 레이싱' 또는 '팍스 레이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 2, 3은 '폭스' 또는 '팍스'로, 선등록상표 4는 '폭스 레이디' 또는 '팍스 레이디'로, 선등록상표 5는 '레드폭스' 또는 '레드팍스'로 각 호칭된다 할 것인바, 비록 '폭스' 또는 '팍스' 부분의 발음이 같다 하더라도 위 상표들의 음절수의 차이, 발음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다르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에서 본 'FOX'와 'RACING'의 뜻을 결합한 것 이상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는 반면, 선등록상표 1, 2, 3은 '여우', 선등록상표 4는 '여우 같은 숙녀, 매력적인 여성', 선등록상표 5는 '붉은 여우'로 관념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FOX RACING	FOX (선등록상표1) FOX (선등록상표2) FOX (선등록상표3) FOX LADY (선등록상표4) REDFOX (선등록상표5)		
2008당3886 2009허7819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스포츠분야의 쌍방향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컴퓨터통신업, 자동차경주대회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거나 'S-hinhan'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인 'F1'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 2의 경우 'F'와 도형 아래에 'Formula 1'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모두 '에프원'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F1'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들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Shinhan F1	Formula 1 (선등록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출원서비스표2)  (선사용서비스표)		
2008당3889 2009허8157	검사작업용 거울, 광학기계기구용 반사경 등	카메라, 자동차경주대회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출원서비스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거나 '신한'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인 '에프원'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선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의 경우 'F'와 도형 사이의 빈 공간이 '1'이 되도록 구성되고, 선등록상표의 경우 'F'와 도형 아래에 'Formula 1'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모두 '에프원'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프원'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들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신한 에프원	 (선등록상표)  (선출원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2008당3937 2009허7581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사진인화지, 자동차경주대회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일부 관념의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 호칭되거나 '신한 에프원', '에프원 바이올렛' 등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인 '에프원'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선출원서비스표들의 경우 'F'와 도형 사이의 빈 공간이 '1'이 되도록 구성되고, 선출원서비스표 1의 경우 'F'와 도형 아래에 'Formula 1'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선출원서비스표들은 모두 '에프원'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F1'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들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선출원서비스표1)  (선출원서비스표2)  (선사용서비스표)		
2008당1536 2009허849	등사원지, 인쇄용지 등	바지, 스웨터 등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FOX'라는 단어를 그 표장에 포함하고 있어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Fox' 부분이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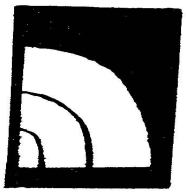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4)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표장의 전체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지정상품인 '의류'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모두 'Fox'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2008당3428 2009허6441 2010후579(상고취하)	책궤, 선반 등	장롱, 침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에 표시된 한글음역 그대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 역시 표장에 표시된 한글음역 그대로 선등록상표 1, 2는 '썬우드가구'로, 선등록상표 3은 '썬우드'로 각각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보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이 '해, 태양'을 의미하는 'S-UN'과 '가구'를 의미하는 'FURNITURE'가 결합되어 구성되고, 선등록상표들의 영문자 부분들 역시 '해'를 의미하는 'S-UN'과 '나무, 목재'를 의미하는 'WOOD'가 결합되어 구성되었음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들 상표의 영문자 부분들은 'S-UN'과 그 나머지 부분이 간격 없이 붙어있고, 그 발음이 우리말로 세 글자 내지 다섯 글자에 불과하여 '썬'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는 이들 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S-UN'이나 '썬'으로 분리하여 이 사건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등록상표를 'S-UN 가구' 또는 '태양의 가구'로, 선등록상표들을 'S-UN 나무(목재)가구' 또는 '태양의 나무(목재)가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008원12784 2009허7505 2010후517(심불)	강낭콩, 미가공 곡물 등	쌀, 쿠키 등	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8당2411 2009허6595	족욕기 판매대행업, 족욕기 판매알선업 등	가스렌지, 전기쿠커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 2를 호칭·관념에 있어서 대비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스완'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백조' 또는 '백조씽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 1, 2와는 그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관념이 도출되는 'S-WAN'은 '백조'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와 같이 관념할 가능성이 높아 선등록상표 1, 2와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 1, 2와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게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8당2410 2009허6588	족욕기 판매대행업, 족욕기 판매알선업 등	가스렌지, 전기쿠커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 2를 호칭·관념에 있어서 대비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스완'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백조' 또는 '백조씽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 1, 2와는 그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관념이 도출되는 'S-WAN'은 '백조'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와 같이 관념할 가능성이 높아 선등록상표 1, 2와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 1, 2와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게	
		 (선등록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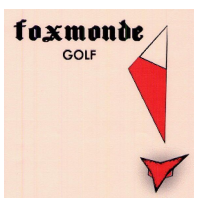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 및 호칭에 있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2008당2216 2009허6205	방수피복	가죽신, 신사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문자부분의 차이 및 별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표도형", "별" 또는 "스포츠" 등으로 관념되는 반면, 비교대상상표 1은 특별한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상표 2는 사람 이름인 "토미 힐휘거" 등으로 관념되어 유사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 도형", "스타" 또는 "스타스포츠"로 호칭되는 반면, 비교대상상표 1은 특별한 호칭이 도출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상표 2는 "토미" "힐휘거" 또는 "토미힐휘거"로 호칭되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 할 것이다.	
		 (비교대상상표1)  (비교대상상표2)		
2006원5163호 2007허1756 2007후2070	Toilet soaps(화장비누), body lotion(보디로션) 등	미용비누, 스킨밀크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energise'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당126 2009허5349 2009후4551(심불)	시소, 탁구대 등	활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 부분 일체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하므로,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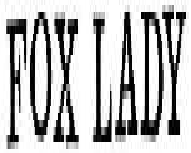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원1130 2009허1446 2009후1774	레스토랑업, 바 라운지 서비스업	피자전문점 및 체인점업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보다는 도형의 배치와 색채 등 도형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관에 특색이 있어서 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문자 부분의 일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다.	
	RUTH'S CHRIS	크리스 피자 전문점		
2008원1133 2009허1439 2009후1750	레스토랑업, 바 라운지 서비스업	피자전문점 및 체인점업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보다는 도형의 배치와 색채 등 도형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관에 특색이 있어서 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의 많은 차이가 있다.	
	RUTH'S CHRIS STEAK HOUSE	크리스 피자 전문점		
2008원11335 2009허5820	의류도매업, 의류소매업 등	모자, 혁대 등	양 표장은 도형의 유무, 문자의 내용이나 글자체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에 의하여 특별한 호칭, 관념이 떠오르지 아니하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로로피아나'로 호칭, 관념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영문자 'ROLO'의 한글 발음인 '롤로'로 호칭, 관념될 것이므로, 양자는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Loro Piana	ROLO (선등록상표1, 2)		
2008당2967 2009허2395 2009후2326	연예물공연업, 연예물제작배급업 등	경마공연업, 국악공연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체인 '아트밸리'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선등록서비스표 등도 같은 이유로 그 전체인 '세븐밸리(일곱개의 계곡), 비취밸리(해변의 계곡), 테디밸리(테디의 계곡), 마이다스밸리(마이다스의 계곡)'로 호칭 및 관념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다.	
	Art Valley	SEVEN VALLEY 세 븐 밸 리 (선등록서비스표1) Beach Valley (선등록서비스표2) TEDDY VALLEY (선등록서비스표3) Midas Valley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008당1681 2009허4308	가축병치료제, 감각기관용 약제 등	심장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약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로부터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그 관념도 다르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클래릭스'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플라빅스', '플래빅스' 또는 '프라빅스'로 발음되어 모두 4음절로 구성되고, 나아가 선등록상표를 '플래빅스'로 발음할 경우 양 표장은 첫음절과 셋째 음절의 초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게 되지만,	
	클래릭스	PLAVIX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첫음절의 초성이 'ㅋ'와 'ㅍ'로 뚜렷하게 달라서 전체적인 청감이 상이하게 느껴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호칭도 다르다.	
2008당2019 2009허4797	에어로빅복, 체조복 등	롱코트, 자켓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구성이 서로 달라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 조어이므로 그 관념도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엠아이투'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선등록상표는 영어의 일인칭 목적격 대명사 'me'와 숫자 '2'의 영문 표기인 'Two'가 결합한 것으로서 비교적 쉬운 영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쉽게 '미투'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도 다르다.	
	엠·아이·투 M·i·2	Me Two		
2008당480 2009허4674 2008후3985(심불)	괘종시계, 마스터클락 등	등산화, 안전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시계 관련 상품들로서 선사용상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K2'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없어 'K2' 부분에 의해 분리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에 의하여 '케이투 토네이도'로 또는 K2 부분을 제외하고 '토네이도'로만 호칭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로 구성된 선사용·선출원상표와 호칭이 다르고 전체적인 외관이나 관념 또한 다르므로 선사용·선출원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K2 tornado	K2		
2008원6246 2009허5066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등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산', '너머', '남촌'이란 낱말이 병기되고, '산'과 '너머' 사이에 산 형상의 도형이 배치되어 있으며, 산 도형 아래에 '강원도 토속 음식점'이란 문구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滿村'과 '남촌'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경우 모두 다섯 음절에 불과하여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산너머남촌	滿村 남촌		
2008원4522 2009허4667	가방/지갑 도매업, 가방/지갑 소매업 등	단화, 등산백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표장을 구성하는 영어 단어의 개수와 도안의 유무에서 각각 차이가 나므로 그 외관은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발음하여 '체리 스푼'으로 호칭될 것이다. 선등록서비	
	Cherry Spoon	SPOON (선등록상표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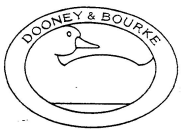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체리  (선등록상표5) "cherry" (선등록상표6)	스표와 선등록상표 1, 2, 3, 4의 SPOON 은 한글 발음 '스푼'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5의 체리  와 선등록상표 6의 "cherry"는 한글 발음 '체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한글 발음에서 차이가 나므로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그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거나 관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8당1263 2009허2562 2009후3640(심불)	샌달, 스키화 등	스포츠셔츠, 조끼 등	양 상표들은 문자의 결합유무, 도형의 형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선등록상표 1, 2로부터는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연상할 수 없어 서로 대비하기 어렵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사용상표)		
2008당1461 2009허3442	가정용 정전기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등	스킨밀크, 향수 등	양 상표는 표장을 이루는 단어의 개수와 장단, 한글 표장의 병기 여부 등에 있어서 외관상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등록상표는 한글표장의 발음대로 "씨앤피 타임리스 안티 링클 포뮬러"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 Timeless는 "타임리스"로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발음 차이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원히 주름을 방지하는 처방'이라는 관념이 상표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형성되는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 선등록상표와 차이가 있다.	
		Timeless		
2007당2566 2009허3503	가죽신, 고무신 등	등산화, 안전화 등	이 사건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없어 'K2' 부분에 의해 분리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에 의하여 '티클레스 케이투'로 또는 K2 부분을 제외하고 '티클레스'로만 호칭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로 구성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사용상표)  (선출원상표)	호칭이 다르고 전체적인 외관이나 관념 또한 다르므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2008당722 2008허13695 2009후3107(심불)	신사복, 양복바지 등	자켓, 블레이져코트 등	도형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이 앞으로 걸어오면서 몸을 좌측으로 비트는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본 형상인데 반해서, 선등록상표 1, 2, 3은 곰을 완전히 측면에서 바라본 형상 등이고, 문자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jack 뒷부분에 나오는 문자가 Taylor인데 반해서, 선등록상표 1, 2, 3은 nicklauS-이고, 선등록상표 4는 jack nicklauS-라는 필기체의 영문자가 약간 도형화되어 있고, 하단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등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3, 4와 외관상 구분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영문자 부분은 "잭테일러"와 "잭니콜라우스"여서 비교적 음절이 짧아서 "잭테일러"와 "잭니콜라우스"으로 호칭, 관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서 뚜렷한 차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은 "곰 도형이 들어간 영문자 상표"인 점에서 어느 정도 관념이 유사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인해서 그 유사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고, 한편, 선등록상표 4와는 외관·호칭의 차이가 확연하므로 관념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4)		
2008당720 2008허13725 2009후3114(심불)	치셔츠, 청바지 등	자켓, 블레이져코트 등	도형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을 정면에서 바라본 형상인데 반해서, 선등록상표 1, 2, 3은 곰을 측면에서 바라본 형상 등 이고, 문자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jack 뒷부분에 나오는 문자가 Taylor인데 반해서, 선등록상표 1, 2, 3은 nicklauS-이고, ②선등록상표 4는 jack nicklauS-라는 필기체의 영문자가 약간 도형화되어 있고, 하단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등 구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3, 4와 외관상 구분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영문자 부분은 "잭테일러"와 "잭니콜라우스"	
		 (선등록상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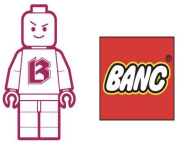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4)	여서 비교적 음절이 짧은 등 표장 전체인 "잭테일러“ 또는 ”잭니콜라우스“로 호칭, 관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에서 뚜렷한 차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은 “곰 도형이 들어간 영문자 상표”인 점에서 어느 정도 관념이 유사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인해서 그 유사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고, 한편, 선등록상표 4와는 외관·호칭의 차이가 확연하므로 관념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008원10274 2009허2609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등 	음료용 야채주스, 발포성 음료용 분말 등 	양 상표의 외관에 관하여 보면, 서로 색채, 도형의 모양, 구성요소의 개수, 한글의 서체와 기재 방식 등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 상표의 외관은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홍삼동자” 부분에 의해 “홍삼동자”로 호칭될 것이라고 보인다. 또 한, 선등록상표는 “ ” 부분에 의해 “산삼동자”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양 상표를 “동자”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할 만한 개연성은 적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호칭에서도 차이가 있다. 나아가, 양 상표의 관념에 관하여 본다. 우선, ‘홍삼은 인공적으로 재배된 수삼을 쪄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인 데 비해 산삼은 깊은 산속에 야생하는 삼이고, 산삼은 재배종보다 그 약효가 월등하다.’는 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홍삼”과 “산삼”이 갖는 의미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홍삼동자”와 “산삼동자”로부터 같은 관념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8당1537 2009허832 2009후2524(심불)	골프화, 아동복 등 	바지, 스웨터 등  (선등록상표1)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FOX’라는 단어를 그 표장에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fox’ 부분이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표장의 전체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지정상품인 ‘의류’ 등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모두 ‘fox’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4)		
2008원7112 2009허1637	기업경영 및 조직 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등	자료제공업, 기업정보제공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 대문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고딕체의 한글로 되어 있고, 양 서비스표의 색채가 상이한 등 양 서비스표는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조화'를 뜻하는 영어단어 'HARMONY'에 흔히 나라 이름에 붙이는 명사 어미인 '-IA'를 결합한 조어로 볼 수 있어 '조화로운 나라' 또는 '조화로운 곳'이라는 관념이 도출될 수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통신'과 '하모니'가 결합하여 '통신의 조화' 또는 '조화로운 통신'이라는 관념이 도출될 수 있어, 양 서비스표는 관념이 다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통상 '하모니아'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각 문자가 같은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으며, 모두 다섯 음절에 불과하여, 분리 약칭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는 '통신하모니' 전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양 서비스표는 호칭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2008원11332 2009허2753 2009후2258 (유사부분에 대한 판단 없음) 파기환송	모자챙, 베레모 등	모자	이 사건 출원상표는 뒤를 돌아보는 사슴(류) 형상의 검은색 도형 아래에 검은색으로 'AMERICAN FITTED'라는 두 개의 영단어가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출원상표는 사슴 형상의 검은색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이므로 우선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서서 뒤를 돌아보는 사슴'으로 관념되고, 영문자 부분 중 'AMERICAN'은 '미국인'이란 의미이며, 'FITTED'는 '입혀보다, 적합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영단어 'FIT'의 과거형으로 보이고, 선출원상표는 '서서 앞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바라보는 사슴'으로 관념되므로, 이들 상표는 전체적인 관념뿐만 아니라 그 도형 부분의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부분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원상표가 부착된 상표 또한 '사슴표'로 호칭되기 보다는 선출원상표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을 다른 문자 상표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은 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 그 호칭에서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관념, 호칭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08당1787 2008허13084 2009후2562(심불)	개목걸이, 모피 등	핸드백, 모자 등	선등록상표 1 내지 3은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문자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문자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 도형화의 정도나 문자의 배치형태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의해 '디비 디비' 또는 '디비'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 1 내지 3은 도형이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되지 않고 상표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호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는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을 대비해 보면, 양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영문자와 특별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여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4, 5는 문자의 내용이나 배치형태, 도형화 정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의 도형화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디비 디비' 또는 '디비'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 4, 5는 '도니 앤 부키'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자는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을 대비해 보면, 양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영문자로 구성된 것이어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6 내지 8은 문자의 내용 및 배치형태, 문자의 도형화의 정도, 문자를 둘러싼 도형의 유무 및 도형의 모양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둘째로, 호칭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의 도형화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문자에 의해 '디비 디비' 또는 '디비'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 6 내지 8은 문자 부분에 의해 '도	
		40-89-002089 (선등록상표1) 40-89-002101 (선등록상표2) 10-89-002093 (선등록상표3) 40-89-002088 DOONEY & BOURKE (선등록상표4) 10-89-002100 DOONEY & BOURKE (선등록상표5)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40-89-002091  (선등록상표6) 40-91-024161  (선등록상표7) 40-89-002095  (선등록상표8)	니 앤 부키'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자는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셋째로, 관념을 대비해 보면, 양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영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2008원2151 2009허2098	알람시계, 책 등	제도용지, 노트북 등	양 표장은 영문자의 내용, 한글의 유무, 문자의 배치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계에서 쉽게 인식되고 기억되는 'GIORGIO ARMANI' 부분에 의하여 '조르지오 아르마니'로 호칭되거나, 전체로서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리비' 등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들은 한글 부분에 의하여 모두 '프리비'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호칭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탈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이름 또는 그와 관련된 상표로 관념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선등록상표 1은 그 영문자 중 'FREE'와 'BE'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다(하다)'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선등록상표 2는 'FREE'와 'BEE'에 의하여 '자유로운 꿀벌' 등의 의미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GIORGIO ARMANI PRIVÉ	FREEBE 프 리 비 (선등록상표1) FREEBEE 프 리 비 (선등록상표2)		
2008원3770 2009허2203	양말	양말, 스카프 등	이 사건 출원상표 "PRO-PAD"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경우 "프로패드"로서 비교적 짧은 4음절에 불과하고, "PAD" 부분이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간략한 칭호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PRO-PAD"에서 비교적 쉬운 단어인 "PRO" 부분을 제외하고 "PAD"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 부분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표장 전체인 "프로패드"로 호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	
	PRO-PAD	Peds 페 드 (선등록상표1) PEDS (선등록상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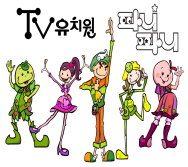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F.A.D (선출원상표)	표와 선등록상표 1의 호칭은 ”프로패드“와 ”페드“로서 유사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업적 받침” 등을, 선등록상표 1은 “자연의 토양생산과정에서 형성된 토양 입자의 집합체” 등을 의미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2008당987 2009허1880	보리차(제주도산 보리에 한함)	녹차, 홍차 등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글꼴 및 글자수, 문자의 종류 등의 구성이 달라서 그 외관이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삼다수’로 분리되어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삼다’로 호칭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호칭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 의하여 ‘소용돌이치는 물결’ 또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된 세 가지가 많은 보리와 관련된 차’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그 한자의 뜻대로 ‘세 가지가 많다’라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	
	제주삼다수보리차	三多		
2008당986 2009허1873	보리차(제주도산 보리에 한함)	녹차, 홍차 등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글꼴 및 글자수, 문자의 종류 등의 구성이 달라서 그 외관이 다르다. 사건 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삼다수’로 분리되어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삼다’로 호칭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호칭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 의하여 ‘소용돌이치는 물결’ 또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된 세 가지가 많은 보리와 관련된 물’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그 한자의 뜻대로 ‘세 가지가 많다’라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	
	제주삼다수보리차	三多		
2008원2126 2008허12821	광고기획업, 상업정보제공업 등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양 상표는 영문자의 철자와 수가 다르고, 도형의 유무, 대소문자의 혼용 여부, 분리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관념에 관하여 보면, 양 상표는 인명에서 따온 것이거나 조어상표여서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호칭에 관하여 보더라도, 최근의 영어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어의 ‘R’과 ‘L’이 단어 중간의 모음과 모음(또는 반모음) 사이에 올 때는 발음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에린브리니에’로 호칭되고, 선출원상표는 ‘엘린’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호칭이 다르다.	
	Eryn Brinié	ELIN		
2008원9216 2009허2371	신선한 과실, 감귤{신선한 것} 등	공업용 율무가루, 공업용 현미가루 등	두 상표는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사건 출원상표는 ① ‘PREMIUM APPLE’이 아주 작게 배치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도형만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AILY’라는 영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데일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매 일	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매일'이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007당2985 2009허85 2009후2098(심불)	나리싱크림, 립스틱 등	스킨밀크, 스킨로션 등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단어의 수, 한글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순히 '여왕' 등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빗'을 의미하는 'COMB'과 '여왕'을 의미하는 'QUEEN'의 결합으로 전체적으로 '빗의 여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관념이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퀸'으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OMB'과 'QUEEN'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두 단어가 모두 극히 짧은 음절의 단어여서 전체적으로 '콤퀸' 또는 '코움퀸'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호칭이 다르다.	
	QUEEN 퀸	COMB QUEEN		
2008당624 2009허450 2009후1958(심불)	T셔츠, 운동화 등	완구류, 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어문자는 'BANC'인 반면, 선사용상표 1의 영어문자는 'LEGO'로서 영어알파벳 4개 중 1개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뱅크 또는 방크(혹은 반크)'로, 선사용상표 1은 '레고'로 각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 호칭 및 관념도 서로 다르다.	
				
2006당3055 2007허2964 2007후4939(파기환송) 2009허4445(환송)	단팥빵, 식빵 등	빵류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2008당2253 2009허1200 2009후1866(심불)	카페업, 레스토랑업 등	레스토랑업, 휴게실업 등	두 표장은 그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 글자수 및 배열, 도형의 유무 등의 구성이 달라서 그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로시망고'로, 선등록서비스표는 '로시' 또는 '로씨'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호칭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ㅈ서비스표는 모두 아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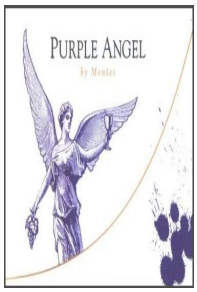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뜻이 없는 조어로 구성된 표장으로 특별한 관념을 생각해 낼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의 관념은 대비될 수 없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008당648 2009허2012 2009후1880(심불)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등	레스토랑업, 셀프서어비스식당업 등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죽&차 전문점' 부분은 글자가 아주 작고,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제공하는 음식을 나타내는 표장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죽'이 '본'보다 글자가 크다 하더라도 '죽'은 음식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죽'만으로 분리하여 호칭·관념된다기 보다는 '본'과 함께 '본죽'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본'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는 그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영어 단어 부분으로 인하여 '뼈'라고 관념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2008원7458 2009허887	가스도관부설공사업, 간이식건물조립공사업 등	건물절연설비공사업, 절연건축계획검사업 등	이들 상표는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경우에는 대비할 관념이 없으나 선등록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등록상표는 '다우', '도우'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 '다오우앤키움'이나 '다우앤키움' 등과 다르다.	
2007원10359 2008허6628 2008후5205	머니벨트(의류), 등산화 등	롱코트, 운동용 유니폼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HOW'라는 단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선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S-HOW'부분이 요부로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상표를 'S-HOW'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현저히 상이하다.	
2007원11162 2008허6604 2008후5182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전자오락실경영업, 패밀리레스토랑경영업 등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S-HOW' 부분이 요부로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서비스표를 'S-HOW'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 서비스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현저히 상이하다.	
2008당1088 2008허12845 2009후1415(심불)	롱코트, 반바지 등	연극공연업, 공연제목	각 표장의 구성 음절이 각각 11 음절과 8 음절로서 그 횡서한 길이에서도 차이가 나므로, 전체적인 외관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 표장은 음절 구성상 길이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비보이 앤 발레리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체적인 호칭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에서는 여자 무용수인 발레리나가 남자 브레이크 댄서인 비보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관념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데 반해서, 확인대상표장인 '비보이 앤 걸 데디나'에서는 아무런 관념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인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8원1424 2008허13954	에프터 쉐이브 로션(after shave lotion), 선탠제(agent for suntan)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 3은 영문자의 내용, 한글의 유무, 문자의 배치형태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PRIVĒ' 부분과 'PRIVÉ'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ARMANI'와 'DEEO'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아르마니'로 호칭됨을 전제로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의 유사 여부를 대비해 보면, 먼저 선등록상표 1, 2, 3은 호칭이 '프라이비', '프리비'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아르마니 프리베' 또는 '아르마니' 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다음으로, 선출원상표 1, 2 및 선출원서비스표는 호칭이 '데코 프리베'로서 '프리베'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나, 양 상표 앞 부분의 'ARMANI'와 'DEEO' 부분이 문자 내용이나 청감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의 호칭 또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관념대비가 어렵거나 나타나는 관념이 상이하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ARMANI PRIVĖ	프라이비 PRIVY (선등록상표1) FREEBE 프리비 (선등록상표2) FREEBEE 프리비 (선등록상표3) DEEO PRIVÉ (선출원상표1,2,선출원서비스표)		
2008당1192 2008허11316 2009후1477(심불)	건축정보제공업, 박람회매점건축업 등	아파트건축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 부분 "**센텀파크**"에4 의하여 '센텀파크'로 호칭될 것이고, 한글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간단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상 확인대상표장들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센텀파크 CENTUM PARK	CENTUM IS-TOWER (센텀 아이에스 타워) (확인대상표장1) CENTUM Q (센텀 Q) (확인대상표장2) 센텀 e-편한세상 (확인대상표장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CENTUM Fiore (센텀 피오레) (확인대상표장4)		
2007당2093 2008허3551 2009후1460(심불)	건축정보제공업, 박람회매점건축업, 등	아파트건축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 부분 "**센텀파크**"에 의하여 '센텀파크'로 호칭될 것이고, 한글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간단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상 확인대상표장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센텀파크 CENTUM PA	롯데 갤러리움 센텀		
2008당1188 2008허11354 2009후1446(심불)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등	아파트건축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 부분 "센텀파크"에 의하여 '센텀파크'로 호칭될 것이고, 한글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간단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상 확인대상표장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센텀파크 CENTUM PARK	CENTUM LEADERS MARK (센텀 리더스 마크)		
2007당2685 2008허3735 2009후1453(심불)	건축정보제공업, 박람회매점건축업 등	아파트건축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 부분 "**센텀파크**"에 의하여 '센텀파크'로 호칭될 것이고, 한글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간단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상 확인대상표장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센텀파크 CENTUM PARK	센텀 아-편한세상		
2008당1192 2008허11347 2009후1439(심불)	건축정보제공업, 박람회매점건축업 등	아파트건축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 부분 "**센텀파크**"에 의하여 '센텀파크'로 호칭될 것이고, 한글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간단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상 확인대상표장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센텀파크 CENTUM PARK	C E N T U M LEADERS MARK (센텀 리더스 마크)		
2008당1188 2008허11309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등	아파트건축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 부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후1408(심불)	센텀파크 CENTUM PARK	ENTUMIS- TOWER (센텀 아이에스 타워) (확인대상표장1) CENTUM Q (센텀 Q) (확인대상표장2) 센텀 e-편한세상 (확인대상표장3) CENTUM Fiore (센텀 피오레) (확인대상표장4)	"센텀파크"에 의하여 '센텀파크'로 호칭될 것이고, 한글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간단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이상 확인대상표장들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2007원10282 2008허7959 2008후4783	롱 코 트 (l o n g coats), 반코트(half-coats) 등	예복, 신사복 등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NICOLE' 또는 'MILLER'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장 전체인 '니콜 밀러'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NICOLE' 또는 'MILLER'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NICOLE MILLER	Miller (선등록상표1) Nicole christian (선등록상표2)		
2008원4253 2008허13763	전기음향영상기기 등(상품류 구분 제9류), 가정용 접착테이프 등	모형제작용 점토, 모형제작용 페이스트 등	이 사건 출원상표가 '파니 파니'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퍼니 퍼니'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청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선등록상표들과 현저하게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FUNNY FUNNY (선등록상표1) Funny Funny 퍼니 퍼니 (선등록상표2) funny funny 퍼니 퍼니 (선등록상표3)		
2008당1075 2008허13275	스킨밀크, 향수 등	과자용 향미료 외 203종	이들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선출원상표를 특별히 '비윤' 부분과 '진' 부분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그 전체인 '비윤진'으로 호칭 또는 관념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들에게 '비윤'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윤(飛潤)'으로, 선출원상표는 '비윤진'으로 각 호칭,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이들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수려한 비윤(飛潤)	비윤진		
2008당2241	간이식당업, 관광음	떡국, 떡볶이 등	두 표장은 외관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허12739	식점업 등 かつら 카츠라	계수나무	비스표는 한글 부분에 의해 '카츠라'로 호칭될 것인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계수나무'로 호칭될 것으므로, 두 표장은 호칭도 전혀 다르다.	
2008원12800 2009허9051 2010후1138(심불)	영어학원경영업, 영어교육지도업 등 문단열의 아이스펀지 잉글리쉬	교과서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등 영어스펀지프로그램 튼튼영어주니어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호칭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단열의 아이스펀지' 또는 '아이스펀지'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는 '튼튼영어주니어' 또는 '튼튼영어'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두 서비스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비록 두 서비스표가 모두 '영어교육프로그램'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나타내는 관념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들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두 서비스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008원7758 2008허14117 2009후1170(심불)	파테, 양갱 등 orion primo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등 피자프리모 PIZZA PRIMO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직관적으로 어떠한 관념을 도출해 내기 어려워 보이고, 선등록서비스표 또한 '피자에 관한 어떤 것'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하기 곤란하여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인 '오리온 프리모'로 호칭되는 외에 영문자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단의 '프리모'만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으나, 선등록서비스표는 ① 표장의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한글 '피자프리모'의 위치, ② '피자'와 '프리모'가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어 분리·관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자프리모'는 비교적 짧은 5음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프리모'만으로 분리하여 호칭된다기 보다는 '피자프리모' 전체로 호칭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8당1394 2008허11224	영양제, 면역증강제 등 휴마쎈	감각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등 HUMATIN	양 상표의 외관은 매우 다르다.양 호칭은 모두 세 음절로서 비교적 짧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전체적 청감의 차이를 인식하기 용이한 점, 이 사건 등록상표 호칭의 셋째 음절인 '쎈'은 그 초성 'ㅆ'이 된소리로서 강하게 발음되어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청감되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의 위 호칭의 셋째 음절인 '틴'은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며, 중성도 'ㅟ'와 'ㅣ'로 차이가 있어, 양 호칭의 전체적인 청감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등록상표 상표의 위 호칭이 일부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 호칭이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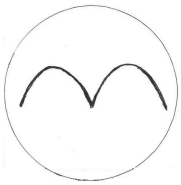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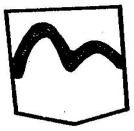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고는 볼 수 없다.	
2008당30 2008허11200 2009후1026(심불)	여송연용 밴드, 가정용 고무풀 등	냅킨용지, 종이물수건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부자되는 집"과 같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 호칭도 5음절로 비교적 짧은 점, '부자되는' 부분이 '집' 부분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잘살게 되는 집'이라는 일체적 관념이 형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이 전체로서 인식되고 호칭되는 이상,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부 자		
2007당1743 2008허1586	약주, 인삼주 등	보드카, 스피릿츠 등	양 상표의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순히 영문자 3자로만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상하에 지구모양의 도형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지구모양 도형의 우측 상단에 검은색의 둥근 점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그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표장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아무런 관념이 형성되지 아니한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지구모양의 도형부분으로부터 '지구, 지구의' 등의 관념이 형성되는 점에서 현저하게 상이하다.	
	SBI	SPI		
2008원113 2008허12197 2009후894(심불)	와인	음료제조기계, 포장기계 등	"PURPLE ANGEL" 부분은 그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된다 할 것이다. "PURPLE ANGEL" 부분이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은  와 같이 성인여성이 오른손에 포도송이를, 왼손에는 와인잔을 각각 들고 있고, 그 뒷부분에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들은 위 도형부분을 통해 '포도송이와 와인잔을 들고 있는 천사'라는 정도의 관념이 형성되고 호칭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으로부터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관념 내지 호칭이 발생하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단순하게 '천사'라는 일반적인 관념만 형성될 뿐인 점에서, 양 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관념 등이 유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Angel		
2007당2564 2008허9696 2009후672(심불)	머니벨트(의류), 검도복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위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부분에 의해 분리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에 의하여 '케이투 살라만' 또는 '살라만'으로 호칭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K2 Salaman	K2	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2007당2565 2008허9702 2009후689(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위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부분에 의해 분리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에 의하여 '케이투 그레이욜' 또는 '그레이욜'로 호칭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K2 Greyowl	K2		
2007당2563 2008허9726 2009후702(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위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부분에 의해 분리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에 의하여 '케이투 피나투보' 또는 '피나투보'로 호칭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K2 PINATUBO	K2		
2007당2562 2008허9719 2009후696(심불)	머니벨트(의류), 가죽신 등	등산화, 등산의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K2' 부분은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위 나머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부분에 의해 분리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에 의하여 '케이투 레가스피' 또는 '레가스피'로 호칭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K2 LEGASPI	K2		
2007원11392 2008허10597 2009후740(심불)	낚싯줄(fishing line)	보드게임, 슬롯머신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REAL"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REAL" 부분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 모두 "REAL"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관념되지 않는 점, 양 상표의 외관이 너무 다른 점 및 양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인 "낚싯줄, 낚싯대" 등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모두 "REAL"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8당13 2008허8822	운동용 아노락(Anorak), 승마화 등	자켓, 청바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는 '에이식스'로 호칭되고, 사전적으로 '에이(A) 6'를 의미하고 있어서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르다.	
		A6		
2008원839	오디오 카세트 레	배낭, 반바지 등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TEENI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허10474 2008후5366(심불)	코더 (audio cassette recorders), 오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audio cassette players) 등		(Teenie)", "WEENIE(Weenie)"의 영문자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선등록상표들의 위 영문자 부분은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의 발음습관에 따라 '티니위니'로 어려움 없이 발음되는 점, '티니위니'는 비교적 짧은 4음절에 불과한데다가 운율이 반복되어 일반수요자들에게도 쉽게 인식되는 점, "teenie weenie"는 "tiny"의 구어체 표현인데 그 전체로서 '작고 귀여운 것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독특한 관념을 형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영문자 부분은 모두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것이어서,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WINNIE THE POOH	Teenie Weenie 티니위니 (선등록상표/서비스표1) Teenie Weenie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선등록상표20) TEENIEWEENIE (선등록상표27)		
2008당244 2008허9399	과자용 향미료(精油), 음료용 향미료(精油) 등	아이크림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란색의 색채표장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흑색으로 표현된 표장인 점, ② 꽃을 표현한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이 타원형 주변에 여러 개의 꽃잎모양을 형성하고 그 타원형 내부에 여백을 두면서 꽃술 3개를 양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꽃잎 5개로 꽃을 형상화하면서 그 내부에는 여백을 두지 않고 음각으로 꽃술이 표현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줄기와 잎을 표현한 형상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이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④ 표장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에 비하여 꽃잎 등을 빽빽하게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외관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2007당3512 2008허9733 2008후5038(심불)	자켓, 스커트 등	숙녀용 바지, 숙녀용 슈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임에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영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고, 양자 모두 조어 상표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도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리안'으로 호칭될 경우 '리안'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호칭도 다르다	
	RYAN	Rianros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7원10230 2008허10948	디지털사진촬영업, 사진보도업 등	사진식자업, 사진보도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다. 영문자 부분인 'PhoToi'에 의해 '포토아이'나 '포토이'로 직감되고 호칭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조어서비스표로서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PHOTOIS			
2007원3664 2008허7928	Cigarettes	권연, 여송연 등	양 표장은 'Leader'란 영문자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 문자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의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선등록상표가 'For The Leader' 또는 'Leader'만으로 분리 호칭·관념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호칭·관념이 다르므로, 양 표장은 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LEADER	For The Leader ESSE		
2007당297 2007허13070	T셔츠, 남방셔츠 등	직물제손수건, 잠바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로서 인식되고 호칭되는 이상, 비교대상상표들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SPYOPTIC	SPAI (비교대상상표1) S.P.Y. (비교대상상표2) 스파이 (비교대상상표3)  (비교대상상표4)  (비교대상상표5)		
2007당1328 2008허6284	구절판, 도시락상(箱) 등	김치통,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도 "쿡락"과 "락앤락"으로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COOK" 부분에 의하여 "요리사, 요리하다" 등의 관념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COOK LOCK			
2007원11343 2008허7751	디스크 기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등	이들 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TIER"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ProtecTIER	Easy-Tier	위치 및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디스크 기반 데이터 보호 소프트웨어"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모두 "TIER"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7원6158 2008허6826 2008후4554(심불)	겉옷 즉 자켓(Outer clothing), 레인자켓(namely, jackets) 등	방수옷(Oil clothing), 고무옷(Rubber clothing) 등	선등록상표는 전체로서 호칭·관념되거나, 'flex'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아쿠아맥스'와 '아쿠아 플렉스' 또는 '플렉스'로 현저하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AQUAMAX WATERPROOF, WINDPROOF, BREATHABLE	AQUA f.l.e.x.		
2005원8281 2006허6112 2006후3090	페이셜 크린저(facial cleansers), 크린싱크림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S-TART 부분만으로는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9458호)는 '스타트'로 호칭되고 '시작', '출발'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다르고 그 외관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다.	
	good skin GOOD START	스타트 START		
2007당2861 2008허9276	모피, 원피 등	잠바, 배낭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대칭적인 볼록한 형상의 도형을 배치하고 그 왼쪽 하단에 점을 결합한 다음 이를 둥근 원으로 감싼 점에서, 기울기에는 차이가 없고, 높낮이를 달리한 형상의 도형을 배치하고 이를 방패 형태의 도형으로 감싸거나 방패 형태의 도형이 없는 선등록상표 1 또는 2와 구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 외관상의 형상(관념이나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나 선등록상표들은 특별한 관념, 호칭을 상정할 수 없어 서로 대비할 여지가 없다)이 서로 달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2007원12965 2008허7447 2008후4431(심불)	운동용 유니폼, 교복 등	T셔츠, 양말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저명한 캐릭터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문자 구성 및 필체도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 외관은 현저하게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되는 이상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DENIS SIMACHËV	Dennis the Menace		
2007원2272 2008허1814 2008후2213(파기환송) 2008허11538(환송)	가죽신, 고무신 등	복대, 복부패드 등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Football Club'의 약칭인 'FC'와 '공차는 사내아이'라는 의미인 '슛돌이'가 결합하여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 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하여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그 관념에 있어	
	FC 슛돌이	숯 도 리 SHOOTDORI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서 확연히 다르다.	
2007당2862 2008허7201	청바지, 사파리 등	잠바, 단화 등	양 상표의 외관을 이루고 있는 도형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는 외곽도형이 원형과 오각형의 방패모양의 도형으로 매우 다르면서 내부도형과의 상대적인 선의 굵기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고, 선등록상표 1의 내부도형 및 선등록상표 2의 도형과는 표현하는 선의 굵기와 높낮이가 달라 시각적으로 서로 다른 도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상 서로 다른 상표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도형상표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없어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2007당1673 2008허4653	약주, 탁주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도형부분이 요부로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선등록상표 1, 2의 도형부분은 모두 소나무의 형상을 도형화 한 도형표장들인데, 도형표장들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관의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양자는 줄기 및 가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일반수요자들이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경우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 1, 2와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도형부분과 선등록상표 3의 도형부분은 그 형상이 현저하게 달라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없어 비유사하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7당1327 2008허6123	야채판매대행업, 청과판매대행업 등	슈퍼체인업, 편의점 모집가맹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형태의 도형 부분이 부가되어 있고, 문자 부분에 '굿'이 추가되어 좌우로 배치된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이 다르다. 양 표장의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굿모닝마트'로 호칭 및 관념되는 데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닝마트'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선등록서비스표가 '모닝'과 '마트'로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살핀 바와 같다),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2003당2009 2005허124 2005후2977(파기) 2008허6871(환송) 2008후4226(심불)	인쇄잉크, 등사잉크 등	제도용 T자, 제도용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ALPHA" 및 "알파" 부분은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 중 그림물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림물감, 수채물감, 유화물감, 아크릭물감, 포스터칼라, 염색물감"을 제외한 상품에 관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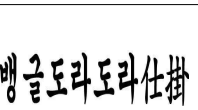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는 "ⓐ", "ALPHA" 및 "알파"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관찰,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을 형성하는 "ALPHA" 및 "알파"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외관이 현저히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7원5950 2008허767 2008후1739(파기) 2008허11378(환송)	여행가방, 핸드백 등	여행용 가방, 핸드백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팝스애비뉴"로, 선등록상표들은 "애비뉴", "파크 애비뉴"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중가요 거리, 음악 거리"로 관념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들은 "거리", "공원 거리"로 관념되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POPSAVENUE 팝스애비뉴	AVENUE		
2007원3756 2007허13605 2008후3933(심불)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양 서비스표들의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위 서비스표들은 위 '제일'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일저축은행', '제일은행', '제일카드' 등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호칭은 앞 부분의 '제일'로 인하여 일부 유사한 면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상호)저축은행'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예금이나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임에 비하여, '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여·수신, 외환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는 신용카드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위 서비스표들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로서는 위 서비스표들이 '제일'이라는 부분으로 인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일저축은행	 (선등록상표/서비스표1) 제일은행 (선등록상표/서비스표2) Standard Chartered Bank Jeil Eun Haeng (선등록서비스표3) Standard Chartered Bank Jeil (선등록서비스표4)  (선등록서비스표5) STANDARD CHARTERED BANK CHEIL (선등록서비스표6)		
2007원3757 2007허13612 2008후3940(심불)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양 서비스표들의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위 서비스표들은 위 '제일'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일저축은행', '제일은행', '제일카드' 등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호칭은 앞 부분의 '제일'로 인하여 일부 유사한 면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상호)저축은행'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예금이나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임에 비하여, '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여·수신, 외환 등 종합적	
	Jeil Savin	 (선등록상표/서비스표1) 제일은행 (선등록상표/서비스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tandard Chartered Bank Jeil Eun Haeng (선등록서비스표3) Standard Chartered Bank Jeil (선등록서비스표4) 제일빠른대출 (선등록서비스표5) STANDARD CHARTERED BANK CHEIL (선등록서비스표6)	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는 신용카드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위 서비스표들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로서는 위 서비스표들이 '제일'이라는 부분으로 인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7원8950 2008허6451 2008후3964(상고기각)	조끼, 카디건 등	목걸이, 반지 등	양 표장은 그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PINK'와 'MARTINI' 또는 '핑크'와 '마티니'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이 신속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일반 상거래의 실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의 뒷부분인 'MARTINI' 또는 '마티니'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핑크마티니'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마틴 싯봉' 또는 '마틴' 등으로 호칭될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서로 상이하다.	
	PINKMARTINI 핑크마티니	MARTINE SITBON		
2007당1401 2008허5359	나리싱크림, 배니싱크림 등	라벤더유, 머릿기름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뒷부분의 "熙"와 "花"가 현저히 다르므로 그 외관이 상이하고, 선등록상표가 '눈송이,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을 직감시키는 데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 조어이므로 그 관념도 다르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설희'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설화'로 발음되어 비록 그 첫음절과 둘째 음절의 초성이 같지만 둘째 음절의 모음이 'ㅢ'와 'ㅏ'로서 상이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희 雪熙	설화 雪花		
2007당1170 2008허3933 2008후3506(심불)	방사선조사업	감마선기자재 수입판매, 환경폐기물소각 및 처리업 등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GREENTEC" 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GREENTECH"와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기는 하나, "GREENTEC"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체로서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유사 여부를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서로 다르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린테크 GREENTECH	SOYAGREENTEC		
2007원10229 2008허5694	디지털사진인화업, 디지털사진처리업 등	사진인화업, 사진제판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상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도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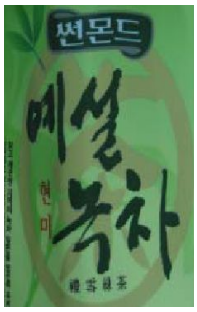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PHOTOIS	PhoToi (선등록서비스표 1~2)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직감되고 호칭될 뿐 영문자 부분인 'PhoToi'에 의해 '포토아이'나 '포토이'로 직감되고 호칭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조어서비스표로서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2007당436 2008허3711	안경사업		이들 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요부인 "" 부분에 의하여 그 도형이 나타내는 '팽귄' 또는 '안경을 쓴 팽귄'으로 호칭, 관념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를 요부인 "" 부분에 의하여 그 도형이 나타내는 '암수 한 쌍의 원숭이들' 또는 '한복을 입은 원숭이들'로 호칭, 관념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호칭과 관념이 상이하다.	
				
2007당978 2008허1852	배니싱크림, 피부강화용크림 등	향수, 아이섀도 등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입생로랑' 또는 '이브스 세인트 로란트'로 발음될 'YVES SAINT LAURENT' 부분만으로 인식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엑스퍼트'로 호칭될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도 다르고, 또한 YVES SAINT LAURENT 이나 선등록상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대비하기 어렵다.	
	AGE EXPERT YVES SAINT LAURENT	엑스퍼트 X-PERT		
2007당943 2008허2640 2008후3711(심불)	그라비어인쇄업, 식자 및 식각 제판업 등	인쇄업	이들 표장들은 '인쇄닷컴'의 한글 부분에서 동일할 뿐 사자상의 유무와 영문자의 유무에 의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인 '인쇄닷컴'과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도형 부분인 ''과 확인대상표장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할 경우에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사자' 또는 '사자표'로 호칭 및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인쇄닷컴'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확인대상표장과 서로 달라,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인쇄닷컴 -www.inshea.com		
2007원7405 2008허4639	한의원업, 한의원체인업	산부인과의료업, 임상의료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후2909(심불)	동원미즈한의원	동원산부인과의원	야 할 것인바, 위 서비스표들은 '동원'이라는 첫 머리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나타내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출산이나 산부의 건강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나타내므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007당2210 2008허2411	고무계타일, 목질타일 등	일(정전기 제어용에 한함), 타일(정전기 제어용에 한함)판매대행업 등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E.S.D'는 거래자들 사이에 'ESD'와 동일한 단어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분은 그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인 '미래'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같이 '미래'로 호칭, 관념될 수 없음이 그 구성상 명백하므로, 이들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ESD ANTI FLOORING 이에스디 앤티 후로링	미래 E.S.D		
2007당1296 2007허7884 2008후293	향수, 일반화장수 등	립스틱, 스킨밀크 등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20825호, 이하 '선출원상표'라고 한다)가 그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SHU UEMURA**'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인식·호칭될 것이어서 선출원상표와 구분되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SHU UEMURA ATELIER MADE	Atelier		
2007원7536 2008허4011 2008후2633(심불)	작업화, 슬리퍼 등	반바지, 반코트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주요부의 하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도형 부분만을 영문자 "B"와 "PE"로부터 분리하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B"와 "PE" 부분이 일체로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B★PE STA			
2007원9565 2008허3322	분말커피, 원두커피 등	맥주, 흑맥주 등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스쓰 에버뉴 비스트로', '식스쓰 에버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푸위 비스트로', '푸위' 등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6번 가 비스트로'로 인식되고 선등록상표는 '푸위 비스트로'로 인식되어 상이하다.	
	6TH AVENUE BISTRO	FUYI BISTRO		
2007당1526 2008허330 2008후2428(심불)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부동산관리업, 호텔업 등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문자의 구성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호칭·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빙고빙고' 또는 '빙고'로 호칭되고, '기대하지 않은 대히트', '빙고게임' 등의 의미로 관념되는 데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석빙고'로 호칭되고, '돌로 만든 얼음 보관창고'로 관념된다 할 것이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BINGOBINGO	석빙고 SUGG BING GO (선등록서비스표)	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2006당2724 2007허11623 2008후2114(심불)	서양음식점 경영업, 스낵바업 등	샌드위치 판매체인 점관리업, 식당체인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S-UBWAY"는 '지하도', '지하철'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S-ubway'를 영문 대문자로 표시한 문자서비스표로서, 위 영어단어의 한글식 발음에 따라 '서브웨이'라고 호칭되고, 그 의미에 따라 '지하도'나 '지하철'로 관념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인 "지하철"은 3음절로 된 한글을 가로방향으로 표시한 문자서비스표로서, 한글 표기 그대로 '지하철'이라고 호칭, 관념된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표는 외관과 호칭은 상이하고, 관념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S-UBWAY	지하철		
2007원1029 2007허13674 2008후1937(심불)	반바지, 아동복 등	가죽신, 고무신 등	고양이, 곰 등 동물의 특징을 단양하게 표현한 캐릭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도형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양 표장의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볼 수 없다. 선출원상표는 특별한 호칭이 없거나 '검정 강아지' 또는 '꼬리를 치켜든 검정 강아지'로 호칭되거나, 선출원상표의 권리자인 서양물산 주식회사가 1999. 3. 25. 출원하고, 2001. 3. 16.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출원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문자 'BLUEDOG'을 결합한 상표 "BLUEDOG"의 호칭인 '블루독'이라고 호칭될 가능성이 크므로, 양 표장의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foo			
2007원5798 2008허1449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녹음재생기구 등	컴퓨터, 텔레비전수신기 등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MONSTER HUNTER FREEDOM	DigitAllFreedom (선등록상표1) e-FREEDOM (선등록상표2) DIGITAL FREEDOM (선등록상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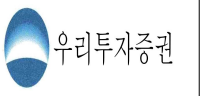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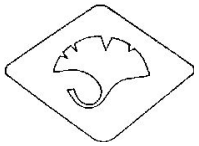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Freechal freedom & challenge (선등록상표4) Freechal freedom & challenge (선등록상표5)		
2007원7584 2008허1562 2008후1661(심불)	화과자, 아이스크림 등	건과자, 비스켓 등	양 상표는 "宗家"라는 한자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글자체나 글자의 크기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도형과 영문자의 유무, 문자의 구성 및 배치방법, 서체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종가 원길조암", "원길조암", "미나모토 키초안", "미나모토", "키초안" 등으로 호칭·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007원2309 2008허1685	Sports goggles (스포츠용 고글), protective eyewear 등	보통안경, 선글라스 등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문자의 도형화 정도, 철자 수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 외관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 선등록상표는 그 주요부인 "FOX"에 의하여 "폭스"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에프엑스로 호칭 또는 관념될 뿐, 여우를 의미하는 "폭스"로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	
				
2007당2427 2008허316	견지, 낚시그물 등	낚시용구	문자의 수나 종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상당히 다르다. '빙글뱅글'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글도라도라' 또는 '뱅글도라'로 호칭될 확인대상상표와는 그 호칭이 서로 다르다. 양 상표는 일부 관념의 차이도 있다고 할 것이다.	
				
2006원5584 2007허1350 2007후1589	T셔츠, 가면무도회복 등	키홀더, 괘종시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나 선등록상표 모두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티븐' 혹은 그 약칭인 '스티브'라는 이름에다가 성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사람의 성명으로 인식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스티븐 바이 스티브 매든" 혹은 "스티브 매든"으로, 선등록상표는 "스티븐 앨런"으로 각 호칭된다 할 수 있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인식된다.	
	"S-TEVEN BY S-TEVE MADDEN"	"S-TEVEN ALAN"		
2006당2450 2007허4434 2007후4816(파기환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백 등	배낭, 상자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너무 다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스클럽', '밴스클럽'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벤스', '불나게', '부루나케'로 호칭되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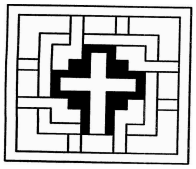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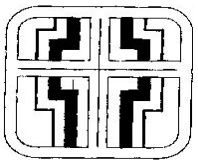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송) 2008허5366(환송)	BANNSCLUB	B E N S 불 나 계 ブルナケ	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 있어 양 상표 모두 조어상표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2007당1001 2007허13155 2008후1463(심불)	간호사학원경영업, 조무사학원경영업 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	간호사학원경영업, 조무사학원경영업 메디칼간호학원 Medical Nursing School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하얀색 십자가가 중앙에 배치된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와 같은 십자가 형상은 병원 등 의료기관의 표시로서 널리 관용되는 형상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반면, 양 서비스표의 도형부분은 십자가를 둘러싼 방패의 형상과 그 상부의 책, 약상자, 비둘기 및 왕관의 형상, 방패를 좌우로 감싸는 나뭇잎과 독수리 날개의 형상, 하부 리본의 형상과 문자 기재 여부 등의 점에서 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2007원3654 2007허13575	찻스푼, 숟가락 등 	비귀금속제 공기, 비귀금속제 대접 등 	양 표장들의 장미형상 부분은 요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장미형상들 자체도 관념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호칭은 대비가 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2006당2734 2007허10408 2008후1210(심불)	서적, 소책자 등 LINGUAFORUM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 서적 등 LINGUA (선등록상표1) Lingua Academy (선등록서비스표2) Lingua House (선등록상표3) Lingua Press (선등록상표4) Lingua Teens (선등록서비스표5) Lingua Kids (선등록서비스표6)	이 사건 등록상표는 "LINGUAFORUM"과 같이 영문자 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그 표장의 형태상으로도 일응 전체로서 관찰되어 선등록상표 등과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링구아 키즈 (선등록서비스표7) KID LINGUA (선등록서비스표8)		
2006원7586 2007허13049 2008후1296(심불)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computer game software), 배경음악/ 악보/ 대사가 수록된 DVD(pre-recorded DVD's featuring musical scores and dialog) 등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거나 대비할 수 없다.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RED" 부분과 "BARON" 부분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약간 띄워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로 "레드바론", "레드배런" 등으로 발음되어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의미도 "붉은 남작"으로서 "RED" 부분이 "BARON"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어서 양 단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할 것으로 보일 뿐, 구태여 이를 "RED" 부분과 "BARON" 부분으로 분리 인식하여 "레드"나 "바론" 등으로 분리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RED BARON	레드 론 (선등록상표1~2) 바로온 (선출원상표)		
2007당489 2007허7457 2008후996(심불)	녹차, 맥차 등	녹차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설록차'로 호칭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예설녹차'로 호칭되어 '예'자가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인 음절의 수가 다르고, 첫 음절이 '설'과 '예'로 완전히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관념에 있어서도 조어상표로서 대비할 수 없거나, 예절을 의미하는 예(禮)자가 추가되어 '예절과 눈과 녹차' 등의 의미로 파악되는 확인대상표장은 '눈과 녹차' 또는 '눈처럼 깨끗한 녹차' 등으로 관념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서로 다르다.	
	雪綠茶			
2006당1809 2007허9675 2008후972(심불)	위생걸래, 수세미 등	김치통, 반찬용 식품 저장용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크린락'과 '락앤락' 또는 '락앤드락'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깨끗한 락' 또는 '깨끗한 잠금장치'와 '잠그고 잠근 장치' 등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CLEAN LOCK	LOCK & LOCK		
2006당2506 2007허9699 2008후989(심불)	도시락상(箱), 찬합 등	김치통, 반찬용 식품 저장용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바이오락'과 '락앤락' 또는 '락앤드락'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조어상표로 서로 대비할 수 없거나 '생물학적 잠금장치'와 '잠그고 잠근 장치' 등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으므	
	Bio Lock 바이오 락	LOCK & LOCK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7당4 2007허9682 2008후897(심불)	김치통,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주방용 밀폐용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에 의하여 '락앤락' 또는 '락앤드락'으로 호칭되지만,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글라스락'으로 호칭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잠그고 잠근 장치'등으로 관념되나, 확인대상표장은 '유리 잠금장치' 또는 '유리를 잠근 장치'등으로 관념되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7당301 2007허9729 2008후910(심불)	김치통,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반찬통 및 반찬용식품저장용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또는 " LOCK&LOCK "부분에 의하여 '락앤락글라스', '락앤락'으로 호칭되지만,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또는 'GlaS-S-Lock' 또는 '글라스락'에 의하여 '글라스락'으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2007원4793 2007허12183 2008후879(심불)	반도체, 플래쉬 메모리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는 그 호칭, 외관, 관념이 상이하다. 선등록상표 2는 문자색채상표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모우비파워'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것이므로 '모비엠시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선출원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3은 그 외관에 있어 영문 대문자 7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다르고, 선등록상표 3과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5당1205 2005허10251 2006후855	서적, 핸드북 등	비직물제 라벨, 스티커 등	요부인 '북키'로 호칭, 관념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책키북키'로 호칭,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5당1204 2005허10268 2006후862	서적, 핸드북 등	비직물제 라벨, 스티커 등	요부인 '북키'로 호칭, 관념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책키북키'로 호칭,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7당1245 2007허8382	스킨밀크, 스킨 프래시너 등	비비크림, 피부미백크림 등	양 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공통된 부분인 'SKIN'을 제외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라비아 숫자 '25'만 남고, 확인대상표장은 아라비아 숫자 '79'와 하단의 도형 '———+———'만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양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도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식별력이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형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스킨이오'와 '스킨칠구'로 불리는 전체적 호칭과 관념뿐만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7당716 2007허9002 2008후538(심불)	각질제거용 크림, 일반화장수(스킨) 등	향수, 아이새도우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단의 영문자부분과 하단의 한글부분으로 분리관찰하여도 글자의 수와 글자의 형태 등이 서로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클리오'로 호칭되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중 처음 3음절 '클레오'와 유사할 뿐, 전체적인 발음의 음절수가 5음절과 3음절로 서로 다르고 끝음절도 '오'와 '스'로 달라 확연히 다르게 청감된다. 그 관념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cleosis 클레오시스	클리오 CLIO		
2004당718 2004허6057 2005후728(파기) 2007허14080(환송)	슈우트, 스커어트, 원피스 등		확인대상상표가 이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확인대상상표는 색채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도형의 모양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A6	A6		
2007당413 2007허7877 2005후2908(심불)	나리싱 크림, 리퀴드 루즈 등	라벤더유, 스킨밀크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퀸"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 거래 관행상 강하게 발음되고 청감되는 전반부가 "커버"와 "퀸"으로 다르고,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상표이므로 선등록상표들과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덮는 것을 더한 여왕' 등으로 관념될 수 있어서 선등록상표들의 '여왕'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coverqueenplus	Queen (선등록상표1) QUEEN 여 왕 (선등록상표2)		
2006당1787 2007허5925	거들,나이트가운 등	종이손수건, 직물제 손수건 등	양 상표는 전체가 3음절로서 비교적 짧은데다가 상품 거래에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 앞부분의 발음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첫 음절이 "세" 또는 "서"와 "카", "까" 등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칭호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	
	cerdin	CARDIN		
2006당816 2007허6935 2007후4632(심불)	플라스틱필름, 비닐시트 등	전자파차단용필터,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등	선등록상표 1인 LG은 영문자 L과 G가 가로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인 LG는 영문자 LG를 도안화한 도형인 와 영문자 LG가 가로방향으로 결합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상이하고, 각각의 문자부분에 의하여 '엘지에스'와 '엘지'로 상이하게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LGS	LG (선등록상표1) LG (선등록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1101 2007허5406 2007후4519(심불)	대부업, 대여금고업 등 	은행업, 상호신용금고업 등 	그 전체적인 외관은 상당히 다르다.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호칭은 앞 부분의 '우리'와 중간 부분의 '투자'로 인하여 일부 유사한 면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래실정상 여러 기준에 따라 업종이 세분되어 있는바, '기술투자'는 주로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창업자금제공 등의 금융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투자증권'은 주로 유가증권의 인수, 매매 등을 중개, 주선하는 등의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양 서비스표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006당335 2007허5413 2007후4526(심불)	은행업, 국제금융업 등 	은행업, 상호신용금고업 등 	그 전체적인 외관은 상당히 다르다. 어느 한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은행'이나 '우리기술투자'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호칭은 앞 부분의 '우리'로 인하여 일부 유사한 면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금융 관련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와 거래실정상 여러 기준에 따라 업종이 세분되어 있는바, '기술투자'는 주로 제2금융권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창업자금제공 등의 금융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여·수신, 외환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양 서비스표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2006원9555 2007허5482	유모차, 자동차용 COCOBABA	팬츠, 블라우스 등 baba (선등록상표 1) IZZAT BABA (선등록상표 2)	"COCO"와 "BABA"를 위와 같은 뜻을 가진 영어단어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워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6당1189 2007허4762 2007후4304	냄비, 비금속제주전자 등 	공기, 술잔 등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81164호)가 마름모꼴 내에 배치된 은행잎 모양의 도형에 의해 '은행잎 표'로 호칭·관념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그 호칭·관념이 다르고, 나아가 외관 또한 현저히 다르다.	
2006당2332 2007허3592	산업표준 실시의 촉진업무, KS인증 등	기업경영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등	영문자의 철자, 위치, 물결 모양의 수, 별 모양의 위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케이에스에스큐아이'로, 선등록서비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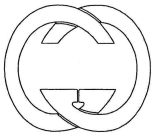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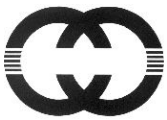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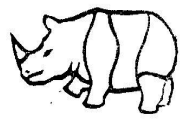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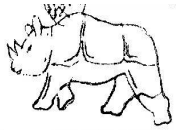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는 '엔시에스아이'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지 않다. 양 상표의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별한 관념을 도출할 수 없는데다가 문자 부분도 조어로서 직관적 관념을 주지 못하므로, 양 상표의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2006당2376 2007허3318	예복, 목사제복 등	클러지 셔츠	십자가 형상이 한옥의 창문살 중앙에 뚜렷이 드러나는 느낌인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십자가 형상이 창문틀에 가려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좌우로 퍼져있는 느낌이어서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2006원9438 2007허4403	광섬유, 광섬유케이블, 동력케이블 등	로보트 전용 전선 보호용 후렉시블 튜브, 로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KIT' 부분도 '도구나 장비의 단위'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여서 'ROBO'나 'KIT'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로보킷'으로 호칭, 관념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로보라인' 등으로 전체적으로 호칭, 관념될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서로 호칭, 관념도 다르다.	
	ROBOLINE	ROBO·KIT		
2006당2337 2007허4809 2007후3684(심불)	심혈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	심혈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	양 상표는 글자 수가 세 글자로서 길지 않으므로 모두 전체로써 호칭될 것인데, 이 경우 앞 두 음절 및 세 번째 음절의 초성이 동일하나, 양 상표의 호칭시 세 번째 음절인 '틴'과 '톨'이 앞의 음절 '셀렉'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될 뿐 아니라 '틴'과 '톨'의 청감이 매우 다르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으로 상이하다.	
	셀렉틴	셀렉톨 (선출원상표) SELECTOL (선등록상표)		
2006당242 2006허10470 2007후1541	단화, 장화, 가죽신 등	모자, 바이저, 청바지 등	양 상표는 한글의 병기 여부와 영문자의 구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표의 표장에서 특별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려워 관념상으로도 서로 연관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호칭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C.O.A.X 씨오에이엑스	J-COX		
2006당1327 2007허3738	침대, 소파 등	침대, 의자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노블레스"로 불릴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노블레스"와 "노블스"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선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NOBLS BED (선등록상표1) NOBLE 노블 (선등록상표2)	등록상표 2의 호칭인 "노블" 또한 "노블레스"와 뚜렷이 구분된다.	
2006당1525 2007허3554	검도복, 검도화 등	검도복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 등이 서로 다르고, 다만 대나무로 된 휘어진 목검 도형과 영문자 "Martial Arts of Korea"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위 공통되는 도형 및 문자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6당984 2007허2605	건조란, 달걀 등	소맥배아유함유 건강식품, 대두유함유 건강식품 등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과 선등록상표 2, 3은 각각 "아스타"와 "아스트라"로 호칭되는데, 양 표장은 서너 개의 짧은 음절 중 '타'부분과 '트라'부분이 서로 다르고, 선등록상표 2, 3의 '라'부분은 어미에 올지라도 분명하게 청감되는 음절이므로, 양 표장의 호칭 역시 상이하다.	
	아스타 ASTA	아스파캡스 (선등록상표1) ASTRA (선등록상표2,3)		
2006당976 2007허562	합 곡물이 함유된 배합사료,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배합사료 등	양돈사료	확인대상상표는 거래계에서 요부가 될 수 없는 "프로텍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퓨리나 프로텍트" 또는 "퓨리나"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바, 양 자는 호칭과 관념을 모두 달리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프 로 텍			
2005당3074 2007허1268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	심혈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첫 두음절인 '세크, 시크'는 선출원상표들의 첫음절인 '셀, 실, 세'와는 청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들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Secretol	SELECTOL (선출원상표1) 셀렉톨 (선출원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원7547 2006허7023 2006후3557	T셔츠, 남바위, 롬퍼즈 등	아동복, 슈우트, 신사복 등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2006당1889 2007허555 2007후2384(심불)	귀리, 기장 등	수산물이유식, 굴조개 등	문자 부분인 "한스팜"은 3음절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이나 "스팜"으로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호칭된다기보다 일체로 인식되거나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설사 분리인식되거나 호칭되는 경우에도 "한"이나 "스팜"이 아니라 "한스"와 "팜"으로 인식되거나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과 외관 및 호칭이 다르다.	
				
2006원2329 2006허11671 2007후2292(심불)	눈썹용 연필, 리퀴드 파운데이션 등	일반 화장수 등	"OLAY"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서 그것만으로 분리되어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어.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OLAY NATURE SCIENCE	NaturalScience		
2005원8444 2006허10616 2006후954(심불)	피부미백크림, 립스틱 등	립스틱, 헤어젤 등	PHOTO OPTIC' 부분은 선등록상표 1과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외관과 호칭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만큼 크고, 선등록상표 2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들과 상이하다고 인정된다.	
	ESTEE LAUDER PHOTO OPTIC	Photo 옵 틱 스 OPTICS		
2006원4069 2006허11596 2007후1725	인공 색전기구, 분리형코일	경부촬영진단 시스템, 경부진단용 촬영/영상/네트워크 시스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 부분에 있는 'TRUFILL' 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ORBIT'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되거나 전체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고, 그럴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TRUFILL DCS ORBIT	DCS		
2006당131 2006허9692 2007후2247(심불)	골프화, 신발안창, 운동용 아노락 등	팔목시계, 회중시계, 자명종 등	두 상표가 비록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형상이고 흰색 사선으로 인하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들(삼각도형 및 흰색 사선의 배치구조, 좌우측 부분의 대칭구조 등)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완연히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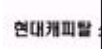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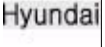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원5897 2007허1329	골프화, 등산화 등	골프용 장갑, 배낭 등	전체적으로 문자의 배치와 글씨체 및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전혀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상표로서 어떤 관념도 생각할 수 없어서 관념에 관하여서도 선등록상표들과 전혀 다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플로체'와 '플로스'로 호칭될 경우에 있어서 앞 부분의 두 음절인 '플로'에 있어서는 같지만 마지막 음절에 있어서 '체'와 '스'로 서로 달라 '체'가 '스'보다 짧게 소리가 나면서 강하고 거센 느낌을 주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서로 다르다.	
	Floce 플로체	 FLOS PROS 프 로 스		
2005원8246 2007허210	가성알칼리, 가소제(可塑劑), 가스정화제 등	세탁용 유연제, 피혁용 표백제 등	"radical sponge"나 "sponge"는 원재료를 나타내거나, 흡수력이 아주 좋다는 효능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각 요부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radical"로 인식되거나, 전체적으로 "radical sponge"로 인식되어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단어 "radical"과 "sponge"가 결합된 문자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은 한글문자만으로, 선등록상표 2는 영어단어 "prima"와 "sponge"가 띄어씀이 없이 결합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각각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래디컬" 또는 "래디컬 스폰지"로 호칭됨에 반하여, 선등록상표 1, 2는 "프리마스폰지"로 호칭되어,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프리마스폰지 Primasponge		
	Radical Sponge	발아촉진제, 식물보존제, 식물육성제 등	"soil" 부분과 흡수력이 좋은 물질을 나타내는 "sponge"가 결합되어 토양 등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흡수력이 뛰어난 것을 직감토록 하여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성 부분 중 "sponge"만을 요부로 보아 분리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래디컬", "래디컬 스폰지"로 인식될 경우, "스폰지소일"로 인식되는 선등록상표 3과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	
		스폰지소일 Sponge Soil		
2006허1234 2006허9890 2007후1558(심불)	정맥필터	의료용 유체주입량 조절밸브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COOK CELECT' 또는 'COOK' 부분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이다. 선등록상표는 전체로서 'SELECT A FLOW' 또는 'SELECT FLOW'에 의하여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 청감이 같지 않아 호칭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리사, 지도자'의 의미인 'COOK'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의미로 관념되거나 또는 '요리사 선택' 등으로 관념되어서, '선택 흐름' 등으로	
	COOK CELECT	SELECT-A-FLOW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5원8697 2006허11800 2007후1411(심불)	과일젤리	팥, 잼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Hiyoko"라고 할 것이며, 하단 부분의 일본어 문자 부분도 이와 동일하게 ”ひよ子“가 그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다.	
	Hiyoko PETIT Dessert ひよ子プチデザート	몽 쁘 띠 Mon Petit (선등록상표) PETIT CHOU (선출원상표)		
2006당278 2006허10647 2007후1619(심불)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 녹화된 테이프 등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테이프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을 살펴보면, “(주)” 부분은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상호이고, “교육”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탄탄”으로 약칭되어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탄탄”으로 호칭되는 경우 “튼튼”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초성의 “ㅌ”과 종성의 “ㄴ”이 각각 서로 겹치기는 하나, 중성인 모음이 “ㅏ”와 “ㅡ”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음이 두 번 겹쳐 발음되는 관계로 큰 말과 작은 말로 그 청감이 서로 달라, 그 호칭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	
	TAN 주식회사탄탄교육	튼튼		
20052564 2006허7924	맥주, 저알콜맥주, 등	맥주, 흑맥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들은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대비할 수 없고, 그 외관과 호칭이 상이하여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aSS	Gass (비교대상상표 1) Cass (비교대상상표 2) Cass Fresh (비교대상상표 3) Cass FRESH 카스맥주 (비교대상상표 4) Cass (비교대상상표 5)		
2006원102 2006허11039	구두 흙털개용 금속매트, 금고, 등	귀걸이, 목걸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들은 관념 및 호칭을 대비할 수 없고,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표장이 서로 동일·유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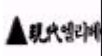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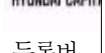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아니하다.	
2006원2921 2006허10456	비디오게임기, 컴퓨터게임기등	TV게임기 본체, TV게임기에 사용되는 광디스크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의 호칭은 “게임컴”, “게임콤” 등으로 세 음절에 불과한 점, “GAME”이란 영단어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것으로 그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AME”과 “COM”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는 그 전체로서의 호칭은 “게임큐브”, “게임쿠베” 등으로 네 음절에 불과한 점, “GAME”이란 단어가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AME”과 “CUBE”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양 상표 모두 “게임”으로 분리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들 상표는 그 외관, 관념, 호칭이 달라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GAMECOM	GAMECUBE		
2006원1443 2006허9203	여행용 가방(Travelling bags), 비치 백beach bags) 등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채워지지 않은 것), 모피 등	선등록상표 1은 태극 모양의 도형 오른쪽에 영문 대문자인 “BEAR”와 “USA”를 나란히 배치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흰색 곰 모양의 도형 오른쪽에 가로방향으로 나열된 영문자 “Bear”와 세로방향으로 나열된 영문자 나란히 배치한 결합상표다. 또, 선등록상표 3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검은색 곰 모양의 도형 아래 영문자 “Bear Brand”와 한글 “곰표”를 차례로 배치한 결합상표이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5당2505 2006허6983 2007후1329	양복바지, 스커트 등	직물제 손수건, 오버코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물 도형과 선등록상표 2, 3의 동물 도형은 모두 코뿔소로 인식되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코뿔소의 엉덩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코뿔소의 등은 무늬가 있는 천을 두른 듯한 느낌을 주며,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형상이어서 그 형상과 모양이 선등록상표 2, 3과 너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ROMYRHINO"라는 영문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띄움 없이 "ROMY“와 “RHINO"가 연결되어 있고, "ROMY“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RHINO"는 코뿔소를 의미하는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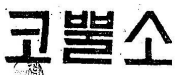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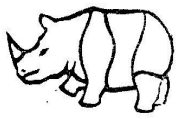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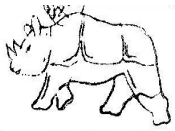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RHINO (선등록상표 4)	"Rhinoceros"와 같은 말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는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단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이 "RHINO"로 분리 인식되어 "라이노" 또는 "리노"만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당1657 2006허7450 2007후1077(심불)	유아용품 관련 정보제공업, 판매알선업 등	유아용품 판매대행업, 유아교육 지도 상담업 등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는 통상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이 결정되는바,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영문자 "www.bebehouse.com" 부분은 한글 "베베하우스"에 비하여 글씨의 크기가 훨씬 작아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한글로 된 문자 부분에 의하여 "베베하우스"로 호칭될 것이다. 한편,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영어식 발음경향에 따라 문자 부분인 "BB house"의 영어식 발음인 '비비하우스'로 호칭된다. 그러므로 등록서비스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우리 나라의 언어 관행상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어두 부분의 호칭이 각각 '베베'와 '비비'로 상이하다. 또한, '베베'와 '비비'는 청감이 상이한 음절이 각각 2회씩 반복하여 호칭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는 그러한 청감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호칭도 상이하다.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부분은 '연기나는 집'으로 관념된다. 한편,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베베" 또는 "bebe"는 프랑스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나, 우리 나라의 프랑스어 보급수준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이를 '아기'로 관념하기보다 조어(造語)로서 인식할 것이다. 또 문자부분 중 "하우스" 또는 "house"는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는 이를 '집'으로 관념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서비스표는 도형부분에 의해서 '연기나는 집' 또는 문자부분에 의해서 '의미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집'으로 관념된다. 한편, 비교대상서비스표들 중 선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은 별다른 관념을 생성하지 않는다. 또한,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의 문자부분 중 "BB"는 영문 대문자 B를 중복 표기한 조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문자부분에 의해서 '의미를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집'으로 관념된다.	
	베베하우스 www.bebehouse.com	BB house (선등록서비스표) BBhouse (선출원서비스표)		
2005당2143 2006허8767 2007후1176(심불)	귀걸이, 키홀더 등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탱커스" 또는 "탕쿠스"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탱크"로 호칭되므로, 비록 첫 음절의 "탱"이 동일하여 첫 음절을 강하게 발음하고 뒤 음절인 "크" 또는 "쿠스", "커스"를 약하게 발음할 경우 그 청감에	
	Tankus	TANK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있어 유사할 여지도 있으나, 선등록상표의 “탱크”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영어단어로서 알파벳 네 자로 구성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단어 뒤에 모음을 결합하여 다르게 발음할 경우 그 단어의 청감을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선등록상표의 “k"와는 달리 중간의 “k"가 ”us"와 결합되면서 ”탱커스“ 또는 ”탱쿠스“의 중간음절로서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어 선등록상표의 ”탱크“와는 명확히 구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 상이하다	
2005원7149 2006허8255 2007후968(심불)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반도체컴퓨터칩(semiconductor computer chips) 등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등		출원상표는 뒷부분의 “NBit”만에 의하여 ‘엔빗’으로 호칭되기보다는, 구성부분 전체로서 ‘매크로닉스 엔빗’으로 호칭되거나 또는 중심적 식별력 있는 “Macronix” 부분에 의하여 ‘매크로닉스’라고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상이하다. 선등록상표인 “ENBIT”은 등록권리자의 등록 당시 상호인 “엔빛 주식회사” 중 “엔빛” 부분의 발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조어(造語) 상표인바, “엔빛”의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Macronix NBit	ENBIT			
2005원7830 2006허8620	자동차운송업, 창고임대업 등	자동차운송업, 자동차임대업 등			
	현대로지코	,선등록서비스표 B(14,17)	△HYDEX 14.등록번호 : 4100521220000 17.등록번호 : 4100521240000		
		선등록서비스표 C(1~13, 16,19, 20, 23, 21, 24, 26, 27)	HYUNDAI CAPITA 등록번호 : 4101183630000 현대캐피탈 등록번호 : 41011836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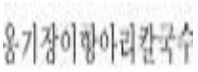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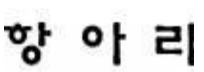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0  등록번호 : 4101183610000  등록번호 : 4101183600000  등록번호 : 4101175940000  등록번호 : 4101175930000  등록번호 : 4101127420000  등록번호 : 4101127400000  등록번호 : 4101074740000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0  등록번호 : 4101074750000  등록번호 : 4100873820000  등록번호 : 4100721540000  등록번호 : 4100687900000  16.등록번호 : 4100521230000 19.등록번호 : 4100521250000  20.등록번호 : 41005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260000 23. 등록번호 : 4100521280000  21.등록번호 : 4100521270000 24. 등록번호 : 4100521290000  등록번호 : 4101184610000  등록번호 : 4101184620000  등록번호 : 4101183620000  등록번호 : 4101183610000		
2005당2502 2006허6976 2007후814(심불)	청바지, 아동복 등	직물제 손수건, 오버코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물 도형은 얼핏 보면 무슨 동물을 형상화한 것인지도 인식하기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코뿔소로 인식한다고 하더라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물 도형과 선등록상표 2, 3의 코뿔소 도형은 그 형상과 모양이 너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장식화하기는 하였지만 ROS라는 문자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과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코뿔소"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한 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은 어떤 동물을 형상화한 것인지 쉽게 인식되지 아니하며, 그 문자 부분이 장식화되기는 하였지만 문자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알오에스" 또는 "로스"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일 뿐, 코뿔소로 호칭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선등록상표들과 차이가 있다.	
2005원2420 2006허5744 2007후272(심불)	가죽신, 니트 T셔츠 등	가죽신, 체조화 등	출원상표가 비록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사이에 'PLAY' 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를 모두 식별력이 미약한 'PLAY' 또는 'play'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함으로써 출원상표를 'PLAY'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이들 상표는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분된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플레이 콤데가르숑', '콤데가르숑'으로 불리고 '소년처럼 논다', '소년처럼'으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는 '플레이 드라이', '더 플레이'로 불릴 것이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PLAY DRY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서비스표)		
2005원4891 2006허8446	고량주, 노주 등	맥주, 청주 등	이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테이스트마스터"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브루마스터"로 각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지 않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이하다.	
	테이스트마스터 TASTEMASTER	Brew Master		
2005당3101 2006허7207	국수, 도시락밥 등	밀을 튀겨 만든 스낵형 건과자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관념, 외관, 호칭이 다르다.	
	Jolly pong	졸리굿 Jolly Good		
2005당2560 2006허5225	목향, 향수	라벤더유, 스킨밀크 등	두 상표 중 각 일부 문자부분만을 분리,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SNOW PERFUME	Ice Snow		
2004당987 2005허698 2005후1875	운동용 아노락, 체조복, 점퍼 등	아동복, 스포츠셔츠, 청바지 등	'조마'와 '소마'는 모두 그 호칭이 2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 또 맨 첫음절의 호칭이 '조'와 '소'로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그 호칭상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JOMA	S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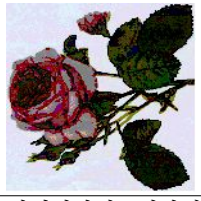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2004당900 2004허6316 2005후919	나리싱크림, 주름살 방지용크림 등	향수, 아이새도, 일반화장수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EXPERT"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관념이 다르고, 나아가 외관 또한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엑스퍼트 X-PERT		
2003당1969 2004허4181 2004후3454(파기) 2006허4659(환송)	혈압강하제, 순환기관용약제 등	혈액용제, 비타민제 등	선등록상표 2는 "FERRO"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다르다. 선등록상표 5는 그 표장인 영문자 "PARO"가 영어식 발음에 의하여 대개 "파로"로 발음될 것이어서 호칭에서 쉽게 구별되고, 그 알파벳 구성이 전혀 달라 외관상 뚜렷하게 구별된다.	
	펠 로 Fello	FERRO SANOL DUODENAL (선등록상표 2) PARO (선등록상표 5)		
2004원3667 2005허933 2005후1370	간이식당업, 휴게실업, 레스토랑업 등	꼬치구이전문식당업, 꼬치구이전문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등	"간자" 부분만으로 분리 약칭되기 보다는 "저분과 간자" 전체로서 호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간자"라고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음절수 및 발음이 달라 호칭이 서로 상이하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저분과 간자		
2005원5444 2006허3632	향수, 향유 등	에센스, 화장크림 등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SIGNS' 부분은 공통되나, 부가된 단어와 결합 형태가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이 상이하다. 'SIGNS'나 'SOLUTION' 모두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또는 품질을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선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마찬가지로 'SIGNS'나 'SOLUTION'만으로 분리호칭 또는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SIGNS UP-LIFTER	SIGNS SOLUTION		
2005당2459 2006허5072 2006후3069(심불)	커피	커피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스타프레야",	
	STARPREYA	STARBUCKS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선등록상표는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에 “스타”나 “프레야”로 분리되어 불리거나, 선등록상표의 경우에 “스타”나 “벅스”로 분리되어 불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2005원1962 2006허2851	(한방관련 간호업을 제외한) 간호업, 건강관리업, 병원업 등	건강관리업, 약국업, 의료업 등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하다.	
				
2005당1315 2006허2578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있어서는 “옹기장이”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인 “옹기장이”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항아리”를 비교하면,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003당1720 2004허1137 2004후2789	저킨, 조끼, 잠바 등	학생복, 이브닝드레스, 스커트 등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모두 다르다.	
				
2005원3150 2006허2783	정보전송업, 온라인 서비스용 원거리 통신서비스업 등	밴(VAN)통신업, 데이터통신업 등	“CALYON”이 요부이다.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5원5825 2006허2967	팽이, 곤충채집용 채, 애완동물용 장난감 등	지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철봉 등	“아따맘마”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조어 표장으로서 분리관찰되지 아니한다. 외관과 호칭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비유사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B&B 맘마		
2005원2884 2006허2325	낚시대, 낚시릴 등	낚시바늘, 낚시찌 등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전체적, 이격적 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LAZER SHARP	K SHARP		
2005당1216 2005허10756 2006후1889(심불)	향수, 매니큐어 등	아이새도, 입술연지 등	"CANDY"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므로, "CANDY" 부분만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판단된다.	
	VOV CANDY GLOSS	ÉTUDE CANDY CANDY		
2005당2083 2006허1698 2006후1728(심불)	규조토, 맥반석 등	규산염 백토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의 음절수는 전체로 발음하기 쉽고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는 비록 관념의 면에서는 일부 유사한 범위내에 있기는 하지만, 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관과 호칭이 상이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리 후 레 쉬 REFRESH	Hi-Fresh/하이 후레쉬		
2005원3578 2006허381 2006후1391(심불)	등산백(backpacks), 등산지팡이(mountaineering sticks) 등	학생가방, 여행가방 등	우선 외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 앞부분이 "ARC"를 포함하고 있어서 선등록상표 2, 3과 구성에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첫 영문자인 "A"의 모양과 전체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아크"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양 상표는 관념상 대비가 되지 않는다.	
	ARC'TERYX	테릭스 Terix (선등록상표1) ARC (선등록상표2~3) 테릭스 Terix (선출원상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당2460 2004허3393 2004후3249	한식점 경영업, 간이식당업 등 	한식점 경영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문자부분을 일체로 하여 '배밭골'로 호칭·관념됨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배밭'으로 약칭된다기보다는 '태능배밭'으로 호칭·관념되어 서로 다르므로,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	
2002당2283 2003허2263 2003후2379(파기) 2006허1476(환송)	가죽신, 검도복 등 	예복, 신사복 등  (비교대상상표 1) 캠브리지 (CAMBRIDGE) (비교대상상표 2)	'CAMBRIDGE' 부분이 분리되어 식별력이 있는 요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2005당483 2005허8852 2006후1292(심불)	등산백·배낭 등 	등산화, 하이킹화 등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4)  (선등록상표5)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 도형의 형태 등이 너무 달라 전체적으로 외관은 현저히 구별되고, 그 호칭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로 "아나사지"로, 선등록상표들은 "오, 십"이나 "파이브, 텐"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불릴 것이며, 그 관념도 "Anasazi"의 의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숫자 "5", "10"의 의미와는 대비가 불가능하거나 서로 다르게 여겨질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	
2005당28 2005허9329	귀걸이, 귀금속제 버클 등 	넥타이핀, 브로우치, 다이아몬드 등 	선등록상표는 장식화된 "C" 모양의 도형 2개를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중앙에 타원형이 형성되도록 겹치게 구성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장식화된 "C" 모양 도형 2개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배치되어 있으나 중앙 부분에 아래위로 길쭉한 모양의 마름모꼴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배치하여 "C" 모양의 도형 2개의 일부를 가리도록 구성함으로써 "C" 모양 도형 2개가 서로 겹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선등록 상표의 큰 특징인 중앙의 타원형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그 부분에 배치된 마름모꼴 도형이 표장을 압도하는 듯한 시각적 느낌을 주고 있고, 양 상표에 구성된 "C" 모양 도형의 구체적인 형상, 가로·세로비율이 다르다.	
2005원2156 2006허954	서적, 소책자 등	서적, 잡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오래된"과 "미래"로 분리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오래된 미래"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미래"와는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오래된 미래	미래		
2005원2575 2005허9756 2006후1162(심불)	마우스, 리모트컨트롤러 등	광섬유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로 호칭하는 편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한글 2글자가 가로로 나열된 문자상표로서 글자 그대로 '로지'로 호칭될 것이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LOGITECH	로지		
2005원1913 2005허10961	엽서, 달력 등	서적,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선등록상표인 'Web's Cool!'은 '웹은 훌륭하다!', '웹은 멋지다!'는 관념을 가지는데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인 'WEPS'는 별도의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조어(造語)이므로 양 상표는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선등록상표는 '웹스쿨'로 호칭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웹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역시 다르다.	
	WEPS	Web's Cool!		
2004당2623 2005허8647 2006후879(심불)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등	분식업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항아리"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황산" 또는 "황산 수제비"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항아리"를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항 아 리	황산 항아리수제비		
2004당2751 2005허5075	단화, 혁대 등	원피, 승마용 안장 등	이 사건 상표는 "카리노"로, 선등록상표는 "클라리노" 또는 "크라리노"로 호칭될 수 있어 양 상표는 모두 첫째 음절의 초성이"ㅋ"이고, 마지막 두 음절이 "리노"로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3음절로 첫음절이 "카"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클라" 또는 "크라"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과 4음절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칭	
	Carino	Clarino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에 있어서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까지 고려할 때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	
2002원2666 2003허1970 2003후2614(파기) 2005허7811(환송)	나리싱크림, 콜드크림 등	아이섀도우, 화장비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달리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인 'JUTANHAK'과 'PROVITA'가 결합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양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JUTANHAK PROVITA	PRO-VITAL (선등록상표1~2)		
2004당2604 2005허4478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등	다방업, 카페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앞쪽의 "시골촌"만으로 간략히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시골' 및 '마을'은 어떤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표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별력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시골마을"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시골촌'부분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시골마을"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표장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시골마을		
2004당386 2004허6729 2005후810	비귀금속제 공기, 비귀금속제 대접 등	접시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이 "장미꽃"으로 호칭·관념할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ul ki Art hermosura"라는 문자 부분으로 "철기아트" 또는 "헤르모수라"로 호칭되고 "철기예술"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다.	
				
2005원789 2005허6481	대구탕음식점업, 대구탕조리대행업 등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삼각지"는 양 서비스표에서 그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 외관은 현저히 다르고, 호칭 및 관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삼각지 원 대구탕"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삼각지 차돌박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2005원125 2005허5877 2005후3550(심불)	무역중개업, 오퍼업 등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등	이 사건 서비스표가 '나우기연' 또는 '나우'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가 '나우콤'으로 호칭될 경우,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서로 다르고, 그 첫 2음절의 호칭이 '나우'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음절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우는 '기연'으로 되거나('나우기연'으로 호칭될 경우) 없는 데('나우'로 약칭될 경우)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콤'으로서, 그 전체적인 청감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나우기연주식회사			
2004당2261 2005허6733 2005후3581(심불)	보드카	시아의소유즈플로도임포트사에서제조된 맥주, 러시아의소유즈플로도임포트사에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인 "STALINSKAYA"의 영어식 발음에 의하여 '스탈린스카야'로 발음되는 반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 1, 2는 문자 부분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서제조된보드카 등	“STOLICHNAYA”의 영어식 발음에 의하여 ‘스톨리치(츠)나야’ 또는 ‘스톨리크나야’로 발음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들의 호칭은 6음절 중 첫째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할 뿐 나머지 4음절이 모두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양 상표들은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전혀 다르다.	
		STOLICHNAYA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1) STOLICHNAYA (선출원상표2)		
2004원5952 2005허6559	교복, 레인코트 등	예복, 신사복 등	이 사건 상표의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양자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고, “barbara”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 경우 ‘Barbara'가 흔히 쓰이는 서양 여성의 이름이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및 영문자의 한글식 발음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바바라’로 호칭될 것인바, 이 경우 ‘바라바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 1과는 음절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바라바라 BaRa BaRa (선등록상표)		
2003원2653 2004허455 2004후2093(파기) 2005허10091(환송)	녹음디스크, 광디스크 등	전기스파크발생기, 컴퓨터 등	“ZEISS”는 독일의 광학기술자였던 Carl Zeiss(1816~1888)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영한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로서, 영한사전의 발음기호에 따르면 “차이스” 내지 “자이스”로 발음이 되고, 그 단어의 뜻은 위 광학기술자, 그가 설립한 독일의 광학 정밀기기 제조회사 또는 그 상표라는 것이며, “ZEISS”라는 상표가 부착된 광학 정밀기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의 이름은 “칼자이스 주식회사”로서, 그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도 “ZEISS”의 호칭을 “자이스”로 표기하고 있다.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ZEUS	ZEISS ZEISS		
2004당2753 2005허5785	항체(antibody),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등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이 사건 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O”로 시작하여 7자로, 선등록상표는 영어 대문자 “N”으로 시작하여 8자로 구성되어 서로 비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다음 호칭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표는 “오발겐” 또는 “오발젠”으로, 선등록상표는 “노발긴” 또는 “노발진”으로 호칭될 수 있어 다 같이 3음절로 발음되는데, 양 상표는 모두 2째 음절이 “발”로 동일하기는 하나 3음절 중 첫 음절이 “오”와 “노”로 상이하고, 마지막 음절이 “겐 또는 젠” 과 “긴 또는 진”으로 상이하여 결국 3 음절 중 2 음절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OVALGEN	NOVALGIN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있어서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까지 고려할 때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도출할 수 없어 대비할 수 없다.	
2004당1667 2005허3413 2005후3376(소취하)	보쌈전문업	한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달라서 그 외관이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흥부보쌈" 혹은 기술적인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보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중요부분인 "흥부"로 호칭될 것이다. '기가막혀'는 주어의 성질을 일반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기 쉽게 강조하는 서술어로서 주어인 '흥부'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에 의하여 "흥부가 기가막혀"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흥부" 또는 "흥부보쌈"과는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흥부보쌈	흥부가 기가막혀		
2004원4659 2005허5952 2005후3314(심불)	쌀, 탈곡한 보리 등	콩, 감자 등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양 상표는 그 관념이 일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 및 호칭이 전혀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자연애	자연사랑		
2005원553 2005허6153	컴퓨터, 컴퓨터 메인보드 등	무선호출수신기, 전화기 등	"MEGA"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위 각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전체로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양 상표의 외관은 문자 부분이 다소 도형화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고, 다음으로 관념은 양 상표가 다소 유사한 면이 있으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메가"로, 선등록상표는 "메가프로"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그 음절수 및 전체적인 청감이 상이하다.	
	MEGA	MEGAPRO		
2003당465 2003허7411 2004후2628(파기) 2005허8616(환송)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호칭에서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LOTS	LOTUS		
2004당2315 2005허4072 2005후2540(심불)	계전기, 인버터 등	전류제어기, 전류제한기 등	우선 양 상표의 외관은 한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상이하고, 다음으로 관념은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이크로디오씨알"로, 선등록상표는 한글부분에	
	μDOCR	EOCR 이오씨알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의하여 “이오씨알”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그 음절수 및 전체적인 청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오씨알”은 보통명칭 내지 관용명칭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4당2576 2005허3826 2005후2519(심불)	커피전문점관리업, 커피상품 중개업 등	소비용 식품 및 음료의 제공에 종사하는 레스토랑 및 기타 시설 또는 설비의 운영 및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서비스업, 캐리아웃용 식품의 조리 및 판매대행서비스업 등	우선 외관에 있어 양 서비스표 모두 두 개의 흰색 원을 바탕으로 하여 안쪽의 도형 안에는 사람의 형상이, 바깥쪽의 원과 안쪽의 원 사이에 영문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그 구성방식이 동일하여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구성방식의 유사성만으로 양 서비스표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면에 양 서비스표는 요부인 ‘MAGOS’와 ‘STARBUCKS' 영문자 부분 및 중앙 부분의 도형(사람의 형상)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마고스‘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스타벅스‘로 서로 다르게 호칭되며, 양 서비스표 모두 영문자에 의한 관념대비는 불가능하나 중앙의 도형에 의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고대 남성(기사, 광대, 마술사 등)의 형상‘으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왕관을 쓰고 있는 고대 여성의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것이므로 전체적인 관념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	
				
2004원4037호 2005허3604	비타민제, 의료용 식이요법제	아미노산제, 소세지, 아이스캔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도형부분  을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은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렵고 “달리는 사람” 정도의 관념이 있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인 “AMINOVITA”, “바이탈”, “비 탈”은 각 “아미노바이(비)타”, “바이탈”, “비탈”로 호칭되고, 관념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하기 어렵거나(“AMINOVITA”, “비 탈”), “생명의, 생기가 넘치는”(“바이탈”)이라는 관념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및 관념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AMINOVITA  비 탈		
2004당2395 2005허3024	T셔츠, 스커트 등	신사복, 아동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Fat Dog' 혹은 ’팻독‘ 전체로서 호칭, 관념될 것이고, 그 중 일부인 ’Fat'이나 ‘Dog'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관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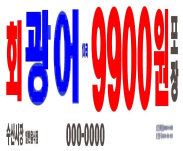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P. A. T. (선등록상표1) BUDLBUD L DOG (선등록상표2)  (선등록상표3)		
2004원4201 2005허3680	비디오폰, 수동교환기	데스크톱형 조립로봇	외관에 있어서, "HOME"의 유무와 글꼴 등에서 서로 구별되고, 호칭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홈캐스트"로 호칭될 것이므로 청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음절이 "홈"으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캐스트"와 차이가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조어이어서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관념이 없다.	
	HOMECAST			
2003당2800 2005허131 2005후2014(상고취하)	공기조화기, 방열기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돼지저금통 등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영문자의 구성과 배치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HumanInside' 전체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앞부분의 'Human'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1의 'inside'는 그 지정상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설치여부 등을 표시하는 문자의 하나로 인식될 뿐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할 것인 이상 선등록상표 1은 'intel inside' 전체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intel'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HumanInside	 (선등록상표1)		
2004원1190 2005허2694	살균용 페인트, 석면제 페인트 등	목제착색제, 페인트 및와니스건조제 등	양 상표는 각 구성문자가 달라 그 외관이 상이하고, 양 상표 모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 상표로서 관념상 대비가 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바이오파인'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인터파인' 등으로 각각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호칭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BIOFINE	INTERFINE		
2003당2587 2005허414	종자건조기, 플라스틱건조기 등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하드웨어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중요부분인  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등록상표 1, 4와도 위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대비해보면, 외관이 다르고, 선등록상표 1, 4가 '인사이드'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이는 각 '인텔' 또는 '인텔 인사이드'로 불리기 쉽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선등록상표1) INTEL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INSIDE (선등록상표4)	다르다. 또한 양 표장은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거나 서로 다르다.	
2004당1843 2005허2038	택배업, 귀중품운송업 등	자동차/철도/항공에 의한 화물수송업, 화물의 집배업 등	양 서비스표는 색채의 차이, 도형의 유무, 영문자 첫글자의 차이, 한글표장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의 면에서 보면,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할 것이 없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중요부분인 "SEDEX"에 의하여 "세(쎄)덱스"로 약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페덱스"로 호칭되고 결국 양 서비스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SEDEX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FEDEX		
2004원4913 2005허2311	컴퓨터판매대행업, 컴퓨터판매알선업 등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조어상표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고, 양 상표를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부분 전체에 의하여 5음절의 "엑스큐어넷"으로 호칭될 것이고,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은 병기된 한글부분에 따라 4음절의 "제큐어넷"으로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발음시의 음절수가 서로 다르고 문자상표의 호칭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두 부분이 "엑스"와 "제"로서 서로 달라 그 청감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호칭 또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XCURENET	XecureNet 제큐어넷		
2004당1213 2004허8442 2005후1448(심불)	오버코트, 레인코트 등	의류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아비뇽", "AVIGNO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는데 비하여, 확인대상상표는 "SOGO" 부분에 의하여 "소고"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다.	
	Avignon	SOGO Avignon		
2004당1898 2005허452 2005후1363(심불)	해열제, 진통제 등	항생물질제제	선등록상표들이 "로세핀"으로 호칭될 경우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로제신"을 비교하면, 첫음절 "로" 및 둘째, 세째음절의 각 중성 및 종성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둘째, 세째 음절의 초성이 다르고 한음절내에서 초성의 발음이 가장 강하게 난다고 할 것어서 그 발음이 청감상 구분된다 할 것이며, 특히 세째음절의 초성이 "ㅅ"과 "ㅍ"로 상이한데 "ㅍ"이 양순파열음으로서 "ㅅ"보다 발음이 강하여 청감상 확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로제신 ROSECIN	ROCEPHIN (선등록상표1) 40-82-011778 로 세 핀 (선등록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원2088 2002허6688 2003후755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업, 컴퓨터 데이터 프로세싱업 등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국내외상거래서비스업,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 등	인용서비스표의 요부는 “ALIMAMA”라 할 것이다. 외관, 호칭이 상이하다.	
	Arima	ALIMAMA.COM		
2004당1452 2004허8596	단화, 원피스 등	넥타이핀, 스카프 등	외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7자로 된 구성이나 선등록상표들은 영문자 4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각 글자의 형태 및 영문자 “K"와 왕관 모양의 도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양 상표는 음절수, 첫음절인 ”지”, “제”, “게”의 유무, 영문자 “K"에 따라 발음되는 격음인 “ㅋ"의 유무 등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청감이 크게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다.	
	GEGOSSE	(선등록상표1) KOSE (선등록상표2) GOSE (선등록상표3)		
2004당974 2004허7531 2005후933(심불)	향수, 스킨로션 등	화장품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설국”으로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문자부분인 “국설화”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표장의 호칭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에 있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유사성 정도로는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雪菊 설국	山參韓方 菊雪花		
2003당1608 2004허5344	바디케어용 컨디셔너(conditioners for body care), 바디케어용 에센스(essences for body care) 등	세탁용 유연제, 향수 등	선출원상표는 “닥터 메디”로 호칭될 것이어서 “크리스틴 슈라멕”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진 점 및 “Dr.”과 결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람의 성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메디박사” 또는 “중간박사” 등으로 인식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의 관념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Dr. med. Christine Schrammek	Dr. Medi		
2004원621 2004허7210	신체부착식컴퓨터, 휴대용컴퓨터 등	프로그램조절기계기구, 기록된 컴퓨터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부분인 “QMAN”만을 분리하여 인식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소프트웨어 등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7자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4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유빅맨" 또는 "유비크맨"으로 호칭되고 별다른 관념이 없는 것인데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큐맨"으로 호칭되고 아무런 관념이 없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UBIQMAN	QMAN		
2001원4080 2002허4286 2003후236	감자, 상치 등	쌀, 콩 등	"SK"부분은 모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에서 "sk" 부분 또는 "SK"부분을 분리하여 이 부분만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다.	
	sk Sunkist	SK유통		
2003당2691 2004허6651 2005후704(심불)	닭고기, 돼지고기 등	우유제품	확인대상표장 중 "듬뿍"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장인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과 이 사건 등록상표 "듬뿍"을 대비하면 양 표장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듬뿍	우유속 진짜 바나나과즙 듬뿍		
2004당33 2004허4495 2005후292(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마이크로폰, 전화기 등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레코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통상 "비에스이"로 호칭하고, 선등록상표의 권리자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세"로 호칭되거나 "보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확연히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념은 서로 대비되지 아니한다.	
	BSE	BOSE		
2004당24 2004허(당)3195 2005후56(상고취하)	슈우트, 스커어트 등	미니벨트, 신발류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A6"는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양 상표의 요부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양 표장의 식별력이 없는 "A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적색과 남색 부분으로 양분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두 가지 색으로 된 직사각형" 등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고 특별한 호칭은 떠오르지 아니할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CITY SPIRIT"이라는 문자 부분으로 "씨티스피릿"으로 호칭되고 "도시의 정신"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다.	
	A6	A6 CITY SPIRIT		
2004원20 2004허4068	광고대행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등	황토분말비누, 약용비누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Hwanghu.com"과 같이 구성된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Empress"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황후닷컴", "황후점컴"으로 호칭되거나 또는 "Hwanghu"와 ".com"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중 "Hwanghu" 부분에 의하여	
	Hwanghu.com	Empress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간단히 “황후”로만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엠프레스” 또는 “엠프리스”와 같이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도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영어사전을 찾아보아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등록상표의 관념을 파악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02당1628 2002허7490 2003후892	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등	물리요법장치, 온풍치료장치 등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가 3음절로 된 하나의 조어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世羅 SERA	세라젬		
2003당1659 2004허547	사파리, 신사복 등	양복, 작업복 등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카‘ 또는 ’닥카‘로 호칭됨에 반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닥스‘로 호칭되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카‘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상표들과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다르며, ’닥카‘로 호칭될 경우에도 첫 음절은 같으나 두 번째 음절의 ’카‘와 ’스‘가 초성과 중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청감이 다르다.	
	DAKA	DAKS (선등록상표1) DAKS (선등록상표2)		
2003당1853 2004허1182	스킨밀크, 일반화장수 등	아이새도우, 메이컵 파우더 등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내지 불어 수준에 비추어 보아 양 상표에서 어떠한 관념이 직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이튠’으로 호칭됨에 반하여, 선등록상표 1, 2는 영어식으로는 ‘에투데’ 내지는 ‘이투데’로, 불어식으로는 ‘에뛰드’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호칭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tune 이튠	ÉTUDE (선등록상표1) étude (선등록상표2)		
2003당831 2004허1175	아이새도우, 메이컵 파우더 등	화장수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내지 불어 수준에 비추어 보아 양 상표에서 어떠한 관념이 직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식으로는 ‘에투데’ 내지는 ‘이투데’로, 불어식으로는 ‘에뛰드’로 호칭됨에 반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콜론(:)에 의하여 'E'와 'TUNE'의 결합으로 보여져 ‘이튠’ 내지는 ‘에튠’으로 호칭될	
	ÉTUDE	E:TUN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것이므로, 그 음절수와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호칭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003당1883 2004허1304 2004후1939(심불)	반바지, 단화 등	슈우트, 스커어트 등	양 상표의 "A" 및 "6"는 모두 영문자 또는 숫자 한자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두 글자가 결합된 "A6"도 영문자 및 숫자 두 글자가 결합한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도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문자 및 숫자 부분은 식별력 없는 부분으로서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양 상표의 도형은 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고,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다	
				
2003당2263 2004허1076	일본음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등	식당체인업(횟집체인업), 음식(회)조리대행업 등	9900은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의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확인대상표장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도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9900			
2003원2212 2003허6944	사람 및 동물용 정장제, 가축병 치료제 등	연료첨가제, 청관제 등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로바이오", 선행상표는 "프로큐2000"으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생명에 친한" 등으로 관념될 수 있음에 비하여 선행상표는 굳이 유추해 보자면 "2000년도에 나온 품질이 우수한" 또는 "품질이 우수한 2000번째"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프로바이오			
2001당1123 2001허6513 2002후1850	체조복, 거들 등	브래지어, 와이셔츠, 등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에 포함된 "WONDER"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호칭이나 관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WONDERBODY	WONDERBRA (인용상표 1) WONDER BOY (인용상표 2)		
2003당1051 2003허6722 2004후1656(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수출입대행업, 상품중개업 등	은행업, 상호신용기금업 등	양 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의 유무 및 도형 부분의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상 서로 구별되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부분 그 자체에 어떤 칭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언제나 문자 부분에 의하여 "삼호"로만 호칭될 것인 반면 도형으로만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별다른 칭호가 없으므로 양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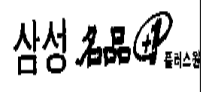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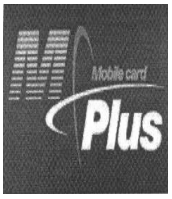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三 昊		비스표는 호칭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며, 관념에 있어서, 양 서비스표 모두 어떤 뚜렷한 관념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념상으로는 서로 대비되지 아니한다.	
2003원2618 2003허6913	핸드백, 등산백 등	서류가방, 폐킹백 등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문자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마이클로”로 호칭, 관념 됨에 반하여, 선행상표는 “마이크로자바”로 호칭, 관념 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이클로 MYCLO	MICROJAVA		
2003당455 2003허6272	신사복, 스웨터 등	양복, 우산 등	마지막 글자인 ”Y"와 “S"가 전혀 다른 문자이므로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키“ 또는 ”닥키“로 호칭될 것이고 선행상표들은 ”닥스“로 호칭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키“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행상표들과 첫음절 및 두 번째 음절이 모두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닥키“로 호칭될 경우 선행상표들과 첫음절은 동일하나 각 두 번째 음절의 ”키“와 ”스"가 초성 및 중성이 모두 달라 구별이 용이하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다르다.	
	DAKY	DAKS		
2003당80 2003허5361 2004후929	단화, 아동복 등	포제손수건, 신사복 등	양 상표는 앞 부분인 “BEEN” 및 “BEAN”에 의하여 모두 “빈”으로 약칭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구성 일부의 호칭이 유사하나, 인용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은 비교적 짧은 2음절에 불과한 “빈폴”로서 상표등록된 이래 장기간 사용되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거래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용상표의 2음절을 각각 분리하여 그 중 “빈”만으로 호칭할 개연성이 실제로는 매우 낮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구성 문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외관이나 관념이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양 상표가 그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BEEN KID's	BEAN POLE		
2002당3177 2003허5910 2004후806(심불)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등	한의원업, 병원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우리들’과 인용서비스표들의 호칭인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을 대비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2음절인 ‘우리’ 부분만 일치할 뿐 전체 음절의 수 및 청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서비스표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을 수 없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우리들	우리한의원 우리한방병원		
2003원978 2003허5163	김치, 깍두기 등	쌀가루, 콩나물 등	솜씨"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는 모두 "솜씨"가 포함되어 있어 관념이나 호칭에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호칭은 그 음절수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르고, 관념 또한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적인 솜씨"와 단순한 "솜씨"로 차이가 있다.	
	내림솜씨	솜씨		
2003원1653 2003허6074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등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등	영어 알파벳 대문자 "S"가 음각 되어 있고 그 위쪽에 4개의 검은색 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져 내려온 형상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각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 할 것인데, 양 도형 및 형상이 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고, 별다른 호칭 및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jSpeed	Speed		
2003당118 2003허4337	화장용 오일 컨트롤러, 화장용 머드 등	세탁용유연제, 스킨밀크 등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타임와이즈"라고 발음될 것이고, 인용상표 1은 전체로서 "와이즈브라운"으로 발음되거나, "와이즈" 또는 "브라운"으로 분리되어 발음될 것인바, 양 상표는 전체적인 음절수 및 청감되는 바가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임에 비하여, 인용상표 1은 "현명한 브라운"이라는 관념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TIEMWISE	Wise Brown (인용상표1)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타임와이즈"로 발음될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 2는 "와이저"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음절수 및 청감되는 바가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WISER (인용상표2)	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임에 비하여, 인용상표 2는 “wise"의 비교급으로서 “더욱더 현명한”이라는 관념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3원329 2003허5767 2004후561(심불)	고추장	쌀, 라면 등	“辛”은 다른 한자를 찾기 위한 부수색인표에 나오는 수준의 한자로(갑 제4호증의 3) 주로 맵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여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직관적으로 매운 맛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매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행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가 다르고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매일辛고추장	辛		
2002당2934 2003허2706	아동복, 유아복 등	나이트가운, 파자마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는 새의 중앙에 “GA”라는 문자를 표기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된다 할 것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떤 새의 모습을 도형화한 것인지 특정지울 수 없어 그저 “새”라고 호칭되고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비상하는 독수리” 또는 문자에 따라 “GA”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부드럽고 차분하여 평화로운 관념을 주는 새이미지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날카롭고 힘찬 독수리의 관념을 준다 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구별된다.	
2001당876 2001허6483 2002후1065	김치, 장아찌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사용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에도 상이하여 피고의 사용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 국 식 품	판결문상 확인불가		
2003원154 2003허4955	컴퓨터용 스피커, 컴퓨터용 카메라 등	MP3 FILE 재생기, 컴퓨터뮤직플레이어 등	이 사건 출원상표를 위와 같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경우 “WAVE” 부분은 위 각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기술적인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에서 식별력을 가지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SHOCK” 부분이다. 한편, 인용상표 1은 “MP SHOCK”와 같이, 인용상표 2는 “CYBER SHOCK”와 같이 2개의 영어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들로서 각각의 구성 단어로	
	SHOCKWAVE	M P SHOCK (인용상표1) **CYBER**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HOCK (인용상표2)	쉽게 분리하여 관찰되므로, 인용상표들이 위 각 구성단어 중 “SHOCK”만으로 간단하게 호칭, 관념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완전히 동일하다.	
2002당3047 2003허2607 2003후2904(심불)	연고, 위막성후두염 치료제 등	소염진통제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표장의 문자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고, (가)호 표장의 요부는 "MENTHOM"과 이의 한글 음역인 “맨담”이라고 할 것인데, (가)호 표장의 요부는 "MENTHOM"과 이의 한글 음역인 “맨담”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인 “멘소래담” 및 (가)호 표장의 요부인 "MENTHOM"과 이의 한글 음역인 “맨담”을 비교하여 보면, 그 호칭에 있어서 4음절과 2음절로 그 음절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2, 3음절이 약음 내지는 묵음이 아닌 “소래”로 명확하게 호칭되어 그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멘소래담			
2002당2068 2003허2256	나리싱크림, 눈썹용 연필 등	향수, 라벤더유 등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영문자부분과 도형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ESTHE"이고 선행상표는 요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도 다르다.	
	ESTHE TWIN			
2002원4372 2003허2935 2003후2737(확인안됨)	스포츠가방, 여성용 핸드백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브이”로 관념 및 호칭될 것이나, 인용상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비엔”으로 관념 및 호칭될 것이어서 그 관념 및 호칭 또한 서로 다르다.	
	BV			
2002원3746 2003허2812	슬랙스, 점퍼 등	장식용품과 조화류, 신사복 등	알파벳 “C"가 중앙부분에서 접하고 있는지 또는 교차하고 있는지, 그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지 여부는 위 상표들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CARLOCASS	 (인용상표1)  (인용상표2)		
2003원442	식당체인업, 일본음	한식점경영업, 중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호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3허3228 2003후2386(심불)	식점경영업 등 미향 味香	음식점경영업 등 千味香	칭 가운데 두 음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음절 수에 있어서 2음절과 3음절이라는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듣는 이의 주의가 가장 집중되는 첫 음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서비스표의 첫 음절은 종성이 있는 음절이어서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모두 별다른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 상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가 관념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2당1201 2002허7186 2003후1017	건과자(카스타드가 함유된 것), 비스킷(카스타드가 함유된 것) 등 오리온 카스타드 ORION CUSTARD	카스타드 크림이 든 쿠키, 카스타드 크림이 든 비스킷 등 롯데카스타드 (인 용 상 표 1)  (인용상표 2)  (인용상표 3)  (인용상표 4)  (인용상표 5)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카스타드” 또는 “CUSTARD”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의 요부는 "오리온“ 또는 "ORION"이라 할 것이고, ”롯데카스타드“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제210420호) 및 위 문자와 제품사진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내지 7(등록번호 제459004호 내지 459009호)의 요부는 "롯데” 또는 “LOTTE"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가 전혀 달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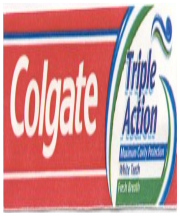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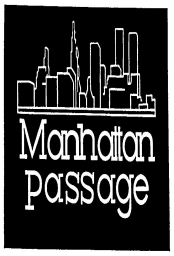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 6)  (인용상표 7)		
2002원1824 2003허2225 2003후2065(심불)	양복바지, 스커트 등	재킷, 청바지 등	전체적인 문자의 배치나 특징적인 도형 부분 등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하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MAUI S&J			
2002원3806 2003허1765	차량용 오디오 확성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전기냉장고 등	요부라고 볼 수 없는 인용상표 1의 “+1을 비스듬히 둘러싼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 부분, 한글 “플러스원”부분과 인용상표 2의 한글 “하나더”부분 및 인용상표 3의 “도형에 둘러싸인 한글 하나더”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인 인용상표 1의 “삼성 名品”부분과 인용상표 2의 “삼성따로따로냉장고”부분 및 인용상표 3의 “마미손”(“미”자 위의 도형은 부기적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부분을 이 사건 출원상표인 "PLUS ONE"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PLUS ONE	 (인용상표1) 삼성따로따로냉장고하나더 (인용상표2)  (인용상표3)		
2002원4229 2003허2089	비자기식 크레디트카드, 비자기식 전철카드 등	서적, 연필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M"부분은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영문자 "Plus"부분은 수학에서 (+), 즉 더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여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M"과 "Plus"부분은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 호칭,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곡선형태가 엇갈리게 된 도형”부분에 어떤 호칭이나 관념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영문자 "Mobile card"부분은 자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	
		 (인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플러스 (인용상표2)	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호칭시 생략될 가능성이 많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엠플러스”로, 인용상표 1, 2는 “플러스”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관념이 인용상표 1, 2와는 유사하지는 아니하다.	
2002원2530 2003허250 2003후1680(확인안됨)	라벤더유, 스킨 밀크 등	나리싱크림, 스킨로우션 등	인용상표들이 전반부의 “STRESS"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우선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언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부분 4음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발음법칙상 첫째 음이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에 비추어 양 상표는 서로 다르게 청감된다 할 것이다.	
	UNSTRESS	STRESS-OUT (인용상표 1) STRESS BUFFER (인용상표 2)		
2002당1598 2002허7100	세탁용유연제, 스킨 밀크 등	공기청향제, 방취제 등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칭호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싱키”로 호칭됨에 반하여, 인용상표 1, 2, 3이 “팅키”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2음절의 짧은 음절에서 첫 음절이 달라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가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상표로서 관념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2, 3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싱 키 SINKY	팅키 (인용상표1) TINKY (인용상표2)  팅 키 (인용상표3)		
2000당2065 2001허4807 2002후352(파기) 2003허2065(환송)	단화, 가죽신 등	단화, 장화 등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2의 유사 등 여부 “CD”와 “Christian Daniel”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D”와 “Christian Daniel”로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CD’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호칭인 ‘크리스찬 다니엘’과 인용상표 1의 호칭인 ‘크리스찬 디오르’를 대비하여 보면, 앞부분의 ‘크리스찬(Christian)’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기독교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흔히 사용되어 상품 출처를 식별시키는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뒷부분의 호칭은 ‘다니엘’과 ‘디오르’로 현저히 다르다 할 것이며, 그 다른 정도는 인용상표 1에 ‘몬시에르’ 또는 ‘머져’라는 부분이 추가된 인용상표 2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CD Christian Daniel	Christian Dior (인용상표 1) Christian Dior MONSIEUR (인용상표 2) CD Christian Dior (인용상표 3) CD Christian Dior (인용상표 4)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고 보기 어렵고, 외관과 관념을 보태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양 상표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인용상표 3, 4와의 유사 등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 3, 4의 'CD'부분은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어 이 부분에 의하여 양 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는 경우에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 3, 4와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 구성이나 모티브, 관념 등에서 위 각 인용상표나 그 상품을 연상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002당1192 2002허8325 2003후1413(심불)	관광숙박업, 콘도미니엄업 등	헬스클럽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호텔업 등	양 상표의 외관 전체를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상표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색채를 유사 여부 판단의 자료로 삼을 것인가를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I"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양 상표를 그 관념 및 호칭에 의하여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2당1234 2002허7063	가죽신, 단화 등	양말, 장갑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는 한글 "크 투"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영어 "K"와 숫자 "2"를 도안화한 표장을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들과는 외관에서 상이함은 물론, 특정한 관념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대하여 인용상표들과 관념을 대비하기 어려우며, 호칭에 있어서도 "크투"라고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케이투"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인용상표들과 호칭에서도 상이하다.	
	K-2CAMP 크 투 캠프	 (인용상표1)  (인용상표2)		
2002당1631 2003허168	중추신경계질환치료용약제, 말초신경계질환치료용약제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의미가 없는 조어들로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므로 전체적으로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를 "PRO"부분과 "GRAF"부분으로 분리하여 "GRAF"부분만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 관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단어를 왼쪽부터 읽는 언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양 상표의 앞 부분의 차이가 전체 외관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전체적 외관은 서로 유	
	PRAGRAN	PROGR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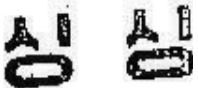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사하지 않다 할 것이다. 앞 부분의 "프로"와 "프라(래)"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는 양 상표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도 다르다 할 것이다.	
2002당1363 2002허7841	나리싱크림, 라벤더 향수 등	방향수, 일반화장수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니케아"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인용상표는 "니베아"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바, "케"와 "베"는 그 청감이 확연하게 다르므로, 양 상표는 호칭에서 상이하다. 양 상표는 모두 조어 상표로서 어떠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NIKEA	Nivea		
2002당1422 2002허7032	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를 "독야"와 "청청"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독야청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뜻을 가짐에 반하여 "청청"은 "싱싱하게 푸른"의 뜻을 가져 양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독야청청	40-89-014400 청 청		
2002원2198 2002허5890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등	녹음기계기구, 전기축음기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FINAL'이나 'DBAS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기보다는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파이널디베이스'로 호칭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피날레'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호칭이 상이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최종적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결정판' 등을 의미하는 반면, 인용상표는 '(음악회의) 마지막 연주곡목, (곡의) 끝악장' 등을 뜻하므로 양 표장은 관념도 상이하다.	
	FINALDBASE	FINALE 피 날 레		
2000당954 2001허2719 2001후2986(파기) 2003허1369(환송)	혁대, 멜빵, 버클, 넥타이핀 등	손수건, 수건, 예복 등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RobertoRicci	NINA RICCI		
2002당345 2002허5913 2003후366(심불)	포장용지, 식품포장용 랩 등	의류를 담기 위한 비닐포대	외관에 있어, (가)호 표장은 영문 인쇄체 대문자와 소문자가 혼합된 'Miglsamo'와 한글 '밀사모'가 상, 하단으로 병기된 것으로서, 영문의 글자체는 물론 8개의 철자 중 뒷부분의 절반이 다르고 한글 표기도 달라, 이를 전체로 관찰하는 경우는 물론 영문과 한글 부분을 분리관찰하더라도 외관이 뚜렷이 구분되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밀리오레', (가)호 표장은 '밀사모'로 각 불리워질 것이어서 첫 음절이 '밀'로 동일하다는 점 외에는 음절의 숫자나	
	MIGLIORE 밀리오레	Miglsamo 밀 사 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양 표장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造語)이므로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001당1980 2002허4248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	은행업, 투자금융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도형의 유무, 도형의 구체적인 형상 및 모양, 도형과 문자의 결합관계 등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LGT" 및 인용표장 1 내지 3의 문자 부분 "LG"와 "엘지"는 모두 사전적으로 특정 의미가 없는 조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은 특별한 관념이 없는 마름모꼴 도형과 왕관으로 관념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한편, 인용표장 1, 2의 도형 부분은 영문자 "LG"를 스마일 도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관념될 뿐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과 인용표장들은 관념이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거나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로 문자 부분인 "LGT"의 한글 발음 표기대로 '엘지티'로 호칭되고, 인용표장 1 내지 3은 모두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엘지'로 호칭될 것인데, 양 표장의 호칭은 3음절과 2음절로 차이가 있으며 '엘지티'의 '티' 부분은 약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표장의 호칭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인용표장1)  (인용표장2)		
2002당274 2002허4927 2003후137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	어린이 영어학원 경영업, 어린이 영어 통신강좌업 등	양 서비스표중 "The kids club"은 "어린이 모임" 또는 "어린이 학원" 등의 뜻이 있고 인터넷상의 어린이용 영어, 미술 학원 등의 모임이나 어린이 용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 등에는 용도표시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다.	
	LCI Language Clubs Int'l Ltd., The kids club			
2001원53 2001허3132 2001후3415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는 '스프리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스프리트' 또는 ' 스프릿'으로 호칭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 '쪄'는 된소리로서 매우 강한 음이고, 인용상표의 마지막 음절 '트'는 '쪄'와는 계열을 달리 하는 거센소리인 차이가 있으며, 관념도 유사성이 없다.	
	SPRITZER			
2000당294 2000허5681 2001후898	정기간행물발행업, 출판업 등	일본어학원경영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YBM'과 인용서비스표인 '시사일본어학원'을 비교하면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다.	
	YBM **시사일어학원**	**시사일본어학원**		
2002원443 2002허3474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모피 등	포대, 수표책케이스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  "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2와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상표로서 자연적 호칭 및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1)  (인용상표2) 	특별한 관념이 없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엘브이"로 호칭되고 영어 알파벳 2자로 인식되거나 인용상표들의 상표권자 "루이비똥(LOUIS VUITTON)"의 로고 또는 이니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들은 그 호칭 및 그 관념도 상이하다.	
2002원134 2002허4101	치약, 비의료용 구강 세정제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주요 부분인 "Colgate"에 의하여 '콜게이트'만으로 약칭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인용상표는 '트리플지' 또는 그 요부인 "Triple"에 의하여 '트리플'로 호칭·관념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이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	
		Triple G		
2000원699 2000허6745 2001후1341(파기) 2002허8028(환송)	컴퓨터, 컴퓨터 하드웨어 등	전기진공청소기, 컴퓨터용 스피커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에 없는 'LE'가 중간에 추가되어 있어 인용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양 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의 발음상 '셀러론' 또는 '쎌러론'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인용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3음절과 2음절인 차이가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CELERON	CERON		
2000당1813 2001허2764 2001후3132(파기) 2002허7995(환송)	섬유제조용정전기방지제, 방모방적용유제, 공업용유연제 등		'OZ'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OZ'는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OZ-K' 부분과 (가)호 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WS OZ' 부분을 전체로 대비하면, 외관·호칭·관념이 상이하다.	
	WOOLLEN OIL OZ-K	방 모 유 WS OZ		
2001원2300 2002허3740	배낭, 서류가방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양 상표는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인 'MANHATTANPORTAGE'는 특별한 뜻이 없는 조어이거나 '맨하탄으로의 수송'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인용상표인 'Manhattan Passage'는 '맨하탄의 통행', 또는 '맨하탄으로의 항해'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의 관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portage'는 통상 '포티지', 혹은 '포테지'로, 인용상표의 요부인 'passage'는 '패시지', 혹은 '패세지'로 각 발음될 것인 바, 각 3음절로 구성된 양 단어중 앞의 두음절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특히 액센트가 있어 강한 청감을 유발하는 첫음절이 '포'와 '패'로 완연히 구별되므로, 결국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다.	
	MANHATTA NPORT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1당1749 2002허2563 2002후2693(상고기각)	포제완구, 등산캠프용 텐트 등	풍선, 배구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새는 날개의 윤곽이 인용상표에 비하여 훨씬 뚜렷할 뿐 아니라 깃털이 묘사되어 있으며, 넓적하고 흰 두발을 발바닥이 보이도록 앞으로 펴고 있고, 그 양 쪽에 깨진 알 조각을 배치함으로써, 마치 알에서 갓 깨어난 새가 앉은 채로 웃으며 날개짓을 하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고, 그 외에 인용상표의 새는 웃는 입이 검게 칠해져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새 입은 희게 묘사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머리에 있는 벼슬의 숫자와 입 양 옆에 묘사된 점의 숫자도 다름을 알 수 있다.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각 도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에서 깨어 웃는 새'로, 인용상표는 '웃으며 서 있는 새' 정도로 불리워지거나 인식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1원3484 2002허3146	가루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월마트'나 '유용성이 큰 월마트', 또는 주요 부분인 '월마트' 등으로 관념되고 인용상표들은 '가치, 유용성'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관념도 동일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그레이트 밸류'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므로 표장 전체에 의하여 '월마트 그레이트 밸류'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주요 부분인 '월마트'만으로 약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밸류'로 호칭될 인용상표들과 호칭도 서로 다르다.	
	월-마트 그레이트 밸류	밸 류 VALUE (인용상표1) VALUE (인용상표2)		
2000당314 2000허5124 2001후140(파기) 2002허7278(환송)	추잉껌, 캔디, 초콜릿 등	건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는 '화이트'가 중간 점에 의하여 '이'와 분리되어 있으며, '입술과 이' 모양의 도형 부분으로 인하여 '화이트·이'가 '하얀 치아'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화이트·이'가 축약되어 '화이티'로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이	오리온 화이티스		
2001당2125 2002허3184	향수, 정유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인용상표의 영문자와 한글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을 요부로서 파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인용상표가 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파악되는 경우에는, 먼저 "파코베베"라는 호칭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파코"라는 호칭과 앞의 2음절의 발음이 동일하기는 하나 뒷부분에 부가된 "베베"의 유무 차이로 인하여 그 청감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위 각 구성부분은 모두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한 조어에 불과하여 그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며,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	
	파코	PAKKOBEBE 파코베베		
2001원2770 2002허918	스웨터, T셔츠 등	예복, 신사복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frenchi'와, 크기가 다른 3개의 타원이 배열된 형상을 하고 있음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후1058		**F R E N C H CONNECTION**	비추어 인용상표와 외관을 달리할 뿐더러, 'frenchi'가 의미 없는 조어인 까닭에 인용상표의 요부인 'CONNECTION'과 관념의 비교가 불가능하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주로 '프렌치'로, 인용상표는 '커넥션'으로 약칭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0당1076 2001허1396 2001후2276	혁대, 방수피복, 모자 등	오우버코우트, 반코우트, 레인코우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tommyatkins"를 "tommy"와 "atkins"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기보다는 일련불가분적인 하나의 의미 없는 조어로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토미 앳킨스" 또는 "톰야킨스"로 불릴 것인 데 비하여, 인용상표 1, 2는 "토미힐휘거" 등으로 불릴 것이므로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양 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직감시키지 아니하여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도형 부분의 외관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T O M M Y HILFIGER**" 		
2001원1835 2002허2594	국제금융업, 대부업 등	신용카드발행업, 증권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위와 같이 관념되기는 하지만 보통으로 불리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에 의하여 특별한 호칭이 나오지 아니하고, 문자 부분의 구성 부분인 'Magic'과 'B@NK'는 모두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매직' 또는 '뱅크'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매직 뱅크'로 호칭할 것이므로, '매직'으로 호칭할 인용서비스표와 호칭이 서로 다르다.	
		**MAGIC 매 직**		
2001당1056 2002허1256	표백제, 세탁용 유연제 등	표백제, 인산칼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WHIT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OXY"만에 의하여 "옥시" 또는 "옥씨"로 호칭되고 '산소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로 관념될 수 있다. 인용상표 1은 한글부분 및 영문자 부분은 모두 "옥시후리" 등으로 발음되어 전체적인 음절수가 4음절에 불과하여 이를 다시 "옥시" 또는 "후리"로 분리하여 호칭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용상표 1의 한글부분과 영문자 부분은 각각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표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OXYWHITE	옥 시 후 리 OXY FREE (인용상표1)		
1999당1724 2000허1481 2001당2870	장식용 맥주병, 맥주잔 등	맥주, 맥주보온병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jovick'는 '부데조비키', '부데요비키' 등으로 호칭되는 반면 인용상표들은 '버드와이저', '버드'로 각 호칭될 것이어서 이 부분 호칭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Budvar'는 '부드바르', '버드바르', '버드바' 등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 "Bud"는 '버드'로 호칭되어 음절수의 차이,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차이, 장음의 차이로 인하여 청감이 상이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BUDWEISE R** (인용상표1,3) **BUD** (인용상표2,4) **BUD LIGHT** (인용상표5)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1당2101 2002허1942 2002후1379(상고기각)	김치, 장아찌 등  	단무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위와 같은 외관적 특징에 따라서 '꽃잎 위에서 웃는 무' 또는 '꽃잎 위에서 팔을 벌리고 웃는 무'로 인식될 수 있는데 비하여, ㈀호 표장은 이러한 꽃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화된 무의 손과 발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팔을 벌리고 서서 웃는 무' 또는 '팔을 벌리고 웃으며 걷는 무' 등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호 표장은 그 관념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호 표장도 그 관념이 상이하다.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호 표장은 위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의제적인 관념을 가지는데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호 표장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호 표장도 그 호칭이 상이하다.	
2001원684 2002허482	포장용지, 포장용 필림 등  	포장용지, 카아본원지 등  (인용상표1~2)  (인용상표3)  (인용상표4)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도형뿐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요부를 도형만으로 보는 이상,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각 유사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2000당224 2000허5070 2001후683	학생복, 작업복 스커트 등	신사복, 한복속옷, 브레지어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같이 귀면 또는 귀신, 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귀신, 도깨비라는 것은 원래 상상 속에서 유래된 많은 종류의 형상과 모양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그와 같이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도 차이가 있다.	
2001당743 2002허321	스킨로션, 배니싱크림 등	향수, 아이샤도우 등	HYDRA'나 'HYDRO, 하이드라' 부분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의 요부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있는 요부인 'ZEN'에 의하여 '첸' 또는 '젠'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SOME, 좀'에 의하여 '좀'으로 호칭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젠'으로 약칭되고 인용상표가 '좀'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초성이 'ㅈ'로서 동일하기는 하나, 양 상표 모두 그 호칭이 1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중성과 종성이 '엔'과 '옴'으로 달라 듣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청감이 상이하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HYDRA-ZEN	하이드라좀 HYDROSOME		
2001원1720 2001허6339	검수지(GUM), 그림물감 등	연필, 볼펜 등	이 사건 출원상표 중의 구성부분 "글라스" 및 "데코"는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할 수 없어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각 구성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유리장식'으로 관념되고 인용상표는 '장식'으로 관념되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5자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2자로 되어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5음절 "글라스데코"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2음절 "데코"로 호칭되어 그 음절 수에 있어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어두의 발음이 전혀 다르므로 그 호칭도 현저하게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그 외관 및 호칭이 현저하게 상이하다.	
	글라스 데코	데코		
2001당580 2001허5268	립스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는 '립체인지(LIP CHANGE)'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E·Z·UP"과 인용상표의 '탐스핀'은 호칭이 상이하다.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앞부분의 호칭이 '이지업'과 '탐스핀'으로 상이하여 전체 호칭도 서로 다르며, 관념은 대비되지 아니한다.	
	E·Z·UP LIP CHANGE	탐스핀 립 체인지 TAMSPIN Lip Chan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99당2212 2000허2477 2000후2774	향수, 스킨로우션 등	립스틱	(가)호 표장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은 “TWIN”인 바, 원래 “TWIN”은 ‘쌍둥이 중의 하나, 닮은 사람의 한 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쌍둥이처럼 닮은 물건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이나, (가)호 표장의 ”TWIN“은 위 립스틱이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트윈	TWIN ART LIP SHADE		
2001당325 2001허5251	세탁용유연제, 스킨밀크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Wine Red"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호 표장은 보통 글씨의 영문자 “RED WINE BODY WASH"와 이보다 약간 크고 진한 글씨의 영문자 ”SENITE"가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상표인바, ㈏호 표장 중 “RED WINE BODY WAS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고 대비하여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Wine Red"와 ㈏호 표장의 요부인 ”SENITE"는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전혀 유사하지 아니하다.	
	Wine Red	R E D W I N E B O D Y WASH SENITE		
1999당1678 19999허9892 2000후1450(파기) 2002허1034(환송)	신사복, 작업복 등	슈우트, 아동복 등	‘말 탄 사람’이라는 정도의 관념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40-80-009553 		
98당369 98허9635 99후772(파기) 2002허1010(환송) 2002후1287(심불)	신사복, 작업복 등	속팬츠, 스커어트 등	양 상표의 도형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인용상표 1은 문자부분에 의하여 ‘랄프로렌’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2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므로(다만, 인용상표들의 도형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양 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들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구분에 말을 탄 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관념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Ralph Lauren (인용상표1)  (인용상표2)		
98당366 98허9628 99후765(파기) 2002허1003(환송) 2002후1270(심불)	아동복, 카아디건 등	스웨터, 슈우트 등	양상표의 도형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라파’로 호칭된다 할 것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 1은 역시 문자부분에 의하여 ‘랄프로렌’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2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므로(다만, 인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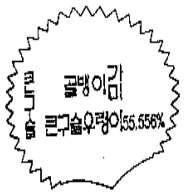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1)  (인용상표2)	표들의 도형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 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양 상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며,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들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구분에 말을 탄 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관념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99당2064 2000허5919 2001후1808(파기) 2002허31(환송)	플라스틱용세정제, 타일변기용세정제, 화장비누 등	자동차용세정제,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공업용비누 등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 인용상표 2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POWERPB	PB-1		
99당2062 2000허5674 2001후1792(파기) 2002허24(환송)	자동차용세정제, 가정용석유계합성세제 등	자동차용세정제,공업용비누 등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카피비" 또는 "카"로, 인용상표 2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들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CARPB 카 피 비	PB-1		
1999당2153 2000허1924 2000후1481	양말, 장갑등	슈우트, 아동복 등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 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2000원3047, 3045 2001허3262,3279 (병합)	간장, 깍두기 등	녹차, 홍차 등	이 사건 출원상표들은 '함박웃음'이라는 문자부분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들은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들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들은 '함박 웃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인용상표들은 도형으로부터 특별한 호칭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호칭을 붙인다면 '웃는 얼굴, 미소짓는 얼굴' 등으로 호칭될 수 있을 뿐이어서 호칭도 서로 구별되며, 나아가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은 모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묘사한 것으로서 다소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함박웃음'은 입을 벌리고 크게 웃는 웃음으로 인식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가볍게 미소짓는 얼굴, 또는 그 미소 자체로서 인식되는 점에서 구체적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출원상표1~2)	 (인용상표1~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0당1831 2001허3842 2001후3446	치즈를 함유한 곡분제 페이스트, 치즈를 함유한 파스타 등	자연 치즈를 손가락 크기로 절단하여 빵가루를 입힌 식품	"치즈스틱"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각 제외하고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베이비" 와 영문자 "BABY" 로 구성된 표장이고, ㈐호 표장은 " 부분과 '자연치즈의 맛과 향이 그대로'라는 문자와 깃발모양으로 구성된 '' 부분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호칭, 관념 등의 어느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치 즈 스 틱 베 이 비 CHEESE STICKS BABY			
2000당856 2000허8383 2001후1198(파기) 2001허6933(환송)	치약, 화장비누, 약용비누 등		비록 "뉴트라"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 또한 양 상표들 모두 조어상표인 관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NUTRA CEUTICALS	NUTRA		
2000당1521 2001허2504	맥주, 흑맥주 등	녹차, 맥차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는 문자부분 전체에 의하여 "하이트"라고 호칭될 뿐이고, 한글 "하이트"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영문자 "HITE"만에 의하여 "히테, 히트" 등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인용상표들은 그 문자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또는 그 일부가 분리 관찰되어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1)은 "히트밀" 또는 "히트"로, 인용상표(2)는 "힛 앤 런" 또는 "힛"으로, 인용상표(3) 내지 (6)은 "오비히트", "오비", "히트"로 각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히 트 밀 HIT-MIL (인용상표1) 힛 앤 · 런 HIT AND RUN (인용상표2)  OBHIT (인용상표3,5) OBHIT 오 비 히 트 (인용상표4,6)		
2001당137 2001허3217	등산백, 배낭 등	서류가방, 핸드백 등	그 첫 글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O"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C"로 되어 있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오하넬"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샤넬"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는 그 음절수가 서로 다르고, 그 첫 음절이 "오"와 "샤"로서 상이하여, 끝 음절이 "넬"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청감이 매우 상이하다.	
	OHANEL 오하넬	CHANEL		
2000당1556 2001허1099	잡지, 서적 등		인용상표는 '만화 채널' 또는 '만화를 방송하는 채널'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만화'를 방송의 대상으로 삼는 방송주체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념상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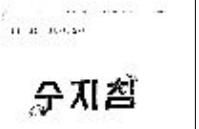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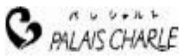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만화채널	CARTOON NETWORK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현저히 달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다.	
2001원99 2001허(원)3224 2001후2832	훼이스크림, 바디크림 등	치약, 칫솔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자에게 특별한 관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조어상표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덩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관념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에서 유사하지 않고, 그 외관이 상이하며, '비네피트(비네핏)' 또는 '바인피트(바인핏)'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바인'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의 호칭을 비교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바인피트'나 '바인핏'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앞부분의 두 음절이 인용상표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음절인 '피트'나 '핏'이 약하게 발음되는 흔한 부가어가 아니고, 그 음절수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2음절인데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3음절 또는 4음절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VINEFIT	VINE 바 인		
2000원1887 2001허2658	항공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	베어링, 캠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문자의 배치나 특징적인 도형 부분 등에 의하여 그 외관이 인용상표와 현저하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FC performance	FCC		
2000원2076 2001허1327 2001후2450	금속제 스위치 기어 캐비닛 등	직류전동기, 테이프 레코더 등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TS"와 "8"자 도형이 나란히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1)은 도형 안에 영문 및 한글자 "T-S 모타", "티에스"가 상하로 결합된 상표이며, 인용상표(2)는 영문자 "T"와 "S"가 "&"에 의하여 결합된 기호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 인용상표(1)은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티에스", 또는 "티에스 모타"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2)는 "티에스" 또는 "티앤에스"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1), (2)와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다.	
	TS8	40-84-019335 T-S모타 티에스 (인용상표1) T & S (인용상표2)		
2000당1330 2001허1785 2001후2535	가정용 냉온수기, 가정용 냉온정수기 등	압력솥, 증기난방기구 등	인용상표 2, 3, 4, 5는 영문자 부분만을 분리하여 관찰할 때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는 서로 유사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닉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모두 "위니아"로 호칭될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WINIX	WINIA (인용상표1) WiniA 위니아 (인용상표2,4) WINIA (인용상표3,5)	것이어서 모두 3음절로 구성된 것이고 첫 음절 "위"와 둘째 음절의 초중성 "니"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둘째 음절은 받침이 있는 "닉"인 반면 인용상표들은 받침이 없는 "니"이고 셋째 음절은 "스"와 "아"로서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청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기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문자 "Win"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특별한 관념을 갖지 않는 조어 상표의 경우에는 관념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2000당1331 2001허1778 2001후2528	가정용 냉온수기, 가정용 냉온정수기 등	압력솥, 증기난방기구 등	그 외관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닉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들은 모두 "위니아"로 호칭될 것이어서 모두 3음절로 구성된 것이고 첫 음절 "위"와 둘째 음절의 초중성 "니"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둘째 음절은 받침이 있는 "닉"인 반면 인용상표들은 받침이 없는 "니"이고 셋째 음절은 "스"와 "아"로서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청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기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문자 "Win"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특별한 관념을 갖지 않는 조어 상표의 경우에는 관념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닉스	WINIA (인용상표1) WiniA 위니아 (인용상표2,4) WINIA (인용상표3,5)		
98원1016 99허1775 99후1843(파기) 2001허4395(환송)	전기보온밥통, 밥솥, 전기믹서, 전기후라이팬 등		'MAGIC' 또는 '매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 구분의 동일, 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어 'MAGIC'은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	
	MAGIC JAR	40-84-001096 MAGIC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98항원36 98허10482 99후1485(파기) 2001허4388(환송)	한식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등	요식업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서비스업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두 서비스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			
2000당516 2000허6172	포도당, 과당 등	비스켓, 카스텔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Kinder"는 그 지정상품인 포도당, 과당, 유당, 맥아당 등 당류와 관련하여 그 사용의 대상이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eukal" 부분이다.	
		KINDER (인용상표1) kinder (인용상표2)		
2000당516 2000허6172	포도당, 과당 등	비스켓, 카스텔라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Kinder"는 그 지정상품인 포도당, 과당, 유당, 맥아당 등 당류와 관련하여 그 사용의 대상이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eukal" 부분이 되는바, 이는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가 독일 국적의 법인이며 그 상단부에 위치한 'Kinder'가 역시 독일어에서 유래하는 단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거래계에서 독일어식 발음에 의하여 '오이칼'로 호칭되거나, 또는 흔한 영어식 발음법에 따라서 "유칼"이나 "이유칼"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eukal"이 위와 같이 "유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유카'로 호칭되는 인용상표 3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린이 형상의 도형이 문자 부분과 결합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유카 (인용상표3)		
2000당1182 2001허898	베이비파우더, 베이비오일 등	화장비누, 샴푸우 등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앙또'와 '마망' 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거나, 앞의 세음절인 '비앙또'만으로 인식, 호칭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전체로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비앙또마망	비엥또 (인용상표1) VIENTO (인용상표2)		
1999원2115 2000허785	컴퓨터, 프린터, 기록된 컴퓨터프로그	직류발전기 등 / 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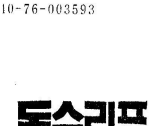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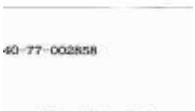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0후2453	램 등	구,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등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 “AceLink”는 5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체로서 관찰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다.	
	AceLink	**ACE 에이스 / LINK**		
1999당1543 2000허2101 2000후3074	향수, 콤팩트 등		(가)호 표장의 “MOSAIC COMPACT POWDER” 부분은 모두 식별력이 없으므로, 나머지는 “AERY JO”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모 자 이 크 MOSAIQUE	*AERY JO* MOSAIC COMPACT POWDER		
1997당714 1998허7776 1998후2764(파기) 2001허2603(환송)	골뱅이	우렁이	(가)호 표장 중 위 세로로 표기된 “큰구슬”을 포함한 문자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그 사용되는 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슬골뱅이			
2000당1323 2000허8543 2001후당1419(심불)	돈육, 햄 등	우육, 계란 등	양 상표들은 색채의 유무, 도형의 형태, 글자의 구성, 수, 글자체 등에 있어서 차이가 현저하므로 외관상으로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요부는 한글 “청미원”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한글 “청미원”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청”과 “미원”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청미원”으로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미원"으로 3음절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모두 "미원"으로 2음절로 호칭되어, 양 상표들은 그 음절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 상표들은 첫 음절이 "청"과 "미"로 현저하게 상이하고, 특히 문자상표의 경우 어두부분의 발음이 청각상 강한 인상을 주게 되어 중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상표들은 그 청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청미원"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맑고 깨끗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동산이나 정원' 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인용상표들에 의하여 '맛의 으뜸, 근원'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다.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2000당1322 2000허8536	돈육, 우육 등	우육, 계란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부분 “청미원”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청”과 “미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1후당1426(심불)	청미원	MIWON (인용상표1) MIWON (인용상표2) 미원 (인용상표3)	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청미원"으로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미원"으로 3음절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모두 "미원"으로 2음절로 호칭되어, 청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청미원"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맑고 깨끗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동산이나 정원' 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인용상표들에 의하여 '맛의 으뜸, 근원'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다.	
1999원3259 2000허2385 2000후3791	건제어개류, 계란, 햄버거 등 함박웃음	우육, 돈육, 계란 등	위 도형부분은 일반인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는 도형 내지 기호에 속하는 것으로 자타상품의 출처에 대한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함박웃음"으로 인식되므로 구체적인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2000원163 2000허7311	나이트까운, 파자마 등 A/X	학생복, 이브닝 드레스 등 AX	이 사건 출원상표는 "A"와 "X"가 슬래쉬(/)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그 도형 및 문자부분으로부터 "쌍 도끼" 또는 "도끼"라는 관념이 발생하므로 양 상표는 관념이 다르다. 인용상표는 "쌍 도끼, 도끼" 또는 "액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 엑스" 등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0당674 2000허7762 2001후805(심불)	향수, 치약 등 ARMANIMANIA	향수 등 매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단어인 "MANIA" 앞에 있는 "ARMANI"가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에 불과하여 "ARMANI"와 "MANIA"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뒷부분의 구성인 "MANIA"만으로 약칭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인 "매니어" 또는 원고가 당원에 와서 주장하는 "MANIA"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2001당762 2001허5275 2002후406(심불)	녹차, 맥엽차 등 사라락티 태평양	동서 사그라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라락'과 식별력이 없는 '티'부분으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글자의 크기에 있어서도 '티'를 작은 글자로 표기해 놓고 있다), ㈜호 표장 역시 '사그라'와 식별력이 없는 '티'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 세음절로 되어 있는 '사라락'과 '사그라'는 그 외관, 관념이 다를 뿐 아니라 호칭에서도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두음절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용된다고 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98당1096 99허5005 99후3023	한방침술강좌업	한방수지침술강좌업, 세미나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는 유사하지 않다.	
				
2000당395 2000허7120	열쇠케이스, 신사복 등	방화피복, 서류가방 등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씨씨디엘"로, 인용상표들의 문자부분은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인터내셔날"로 불려지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이 "악어머리"로 인식되고, 그 옆에 "CcDL"이라는 문자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CcDL"이라는 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로마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관념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인용상표1~2)  (인용상표3)		
1997항원479 1998후287	신문, 그림엽서 등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1999원4845 2000허3494	아동복, 유아복 등	팬츠, 콤비네이션내의 등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 "PALAIS CHARLE"는 외관상 서로 떨어져 있으나 전체 음절수가 비교적 짧고 그 중 "PALAIS"는 '궁전, 저택, 댄스홀, 프랑스 정부청사' 등의 의미가 있으며 "CHARLE"는 외국인의 이름이므로, 위 두 부분이 결합되어 'CHARLE의 저택, 궁전' 등의 새로운 관념을 낳으므로 위 영문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표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호칭은 위 영문자의 일본어 표기 부분인 "パレシャルレ"(이는 외관상으로도 붙어 있다.)에 의하여 "빠레샤루레"로 호칭될 수 있고, 영문자 "PALAIS CHARLE" 부분에 의하여 프랑스어로는 "빨레사르레"로, 영어로는 "팰레이 샤를" 또는 "팰레이 챨"로 호칭되거나, "PALAIS"가 어려운 단어임을 고려하여 철자대로 음역하는 경우에는 "팔라이스 샤를" 또는 "팔라이스 챨"이나 "팰래이스 샤를" 또는 "팰래이스 챨"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99원4864 2000허3609	기침약, 감기약 등	토양개량제, 식물호르몬제 등	양 상표의 첫 번째 음절의 일부와 두 번째 음절은 동일하지만, 인용상표 중 '톱신' 부분이 특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탭신	톱신엠	별한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고, '엠' 부분만이 그 자체로 혹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 등도 없어, 그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2음절어, 인용상표는 3음절어인 문자상표로서 음절수가 다르고, 각 첫 번째 음절인 이 사건 출원상표의 '탭'과 인용상표의 '톱'도 완전히 동일하게 호칭되는 것은 아니며, 인용상표의 세 번째 음절 '엠'이 약하게 발음되어 청감이 잘 안 되는 음절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탭신'과 인용상표 '톱신엠'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1999원4863 2000허3593	기침약, 감기약 등	토양개량제, 식물호르몬제 등	양 상표의 첫 번째 음절의 일부와 두 번째 음절은 동일하지만, 인용상표 중 '톱신'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고, '엠' 부분만이 그 자체로 혹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 등도 없어, 그 구성 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2음절어, 인용상표는 3음절어인 문자상표로서 음절수가 다르고, 각 첫 번째 음절인 이 사건 출원상표의 '탑'과 인용상표의 '톱'도 완전히 동일하게 호칭되는 것은 아니며, 인용상표의 세 번째 음절 '엠'이 약하게 발음되어 청감이 잘 안 되는 음절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탑신'과 인용상표 '톱신엠'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탑신	톱신엠		
1998원3529,3555 (병합) 1999허7476	학생복, 반코우트 등	학생복, 모자 등	이 사건 출원상표 2와 "뽀빠이"로 호칭, 인식되는 인용상표를 대비하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	
	popeyes (출원상표2)			
99당682 2000허426 2000후1382(파기) 2000허7359(환송)	요식업, 대중음식점업 등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넥바아업 등	양 표장의 식별력 없는 문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만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도형이 의인화된 돼지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돼지" 또는 "돼지표"라고 호칭하고 관념하기보다는 " 조리사" 또는 "주방장" 등의 관념이 인식될 것이고 특별한 호칭은 떠오르지 아니할 것인데 반하여, (가)호 표장은 인물초상도형과 "許家네"라는 문자부분으로 인하여 "허가네"라고 호칭되고 허씨성(姓)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족발)음식점이라고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	
				
1999당447 2000허13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업 등	식당체인업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를 이루는 "토랑" 부분과 (가)호 표장의 호칭인 "돈토"를 비교하면{(가)호 표장은 두 글자만으로 구성되고 "돈"과 "토"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서로 호칭이 상이함이 명백하다. 관념에 있어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돈 토랑	돈토 豚土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돈"이 돼지를 의미하고 "토랑"은 특별한 관념이 없는 반면, (가)호 표장은 그 한문자에 의하여 "돼지의 땅"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돼지"의 관념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을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1999원2008 1999허9328	아이섀도우, 눈썹연필 등	향수, 아이섀도우 등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인바, 인용상표 1 및 2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므로 서로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AQUATEINT MAT	MAT (인용상표1) MATT (인용상표2)		
1999원2036 1999허8066	살균제, 살충제 등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등	인용상표를 그 구성부분인 '큐'와 '마진'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체불가분적으로 호칭하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는 이를 일체로서 파악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대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눈 '큐마진'으로 호칭되고 이 경우 앞글자인 '큐'의 청감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마진'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는 그 호칭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자 '마진'과 영문자 'MARZINE'을 2단으로 횡서병기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한글자 '큐마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그 의미를 대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것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진 MARZINE	큐 마 진		
1997원2282 2000허1634	컴퓨터, 컴퓨터모니터 등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uni"와 "POS"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uni"와 "POS"로 분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서비스표는 "유니포스"로 호칭되고 인용서비스표는 "포스" 또는 "피오에스"로 호칭될 뿐더러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uniPOS	POS		
1999원 3550 2000허1252	망토, 잠바 등	양말, 양복바지 등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hristian" 부분 내지 "크리스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Christian Lee(크리스챤 리)'나 그 요부에 의하여 'Christian(크리스챤)'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관념이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Christian Lee	LEE		
1998당306 1998허1119	향수, 일반화장수 등	피부미용 화장품	식별력이 없는 도형과 영문자 "WHITE"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더라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후1508	LANEIGE	WHITENEIGE	이 사건 등록상표와 “NEIGE”만으로 되어 있는 (가)호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상이하다.	
1998당1203 1999허2327 1999후1621	완구셋트, 플라스틱제 완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요부는 “TAMIYA"라 할 것이고, (가)호 표장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지만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문자부분인 “TRISTAR"로 호칭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의 주된 요부 역시 “TRISTAR"라고 할 것이며, “타미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트리스타”로 호칭되는 (가)호 표장이 호칭에 있어 서로 상이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가)호 표장은 “세 개의 별”이라는 의미로 각 관념되어 역시 동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1996당549 1998허4081 1998후2894	양복바지, 슈우트 등	면장갑,용접용가죽장갑 등	외관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이나 문자부분에 인용상표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보이” 또는 “런던보이” 등으로 불릴 가능성이 크고 인용상표들은 “독수리”표로 불릴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1999당1152 1999허9014	서적, 팜프렛 등	직접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이 사건 출원상표 “INTELIS”는 “인텔리스”로, 인용상표 1, 2는 “인텔”로 각 호칭되고, 인용상표 3도 앞 부분인 “intel”만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역시 “인텔”로 호칭될 것인바,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인텔리스”와 위 인용상표들의 호칭인 “인텔”은 앞 부분 2음절이 같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4음절로서 뒷부분 2음절 “리스”가 약하게 발음되는 흔한 부가어도 아니므로 2음절에 불과한 인용상표들과는 그 청음에 있어서 유사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모두 조어상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념을 연상할 수 없어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NTELIS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인용상표3)		
1997항원1732, 1733(병합) 1998허6803 1998후2627	스킨로우션, 아이섀도우 등	향수, 입술연지 등	인용상표들과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호칭면에서 본원상표는 '보비브라운'으로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보비'로 호칭되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면에서도 본원 상표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성명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그 상표권자인 미국 Mattel사의 유명한 상품인 '바비(Barbie)'인형의 다른 발음 정도로 인식되어 역시 다르다.	
	BOBBI BROWN essentials			
1999당490 1999허7223 2000후716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아캄프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캠프탈"로 호칭될 것인바,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없는 "아"가 첫 음절에 부가되어 있고 나머지 음절과 일체불가분적으로 호칭되며 어두부분의 발음은 강하게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고, 나머지 두 번째 음절은 "캄"과 "캠"의 극히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 음절이 "랄"과 "탈"의 차이가 있어 이들 차이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캄프랄	캠프탈		
1999원71 1999허6688	텔레비젼방송업, 위성방송업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위 표장들은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나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에 있어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도 '애니'나 '맥스' 만으로 호칭될 수 없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한편 조어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인용서비스표들과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다.	
	ANIMAX			
1999당411 1999허7827	세탁비누, 화장비누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SENSTIME"과 인용상표 1은 앞부분 "SENS"가 동일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현저하게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센스타임 SENSTIME	40-82-014323 SENSODYNE (인용상표1) 40-92-017675 센소다인 (인용상표2)	중 “센스타임”과 인용상표 2는 첫 글자 “센”만 동일하고 나머지 세 글자가 모두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청감상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칭호상으로도 유사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SENSTIME”과 “센스타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지만 “SENS”는 “느낌”, “감각” 등의 뜻을 갖는 “SENSE”와 칭호가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을 때” 등으로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은 조어상표로서 별다른 관념이 없으므로 양 상표들은 관념에서도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여진다.	
1999당1104 1999허9274	보통안경, 코안경 등	보통안경, 선글라스 등	등록상표는 알파벳 발음에 따라 “클루벨레모어”, “클러벨레모어” 등으로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엘레” 또는 “엘르”로 호칭되므로 호칭이 전혀 상이하고, 양 상표는 조어상표로서 관념 또한 서로 대비될 수 없으며, 외관 역시 매우 상이하다.	
	CLUBELLEMORE	ELLE		
1999당916 1999허8691	소다팝, 광천수 등	녹차, 과실액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NEMOCAO”의 영어철자 7자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LEMO”의 영어철자 4자로 구성되어 외관이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네모카오”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레모”로 호칭되므로 비록 첫 두 음절의 호칭이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음절을 더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도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NEMOCAO	LEMO		
1999당560 1999허7896	녹차, 과실액 등		이 건 등록상표는 “NEMORANGE”의 영어철자 9자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LEMO”의 영어철자 4자로 구성되어 외관이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건 등록상표는 “네모레인지”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레모”로 호칭되므로 비록 첫 두 음절의 호칭이 유사하나 이 건 등록상표는 세 음절을 더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도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이 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NEMORANGE	LEMO		
1999당761 1999허7902	녹차, 과실액 등		이 건 등록상표는 “NEMOMATE”의 영어철자 8자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LEMO”의 영어철자 4자로 구성되어 외관이 유사하다 할 수 없고, 이 건 등록상표는 “네모메이트”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레	
	NEMOMATE	LEMO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모"로 호칭되므로 비록 첫 두 음절의 호칭에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건 등록상표는 세 음절을 더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도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이 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아무런 뜻이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1999당330 1999허5647	인삼주, 맥주 등	농산물 이유식, 축산물 이유식 등	이 건 등록상표는 "오행"으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오행생식"으로 호칭되므로 비록 첫 두 음절의 호칭이 동일하나 인용상표는 두 음절을 더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호칭도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이 건 등록상표는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원소를 의미하나 인용상표는 사람의 오행체질에 맞게 음식물을 생식한다는 뜻의 조어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오 행	오행생식		
1994당590 95항당368 97후3272	피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등	"PIZZA"는 지정서비스업의 취급 물품 내지 주요 메뉴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요부는 각 그 도형 부분이라 할 것인데도형부분만을 대비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MR·PIZZA	mister PIZZA		
1999원773 1999허7926	밴(VAN)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등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등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할 것이니, 일반수요자들이 이 건 출원서비스표를 "Hi"와 "LIFE"로 분리하여 "LIFE"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이 건 출원서비스표를 전체로서 호칭·관념할 것이다. 인용서비스표는 라이프(LIFE)와 라인(LINE)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를 특징적인 부분에 의하여 간략히 호칭하고 기억하려는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서비스표는 라이프(LIFE) 또는 라인(LINE)만에 의하여{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강하게 인식되므로 주로 앞부분의 라이프(LIFE)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반면에 하이픈은 두 낱말을 잇는 부호인 점 및 인용서비스표는 그 발음이 5음절에 불과한 짧은 단어로 구성된 문자 상표인 점을 고려하면, 인용서비스표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서비스표를 전체로도 호칭·관념할 것이다.	
	HiLIFE	41-93-7625 라이프/라인 LIFE-LINE L		
1998원3376 1999허3658	한식점경영업	식당체인업	호칭에 있어서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백두대간"으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인용서비스표는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백두대간	41-90-001037 백두	“백두”로 호칭되므로 비록 첫 두 음절의 호칭이 동일하나 이 건 출원서비스표에 있어서 첫 두 음절과 동일한 정도로 강한 음인 후 두 음절이 인용서비스표와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호칭도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 이 건 출원서비스표는 한반도의 등뼈에 해당하는 산맥 전체를 의미하는 것에 반하여 인용서비스표는 “허옇게 센 머리”를 의미하거나 백두산에서 “산”을 생략한 의미로 인식되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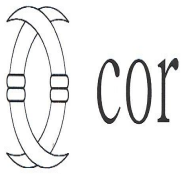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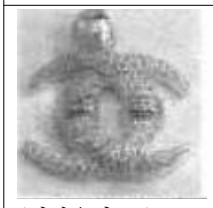
제4장 상표의 동일성 판단사례

제1절 상표등록취소심판 관련 동일성 판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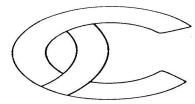
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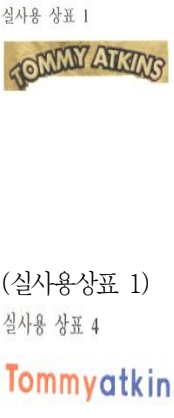
1. 등록상표와 상표권자의 사용상표의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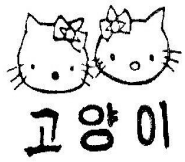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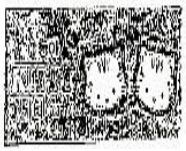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0당752 2011허1654 2011후2152(진행중)	인터넷쇼핑몰시스템 유지관리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 대행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 구축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유지관리업 등	양 표장은 글자의 내용에서 'K' 다음의 글자가 ''(이는 영문 소문자 't'를 도형화한 것으로 보이나,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영문자 't'로 인식된다)인지 ''인지에서 차이가 있고, 글자의 색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글자의 내용이 같고, 글자 전체의 배치 형태나 글자체 등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Ktdom	KTdom		
2010당752 2011허1654 2011후2152(진행중)	인터넷쇼핑몰시스템 구축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유지관리업 등	유무선 정보통신사업 전반	사용서비스표는 'KT' 부분과 'dom' 부분이 글자체 및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되어 있고, 그 중 'KT' 부분은 비교대상서비스표 "KT"와 글자체나 색상, 글자 내용 등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양 표장의 외관은 유사하다. 실사용서비스표는 글자체나 색상 등에 의해 'KT'와 'dom' 부분이 구분되거나 분리되어 '케이티' 또는 '케이티 돔' 등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케이티'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국, 양 표장은 'KT' 부분이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KTdom	KT		
2009당1514 2010허7778	핸드백, 서류가방 등	핸드백	실사용상표는 문자 부분인 ''가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보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고 여전히 영문자 'CG'로 인식될 것으로 보여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문자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영문자 'C'와 'G'가 결합된 것이어서 유사하다. 그러므로 실사용상표는 요부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CHRISTIAN GEORGES	 (실사용상표)		
2009당1514 2010허7778	서류가방, 오페라백 등	핸드백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3을 대비하여 보면, 실사용상표의 기본 구성요소는 영문자 'C'와 왼쪽이 곧게 변형된 영문자 'G'를 결합한 ''인 반면에 대상상표 3은 기본 구성요소가 영문자 'G'와 이를 시계방향으로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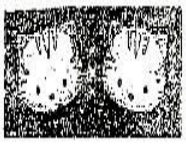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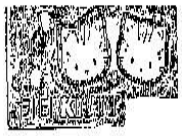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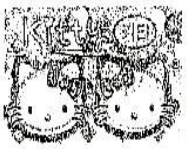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3)	뒤집은 형상을 서로 마주보게 구성한 ''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자 부분이 마름모꼴로 반복 배열되어 있고 각 문자 부분은 2개의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같고, 문자 부분 자체도 누운 8자 형태와 비슷하여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그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2008당2375 2009허3404 2009후3626(심불)	귀걸이, 넥타이핀 등	반지, 귀걸이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알파벳 부분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호칭될 수 있으며, 그 도형 부분에도 식별력이 인정된다. 한편,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알파벳 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형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식별력이 있고,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가로와 세로의 비율만을 달리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아주 유사하므로, 일단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2008당2375 2009허3404 2009후3626(심불)	반지, 귀걸이 등	반지, 귀걸이 등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알파벳 C자 두 개를 등을 맞대어 교차하도록 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관념과 호칭을 대비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 유사하다	
	 (실사용상표1)	 (대상상표 1)		
	 (실사용상표2)	 (대상상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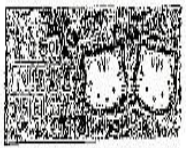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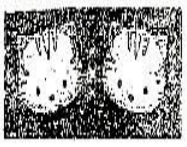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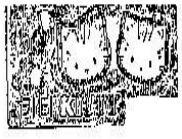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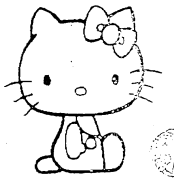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3)			
2007당91 2007허12794	등산백, 패킹백		실사용상표는 그 구성 중 붉은 스플래시(물감이나 페인트를 흩뿌린 형태) 도형과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차이가 있고, 실사용상표의 위 스플래시 부분은 붉은 색등으로 표시되어 단순히 부가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식별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서로 동일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		
2007당91 2007허12794	볼링가방, 볼링셔츠 등		대상상표의 구성은 ''와 같고 그 사용상품은 볼링가방, 볼링셔츠 등인데,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는 색상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스플래시 도형 위에 영문자 'HAMMER'가 기재된 망치가 표기되어 있는 표장으로서 호칭과 관념, 외관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표장이 극히 유사하다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2007당421 2007허10361	탄산수, 탄산수 제조제 등	맥아음료	등록상표가 명조체의 단순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실사용상표는 영문자 부분을 청색 바탕의 음각으로 바꾸고 입체감을 부여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사용상표)		
2007당421 2007허10361	맥아음료	맥주	대상상표는 '카스'로 호칭되며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사용상표는 관용적인 발음과 관념을 모두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그 호칭은 서로 같지 아니하고 관념도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외관을 비교하면, 모두 'C'로 시작하여 'SS'로 끝나는 4개의 영어철자로 이루어진 영어단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위 'C'와 'SS' 사이에 대상상표에는 'a'가, 실사용상표에는 'r'이 삽입되었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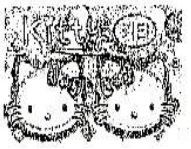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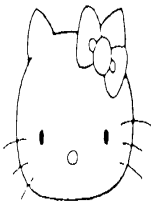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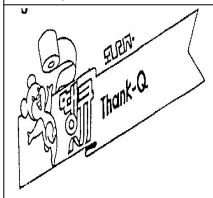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대상상표)	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06당2962 2007허11210	우산, 양산 등	여성의류, 가방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TAE KWANG"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창출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TAE KWANG"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 인식·호칭될 수 있고,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TAE KWANG"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TAE KWANG SYSTEM	SYSTEM		
2005당1688 2006허1667 2006후1858(상고취하)	건과자, 땅콩과자 등	초콜릿	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 중 영문자 부분만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한글 부분이 탈락되어 있고, "CHOCOLAT"과 초콜릿 형상 및 바탕 도안이 추가되어 있는 구성이거나 타원형 바탕 도안 속에 영문자 부분만 상하 2단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등록상표와 유사하면서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FEBEMO MECHER 페베모메세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2005당1688 2006허1667 2006후1858(상고취하)	초콜릿, 비스켓 등	초콜릿	외관이 유사하고, 두 상표는 음절 수가 동일하고, 강조되어 불리는 첫음절과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며, 나머지 음절의 모음도 일치하므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상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2005당186 2005허5907 2006후1094(심불)	서류가방, 핸드백 등	핸드백, 서류가방 등	실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도형상표로서 서로 대비할 관념이 없고 도형에서 마땅히 연상되는 호칭도 없으므로 외관에 의하여 대비하여 그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위 C자의 볼록한 부분이 일부 절단되었는지 여부, 위 호가 연장되었는지 여부, 착색되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실사용상표1)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이를 부기, 변형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2005당186 2005허5907 2006후1094(심불)	핸드백, 서류가방 등	핸드백, 서류가방 등	실사용상표들의 표장은 좌우 대칭의 도형을 부자연스럽게 절단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실사용상표들을 핸드백의 앞면의 가장자리에 밀착하여 부착함으로써 실사용상표들이 본래 대상상표들과 유사하게 좌우 대칭의 표장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여 대상상표들의 저명성에 편승할 적극적인 목적으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에 의한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대상상표1)  (대상상표2)	
2001당1893 2002허8042 2003후2263	혁대, 방수피복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tommyatkins"에 "영국 육군의 병사"라는 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을 "tommy"와 "atkins"로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미 없는 조어로 인식할 것인데 반하여, 실사용상표 1 및 실사용상표 4는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과 "SPORTS"라는 문자를 삭제하고, "tommy"와 "atkins" 부분을 띄어쓰고 각 문자에 도안을 가미하거나(실사용상표 1) "tommy"부분은 적색, "atkins"부분은 청색으로 각 채색한 것으로서(실사용상표 4), "tommy"와 "atkins" 부분은 분리되어 인식되고 특히 "tommy"라는 단어가 미국 남자의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인 점에 비추어 "tommy"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도 있는바, 실사용상표 1, 4는 위와 같은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변형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4)		
2001당1893 2002허8042 2003후2263	혁대, 방수피복 등	오우버코트, 반코트 등	대상상표 1, 3, 4, 5와 실사용상표 1, 4는 모두 "Tommy"와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 어려워 "Tommy"만으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 상표 1  (실사용상표 1) 실사용 상표 4  (실사용상표 4)	T O M M Y HILFIGER (대상상표 1)  (대상상표 3) TOMMY JEANS (대상상표 4)  (대상상표 5)	분리되어 인식 및 호칭될 수 있고, 따라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며, 위 상표들은 모두 의류 및 신발 등의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들이므로, 실사용상표들이 그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은 이를 원고 또는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상품으로 그 출처를 혼동하거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	
2002당2494 2003허1536 2003후2713	종이 물수건, 화장지 등 NUK 누크	유아용 우유 젖꼭지, 젖병 등 NUK (대상상표)	각종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고로서도 국내에서 대상상표가 부착된 유아용 물티슈를 취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대상 NUK 상표는 "누크"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50438호)와 그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이다.	
2000당2105 2002허1164 2002후2297(상고취하)	그림물감, 파스텔 등  고양이	향수, 비눗갑 등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먼저 실사용상표 1, 2, 9는 도형 부분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좌우로 배치된 것을 하나의 고양이 머리 도형만 표시하거나 또는 상하로 배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글 문자인 '고양이' 부분이 삭제되고 영문자 'KITTY'나 한글 '키티'가 추가되었으며 고양이의 얼굴의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 실사용상표 3, 4, 5, 6, 7, 8은 고양이 두 마리의 머리 도형을 좌우로 나란히 배치하였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역시 한글 문자 부분인 '고양이'가 생략되었고 대신 'KITTY'라는 영문자 부분이 고양이 머리 도형의 주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고양이의 얼굴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도 귀에 묶은 리본이 생략되고 대신 이마에 줄무늬가 표현되어 있는 등(실상용 상표 4, 5, 6, 7의 경우)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고양이 머리그림'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4)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실사용상표7)  (실사용상표8)  (실사용상표9)		
2000당2105 2002허1164 2002후2297(상고취하)	그림물감, 파스텔 등	향수, 비눗갑 등	이 사건 대상상표들은 대상상표 4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양이를 의인화한 모습의 도형과 영문자 'HELLO KITTY'문자의 결합상표이거나 영문자 'KITTY' 또는 'HELLO KITTY'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원고의 실사용상표들은 고양이를 의인화한 모습에 'KITTY'라는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이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대상상표들은 '헬로 키티(대상상표 4, 6, 8을 제외한 모든 대상상표)' 또는 '키티(대상상표 6, 8)'로, 원고의 실사용상표들은 '키티'로 호칭되는데,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원고실사용상표1)  (원고실사용상표2)  (원고실사용상표3)  (원고실사용상표4)  (원고실사용상표5)  (원고실사용상표6)  (원고실사용상표7)	 (대상상표1,2,5,7, 10,12,13,16,17)  (대상상표3,15)  (대상상표4)  (대상상표6,8)  (대상상표9)	각 상표들의 '키티' 부분은 '새끼고양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이고, 대상상표 중 '헬로' 부분은 영어 인사말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상표 4를 제외한 대상상표들이나 실사용상표는 모두 다 같이 '키티'로 약칭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호칭이 동일하고, 다음으로 관념에 있어서는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도형 부분이 모두 고양이를 의인화한 모습이고, 'KITTY'는 '새끼 고양이'라는 뜻을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임에 반하여 대상상표들의 'KITTY' 부분을 제외한 단어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모두 '고양이'로 관념 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원고실사용상표8)  (원고실사용상표9)	 HELLO KITTY (대상상표11,14)		
2001당124 2001허6650	종이물수건, 종이손수건 등 땡 큐 플 러 스 2	한지, 나프킨용지 등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는 아기곰 모양의 도형, 평행사변형 도형 및 “땡큐 플러스+”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한글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그 외관이 상이하여 동일한 표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문자부분 및 이로 인한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있다.	
2001당124 2001허6650	한지, 나프킨용지 등  (인용상표)	 (실사용상표)	그 외관이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느껴지는 관념 또한 “아기곰 상표” 등으로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문자부분에 의하여 “땡큐”라고 호칭될 수 있으므로 실사용상표와 인용상표는 동종·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99당2175 2000허5346	바지, 스커어트 등 	의류제품 PELLE PELLE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순히 영문자 “PELLE" 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첫 글자 ”P"의 앞과 마지막 글자 “E"의 뒤에 짧은 직선이 표시되어 있을뿐더러, 실사용상표는 영문자 ”PELLE"를 두 번 반복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상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95당594 2000허4190	플라스틱완구, 세트완구 등	완구용 건축블록, 완구용 건축재료 등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첫 철자인 ‘T'와 ‘L'은 서로 상이하나 모음인 ‘E, O'가 동일하고 ‘C'와 ‘G'가 유사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서체도 동일하며, 또 위 실사용상표는 적색의 배경 하에 노란색의 바탕, 검은색의 테두리가 있는 흰색 글씨 등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사용된 대상상표와 그 색상 및 그 배열에 있어 동일한 점 등 양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아이디어, 모티브 등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그 호칭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다만 양 상표는 모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TECO 테코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두 조어상표로서 그로부터 특정한 관념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관념을 대비하기는 부적절하다) 위 실사용상표로부터 주지 저명한 대상상표가 쉽게 연상됨으로 인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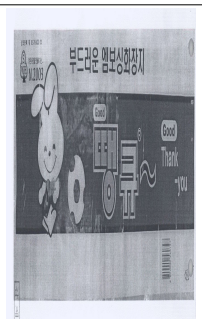
2. 등록상표와 상표권자의 사용상표의 동일성이 부정된 사례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7당1392 2008허2589 2008후3919(심불)	맥주, 맥주용 맥아즙 등	맥아음료,, 맥주 등	양자는 모두 영문자 대문자 'C'와 소문자'des'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비하여 실사용상표의 'd'는 약간 짧고, 'es'는 약간 크게 구성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형의 정도는 크지 아니하여 'd'가 'a'로 보이거나 'es'가 대문자로 보일 정도는 아니어서, 실사용상표의 글자체가 청색으로 되어 있고, 글자의 우측에 은색음영을 넣어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배경무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	
	Cdes	 (실사용상표)		
2007당704 2007허14141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SILVERLOCK 부분이 공통되고, 실버락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은과 관련된 반찬용 식품저장용기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NSC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2007당704 2007허14141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외관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자의 내용이나 글자의 모양, 색채 또는 도형의 유무 및 모양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사용상표들은 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 락앤락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실사용상표들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은과 관련된 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 또 채우는' 등으로 관념되어 관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LOCK & LOCK (대상상표)		
2007당703 2007허14158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은 동일성의 범주내에 있지는 않으나, SILVERLOCK 부분이 공통되고, 실버락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은과 관련된 반찬용 식품저장용기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SILVERLOCK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2007당703 2007허14158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외관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자의 내용이나 글자의 모양, 색채 또는 도형의 유무 및 모양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사용상표들은 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 락앤락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실사용상표들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은과 관련된 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 또 채우는' 등으로 관념되어 관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LOCK&LOCK (대상상표)		
2007당706 2007허14165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은 동일성의 범주내에 있지는 않으나, SILVERLOCK 부분이 공통되고, 실버락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은과 관련된 반찬용 식품저장용기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THENSCSILVERLOCK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6)		
2007당706 2007허14165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등		외관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자의 내용이나 글자의 모양, 색채 또는 도형의 유무 및 모양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사용상표들은 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 락앤락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실사용상표들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은과 관련된 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 또 채우는' 등으로 관념되어 관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LOCK & LOCK (대상상표)		
2007당705 2007허14134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은 동일성의 범주내에 있지는 않으나, SILVERLOCK 부분이 공통되고, 실버락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은과 관련된 반찬용 식품저장용기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THESILVERLOCK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6)		
2007당705 2007허14134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전체적으로 보면 문자의 내용이나 글자의 모양, 색채 또는 도형의 유무 및 모양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실사용상표들은 실버락으로, 대상상표는 락앤락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실사용상표들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은과 관련된 채우는' 등으로, 대상상표는 '채우고 또 채우는' 등으로 관념되어 관념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SILVERLOCK (실사용상표1) Silver Lock (실사용상표2) 실버락 (실사용상표3) SILVER LOCK (실사용상표4) Silver Lock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6)	LOCK&LOCK (대상상표)		
2004당2058 2005허4607	화장실용 휴지,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등	화장지, 한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THANK YOU'와 N2003는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주로 인식되는 부분은 '삼환'이고, 실사용상표에서는 토끼와 공 도형 및 (S WH) 도형이어서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삼환 N2003 땡큐(THANK YOU)	 (실사용상표)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2003당2410 2004허3058 2004후3218(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등산백, 배낭 등	등산백, 배낭 등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SOMA" 부분을 크게 표시하여 맨 위에 배치하고, 현저한 지명으로서 식별력이 약한 "LONDON"의 글씨체를 "London"으로 바꾼 다음 간단하고 흔한 사각형의 도형안에 넣어 그 밑에 배치하고, 한글 "런던소마"의 각 글자 사이를 "·"로 연결하여 "런·던·소·마"로 변형하여 맨 아래에 배치한 것으로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작게 표시하고 단어의 배치를 약간 달리한 것인긴 하나, 이	
	LONDON SOMA 런 던 소 마	SOMA London 런·던·소·마 (실사용상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또 구성부분들이 모두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003당2410 2004허3058 2004후3218(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등산백, 배낭 등	등산백, 배낭 등	실사용상표는 영문자부분만에 의거 "소마" 또는 한글 부분만에 의하여 "런던소마" 등으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대상상표 1은 위와 같이 영문자 "SODA"를 도안화한 관계로 "소다"로 호칭될 것이고 대상상표 2도 영문자 "SODA"나 한글자 "소다"에 의하여 "소다"로 호칭될 것이어서, 두 음절 중 첫음절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둘째 음절의 초성이 "ㅁ" 대 "ㄷ"으로 서로 다른바, 그 청감이 명백히 구별된다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실사용상표는 사전상 "[생물] 체세포, (정신에 대해) 몸, 신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반하여, 대상상표들의 "SODA"는 "소다, 나트륨 화합물(특히 탄산소다, 중탄산소다, 가성소다 등)"이라는 의미가 있어 서로 다르다.	
	SOMA London 런던소마	SODA (대상상표1) SODA 소 다 (대상상표2)		
2002당23 2003허(당)4467 2004후677(심불)	그림물감, 편지지 등	파스텔, 팔레트 등	만일 실사용상표들이 '키티'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경우 대상상표 1과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5, 6이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경우 대상상표 2의 고양이 얼굴의 도형과 그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사용상표들을 포함한 헬로키티 상표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받은 1991. 9. 17. 무렵에는 이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도시락, 쇼핑백, 인형, 가방류, 주방용품, 액세서리 등 팬시상품에 있어서 피고의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구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피고의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대상상표들은 1988. 2. 10. 출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상품인 문구류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1999년경 이후 대상상표 2를 일부 변형한 형태로 사용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KITTY 키 티 (대상상표1) 고 양 이 (대상상표 2)	Hello Kitty サインペンセット (실사용상표1) Hello Kitty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4)  (실사용상표5)  (실사용상표 6)		
98당368, 371(병합), 372(병합) 98허(당)10925 99후(당)1317 2002허536	스카프, 스포츠 셔츠 등    RapaPOLO	양복바지, 신사복 등   	대상상표 1 내지 3은 각 말을 타고 폴로 경기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표현된 도형 부분이 그 요부(대상 상표 1, 3은 그 외에도 'Ralph Lauren'이라는 문자 부분 및 'POLO RALPH LAUREN'이라는 문자부분도 각 요부에 해당한다)이고, 대상상표 4는 '폴로'라는 문자부분이 요부라 할 것인데,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말을 타고 달리는 기수'의 모습이 입체적, 역동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POLO'라는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상표 1 내지 3과는 외관, 호칭, 관념이, 대상상표 4와는 호칭, 관념이 각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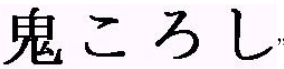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폴로		
96항당155 98후959	단화, 가죽신 등		“Champion”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슷한 시기에 뉴질랜드에서 등록되었을 뿐 그 구체적 사용실태나 사용내역, 우리나라에서의 주지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실사용상표 1의 외관이 대상상표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실사용상표 1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에 관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사용상표1)			
1999당1046 2000허82	인쇄잉크, 봉투 등	불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등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별지 3과 같은 것으로 이 사건 등록 상표 앞에 도형과 피고의 상호 “현진”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함께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상호부분도 분리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및 상호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다.	
		 (실사용상표)		

Ⅱ.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1.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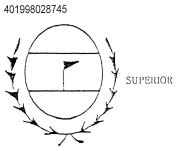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당2499 2010허7983	성형외과업, 병원업(성형외과에 관한 서비스업에 한함) 등	성형외과업	비록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노블레스 피부과·성형외과·에스테틱’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노블레스’나 ‘성형외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거래 일반의 수요자들에게 ‘노블레스 피부과’, ‘노블레스 성형외과’ 등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위 표장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취소심판 청구일(2009. 10. 19.)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성형외과업 등에 사용되었다.	
	노블레스 성형외과			
2009당2445 2010허8184	교육지도업, 교수업 emd	중국어판 홍보용 팸플릿 표지, 일본어판 홍보용 팸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피고가 위 각 팸플릿에서 사용한 표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양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릿 표지	는 글자체나 글자색 또는 '慶南大學校'에서 '大'와 '慶南皿學校'에서 '皿'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경남대학교라는 글자를 한글, 영문, 한자로 상하 3단으로 표시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皿' 부분 또한 '대학교'에서 '대'자를 도형화한 것으로, 대학교라는 표현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위를 끌 만큼 '大學校'라는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거나 그 호칭과 관념을 직감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표장에 있어서 글자체나 글자색, 도형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 두 표장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된다.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慶南皿學校		
2010당996 2011허217	경마공연업, 국악공연업 등	호텔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W'만이 식별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가적 부분에 불과하므로, 'W'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사용서비스표 1은 'W'로서, 위 'W'와 마찬가지로 알파벳 대문자 'W'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글자체와 형상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양 표장에 사용된 글자색과 바탕색에 차이가 있으나 위 색채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동일성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실사용서비스표 2인 'W' 역시 위 'W'와 같이 알파벳 대문자 'W'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위 대문자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SEOUL'과 'WALKERHILL'이 각 부기(附記)되어 있으나, 위 부기된 문자들은 지정서비스업인 '호텔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위 문자들이 부기되었다고 하여 위 'W'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사용서비스표1)		
	W HOTELS	(실사용서비스표2) W SEOUL WALKERHILL (실사용서비스표2) W SEOUL WALKERHILL (실사용서비스표2)		
2010당1443 2011허2022 2011후1067	등산화, 재킷 등	등산화, 재킷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 'TR'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서 현저한 식별력이 있는 위 'TUSCARORA'와 같은 문자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광고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의 사용을 이 사건 등록상	
	TR TUSCARORA	TUSCAR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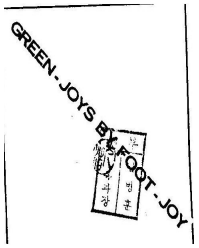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9당823 2010허5949	자동차타이어 유통업, 자동차타이어 판매대행업 등	자동차타이어 유통업, 자동차타이어 판매대행업 등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서비스표들은 모두 영문자 'TIRE PLUS'와 한글문자 '타이어 플러스'가 상하 2단(실사용서비스표 2, 3) 또는 좌우로 나란히(실사용서비스표 1) 배열되어 있는 점, ② 실사용서비스표들의 글자 색이나 하이픈(-) 부분은 전체 구성 중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아닌 점, ③ 실사용서비스표 3 중 'www.TIREPLUS.CO.KR' 부분은 판매원 등을 밝히는 도메인 이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글자 색 및 구성 부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정도의 변형만으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형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TIRE PLUS 타이어 플러스	 (실사용서비스표1)  (실사용서비스표2)  (실사용서비스표3)		
2009당863 2010허234 2010후1435 2010허8368(환송)	김, 미역 등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 중 일부에 부기된 '김' 내지 '돌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삼부자			
2009당206 2010허3417 2010후3080(상고기각)	제과점업, 카페테리아업 등	제과점업	주식회사 고려당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사용한 표장, 즉, 위 나무상자 및 나무판에 부착된 '木村屋'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표장과 글자체 및 테두리 유무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한자로 된 문자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므로, 거래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범위 내의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木村屋	 (실사용표장)		
2009당308 2009허7321 2010후1213	스포츠가방, 골프채(아이언) 등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한다.	
				
2007당2811 2008허12661 2009후1248(심불)	청주	청주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를 글자내용이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鬼ころし	鬼ころし 오니고로시	글자모양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표시하고 다만 그 하단부에 그 한글 발음인 "오니고로시"를 단순 부가한 것인데, '오니고로시'라는 부분은 단순한 한글 음역에 불과하고, 그 글자체 또한 상단의 일본어 글자체와 유사하며, 상단의 일본어 글자체에 비하여 작게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을 위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단순히 그 한글 발음을 부가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가로 인하여 새로운 호칭·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7당3256 2008허10368	신사복, 양복바지 등	자켓과 와이셔츠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SORGENTE"와 한글 "소르젠떼"가 상하로 가까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인 데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단지에 사용한 상표는 위 영문자와 한글이 각각 이 사건 전단지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위 영문자와 한글의 결합상태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위 영문자와 한글은 이 사건 전단지의 같은 면에 함께 표시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전단지에 표시된 영문자와 한글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문자와 한글의 결합상태가 다소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을 가진 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SORGENTE 소르젠떼	소르젠떼 (실사용표장) SORGENTE (실사용표장)		
2007당2231 2008허5953	트레이싱페이퍼, 방안지 등	트레이싱페이퍼의 포장박스, 제품 소개 카탈로그	실사용상표 2, 3은 'Weber' 외에 'Graphics'가 부가되어 있고, 색상이나 그림자 처리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Graphics'는 제도법, 도학(圖學), 도식(그래프), 화면에 표시되는 타이틀·크레디트·자막 따위의 총칭 등을 의미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사용상품과 같이 제도법 등에 사용하는 문구류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용도 등을 나타내는 단순 부가부분에 불과하고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5호증), 색상이나 그림자 처리도 식별력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부가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통념상 실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내에 있는 상표들이라고 할 것이다.	
	Weber	Weber Graphics (실사용상표2) Weber GRAPHICS (실사용상표3)		
2007당1977 2008허5601	양말		ARIES 사건 등록상표인 "에어리즈"와 피고가 양말에 부착하여 사용한 상표인 "ARIES 에어리즈"는 모두 별자리 중 '양자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ARIES'와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에어리즈'를 상하로 병기한 문자의 결합상표인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바탕과 문자의 색상에 다소	
	ARIES 에어리즈	ARIES 에어리즈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차이가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이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면서 바탕과 문자의 색상만을 달리하는 정도의 변형은 상표권자 등이 거래사회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흔히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들 상표는 위 영어단어 또는 한글에 의하여 모두 '에어리즈'라고 호칭되고 '양자리'로 관념될 것이어서 호칭 및 관념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7당1888 2008허3162 2008후3636(심불)	의약품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대행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 'MIR'와 한글 '미르'가 상하단으로 배열된 것임에도 실제 사용은 'MIR' 또는 '미르'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나, 그 사용이 하나의 화면 또는 하나의 잡지에서 일반 거래자나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은 그 배열 위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문과 한글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주 내에 속하는 사용이라 할 것이다.	
	MIR 미르	미르치과병원 Masterpiece Dental Hospital MIR·· MIR Magazine MIR NETWORK BRAND MIR STORY MIR NOTICE 미르뉴스 (실사용표장)		
2007당1887 2008허3155 2008후3650(심불)	병원업, 의료업 등		용된 표장을 살펴보면 '미르치과병원'과 'MIR DENTAL.CO.KR'이 홈페이지 상단에 병기되어 표기되어 있고, 같은 화면에 'Dental Hospital Mir' 또는 'MIR DENTAL' 등 'MIR'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실제 '미르치과병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개원하여 잡지 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은 영문과 한글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주 내에 속하는 사용이라 할 것이다.	
	MIR 치과 병원 미르	미르치과병원 MIR DENTAL.CO.KR Dental Hospital MirMIR DENTAL (실사용표장)		
2007당1889 2008허3148 2008후3643(심불)	의약품판매알선업, 의약품판매대행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실제 'MIR Network', '미르 네트워크', 'MIR NETWORK' 등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사용된 표장은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같이 상하 병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페이지 또는 같은 화면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은 영문과 한글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범주 내에 속하는 사용이라 할 것이다.	
	MIR Network 미르 네트워크	MIR Network 미르 네트워크 MIR NETWORK (실사용표장)		
2007당2449	향수, 향유 등	화장크림, 스킨로션	내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나 불어 수준, '와 같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허1845 2008후2749(심불)		등	은 기호가 비교적 작게 부가되어 있어서, 'PRÉCISION'을 '프레씨지옹'으로 발음하는 사람보다는 '프리시전'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되는 점, 'PRÉCISION'을 '프레씨지옹'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PRECISION CHANEL	PRÉCISION CHANEL		
2007당920 2008허224	플라스틱제 절연컵, 절연컵 등		원고가 사용한 위 "Aladdin"의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ALADDIN"과 비교해 볼 때 첫머리 'A'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의 글자꼴을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변형하여 구성하였을 뿐이므로, 이처럼 글자꼴을 변형하는 정도의 상표 사용은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LADDIN	Aladdin		
2007당988 2007허13797	재정금융업, 재정분석업 등	재정자문, 자산운영에 대한 서비스 등	원고가 사용한 서비스표인 "Sustainability"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SUSTAINABILITY"와 첫머리 'S'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문자의 글자꼴을 소문자로 변형하여 구성하였을 뿐이고, 등록서비스표의 글자꼴을 변형하는 정도는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형으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2006당2065 2007허7099 2008후408 2008허7003(환송) 2008후2985(심불)	단화, 비닐화 등		도형부분이 작아지면서 삼등분된 원 내의 셋째 단이 검은색이 되고, 영문자부분이 커지면서 글자체가 달라지며, 일곱 번째 문자 "O"의 폭이 다른 영문자보다 넓어지는 등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도형과 문자의 상대적 크기, 글자체, 글자크기 등의 변형으로 인하여 위 실사용상표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007당433 2007허10996 2008후1784(심불)	나리싱크림, 분말향수 등		양 표장은 모두 장미꽃이 개화되는 4단계를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각각 단계의 장미꽃 형상도 동일하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그 진행방향의 차이에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사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사용표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한 문자가 표시되어 있고, 단지 그 문자가 가로로 기재되어 있는지(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아니면 세로로 기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재되어 있는지(실사용표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사용표장이 포장지의 한쪽면에 문자부분을 더 크게 표시하기 위하여 세로로 문자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형사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006당2428 2007허10613	메밀가루, 메밀부침가루 등	메밀가루, 메밀부침가루 등	봉평농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된  "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면 색채, 구름의 모양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변형에 해당한다.	
				
2007당232 2007허6539 2008후507(심불) 2008허11521(환송) 2009후221(상고기각)	출판업, 학원경영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소멸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학습지에 표시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학습지에 표시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병기된 도안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 연			
2006당1929 2007허7860 2008후606(심불)	휴지, 화장지 등	스펀레이스 재질의 물티슈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아기사랑"이라는 한글 4글자를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한 문자상표인 점에서 동일하다. 문자에 외곽선을 두르거나 활자의 굵기를 달리하는 정도의 변형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상표는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들에 의하여 한글문자의 발음에 따라 모두 '아기사랑'으로 호칭되며, 한글문자의 뜻에 의하여 모두 '아기와 사랑' 또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관념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동일하므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범위 내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기사랑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		
2006당964 2007허4731	우산, 지팡이 등		취소심판이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골프화'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GreenJoys by FOOTJOY"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		
2005당2746 2007허1169	자켓, 청바지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대문자로 이루어진 영어 알파벳을 소문자로 변경하거나 그런 후 다시 하단에 물결무늬가 있는 밑줄 또는 앞부분에 도형(“ ”)을 부가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이라 할 것이다.	
	AIRWALK	 (실사용상표1) airwalk (실사용상표2) **airwalk** (실사용상표3)		
2003당1490 2004허4952 2005후1905 2007허(환송)6041	뉴스공급업 등		CD를 포장한 직사각형 상자곽의 옆 부분에는 한글로 된 ‘자동차생활’을 한 줄로, 상자곽의 윗면에는 영어로 된 ‘Car Life'가 포함된 것을 한 줄로 각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CD를 포장한 것에 불과한 상자곽의 크기, 상자곽의 옆 부분을 가득 메울 정도인 한글 크기와 윗면에 단독으로 기재된 영문자의 크기 및 위치, 각 문자의 배열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사회의 통념상 피고의 위와 같은 표지의 사용은 한글과 영문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범주 내에 속하는 사용이라 할 것이다.	
	자동차생활 CARLIFE	자동차생활 Car Life		
2006당604 2006허11589 2007후1961(심불)	금속제 밸브, 금속제 콕 등	금속제 밸브	이 사건 등록상표는 NSV라는 단순한 문자부분 자체가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고, 알파벳 대문자가 변형된 글꼴과 그 글꼴 사이에 부가된 온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라고 할 수 없다. 실사용상표는 구두점이 빠져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위 실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변경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N.S.V	NSV		
2005당2060 2006허8927	신사복, 아동복 등		실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동일성이 상실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ZRA 에즈라	EZRA(에즈라)		
2005당1001 2006허4130	종이제손수건, 직물제손수건		등록상표의 글자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영문 대문자를 소문자 등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흔히 쓰이는 도형 등을 부가하였더라도, 이로써 상표의 한 구성부분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MACKID	MACKiD MAC KiD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MAC•KiD		
2005당1807 2006허4178	항생물질제제, 동물용 약제 등		영문자 "CLAMOXYL" 부분이 소문자를 사용한 형태인 "Clamoxyl"로 변형되고 위 영문자 부분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한글 "크라목실" 부분이 또 다른 가능한 발음 표시 형태인 "클라목실"로 변형되어 상하가 뒤바뀌어 표시된 것과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영문자 'long acting'의 약어인 "LA"가 부가된 정도만으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이 있는 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CLAMOXYL 크라목실	클라목실 LA (Clamoxyl LA)		
2005당1217 2006허2943	롱코트, 반코트 등		실사용상표의 우측상단에 ®이 부가되어 있고, 하단 한글부분이 상단 영문자부분과의 전체적인 배열위치가 상이하지만, 글자체와 배열위치의 변형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부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사용상표는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것이다.	
	ROSEMARY 로즈메리 로즈마리	RoseMary® 로즈메리 로즈마리		
2005당1278 2005허9909	위생마스크, 귀걸이 등		영문자가 동일하고 단지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이다.	
	Orange County	ORANGE COUNTY		
2004당2702 2005허7958	보디셔츠, 스포츠셔츠		도안의 배치상태, 글자의 크기, 내용 등을 감안하면 영문자와 도형 부분에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거나, SPF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SPF	"SPF" "FABRICS"		
2002당3130 2003허4863 2004후622(환송) 2005허8609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체인점 경영업 등	닭요리전문점 경영업, 닭요리전문체인점 경영업 등	위 두 사용표장의 구성 중 한글 '치킨'이나 영문자 'CHICKEN' 부분은 닭요리전문체인점경영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시여서 서비스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두 사용표장의 한글과 영문자 부분의 글자체 변형의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한다거나 그 호칭과 관념을 직감할 수 없을 정도도 아니어서, 위 두 사용표장의 결합에 의한 실사용서비스표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모든 구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사용서비스표는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 변형에도 불구하고 거래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새 나 라 SAE NA RA	SAENARA CHICKEN (사용표장) 새나라치킨 (사용표장)		
2004당2754 2005허6542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전자응용자동판매기 등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전자응용자동판매기 등	다른 구성은 모두 같고 다만 영문자 'edition' 다음에 로마자 'Ⅰ'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로마자 'Ⅱ'가 붙어 있느냐 하는 차이만 있는바, 로마자 Ⅰ, Ⅱ 등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제조회사가 동일한 출처에서 개발된 자사의 일련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기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기호여서(경험칙), 일반 수요자가 이를 상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다.	
2004당2138 2005허3987	청바지, 잠바 등	청바지, 잠바 등	"BUTTON FLY"와 "SPOTISM"이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사용상표 전체의 배치 속에서 무슨 글씨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현되어 있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들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니라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동일성이 있다 할 것이다.	
				
2004당2277 2005허3994 2005후2823(심불)	식염, 간장 등	식염, 간장 등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쇄체로 된 한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은 이를 붓글씨로 표현한 것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그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가 외관상다른 표장으로 인식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할뿐더러, 호칭과 관념에 있어 양 표장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정도로 변형된 표장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仁 山			
2004당16 2005허2021	영사된 필름,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영사된 필름,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실사용표장은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알파벳 중 "S"를 붉은색원 속에 넣고 색상을 다른 알파벳과 달리 하였으며, 또 전체 구성 알파벳의 아래쪽에 위쪽이 약간 볼록한 타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부가된 도형이 매우 단순하여 일반인이 이를 보고 다른 관념을 연상할 만큼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알파벳의 서체 중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하여 더 쉽게 알파벳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정도의 변형은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INSAN			
2003당1042 2003허7343 2004후1588 2005허(환송)6887	예복, 신사복 등	롱코트, 반바지 등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하나의 요부에 해당하는 "MAURICE"가 생략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003당2703 2004허7395	지방산류, 지방산에스테르류 등	지방산류, 지방산에스테르류 등	실사용상표의 숫자부분인 3609가 피고가 생산하는 ESTOL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인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화합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숫자 부분을 부기하여 그 상품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위 숫자 부분은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	
	ESTOL	ESTOL 3609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기 위한 부기적인 부분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실사용상표인 ESTOL 3609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사용이다.	
2003당282 2004허1373	향수, 스킨로우션 등		유니레버 코즈메틱스가 국내에 수출한 향수제품의 포장상자에 표시된 “BCBGMAXAZRIA”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라 할 것이고, 위 상표가 비록 다른 상표인 “BCBGirls” 또는 “BCBGirls MAX AZRIA”와 같은 포장상자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착위치가 뚜껑부분과 정면부분으로서 서로 떨어져 있어 위 “BCBGMAXAZRIA”는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가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용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B.C.B.G. MAX AZRIA	BCBGMAXAZRIA		
2001당567 2002허116 2002후970	식품 저장 용기(반찬용), 수동식 음식 분쇄기 등		이 사건 사용표장은 이중타원형의 도형과 그 내부에 ”π“ 및 ”ACM π WATER SYSTEM“, ”제조원 (주)삼왕인터내셔날“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ACM π WATER SYSTEM“ 및 ”제조원 (주)삼왕인터내셔날“ 부분은 가운데 중앙의 ”π“에 비해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글자꼴이 특이하다거나 도안화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지정상품에 라벨형태로 부착된 사용표장으로부터 외관상이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고, 위 도형과 각 문자 부분들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부가적인 부분인 직사각형의 도형이 생략·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등록상표의 요부인 “ACM π WATER" 문자 부분은 다른 문자 및 도형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사용상표는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ACM π WATER			
2003당456 2003허4924 2004후141	동물용 약제, 가축병 치료제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5번째 문자인 “R”부분이 다소 다르게 표시되고 ”40“이라는 숫자와 문자의 입체감을 주기 위한 도형 등이 부가되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여 이 사건 등록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ZINPRO	 앞면  뒷면	상표의 동일성이나 식별력을 상실케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2002당1605 2003허694	아동복, 저고리 등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 부분을 뺀 나머지 문자 부분만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는 이상 문자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SUN HOUSE (확인안됨)		
2002당1873 2003허1628 2003후1864(심불)	동물용 약제, 가축병 치료제	사료첨가제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5번째 문자인 “R"부분이 다소 다르게 표시되고 ”40“이라는 숫자와 문자의 입체감을 주기 위한 도형 등이 부가되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이나 식별력을 상실케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	
	ZINPRO			
2002당1029 2002허8134	코안경, 안경알 등	코안경, 안경알 등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제외한 문자 부분의 형태 또는 한글 ‘콘택트안경’ 및 영문자 ‘Contact Optical'을 부가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문자 부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부가한 한글 ‘콘택트안경’ 및 영문자 ‘Contact Optical'은 모두 상품을 직접 표시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어떤 새로운 식별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가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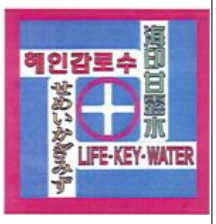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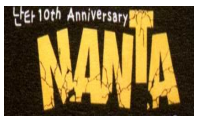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상품인 안경, 선글라스 또는 그 포장에 거래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2당296 2002허5920	전기공사업, 석공사업 등		건아건설이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표를 보면 "(주) 建亞建設" 중 "(주)"부분과 "建設"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建亞"라 할 것이고, "KUN-A"와 "KUNA"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어 음역이어서 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建亞	(주) 建亞建設 KUN-A KUNA		
2001당1876 2002허4774 2003후717(심불)	소화기관용 약제, 비뇨생식기 및 항문용약제 등		"오구멘틴" 부분은 "일성" 부분과는 현저히 더 크게 표시된 것이어서 등록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이 있고 따라서 그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위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오 구 멘 틴	일성 오구멘틴®		
2001당2176 2002허4972	신용카드발행업, 선불카드발행업등		서비스표권자가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서비스표에 요부가 아닌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서비스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Leports Club" 및 "LG Card"라는 영문 문구는 거래통념상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LG LEPORTS CLUB CARD	Leports Club LG Card		
2000당1909 2001허3149	자동차 시트커버, 핸들카바 등		누구나 쉽게 개미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모양으로서 그 기본적인 자세도 양 표장 모두 개미가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점에서 같고, 이 사건 등록상표나 사용표장 모두 도형과 영문자의 조합이 결합된 상표로서 영문자의 조합부분이 대문자"Q"자를 소문자와 같은 크기로 사용한 점까지도 동일하므로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사용표장에서의 이와 같은 정도의 도형부분의 변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표장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쿠앰 Aquam	Aquam		
96항당155 98후959	단화, 가죽신 등		실사용상표 1은 이를 구성하는 영문자 중 첫 음절 "C"가 다소 디자인화되어 있고 나머지 철자들은 필기체로 되어 있으며, "C"자 형상의 도형이 위 영문자를 감싸고 있어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거래 사회통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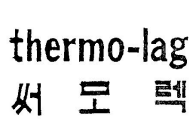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CHAMPION	(실사용상표 1)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99당1165 99허8769	색종이, 편지지 등 둘 리	둘리나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옆에 그림이 놓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그림이 문자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별지 그림에 사용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글자 모양은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95당987 98허294 99후352	견직물, 목면직물, 인조견직물 등 SCABAL TEX	"SCABAL"	"SCABAL TEX"로 이루어진 상표인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관용명칭에 해당하는 "TEX" 부분을 제외한 "SCABAL" 부분만을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소모직물에 해당하는 양복지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사용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이지만, 나머지 부분인 "TEX"는 양복지 등의 직물류에 사용되는 관용명칭이어서, 위 "SCABAL"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이라 할 것이다.	
99당229 99허8486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 JAGUAR FOCUS 재규어-포커스	1997 Summer/Fall Season 재규어-포커스 JAGUAR FOCUS Best watch collection	이 사건 연합상표의 한글부분은 "JAGUAR FOCUS"라는 영문자를 한글로 음역하여 영문자 아래 부분에 나란히 기재해 놓은 것으로 위 영문자 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새로운 관념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므로 한글부분과 영문자 부분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고 하여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7당438, 439(병합) 98허7530 98후2979	신사복, 슈우트, 잠바 등 40-93-012243 CROCO KIDS	Croco Kids	이와 같은 차이들은 모두 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사용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가진 사용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이 부정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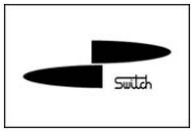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9당1596 2010허9446 2011후1326	지갑, 명함케이스 등	지갑 등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검은색 타원형 바탕 내부에 도형 ''과 영문자 'GRAND PRIX' 및 한글 '그랑프리'가 3단으로 구성된 것인 데 비하여, 실사용상표들은 위 구성 중 도형과 영문자만을 이단 또는 횡으로 병기하거나 도형과 영문자를 각각 표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검은색 타원형 바탕 및 한글 '그랑프리' 부분)를 누락·삭제한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도형과 영문자 및 한글이 병기된 상표에서 어느 한 부분이 기술적 표장이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각 부분 모두가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일부가 누락·삭제된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		
2010당992 2011허187	라이브공연업(live performance presentation services), 무도회 조직업(ball organization services)	호텔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W'만을 포함하고 도형부분인 ''를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는바, 실사용서비스표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문자부분인 'W'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위 도형부분인 ''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 있는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다.	
		 (실사용서비스표1)  (실사용서비스표2)  (실사용서비스표2)  (실사용서비스표2)		
2010당149 2010허7433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서적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사이버 스쿨버스 100' 부분과 실사용상표의 나머지 '스쿨버스 100' 부분은 한글문자 '사이버' 부분의 유무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사이버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서 차이가 있고, '사이버' 부분은 '사이버 스쿨버스'과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구성 중 앞부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과 같은 나머지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시각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식별력 있는 '사이버' 부분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09당1079 2010허9293 2011후750(심불)	성형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성형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비록 하단부에 한글로 '티아라'라는 기재가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티아라'로 호칭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이 현저히 다르므로, 이 사건 실사용서비스표는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TIARA	Tiara 티아라 성형·피부클리닉		
2009당3080 2010허7389 2011후422(심불)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서적, 학습지 등	양 상표는 그 외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실사용 주장 상표의 숫자 부분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없는 새로운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스쿨버스'로만 호칭되는데 반하여 실사용 주장 상표는 '스쿨버스'외에 '스쿨버스백'으로도 호칭될 것이므로, 실사용 주장 상표를 가리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2009당3082 2010허7365 2011후446(심불)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서적, 신문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사이버 스쿨버스 100' 부분과 실사용상표의 나머지 '스쿨버스 100' 부분은 한글문자 '사이버' 부분의 유무에 서 차이가 있고, 한글문자 '사이버' 부분은 '사이버 스쿨버스'과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체 구성 중 앞부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스쿨버스'과 같은 나머지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시각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	
	사이버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정상품인 '서적'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있는 한글문자 '사이버' 부분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형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009당2282 2010허5222	광천수, 생수 등	건강칼럼, 명함 등	원고가 사용한 '해인', '해인(海印)', '해인감로수' 등의 단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한자, 영어문자, 일본어문자가 모두 결여되어 있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볼 수 없다.	
		해인 해인(海印) 해인감로수 (실사용표장들)		
2009당1251 2009허8515	가죽신, 티셔츠 등	가죽신, 티셔츠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평이한 명조체의 영문자 'NANTA'와 한글 '난타'가 비슷한 크기로 상하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표장은 마치 금이 간 듯이 도안화된 굵은 고딕체의 영문자 'NANTA'가 고르지 않게 배열되어 크게 기재되어 있고 그 왼쪽 위로 '난타 10th Anniversary'라는 문구가 손글씨처럼 비교적 평이한 글자체로 작게 부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NANTA' 부분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진다. 또한, 사용표장의 위 '난타 10th Anniversary' 부분은 그 전체로서 '난타 10주년 기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한글 '난타'만이 분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분 전체로도 의미상 홍보문구에 불과하여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한글 '난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NANTA 난 타			
2008당2298 2009허5240 2010후197(심불)	커피, 코코아 등	커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서, 상단에 '나만의 여유로움 플로리안'이라는 문자가 가로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커피잔 형상의 도형 및 'florian'이라는 영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임에 반하여, 위 사용된 표장들은 한글 '플로리안'이나 영문자 'florian', 또는 이들 표장의 결합표장 앞에 '나만의 여유'라는 문자가 추가되어 가로로 기재되	
		플로리안 florian 나만의 여유 플로리안(florian) (실사용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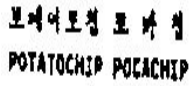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어 문자표장들이므로, 이들 중 어느 것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2008당1389 2009허4186	내화도료, 페인트 등 	내화도료  (실사용상표) THERMO-LAG® 3000-SA (실사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thermo-lag"과 한글 "써 모 렉"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고 할 것인바, 위 실사용상표들은 영문자인 "THERMO-LAG"만 표기되어 있을 뿐, 한글문자 "써모렉"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실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기는 하나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008당881 2009허740	스티커, 어항 등 	스티커, 어항 등  (실사용표장1)  (실사용표장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영문과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되었음에 반하여, 실사용상표장들은 영문자 'bop' 또는 'bp'를 도안화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요부 중의 하나임이 분명한 한글 부분이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실사용표장들의 사용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사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8당880 2009허757 2009후3558(심불)	스티커, 어항 등 	스티커, 어항 등  (실사용표장1)  (실사용표장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검은색의 영문 대문자로만 구성되었음에 반하여, 실사용표장들은 영문소문자 'b'와 'p'가 도안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도형이 각각 주황색과 검은색 및 푸른색과 검은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와 'p' 사이에는 상단부에 'R'로 보이는 영문자가 표기되어 있는 검은색 또는 회색의 원형 도형의 일부만 표현되어 있어, 그 외관에 있어서의 도안화된 정도는 물론 표현 및 구성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영문 대문자 'BOP'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인데 실사용표장들은 영문자 'bp' 또는 'bp mybop'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호칭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격하게 다른 인상을 주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표장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상이하므로, 실사용표장들의 사용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사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8당1498 2009허1149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등 	비의료용 추잉껌, 식용캔디 등 	사건 등록상표 "PROJECT"는 한단어의 영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데 비하여, 실사용상표 "XYLITOL α PROJECT"는 녹색의 두 줄로 이루어진 띠 모양의 내부에 "⊕",""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XYLITOL”,“  ”, “PROJECT”가 좌에서 우로 나란히 배열되어, ① 녹색의 두 줄 띠, ② 십자성을 이중의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도형, ③ 제품의 원료명인 “XYLITOL”, ④ 정사각형 안에 있는 로마문자 “α”, ⑤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영문자 “PROJECT” 등 5개의 요소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다. 국, 이 사건 등록상표에 독자적인 식별력 있는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결합상표로 변형한 실사용상표는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당270 2008허12425	크레디트카드 기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반도체 실물제품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은 윗변과 아랫변에 ‘’ 모양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사각형을 세워 놓은 형상의 도형 안에 ‘SCARLET’이라고 기재하고 그 중 ‘ET’ 부분 위에 ‘Ⅱ’를 겹치도록 기재한 것임에 비하여, 위 반도체 실물제품 표면에 표시된 표장은 단순히 피고의 영문 상호의 일부로 보이는 ‘X CROSS S&T’ 아래에 ‘SCARLET Ⅱ’라는 단순한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반도체 실물제품 표면에 표시된 표장이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X CROSS S&T SCARLET Ⅱ (실사용상표)		
2007당3189 2008허14063 2009후1538(심불)	칫솔, 가사용 장갑 등	고무장갑, 면장갑 등	우선 실사용상표 1,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영문자와 한글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실사용상표 3은 한글 부분의 글씨체를 변경하고, 영문자 부분의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쇄체 소문자로 변경함은 물론 ‘Y’ 부분을 ’i‘로 변경하였으며, 표장 전체가 입체감을 가지도록 구성된 표장이다. 이와 같이 문자 부분의 글씨체를 변경하고 표장이 입체감을 가지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중 ‘Y’ 부분을 ’i‘로 변경한 것은 그 발음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바로 아래에 한글 ’후디스‘가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을 구성하는 영문자 1개를 변경하고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쇄체 소문자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FOODYS 후 디 스	 (실사용상표1)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3)		
2007당232 2007허6539 2008후507	입시학원경영업, 출판업 등		실사용표장은 그 중 ‘’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교 연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8허11521(환송) 2009후221(상소각하)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당231 2007허6546 2008후514 2008허11514(환송) 2009후238(상소각하)	입시학원경영업, 출판업 등		실사용표장은 그 중 '교연' 부분의 식별력이 뚜렷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당1195 2007허12657 2008후2336(심불)	수출입대행업, 무역중계업 등	수출입대행업, 무역중계업 등	비록 실제 사용표장에 "장수돌" 부분과 "침대" 부분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실제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침대"라는 글자가 부가됨으로써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이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형되었다고 할 것이다.	
		 (실사용표장)  (실사용표장)		
2006당2067 2007허7105 2008후415	장화, 편상화 등		도형과 문자의 상대적 크기, 글자체, 글자크기 등의 변형과 등록상표임을 의미하는 "®"의 부가로 인하여 위 실사용상표들이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실사용상표2)  (실사용상표4)		
2006당3009 2007허12114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 등		실사용 표장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표장 전부(Lingua Press)가 생략되었거나 일부(Press)가 생략된 채로 사용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Lingua Press	 (실사용표장)  (실사용표장)  (실사용표장)		
2007당173 2007허8467	골프화, 농구화 등	운동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그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호칭과 관념은 동일하나,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6당1577 2007허8825	돌침대 판매대행업, 돌침대 판매알선업 등	돌침대 판매대행업, 돌침대 판매알선업 등	이들 표장들에는 "장수"라는 공통된 문자와 다섯 개의 별이 있고 그 전체에 검은색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들 표장에는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한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달리 "장수"란 문자 뒤에 띄어쓰기 없이 "돌침대"란 문자가 부가되어 있어,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전체적인 의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표장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장수★★★★★	장수돌침대★★★★★★ (표장) 장수돌침대☆☆☆☆☆ (표장)		
2006당1375 2007허7686 2008후88(심불)	돌침대	돌침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e- 뜨거운 침대" 부분이 요부와 관련 없는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e- 뜨거운 침대" 부분이 빠져 있는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장수돌침대★★★★★★ e- 뜨거운 침대	장수돌침대★★★★★★ (실사용상표) 장수돌침대☆☆☆☆☆ (실사용상표)		
2006당2600 2007허4779	서적, 신문등	서적, 신문 등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전매일'이라고 간략하게 호칭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株式會社大田每日新聞社	대전매일		
2006당1386 2007허3486 2007후3424(심불)	의료전용침대, 분만용 매트 등	의료전용돌침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수' 부분과 '★★★★★' 또는 '☆☆☆☆☆' 부분 사이에 '돌침대'가 삽입되어 있는 위 사용표장들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변형상표로서 허용될 수 있는 동일성이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 할 수 없다.	
	장수★★★★★	장수돌침대★★★★★★		
2006당1370 2007허1800 2007후2582(심불)	침대, 매트리스 등	지정상품 검색안됨	'온'과 '돌'이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온돌이라는 전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그 문자부분이 '장수'와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별도의 식별력을 불러 일으키는 표장으로서의 독립성까지 지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돌'이라는 글자가 부가됨으로써 그 상표의 한 구성부분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형되었다	
	장 수 온	장수온돌 (사용표장) 장수온돌침대 (사용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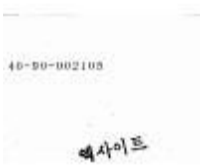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4당962 2005허4089 2005후2854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 ‘ ’을 생략한 것이어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UniSQL®	UniSQL		
2005당3160 2006허7214 2007후586(심불)	단화, 골프화 등		원고의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 중 “MARIO” 부분과 “UOMO” 부분 사이를 띄우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어렵다.	
	MARIOUOMO	MARIO UOMO		
2005당1403 2006허5614	관광음식점업		실사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호칭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CASVILL 캐스빌	CasVill 건영캐스빌		
2004당1276 2005허5341 2005후2939	건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		“포카칩” 전체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며, 실사용 상표들은 “CHIP”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외관·호칭·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POCA	POCACHIP 포카칩 Photo POCACHIP PHOTO		
2003당2160 2004허3812 2005후1172	커피, 대용커피, 홍차 등		한글부분은 영문부분과 일체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별도의 한글상표로서 사용되었거나 영문상표를 단순히 한글로 설명하는 광고글귀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한글과 영문 모두를 요부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하이마운틴 HIGH-MOUNTAIN	하이마운틴		
2005당871 2005허10169	버클, 멜빵 등	버클, 멜빵 등	‘K2’는 영문 대문자 ‘K’와 숫자 ‘2’를 가로로 결합한 상표이고, 등록상표인 ‘케이-투’는 한글 ‘케이’와 ‘투’ 사이에 기호 ‘-’를 삽입하여 가로로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호칭만 같을 뿐 외관이 전혀 달라 거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형의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케이-투	K2		
2005당1709 2006허558	다방업, 카페업 등		일반 수요자들은 보통 위 서비스표들을 ‘시골마을’로 인식하기 보다는 ‘시골 솥단지 삼겹살’로 인식할 것으로 보여지고, 참좋은에프씨가 사용하고 있는 위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시골마을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5당381 2005허10282 2006후1346(심불)	자동차부품판매대행업, 자동차부품판매알선업 등		'(주)카메이트'라는 표시는 '주식회사 카메이트'의 약어로서 원고의 상호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가운데 한글 부분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중요부분 중 영문 부분인 'CARMATE'만이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 '카메이트'와 영문 'CARMATE'가 상, 하로 병기되어 있는 결합상표에서 오로지 영문 'CARMATE'만을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카메이트 CAR MATE	 CARMATE (주) 카메이트		
2005당276 2005허10305 2006후930(심불)	건축설계업, 레스토랑업 등	건축설계업, 레스토랑업 등	실사용서비스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밑줄 상단에 상호로 표기된 '주식회사 건영' 부분이 두드러지게 표기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식회사 건영의 상호로 호칭, 관념되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우측에 상호로 표기된 '주식회사 글로리' 부분이 두드러지게 표기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주식회사 글로리의 상호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가 서로 다른 회사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실사용서비스표를 구성하는 각 도형부분도 전혀 상이하므로, 그 중 어느 부분이 서비스표의 요부인지를 떠나 실사용서비스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은 있으나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로리	 주식회사 건영 글로리콘도미니엄		
2004당1278 2005허4676	건과자(POTATOCHIP이 함유된 것), 비스킷(POTATOCHIP이 함유된 것) 등	건과자(POTATOCHIP이 함유된 것), 비스킷(POTATOCHIP이 함유된 것) 등	실사용상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앞 문자 부분인 "POTATOCHIP"이 생략되어 있는데, "포테이토 칩" 및 "POTATOCHIP" 부분이 '감자를 잘게 썰어 만든 스낵'을 의미하는 성질표시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성질표시의 기술적 표장이라 하더라도 전체 상표구성에서 강한 인상을 줌으로써 위 부분의 문자 못지않게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상표 표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POTATOCHIP POCACHIP	 (실사용표장) 포카칩, POCACHIP (실사용표장)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4당1611 2005허2618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움부움'이 실사용상표에서는 '붐'으로, 영문자 'BoomBoom'은 'Boom'으로 각 사용되어 실사용상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 문자의 구성이 생략되어 있고, 실사용상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없는 한글 '마일드'와 영문자 'Mild'가 부가되어 한글 '붐' 및 영문자 'Boom'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편 실사용상표 하단의 '무궁화'는 영문자 'Mild Boom' 및 한글 '마일드붐'과 별도로 회사의 상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위 문자 부분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인 영문자 'Mild Boom'과 한글 '마일드붐'의 결합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무궁화부움부움 BoomBoom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		
2004당871 2005허(당)1011 2005후1745(심불)	전통무예지도업, 전통문화예술관련지도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기천(氣天)"으로서 한글부분과 한자부분이 결합된 문자표장이어서 한글부분과 한자부분이 모두 각기 서비스표의 요부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그 요부인 한자부분을 제외하고 한글부분만으로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기천(氣天)	기천 기천협회 기천무학 기천체조		
2004당1217 2005허1967 2005후1585(심불)	훈향, 조합향료 등	훈향, 조합향료 등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이고, 일반수요자들이 영문 "Herbal Essences"를 이 사건 등록상표 "허벌 에센스"와 동일한 상표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허벌 에센스"와 영문 "Herbal Essences" 상표는 한글과 영문의 차이로 인하여 유사상표에 불과할 뿐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로 보기는 어렵다.	
	허벌 에센스	Herbal Essences		
2003당2730 2004허5351	향수, 일반화장수 등	향수, 일반화장수 등	위 실제 사용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왼쪽에 그와 동일한 수의 한글이 덧붙여져 일체로 결합한 결과, 설령 그 덧붙여진 한글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표장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동일성을 가진 표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피 치	피치핑크		
2003당1585	모피, 인조모피 등	모피, 인조모피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 문자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4허4884 2005후131(소취하)	XESStheattitude 제스더애티투드	XESS the attitude www.iXESS.CO.kr ㈜제스인터내셔날 XESS, 제스	부분이 각각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제품 또는 제품의 광고 등에 "XESS the attitude", "XESS the attitude"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2003당1826 2004허2918	도로건설공사업, 택지공사업 등	도로건설공사업, 택지공사업 등	"상록산업개발(주)"와 "상록건설(주)"에 포함된 "상록건설"과 "상록종합건설"은 서로 다른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상록건설"의 사용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상록종합건설"과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常綠綜合建設 상록종합건설	상록종합건설 주식회사 (실사용표장) 常綠綜合建設株式會社 (실사용표장)		
2004당15 2004허4334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등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등	철자수나 서체의 차이로 인하여 양 서비스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인산"의 두 음절인데 비하여 실사용표지는 "인산가"의 3음절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산의 명칭 또는 지명으로 인식되는데 비하여 실사용표장은 "인산가문"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양 표장은 외관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서로 동일성이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다.	
	仁 山	仁山家		
2003당1535 2004허2758 2004후2994(심불)	의장, 농 등	의장, 농 등	"이조농방" 또는 "이조(본사)"라고 표기하여 사용한 것만 가지고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모두 요부인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조 농방	이조농방 이조(본사)		
2003당1390 2004허165 2004후2475(심불)	호텔업, 부동산임대업 등		영문자 "KOLON SPOREX", 한글 "코오롱 스포렉스", 영문자 "SPOREX"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 중 어느 하나만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동일한 범위에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없다.	
	SPOREX 스 포 렉 스	KOLON SPOREX 코오롱 스포렉스		
2003당202 2003허6623	싸이클용화, 하키화 등	운동화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Societa Per Azioni"부분을 뺀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Lotto Societa Per Azioni	lotto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당1514 2003허762 2003후1673	케비넷식사우나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부분과 한글부분 사이에 원고의 또 다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부분이 빠져 있는 것어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HEALTH MATE 헬스 메이트	"HEALTH MATE"		
2002당1680 2003허571	단화, 편상화 등		도형부분과 영문자 "BONITA FASHION"부분이 결합된 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BONITA"부분과 한글 "보니타"부분이 모두 요부여서 이 중 영문자부분만을 표시한 표장을 사용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의 사용으로 볼 수도 없다.	
	BONITA 보 니 타	확인안됨		
2002당1081 2002허7766 2003후1642(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아복, 반바지 등		처음에 영문자 "MADEN"과 한글 "마덴"이 결합된 상표는 사용한 적이 없고 영문자 "MADEN"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위 각 증거가 심판단계에서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ADEN 마 덴	MADEN		
2001당1648 2002허2853	방향제		'Mood-Makers'라는 표기 형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MOODMAKERS'와 관념과 호칭이 동일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mood'와 'makers' 사이에 연결선을 개재시킨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이 사건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변형이라 할 것이다.	
	MOOD MAKERS	Mood-Makers		
2001당539 2001허5015 2002후93	단화, 장화 등		"은성"이라는 한글문자 부분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이한 형태의 도형, 한글문자 및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특징을 갖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실스타의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은성 SILSTAR	"SILSTAR", " + SILSTAR"		
2001당331 2001허4630 2002후24	건과자, 비스켓 등		상품의 포장에 "ORION"과 "화이티스"를 2단으로 표시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오리온' 부분을 영문자 'ORION'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표장으로 볼 수 없다. 또 현황표에 "화이티스"라고 표기한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리온 화이티스	ORION 화이티스 화이티스		
97당375	트럼프, 놀이카드, 화투 등		풍차도형을 스페이드 모양의 이중 외곽선으로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98허7516 99후536		(확인 불가)	둘러싸고 내부의 바탕에 가로줄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스페이드의 형상은 뚜렷하게 보이나 그 내부의 풍차도형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을 표시한 위치도 문자 부분과는 상당히 떨어진 우측 상당의 구석으로 치우쳐 있고 크기도 작게 축소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트럼프의 외장 케이스에 사용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95당594 2000허4190	플라스틱완구, 세트완구 등	완구용 건축블록, 완구용 건축재료 등	영문자만 표기되어 있고 한글자가 없는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으나, 이들 변형된 형태의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한글자 부분이 없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		
99당1727 2000허5322 2001후1068(심불)	향수, 아이새도우 등	펌로션 등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을2의 4)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의 하나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가싸펌로션'이라고 기재된 부분뿐인바, 이 기재 중 "아가싸"는 영문자 "Agatha"와 한글 "아가싸"가 상하로 병기되어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유사한 상표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Agatha 아가싸	**아가싸펌로션**		
98당1074 99허9205	직조업, 섬유가공업 등		이 사건 연합서비스표에 있어서는 한글과 영문자로 된 각 부분 모두가 서비스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합서비스표 중에서 그 요부의 하나인 한글 "성부 트레이딩"을 제외하고 도형부분 및 영문자로 된 부분만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용을 이 사건 연합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성보 트레이딩 SUNGBO TRADING	성부 트레이딩 SUNGBOO TRADING		
97당1671 98허10468 99후1218	츄잉껌, 비스켈 등		한글을 그에 대응되는 영문자로 변경 사용한 것은 당연히 동일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려니와, 한글로 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표로 디자인화되어 있다고 보여져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다른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용상표는 이 사	
		(실사용 상표 확인 불능)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판결요지	비고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99당52 99허6251	김치, 과실의 통조림 등		별지 제2도면 1. 상표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펠리칸새의 도형 부분만이 사용되고 있 고 문자 부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별지 제2도면 2. 상표의 경우에는 '페리카나'라는 문자 부분만이 사용되고 있고, 펠리칸새의 도형 부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0-92-032024 페리카나	확인안됨		
98당1246 99허4095 2000후211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		그 도형 및 영문자의 각 부분 모두가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중 도형 부분은 빠지고 영문자 부분만으로 된 이 건 실사용 상표를 이 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거나 파리협약 제5조 3.(b)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가 등록될 때의 형태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0-91-004646 BLESS	BLESS		
96당1427 98허7837 98후2825	떡, 각사탕등		본건상표의 국문자인 '브라우니'는 모두 요부로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할 것이고, 위 '브라우니' 중 마지막 글자의 받침에 'ㅇ'을 첨가한 실사용상표 또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그 전체가 요부라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특히 영어에서 유래한 단어인 점을 참작함)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실사용상표는 본건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동양제과 주식회사의 실사용상표 '브라우닝'의 사용은 본건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0-83-007084 브라우니	브라우닝 (실사용상표)		